

2019

정책연구 2019-22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 사회통합 증진을 중심으로

연구진 이주연 · 이동기 · 최지훈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9-22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 사회통합 증진을 중심으로



연 구 진

연구책임 이 주 연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이 동 기 ·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 지 훈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관리 코드 : 19JU1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3
가.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나. 연구내용	6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7
가. 연구방법	7
나. 연구절차	10
제2장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및 사례 분석	11
제1절 다문화가족 및 사회통합의 이론적 논의	13
가. 다문화가족의 이해	13
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의 이해	14
제2절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19
가. 다문화가족정책 연혁	19
나. 다문화가족정책 법적 근거	21
다.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향과 부처별 역할	21
라.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	28
마. 중앙행정기관 실시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정책의 한계점	39
제3절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40
가. 법적 근거	40
나.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정책 및 예산 현황	41
다. 2019년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현황	43
라. 전라북도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의 제한점	45
제4절 타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사례 분석	47
가. 서울지역 정책사례	47

나. 경기지역(부천시) 정책사례	53
다. 충남지역 정책사례	54
라. 시사점	55
제3장 전북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현황	57
제1절 전북 다문화가족 현황	59
가. 외국인주민 현황	59
나. 다문화가족 현황	63
다. 현황분석에 따른 전북 다문화가족의 환경 변화	80
제2절 전북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현황	83
가.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른 사회통합 현황	83
나. 2018년 전국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현황	113
다. 2018년 전라북도 사회조사에 따른 사회통합 현황	150
제3절 소결	160
제4장 전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경험 및 정책적 욕구	167
제1절 다문화가족 세부 집단별 심층면접 분석결과	169
가. 조사개요	169
나. 면접조사 분석결과	171
제2절 지역사회 선주민 면접조사 분석결과	195
가. 조사개요	195
나. 면접조사 분석결과	196
제3절 현장전문가 FGI 및 개별면접조사 분석결과	205
가. 조사개요	205
나. 면접조사 분석결과	207
제4절 소결	226

제5장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전북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233
제1절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전북 다문화가족정책의 한계점	235
제2절 전북 다문화가족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	243
제3절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249
참고문헌	281

표 목 차 | Contents

〈표 2-1〉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경과	20
〈표 2-2〉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적 근거	21
〈표 2-3〉 다문화가족 상황 변화에 따른 각 단계별 특징	22
〈표 2-4〉 제1차 ~ 제3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정책 추진 방향	23
〈표 2-5〉 각 부처별 정책대상 및 지원업무	26
〈표 2-6〉 각 부처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센터 현황	27
〈표 2-7〉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세부영역별 예산 및 과제 수	35
〈표 2-8〉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 중 사회통합과 관련된 내용만 편집	37
〈표 2-9〉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 중 사회통합 관련 세부내용 분석	38
〈표 2-10〉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41
〈표 2-11〉 전라북도 다문화정책 현황 및 예산	42
〈표 2-12〉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사업안내(2019)	44
〈표 2-13〉 전북 지방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중 사회통합 관련 사업 내용(2019) ...	45
〈표 3-1〉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17)	59
〈표 3-2〉 지난 10년간 전북 외국인주민 추이	60
〈표 3-3〉 전북 외국인주민 유형별*성별 현황(2017)	61
〈표 3-4〉 전북 외국인주민 연령별*성별 현황(2017)	62
〈표 3-5〉 전북 외국인주민 체류기간별*성별 현황(2017)	63
〈표 3-6〉 전국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2017)	64
〈표 3-7〉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 추이 변화(2007~2017)	64
〈표 3-8〉 시·군별 다문화가구원 현황(2017)	66
〈표 3-9〉 전라북도 연도별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2011~2017)	67
〈표 3-10〉 전라북도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2011~2017)	68
〈표 3-11〉 전라북도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2011~2017)	69
〈표 3-12〉 전라북도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 현황(2011~2017)	69

〈표 3-13〉 전국 시·도별 출생아 수 및 다문화 출생 비중(2015~2017)	70
〈표 3-14〉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07~2017)	71
〈표 3-15〉 연도별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별 현황(2011~2017)	72
〈표 3-16〉 시·도별 다문화학생 현황(2018)	75
〈표 3-17〉 전라북도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2012~2018)	76
〈표 3-18〉 전라북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현황(2012, 2015, 2018)	77
〈표 3-19〉 부모출신국별 다문화학생 수(2018)	78
〈표 3-20〉 전북 시·군별*학교급별 다문화학생 수(2018)	78
〈표 3-21〉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다문화학생 학업 중단율(2013~2017)	79
〈표 3-22〉 전국 및 전북의 학교 급별 다문화학생 학업 중단율(2017)	80
〈표 3-23〉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개요	84
〈표 3-24〉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참여자의 특성	85
〈표 3-25〉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참여자의 가구구성	86
〈표 3-26〉 다문화가구의 평균 자녀수	86
〈표 3-27〉 다문화가구 자녀의 평균 연령	87
〈표 3-28〉 다문화가구의 월 평균 소득분포	87
〈표 3-29〉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출신국적별 비율	89
〈표 3-30〉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출신국적별 비율	89
〈표 3-31〉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혼인지속기간	90
〈표 3-32〉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2018)	91
〈표 3-33〉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와의 갈등 사유(2015, 2018)	92
〈표 3-34〉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시간(2015, 2018)	93
〈표 3-35〉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부부간 문화적 차이 경험 여부(2018)	94
〈표 3-36〉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문화적 차이 유형(복수응답)(2018)	94
〈표 3-37〉 이혼·별거 사유(2012, 2015, 2018)	95
〈표 3-38〉 이혼·별거 이후 자녀양육 책임자	96
〈표 3-39〉 이혼·별거 이후 자녀양육비 수령 여부	96
〈표 3-40〉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만 5세이하 자녀 양육의 어려움(2015, 2018)	97
〈표 3-4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적 관계(요약)(2018)	101
〈표 3-4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임·활동 참여 의향(2015, 2018)	102

〈표 3-43〉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임·활동 참여 시 어려움(2015, 2018)	103
〈표 3-44〉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임·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2015, 2018)	103
〈표 3-45〉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2015, 2018)	104
〈표 3-46〉 사회적 공간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요약)(2018) ·	105
〈표 3-47〉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원서비스별 이용 경험(복수응답)(2015, 2018) ·	106
〈표 3-48〉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5점기준)(2015, 2018) ...	107
〈표 3-49〉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별·연령별 분포(2018)	107
〈표 3-50〉 다문화가족 자녀의 부모님과 하루 평균 대화시간(2018)	108
〈표 3-51〉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2015, 2018)	109
〈표 3-52〉 초·중등 및 대학 재학 자녀의 학교 적응도(2018)	110
〈표 3-53〉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의 차별 정도(4점기준)(2018)	111
〈표 3-54〉 전북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16
〈표 3-55〉 전국 시·도별 다문화수용성 현황(2018)	117
〈표 3-56〉 전북 도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다문화수용성 수준(2018)	122
〈표 3-57〉 전북도민 다문화수용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격차(2018)	123
〈표 3-58〉 전국 및 전북의 사회인구학적특성별 다문화지향성(2018)	127
〈표 3-59〉 전북도민의 다문화 관련 변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2018)	128
〈표 3-60〉 이주민과의 관계 경험 비율(2018)	129
〈표 3-61〉 전북도민의 성별, 연령별, 교육과 소득수준에 따른 이주민과의 관계 경험	130
〈표 3-62〉 전북도민의 이주민과의 관계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2018)	131
〈표 3-63〉 전국과 전북의 외국인 및 이주민 친구·친척의 수(2018)	131
〈표 3-64〉 전국과 전북 외국인 및 이주민 친구·친척과의 만남(대화) 빈도(2015, 2018)	131
〈표 3-65〉 전국과 전북의 다문화교육 참여 여부(2015, 2018)	132
〈표 3-66〉 전국과 전북의 다문화활동 참여 비율(2018)	132
〈표 3-67〉 전북 청소년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259)	134
〈표 3-68〉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현황(2018)	135

〈표 3-69〉 전북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특성별 다문화수용성 수준(2018)	137
〈표 3-70〉 전북 도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다문화수용성 수준(2018)	139
〈표 3-71〉 전북 청소년의 외국인·이주민 단순목적빈도, 이미지, 해외여행·거주경험 (2018)	140
〈표 3-72〉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외국인·이주민과의 관계 유형(다중응답)(2018) ..	141
〈표 3-73〉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외국인·이주민과의 관계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2018)	142
〈표 3-74〉 전북지역 청소년의 외국인·다문화가정 자녀의 친구 수(2015, 2018) ..	142
〈표 3-75〉 전북지역 청소년의 외국인·다문화가정자녀 친구와의 접촉빈도별 다문화수 용성(2018)	144
〈표 3-76〉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참여 여부(2015, 2018)	145
〈표 3-77〉 전북지역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장소(복수응답)(2018)	146
〈표 3-78〉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내용(복수응답)(2018)	146
〈표 3-79〉 전북지역 청소년의 다문화학생과의 공동 활동 경험 여부(2015, 2018) ·	147
〈표 3-80〉 전북지역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및 공동활동 참여 경험여부별 다문화수용성 (2018)	148
〈표 3-81〉 전북지역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및 활동 참여 의향(복수응답)(2018)	149
〈표 3-82〉 전북지역 청소년의 향후 참여하고 싶은 다문화활동 내용(1순위)(2018) ·	149
〈표 4-1〉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세부 집단별 일반적 특성	173
〈표 4-2〉 다문화가족 대상 면접조사에 따른 주요 분석결과	175
〈표 4-3〉 면접조사에 참여한 지역사회 내 선주민의 일반적 특성	196
〈표 4-4〉 지역사회 내 선주민 대상 면접조사의 주요 분석결과	197
〈표 4-5〉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208
〈표 4-6〉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주요결과	219
〈표 4-7〉 조사결과 주요 내용 요약·정리	232
〈표 5-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세부 추진과제	250
〈표 5-2〉 전북지역의 도·시·군 공무원 현황(2019. 6. 30기준)	254

■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1-1〉 연구 추진 절차	10
〈그림 2-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4
〈그림 2-2〉 중앙/지자체/전북 다문화가족정책 예산 비율(2019)	36
〈그림 3-1〉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17)	60
〈그림 3-2〉 지난 10년간 전북 외국인주민 추이	61
〈그림 3-3〉 전북 외국인주민 유형별*성별 현황(2017)	62
〈그림 3-4〉 전북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2017)	65
〈그림 3-5〉 시도별 다문화 혼인 비중(2017)	67
〈그림 3-6〉 전북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출생비중(2015~2017)	71
〈그림 3-7〉 전북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분포(2017)	72
〈그림 3-8〉 전북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현황(2017)	73
〈그림 3-9〉 전북 사군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7)	73
〈그림 3-10〉 시도별 다문화학생 현황(2018)	75
〈그림 3-11〉 전북 전체 학생과 다문화학생 추이(2012~2018)	76
〈그림 3-12〉 전북 다문화학생 추이(2012~2018)	77
〈그림 3-13〉 전북 사군별*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비율(2018)	79
〈그림 3-14〉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참여자의 가구구성	85
〈그림 3-15〉 다문화가구의 자녀수	86
〈그림 3-16〉 다문화가구 자녀의 연령	87
〈그림 3-17〉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연령별 분포	88
〈그림 3-18〉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거주기간별 분포	89
〈그림 3-19〉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2015, 2018) ·	90
〈그림 3-20〉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와의 갈등 사유(2015, 2018) ·	91
〈그림 3-21〉 유배우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와의 갈등 시 대처 방법(1+2순위)(2015, 2018)	92

〈그림 3-2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시간(2015, 2018)	93
〈그림 3-23〉 이혼별거 사유(2015, 2018)	95
〈그림 3-24〉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만 5세이하 자녀의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점(2015, 2018)	97
〈그림 3-25〉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만 6~24세 자녀 양육의 어려움(1+2순위, 2018)	98
〈그림 3-26〉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어 능력(2015, 2018)	98
〈그림 3-27〉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경험(2015, 2018) ..	99
〈그림 3-28〉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2015, 2018)	99
〈그림 3-29〉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난 1년간 한국생활의 어려움(복수응답)(2015, 2018)	100
〈그림 3-30〉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적 관계 '없음' 비율(2015, 2018)	101
〈그림 3-3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난 1년간 모임·활동별 참여 경험(2015, 2018) ·	101
〈그림 3-3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임·활동 참여 의향(2015, 2018)	102
〈그림 3-33〉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임·활동 참여시 어려운 점(복수응답)(2015, 2018)	104
〈그림 3-34〉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차별 대처 방법(복수응답)(2015, 2018)	105
〈그림 3-35〉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도별·연령별 분포(2012, 2015, 2018)	108
〈그림 3-36〉 초·중등 다문화 학생 및 비다문화 학생의 아버지/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 (2017)	109
〈그림 3-37〉 다문화가족 초·중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도(2015, 2018)	110
〈그림 3-38〉 다문화가족 초·중등학생의 학교 부적응 이유(복수응답)(2015, 2018) ..	110
〈그림 3-39〉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및 차별한 사람(2015, 2018)	111
〈그림 3-40〉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별받았을 때 대응 방법(복수응답)(2015, 2018) ·	112
〈그림 3-41〉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서비스 수혜율(2012, 2015, 2018)	112
〈그림 3-42〉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서비스 필요성(5점기준)(2012, 2015, 2018) ·	113
〈그림 3-43〉 전국 시도별 다문화수용성 지수(2018)	118
〈그림 3-44〉 전국 시도별 다문화수용성의 차원별 비교(2018)	118
〈그림 3-45〉 전국 및 전북 다문화수용성의 차원별 비교(2018)	119

〈그림 3-46〉 전국 및 전북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소별 비교(2018)	119
〈그림 3-47〉 전국 및 전북 다문화수용성의 연도별 비교(2012, 2015, 2018)	120
〈그림 3-48〉 전북 도민의 사회인학적 특성별 다문화수용성 수준(2018)	124
〈그림 3-49〉 전북 도민의 성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수준(2018)	124
〈그림 3-50〉 전북 도민의 연령대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수준(2018)	124
〈그림 3-51〉 전북 도민의 학력정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수준(2018)	125
〈그림 3-52〉 전북 도민의 소득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수준(2018)	125
〈그림 3-53〉 전북 지역규모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수준(2018)	125
〈그림 3-54〉 전국 및 전북의 다문화지향성(2018)	126
〈그림 3-55〉 전북도민의 다문화 관련 변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2018)	128
〈그림 3-56〉 전북도민의 이주민과의 관계여부별 다문화수용성(2018)	130
〈그림 3-57〉 전북의 다문화활동 참여 비율(2015, 2018)	133
〈그림 3-58〉 전국과 전북의 다문화교육 및 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2018)	133
〈그림 3-59〉 전국 시도별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2018)	135
〈그림 3-60〉 전국 시도별 청소년 다문화수용성의 차원별 지수(2018)	136
〈그림 3-61〉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하위요소별 지수(2018)	136
〈그림 3-62〉 전북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특성별 다문화수용성 점수(2018)	138
〈그림 3-63〉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외국인·이주민과의 관계 유형(다중응답)(2018) ·	141
〈그림 3-64〉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외국인·이주민과의 관계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2018)	141
〈그림 3-65〉 전북지역 청소년의 외국인·다문화가정 자녀의 친구 수(2015, 2018) ·	142
〈그림 3-66〉 전북지역 청소년의 외국인·다문화가정 친구와의 접촉(만남/대화) 빈도 (2018)	143
〈그림 3-67〉 전북지역 청소년의 외국인·다문화가정자녀 친구와의 접촉빈도별 다문화 수용성(2018)	143
〈그림 3-68〉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 학생·이주민 이웃과의 갈등경험 여부 (2018)	144
〈그림 3-69〉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참여 여부(2015, 2018)	145
〈그림 3-70〉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내용(복수응답)(2018)	146
〈그림 3-71〉 전북지역 청소년의 다문화학생과의 활동 참여 내용(복수응답)(2018) ·	147

〈그림 3-72〉 전북지역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및 활동 후 인식변화(5점만점)(2018) ·	149
〈그림 3-73〉 전북 도민의 다문화가구 관심도(2018)	150
〈그림 3-74〉 전북 도민의 다문화가구 관심도에 대한 성별 비교(2018)	151
〈그림 3-75〉 전북 도민의 다문화가구 관심도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2018)	151
〈그림 3-76〉 전북 도민의 다문화가구 관심도에 대한 시·군별 비교(2018)	152
〈그림 3-77〉 전북 도민의 다문화가구 관심도에 대한 소득수준별 비교(2018)	153
〈그림 3-78〉 전북 도민의 다문화가구 증가 현상에 대한 견해(2018)	153
〈그림 3-79〉 다문화가구 증가 현상에 대한 견해의 성별 비교(2018)	154
〈그림 3-80〉 다문화가구 증가 현상에 대한 견해의 연령별 비교(2018)	154
〈그림 3-81〉 다문화가구 증가 현상에 대한 견해의 시·군별 비교(2018)	155
〈그림 3-82〉 다문화가구 증가 현상에 대한 견해의 소득수준별 비교(2018)	156
〈그림 3-83〉 다문화가구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한 견해(2018)	156
〈그림 3-84〉 다문화가구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한 견해(2016vs2018) ·	157
〈그림 3-85〉 다문화가구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한 성별 견해(2018) ····	157
〈그림 3-86〉 다문화가구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한 연령별 견해(2018) ·	158
〈그림 3-87〉 다문화가구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한 시·군별 견해(2018) ·	159
〈그림 3-88〉 다문화가구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한 소득수준별 견해(2018)	159
〈그림 5-1〉 센터별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과정	237
〈그림 5-2〉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 사례들	258
〈그림 5-3〉 경남 김해시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2019)	258
〈그림 5-4〉 시민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사례들	259
〈그림 5-5〉 결혼이주여성 대상 취업 박람회 개최 사례	277

1

장

서론

Jeonbuk Institute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990년대 말부터 국제결혼의 급증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 2000년대 후반부터 다문화가족정책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08.3)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중앙 각 부처에 다문화가족 전담부서가 설치되었음. 더불어 정책인프라(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와 정책대상 범위(법 개정, '11) 확대 및 관련 부처간 조정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됨
- 제1·2·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종합적·장기적 정책방향 수립,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09,'12,'15,'18)를 통해 기초 통계자료 구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개소 수) : ('06) 21 → ('11) 200 → ('16) 211 → ('18) 218
- 전북지역도 결혼이민자의 지속적 유입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자녀가 증가하였고, 이에 중앙 및 전북차원의 결혼이민자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배척과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과 다문화수용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북지역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초등학교 비율은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
- 2018년 다문화수용성조사 결과 세종이 60.52로 가장 높고, 제주 57.86점, 강원 57.71점으로 나타난 반면, 전북은 48.07로 광주 42.83점, 전남 46.69점 다음으로 하위에서 세 번째 임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10여년 전 부터 본격화되어 왔음. 즉, 결혼이

주민의 지속 증가와 더불어 가족 내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지역사회 내에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자녀에 대한 인권 차별적 문제 및 사회적 차별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의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통합정책의 구현이 필수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그리고 다양한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선주민의 역차별적 논란, 장기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소외와 차별, 다문화가족과 선주민간의 사회적 갈등 및 분리현상 등 이주민과 선주민간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최근 전북에서는 모 지역 자치단체장의 차별에 기반을 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혐오성 발언으로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고, 기존 다문화가족정책 및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음

-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은 이주 이후 빠른 초기 적응을 위해 개인을 중심으로 언어습득(한국어교육), 부부교육 및 자녀양육 등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직면한 문제에 초점 맞춰져 왔음. 그러나 결혼이민자들의 장기 정착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다문화자녀의 학령기 비율 증가 및 사회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의 다문화가족정책은 선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제고와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상호교류 확대 및 함께 공존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할 시점임

- 10년 이상 거주기간 : (12년) 36.1% → (15년) 47.9%→ (18년) 60.6%

- 혼인지속기간 : (12년) 8.8년 → (15년) 9.8년 → (18년) 9.6년 (2018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또한, 기존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 이외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새터민 등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만을 중심으로 한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장기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생활과 사회적응,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로의 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도 필요한 상황임

- 한편, 이민정책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국은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사회통합을 중앙 주도 보다는 지역차원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중앙 차원에서는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상호 교류와 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실현시키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함.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마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주민과 선주민간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 내용과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주민과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공유·나눔·존중 등을 지역사회 선주민과 협력 및 동의 등을 통해 진행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추진 할 수 있음을 강조함
- 이에 본 연구는 전북지역 차원에서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 진단과 다문화가족·선주민·현장전문가 관점의 사회통합 경험 실태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지역주도의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더불어 다문화가족과 선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통합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세부 집단별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중 사회통합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과 전북의 정책 현황,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및 다문화수용성조사를 토대로 전북지역 다문화가족 실태 및 사회통합 현황분석, 면접조사를 통한 도내 다문화가족·선주민·현장종사자의 사회통합 경험실태 및 정책적 욕구 등을 파악하여 다문화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전북 다문화가족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과 절차 등을 제시함
- 제2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의 이론적 논의,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 중앙과 전북의 다문화가족정책 현황 분석 및 타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우수 지원 사례를 분석함
- 제3장에서는 전북지역 다문화가족의 현황분석과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및 다문화수용성 조사, 전라북도 사회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북지역 다문화 사회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함
- 제4장에서는 전북지역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경험 실태와 정책적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가족과 선주민을 세부집단별로 구분하여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FGI와 개별 면접조사를 병행함
- 마지막 5장에서는 2장의 중앙과 전북의 정책현황과 사례분석, 3장의 전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대한 전반적 분석, 4장의 전북 다문화가족·선주민 및 종사자의 사회통합 경험 실태 및 정책적 욕구 분석 등을 토대로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연구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문헌연구 및 각종 행정자료 분석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논문, 자료집, 단행본, 정책연구보고서 등 검토
-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족정책과 사회통합 관련 행정자료 수집·분석
- 타 지자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사례 수집·분석(서울시, 부천시 등)

○ 각종 통계자료 분석

- 인구동향조사(통계청),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행정안전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법무부), 인구총조사(통계청) 등을 통해 전북 지역별 다문화가족 현황 분석
-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및 전국 다문화수용성조사 자료 분석
- 2018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중 다문화사회 통합관련 자료 분석

※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는 2015년 자료 공개와 동일하게 지역변수(전북지역 구분하여 2차 자료 추출하고 불가)를 제공하지 않아서 전국 자료 중 사회통합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

※ 2018년 전국 다문화수용성조사는 지역변수(전북지역 구분하여 2차 자료 추출)가 포함된 원자료 공개로 전북지역 자료를 재분석함

2) 면접조사 계획

○ 다문화가족 대상 개별심층면접조사

- (목적) 다문화가족의 세부집단별 차별·갈등 및 사회통합의 어려움 관련 경험 실태와 다문화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적 욕구 파악
- (조사방법) 반 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이용한 개별면접조사
- (조사대상) 다문화가족을 세부 집단별로 면밀하게 구분하여 살펴봄. 여성결혼이주민(국적별 고려)과 배우자 및 시부모, 남성결혼이주민과 그 배우자 등 총 18명

※ 전북지역 여성결혼이주민 국적별 비율 : 베트남(45.5%) > 중국(26.8%) > 필리핀(8.2%) > 캄보디아(5.2%)

- (조사내용)

-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역, 출신국, 한국거주기간, 배우자 연령, 혼인형태, 동거가족원 현황, 취업상황, 월 평균 가구소득, 한국어교육 정도
- 차별 및 갈등 경험 : 의사소통·가족관계·문화적 차이 등에 의해 경험한 갈등사례, 자녀양육과 교육 측면, 일자리 및 취업 관련 측면에서 경험한 차별 갈등과 어려움, 사회적 관계망 및 참여활동 측면에서의 차별 갈등 경험 및 어려움 등
- 지원 서비스 인식 및 수혜 정도 : 센터 및 지자체를 통한 각종 서비스 인지도 및 수혜 받은 서비스 내용, 수혜 받은 서비스의 개선점 등
- 사회통합의 의미와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욕구 : 사회통합의 의미,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등

- (조사방법 및 장소) 1:1 개별면접,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소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상담실 및 자택 등 협의 조정하여 결정함

○ 선주민 대상 심층면접조사

- (목적)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이외 다문화가족 주위에 근접해 있는 다양한 주체자들의 입장에서 다각적이고 맥락적인 질적 정보를 파악해야 함. 이를 위해 선주민을 세부집단으로 구분하여 선주민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경험 실태 및 정책적 욕구를 파악함
- (조사대상) 선주민도 세부 집단별로 구분하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사, 가까운 지역 내 다문화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주민, 센터 내 다문화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등 총 6명
- (조사내용)
 -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역, 주거지 내 외국인 거주여부, 외국인과의 관계 지낸 경험 등
 - 다문화사회에 대한 생각 : 다문화가족 증가에 대한 생각, 사회적 부담감과 피해 정도, 다문화사회의 주요 현안, 사회통합의 의미 등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적 욕구 :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점과 필요한 지원 사업 등
- (조사방법 및 장소) 1:1 개별면접,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 및 근무지 등 협의 조정하여 결정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FGI 및 개별심층면접 조사
 - (목적)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종사자 관점에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과 문제점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과 기존정책의 개선안 모색 등
 - (조사대상) 기관 종사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총 14명
 - (조사내용)
 -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주요업무 내용, 근무경력,
 - 다문화가족의 차별 및 갈등 경험 :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가족 전반적 생활(자녀 양육·교육 등 포함) 실태, 다문화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과 갈등 사례 등
 - 다문화가족 증진을 위한 정책 욕구 :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기존사업의 제한점과 개선사항, 필요 지원정책 욕구 등 파악
 - (조사방법) 집단 및 개별 면접 병행,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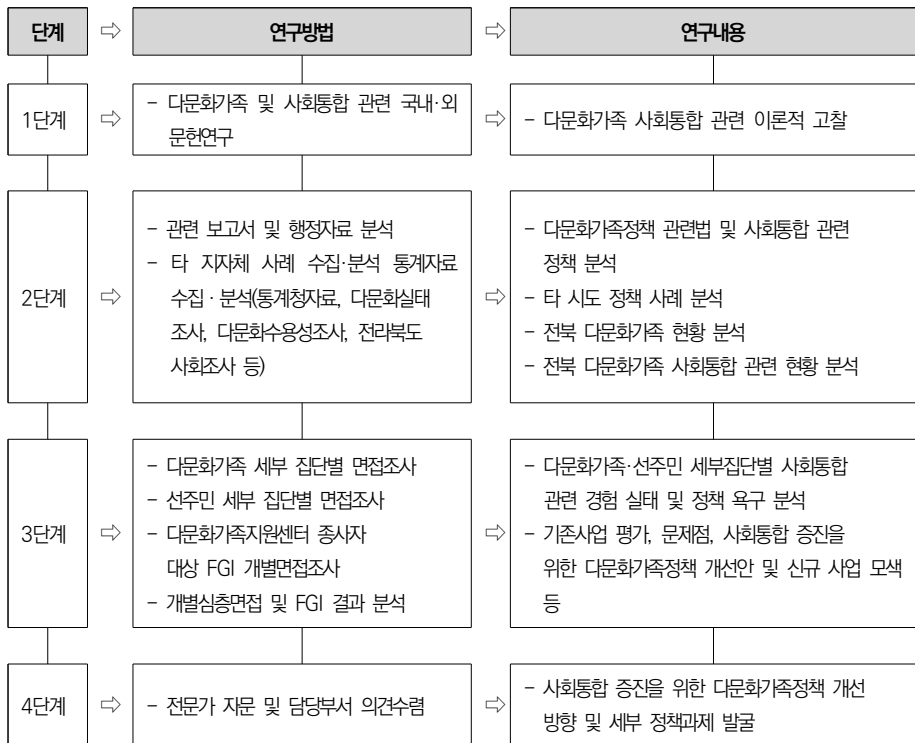
3) 전문가 자문

- 전문가 토론회, 도 담당부서 의견수렴 등
 - 전문가 토론회 : 중앙단위의 다문화 관련 전문가와 타 지자체의 현장전문가 대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논의, 전북지역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신규시책 논의 등을 위해 토론회 개최

- 전북도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 연구방향과 내용 범주에 대한 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과 세부 추진사업,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실효성 진단 등 의견수렴

나. 연구절차

○ 이상으로 연구방법과 내용 등에 따라 본 연구의 진행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음



<그림1-1> 연구 추진 절차

2

장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및 사례 분석

Jeonbuk Institute

-
- 제1절 다문화가족 및 사회통합의 이론적 논의
 - 제2절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 제3절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 제4절 타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사례 분석

제 2 장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및 사례분석

제 1 절 다문화가족 및 사회통합의 이론적 논의

가. 다문화가족의 이해

1) 다문화가족의 개념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인지 또는 귀화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함
- 이는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 증가로 여성 결혼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시작되었고 다문화가족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음. 즉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개념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문화가족정책이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란 인식이 큼
- 한편, 넓은 의미의 다문화가족은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문화적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족으로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동포, 새터민 등 우리와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함(조영달, 2006)
 - 다문화(multiculture)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언어, 문화, 종교, 성별, 관습, 인종, 계층, 직업 등 다양한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서로 상이한 문화를 나타내며, 이러한 상이하고 다양한 문화를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함. 이런 다문화사회의 최소 단위를 가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문화적 특성을 가진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 하고 그 가정의 구성원을 다문화가족이라 함 (이근매 외, 2014)
-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이란 개념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제시된 다문화가족의 정의로 규정하고, 본 연구대상자를 전북

지역 내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가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내용을 고민하고자 했음

- 한편, 다문화가족 대상 서비스 지원의 핵심적 전달체계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 이용 대상 기준을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가족)과 더불어 외국인가족 등(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북한이탈주민가족까지 그 범위를 보다 폭 넓게 보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가족) 이외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도 조사대상자에 일부 포함시켜 다문화 사회통합에 대한 고민을 보다 폭 넓게 하고자 했음

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의 이해

1) 사회통합의 개념

-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 증가는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음. 반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이민자들의 일자리 침해, 지속적인 시혜적 지원 등으로 국민의 역차별 논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사회 내 사회통합의 어려움과 경제·사회적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 이에 지난 10여 년 동안 다문화가족정책은 결혼이민자 대상 입국 초기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이제부터는 선주민과 다문화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상호이해와 교류 증진, 그리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 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도 공통적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시키고 있음

- 한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이란 국가별로 이민의 역사적 배경, 사회적·문화적 맥락, 정책대상,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 및 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대한 보편적 합의와 단일화된 정의나 이론이 존재하지 않음.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제사회나 학계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회통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복잡하고 논쟁적이어서 사회통합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찾기 어려움
- 우선 선진국들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방법을 살펴보면, 다문화주의 정책 또는 동화주의 정책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이민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다문화주의 사회통합정책을 채택하여 출신국의 언어·문화 유지 지원과 이민자 자체 조직에 대한 지원 등 다양성을 기반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반면, 이민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동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개념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이주민과 선주민을 함께 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다문화가족이 주거, 취업, 교육,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참여 등을 통해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류사회인 선주민이 다문화가족의 문화, 종교, 풍습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적 적응이자 상호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음. 즉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과 선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다양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인식전환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권리와 책임 및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김명성, 2009)이라 할 수 있음
-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의 사회통합정책은 이민자의 우리사회 적응 및 정착을 넘어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압축(법무부, 2012)하고 있고, 설동훈(2014)은 사회통합 정책 대상으로 이민자 뿐 아니라 이민자의 자녀 및 한국인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으

며,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과 선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구분함. 김명성(2009)은 사회통합을 권리와 제도적 차원 뿐 아니라 생활세계에서의 사회적 관계, 사회적 참여, 소속감, 사회자본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신지원 외(2010)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대한 광의의 내용으로 외국인도 내국인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 복지 틀 속에서 내국인과 차별 없이 적절한 기준에 따라 합당하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지자체에서 중심으로 다루어야 함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김혜순(2017)은 사회통합정책이란 이민자의 초기 정착 지원을 기본 내용으로 정책 도입 초기인 경우 이민자와 내국인의 상호수용, 이민자 차별금지, 내국인의 이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이란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선주민까지를 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공공정책은 적응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함. 동시에 선주민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종교, 풍습 등을 수용하고 그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개선을 통해 포용하는 양방향적 과정이라 할 수 있음.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이 지역주민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성공적인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란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세대가 선주민과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참여하며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주배경을 가진 개인과 가족이 지역주민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모색하는 일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의 핵심으로 본다면 그러한 공동체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은 다름 아닌 지역사회라 할 수 있음(신지원 외, 2010). 중앙정부를 통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은 제도와 법률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 차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즉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 할 주체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하고, 이 지역사회에 대한 다문화가족이 느끼는 소속감, 정체감, 연대감 등으로 사회통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즉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지역이 주도하는 사회통합 정책이 보다 필요한 상황임(신지원 외, 2010)

2)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성별, 연령, 다문화가족·외국인 접촉빈도, 거주지역 구분, 교육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그 방향성도 연구마다 각각 상이했음
 - 다문화가족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관대하거나 수용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결과(민지선·김두섭 2013)와 반대로 여성보다 남성이 다문화가족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연구(장승진, 2010)가 도출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민지선, 김두섭, 2013)와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최정하, 김영화, 2013)가 있음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경험을 쌓여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김혜순, 이시철, 2014)와 반대로 이주민과의 잦은 접촉빈도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이자형, 김경근, 2013)도 있음
 -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대해 수용적이라는 연구결과(장임숙, 2010)와 농촌지역이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더 낮았다는 연구결과(이자형, 김경근, 2013)가 있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족·외국인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긍정적이었음(김경근, 2015)

- 무엇보다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은 다문화와 다양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는 연구결과(lee & Kim, 2013), 다문화 체험활동과 해외방문 경험 또한 다문화수용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Ahn et al., 2012; Byun, 2011; Jang & Uh, 2013; Jun & Kim, 2013)가 있음.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문화에 대한 체험, 경험은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필요한 중요 요소로 보임.
-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 관련 접촉은 다문화가족·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시켜 사회통합 증진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Cheong, 2012), 즉 다문화관련 대중매체 접촉은 다문화에 대한 정보, 지식, 가치, 사고 등을 구성하는데 중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다문화가족·외국인과 선주민이 함께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한 경험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완화시키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및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yler, 2002)

제 2 절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 본 절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책 중 사회통합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정책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보완점 등을 도출하고자 함.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이에 발맞춰 향후 전라북도 차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과 신규시책 발굴을 모색함

가. 다문화가족정책 연혁

- 다문화가족정책은 2006년 4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란 대통령 자문기구와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처음으로 본격 추진함
 - 정부차원에서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자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다문화자녀와 그 한국인 배우자 등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은 부족하였고, 교육·복지·보건 및 가족 영역간 연계 미흡으로 정책적 시너지 효과는 미약했음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핵심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6년에 21개 시·군·구에 처음으로 설치됨
 - 2007년 12월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이 국제결혼 증가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사기결혼 피해예방,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제 도입 등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중국, 필리핀 등 7개국 중심의 결혼상대국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소지 업체 단속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함
-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여성결혼이민자’ 대신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 사용되기 시작. 정책대상 및 그 범위도 결혼이민자 위주에서 다문화가족 전체로 확대

- 2009년 다문화가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다문화가족정책 위원회 설치됨. 각 부처간 중복·유사 사업 조정 등 관련 정책 총괄
- 다문화가족지원법을 2011년에 새롭게 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출생 시 한국인과 결혼이민자(또는 귀화자)”에서 “인지 또는 귀화 한국인과 결혼이민자(또는 귀화자)”까지 확장함
- 2010년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0 ~ ’12), 2012년 제2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13 ~ ’17), 2018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 계획(‘18 ~ ’22)을 수립함

〈표 2-1〉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경과

연도	주요 추진 경과
2006년	◦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 및 혼혈인과 이민자 사회통합지원방안 발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21개)
2007년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정 및 시행,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시행 ◦ 생애주기별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강화 발표(보건복지부)
2009년	◦ 「다문화가족지원개선종합대책(안)」 발표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시행 ◦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최
2010년	◦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2010~2012)
2011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 정의 확대
2012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결혼중개업체 관리 감독 강화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 수립 및 추진
2014년	◦ (1월)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 (12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방안
2015년	◦ 제2차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6년	◦ (3월) 관계부처 합동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 수립 및 사업 조정 추진
2018년 2월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수립 및 추진

나. 다문화가족정책 법적 근거

-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에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음
- 그 외 다문화가족정책은 국적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출입국관리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도 지원받음

〈표 2-2〉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적 근거

관련법령	내용	소관부서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사회인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여성가족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7)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	법무부
국적법(1948)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내용	법무부
출입국관리법(1963)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출입관리,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관련 사항이 규정됨	법무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8)	결혼중개업 지도·관리,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 이용자 보호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	여성가족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법률(2003)	체계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도입·관리함으로써 인력수급 원활화 및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도모	고용노동부

다.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

1) 다문화가족 기본정책 추진 방향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를 근거로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시책을 담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지금까지 1, 2, 3차의 다문화가족기본계획이 수립됨
- 1·2차 기본계획은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 증가로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자녀출생과 초기발달 및 부부·가족생활 갈등 예방·해소,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세부 시책을 마련함

- 3차 기본계획은 초기적응 중심에서 장기정책에 따른 결혼이민자, 한 부모 증가 등 다양한 가족형태 출현, 가정폭력 증가 및 청소년 자녀 증가 등의 주요 현상을 반영하고 대응하는 서비스 발굴과 확대에 집중함. 또한, 학령기에 본격 진입 한 다문화자녀를 위해 학업·글로벌 역량, 사회진출 지원 강화 및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관련 사업을 강화함
- 한편,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은 개선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저조하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역차별적 인식과 정서 또한 증가함. 이에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시킴으로써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고려함

〈표 2-3〉 다문화가족 상황 변화에 따른 각 단계별 특징

구분	도입기(1차 기본계획)	성장기(2차 기본계획)	정착기(3차 기본계획)
인구	국제결혼 증가 다문화가족 증가	국제결혼 비율 안정화 다문화가족 지속 증가	국제결혼 감소추세 다문화가족 안정화 장기정책 비율 증가
가족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자녀출생, 초기발달 진행 결혼·가족생활 갈등 발생	결혼이민자 사회진출 확대 자녀세대 성장 가족해체 증대	사회진출 욕구증대 경제·사회적 참여 강화 학령기(청소년) 비율 상승 한부모 등 가족형태 다양화
사회	사회적 관심 형성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태도 확산 및 갈등 우려	다소 개선되나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표 2-4〉 제1차 ~ 제3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정책 추진 방향

	제1차 계획 (2010~2012)	제2차 계획 (2013~2017)	제3차 계획 (2018~2022)
비전	다문화사회로 열린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
목표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책 지원 ◦ 다문화자녀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및 글로벌한 인재 육성	◦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 가족 역량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 존중받고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다문화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5대 영역, 61개 세부과제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	5대 영역, 70개 세부과제
정책 과제	◦ 국제결혼 입국 전 검증 시스템 강화 및 국제결혼 중개 관리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다문화 자녀 건강한 성장발달환경 조성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 다문화자녀의 발달과 성장 지원 ◦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 정책추진체계 정비	◦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 ◦ 다문화자녀 안정적 성장지원 및 역량강화 ◦ 다문화 수용성 제고 ◦ 추진체계 강화
추진 기관	〈11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문화부, 교육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경찰청, 공정위, 여가부, 고용부, 국무총리실	〈13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문화부, 행안부, 농식품부, 국방부, 외교부, 방통위, 국무총리실	〈18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산업통상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방통위, 경찰청, 국세청, 농진청, 소방청

비전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목표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정책
과제**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 ①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②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 ③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 ④ 서비스 연계 활성화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 ① 자립역량 강화
- ②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 ③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

- ①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 ②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③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 ④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①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②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 ③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 ④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협력적 다문화
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①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 ② 다문화가족 자원체계 내실화

〈그림 2-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2019년 다문화가족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18개 기관,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에서 1,214개(중앙부처 127개, 지자체 1,087개)의 세부과제를 위해 총 4,689억원(중앙부처 3,893억원, 지자체 796억원)을 소요하고자 함

2) 각 부처별 다문화가족 정책대상 및 지원업무

- 다문화가족정책 대상 및 지원업무들을 각 부처별로 세분화하여 살펴 보면,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며 외국인의 출입국, 국적, 이민, 체류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이민자 대상 문화·예술·체육·관광 영역에서 다문화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및 이주민문화와 언어적 적응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대상 고용 허가 및 취업지원을,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자녀 이외 외국인, 유학생, 세터민 등 다문화가족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및 외국인자녀를 중심으로 교육 인적 지원 개발과 관련된 지원을 담당하며, 행정자치부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구현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농림부는 농촌거주 이주여성 대상 농업인 교육 훈련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은 등록외국인(90일 이상 초과 체류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 중 국내거주신고자), 국적취득자, 자녀 포함

〈표 2-5〉 각 부처별 정책대상 및 지원업무

주요 정책대상	정책영역	정책초점	해당부서
입국외국인·이주민· 일반국민	출입국·국적·이민	외국인정책 총괄	법무부
	문화·예술·체육·관광	언어적 적응 및 이주민문화 지원 다문화에 대한 사회인식제고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노동자	고용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 자녀	제도권·교육인적 자원개발	학습능력 향상 환경 조성 다문화자녀 학교교육 지원	교육부
외국인주민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지방행정 주민관리	이주민 지역정착 및 지역참여 지원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 구축 지원	행정자치부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 유학생, 새터민 등)	다문화가족 성평등·여성인권	이주여성의 인권·복지 증진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	여성가족부
농촌거주 이주여성	농업인 여성결혼 이민자 교육 훈련	여성결혼이민자 맞춤형 농업인 영농교육	농림부

자료 : 고현웅,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 사무관,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전문가 초청 포럼(2016).

3) 각 부처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현황

- 고용노동부는 언어소통의 한계, 사회·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대상 고충상담, 한국어와 생활법률 및 한국의 다양한 사회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주요 지원대상은 외국인노동자 이외 사업주가 포함됨. 지원내용은 상담(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 대상 고충과 갈등 및 애로사항 중재와 해결을 위한 지원), 교육(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직장윤리·문화 및 관련 법규 교육 실시), 각종 문화행사(한국문화와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교류의 장 마련), 다양한 정보제공(생활, 의료, 법류, 직업 관련 정보) 등이 있음. 2019년 10월 기준 9개의 거점센터(한국, 의정부, 김해, 창원, 인천, 대구, 천안, 광주, 양산)와 34개(강

원 1개, 경기 13개, 경북 3개, 경남 2개, 광주 2개, 대전 1개 부산 1개, 서울 1개, 인천 2개, 전남 3개, 충남 1개, 충북 2개, 전북 1개, 제주 1개)의 소지역 센터가 운영 중임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2016년부터 보편적 가족 서비스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 통합센터 전환 추진 중임. 지원내용은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육, 취업지원, 방문교육서비스, 가족상담과 교육, 통번역, 멘토링, 자조모임과 나눔봉사단, 자녀의 이중언어지원 등을 하고 있음. 2019년 기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44개소, 통합센터는 183개소가 운영 중임
-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을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및 한국사회 이해를 도와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귀화신청·영주자격 신청·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을 받음
- 각 시·도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각 부처 추진 사업들을 한 자리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표 2-6〉 각 부처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센터 현황

기관	운영 주체	지원대상	사업 내용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가점 9개소, 소지역 34개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보험기금)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노동 및 고충상담, 체류편의, 한국어와 생활법률·사회문화 교육 등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44개소) 통합센터(183개소)	여성가족부 (북권기금)	결혼이민자 가족 이외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한국어교육, 취업지원, 방문교육서비스, 가족상담과 교육, 통번역, 멘토링, 자조모임과 자녀의 이중언어지원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약 338개소)	법무부 (일반예산)	국내 거주 외국인 등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교육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외국인주민센터 및 글로벌센터 등	지자체	지자체 거주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각 부처에서 분산제공하는 서비스를 동일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지원 서비스 제공 (체류관리, 고용상담, 통역, 정보제공, 한국어 교육 등 원스톱민원서비스)

라.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

- 중앙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전반의 다문화수용성 향상과 개선이 미흡한 상황임을 진단하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사업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함
- 이에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개개인별 인식과 태도 변화에서부터 법·제도 등 중장기적 사회 및 문화적 차원까지를 모두 아울러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함. 이외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1) 중앙부처별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

① 교육부

- 2019년 기준 교육부에서는 총 15,579백만원 예산 중 78.7%(12,260백만원)를 다문화자녀의 안정적 성장발달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하였고, 단 1.1%(170백만원)만을 학교 학생 대상 중심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소요함
-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교육 요소가 반영된 범교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다문화교육 선도인력을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구성·활용, 다문화교육 연구학교(17교)의 연구를 통해 다문화교육 모델 발굴 및 성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데 예산을 투여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해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라는 추진체계 운영을 강화·확대(14개→전국)하고, 지역여건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다문화유치원을 운영하여 유아기 단계에서부터 다문화자녀의 언어와 기초적인 학습능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이후 본격적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음. 2015년 5개 지역(경기, 경남, 서울, 전남, 충남)에 한해서 각 지역별 6개소씩 총 30개 유치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에는 지역을 확대하여 총 12개 시·도(세종, 대전, 울산, 제주, 충북 제외)에서 총 60개 사업이 진행되었음

- 다문화자녀의 유아기 단계의 언어발달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형태로 지원하고 전체 유아기 다문화자녀와 학부모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을 운영함

② 법무부

- 2019년 기준 법무부에서는 총 714백만원 예산 중 약 56%(400백만원)를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사업 추진에 소요하였고, 44%(314백만원)를 다문화수용성 제고 영역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함
-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이민자 네트워크’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이 언어적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 등을 극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을 개최하여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세계인의 날 등)를 개최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

③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 2019년 기준 국방부에서는 총 6백만원을 각 군 및 부대 소속 전문강사 선발과 양성 및 내부 다문화강사 양성을 위한 사업과 장병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추진하는 데에 예산을 투자함
- 행정안전부는 비예산으로 다문화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일반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공무원 교육원에서의 관련 과목을 운영함

④ 문화체육관광부

- 2019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총 3,702백만원 예산 중 74.3% (2,750백만원)를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사업 추진에 소요하였고, 나머지 25.7%(952백만원)는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함
- 다문화수용성 제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다양성에 대한 한국 사회 전반의 인식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행사(무지개다리 사업, 문화다양성의 날, 문화다양성주간) 운영 지원, 지역 현장 밀착형 찾아가는 문화다양성교육과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전문인력연수를 추진함. 또한, 교육부와 협력하여 문화다양성 인식제고와 가치 확산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
- 그리고 문화다양성 이해 도모 및 상호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 배경의 초·중·고등학생 대상 한국어교재 개발, 국립민속박물관 다문화꾸러미 재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정보공유를 위해 도서관 등 문화시설 내 다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총 2,727백만원 예산 중 약 41%(1,132백만원)를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소요하고 있음.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상 보수교육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과 지원내용에 대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⑥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387백만원의 예산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작비를 지원하는데 소요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예산으로 다문화와 외국인 차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강화와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⑦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2019년 기준 총 334,402백만원 이란 예산 책정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사업에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총예산 중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사업에 약 87.3%를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사회통합과 관련된 '상호존중에 기반 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 예산은 총 예산 중 0.4%(1,312백만원)로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대민 서비스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13만명으로 확대)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여성가족부는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2017년 11월에 유치원과 초·중·고 및 교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에 대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회 본회의에 통과(2017. 11. 24 / 2018. 6월 13일부터 시행)하여 의무적으로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 및 교사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원이 다문화이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 법안이 마련됨. 이런 법률 개정으로 교사에게 다문화이해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사의 다문화이해에 대한 제고와 다문화학생지도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 개정 내용

-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2013.3.22.)
-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광역시치시·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이해교육관련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신설 2017.12.12.)

- 여성가족부는 또한 국민 모두가 용이하게 다문화이해교육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인 '다누리배움터'를 2016년 4월 18일부터 본격 개통함. 다누리배움터는 5개 대상별(일반성인, 직장인, 청소년, 청소년교육자, 시설종사자) 수준에 맞춘 차별화되고 맞춤형된 온라인 지원교육을 제공하며, 기업, 관공서, 어린이집 등 각종 기관과 단체 등에서 지역주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생, 각 단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쉽게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 파견(찾아가는 교육) 신청을 받은 뒤 파견하는 서비스임. 이 서비스는 2015년 중앙에서 실시한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직업과 직종별, 다문화교육 및 활동 경험, 접촉 및 상호 교류 정도 등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상이한 차이를 나타내어 각 대상별 수준과 상황별을 고려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해 실시하게 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19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다문화수용성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다문화 관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총 242명*의 전문 강사가 전국적으로 활동 중이며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이해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242명의 강사 중 전 북에는 7명의 전문 강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카드뉴스 포스터 제작, 도시가스와 업무협약으로 고지서에 다누리배움터 홍보,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에 다누리배움터나 다문화이해교육 등에 대한 홍보, 미디어를 통한 다큐제작, 웹드라마 제작, UCC 공모전, 캠페인 송 공모 등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음. 그리고 학계, 시민단체, 다문화사업 추진 기관 등 다문화가족 관련 각종 전문가와 현장가, 더불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문화포럼 및 토론회를 실시했음

* 강원도 2명, 경기도 36명, 경남 3명, 경북 8명, 광주 4명, 대구 3명, 부산 7명, 서울 45명, 세종 1명, 울산 3명, 인천 7명, 전남 1명, 제주 6명, 충남 5명, 충북 4명

2)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중 사회통합 관련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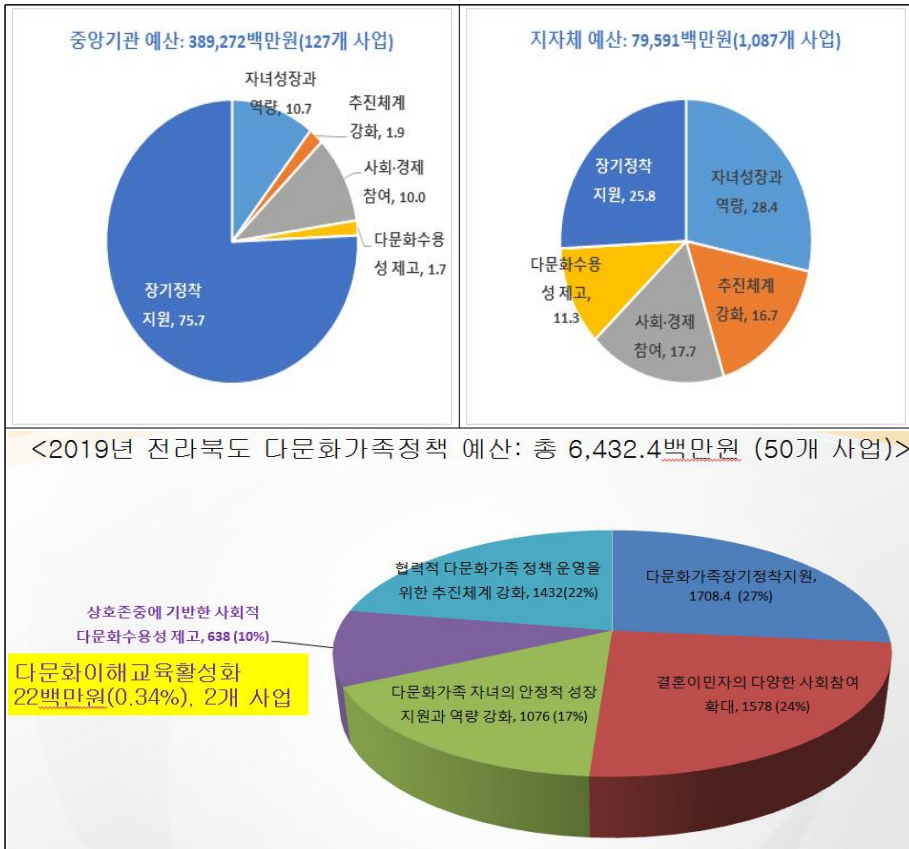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다문화가족정책을 5가지 영역별로 예산 비율과 과제수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살펴봄
- 중앙부처는 전년 대비 777억원이 증가 한 총 3,893억 원 예산으로 127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대비 74억원이 증가한 796억원 예산으로 총 1,087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 총 예산은 4,689억 원이며 이 예산으로 총 1,214개의 사업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정책 예산 규모는 경기(9,931백만원), 부산(8,097백만원), 경북(7,530백만원), 서울(7,008백만원), 전북(6,432백만원) 순으로, 전북이 네 번째로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전체 다문화가족정책을 5가지 영역별로 살펴보면, 총 예산 중 다문화가족자녀의 안정적 성장발달과 역량강화 관련 사업 예산 비율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사업 비율이 25.8%로 나타남. 반면 5가지 다문화가족정책 영역 중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내용인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 예산 비율은 11.3%로 가장 낮았음
- 전국 17개 시·도의 다문화가족정책 예산 중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전체 예산의 39.0%를 차지함)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구(전체 예산 중 28.2%를 차지함), 경기(전체 예산 중 21.1% 차지)로 나타남.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사업 예산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3.9%)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과 관련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영역의 예산액을 17개 시·도 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09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이 850백만원, 대구 734백만원, 전북 638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영역의 과제 수를 시·도별로 보면, 자방자치단체 전체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영역의 총 과제수는 220개로, 충북이 28개로 가장 많은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인천 21개, 부산 18개, 경기 17개, 대구 16개, 대전·울산·전남·경남이 각각 15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세부영역별 예산 및 과제 수

(단위 : %, 백만원)

구분	2019년 시행계획 세부과제별 예산비율 및 과제 수					전체	
	장기정책 지원	사회·경제 참여	자녀성장과 역량	다문화수용성 제고	추진체계 강화 (대책과제)	총예산	과제수
중앙기관	75.7 (26개)	10.0 (24개)	10.7 (29개)	1.7 (28개) 6,664백만원	1.9 (20개)	389,272	127개
지자체	25.8 (280개)	17.7 (232개)	28.4 (266개)	11.3 (220개) 8,986백만원	16.7 (89개)	79,591	1,087개
서울	36.6 (13개)	19.0 (9개)	20.2 (13개)	8.5 (12개) 595백만원	15.7 (2)	7,008	49개
부산	32.4 (16개)	2.7 (12개)	57.1 (18개)	5.0 (18개) 406백만원	2.8 (4개)	8,097	63개
대구	31.8 (19개)	8.4 (14개)	25.9 (11개)	28.2 (16개) 734백만원	5.6 (4개)	2,603	64개
인천	14.4 (18개)	14.7 (22개)	57.3 (12개)	12.9 (21개) 619백만원	0.6 (4개)	4,802	77개
광주	61.2 (18개)	8.8 (12개)	3.6 (10개)	8.6 (14개) 483백만원	17.7 (5개)	5,604	59개
대전	39.5 (17개)	8.7 (12개)	33.0 (10개)	15.3 (15개) 289백만원	3.4 (3개)	1,887	57개
울산	22.6 (13개)	15.1 (10개)	23.2 (6개)	39.0 (15개) 375백만원	0.1 (1개)	961	45개
세종	30.5 (3개)	39.0 (6개)	24.1 (6개)	6.1 (2개) 18백만원	0.3 (1개)	295	18개
경기	11.7 (24개)	16.7 (24개)	41.0 (30개)	21.1 (17개) 2,096백만원	9.5 (4개)	9,931	99개
강원	13.0 (41개)	5.6 (17개)	27.3 (68개)	7.8 (6개) 404백만원	46.2 (24개)	5,153	156개
충북	14.6 (18개)	11.7 (18개)	16.3 (15개)	7.6 (28개) 301백만원	49.8 (6개)	3,973	85개
충남	31.6 (21개)	16.0 (21개)	31.8 (18개)	14.9 (13개) 262백만원	5.6 (5개)	1,754	78개
전북	26.5 (10개)	24.5 (13개)	16.7 (14개)	9.9 (8개) 638백만원	22.3 (5개)	6,432	50개
전남	37.1 (14개)	15.8 (9개)	31.2 (9개)	8.4 (15개) 530백만원	7.4 (4개)	6,322	51개
경북	8.5 (11개)	45.6 (9개)	14.9 (7개)	3.9 (4개) 296백만원	27.0 (6개)	7,530	37개
경남	21.7 (13개)	28.3 (14개)	13.5 (13개)	13.6 (15개) 850백만원	22.8 (11개)	6,246	66개
제주	31.7 (11개)	26.2 (10개)	33.1 (6개)	9.0 (6개) 89백만원	-	992	33개



〈그림 2-2〉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자료 중심의 중앙/지자체/전북 다문화가족정책 예산 비율(2019)

-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은 총 5개 영역, 17개 세부과제로 구분되고 있음. 이 내용들 중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내용으로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영역 내 1-4.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강화’, ‘2 결혼이민자의 다문화사회참여 확대 영역 내 2-3 사회참여 기회확대, ’4. 상호존중에 기반 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영역 내 4-1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4-2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4-3 수용성제고를 위한 미디어환경조성, 4-4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살펴봄

〈표 2-8〉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 중 사회통합과 관련된 내용만 편집

과제명	소관부처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1. 결혼이주여성 인권 강화	
① 폭력상황에 대한 초기대응체계 상시 가동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
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및 자립기반 조성	
④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종사자의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 다문화가족과)
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2-3.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① 결혼이민자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②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다양화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③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 운영	농진청(농촌환경지원과)
④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여성가족부, 문체부, 법무부
4.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4-1.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① 차별적 법, 제도 이슈 발굴 및 개선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② 다문화수용성조사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환경 주기 모니터링 및 정책 실행 추진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4-2.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① 부처간 다문화이해교육의 협업체계 강화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② 유아교육 및 공교육기관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여가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③ 교원의 다문화역량제고 및 학교현장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부
④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서비스 활성화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⑤ 대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여가부, 행안부, 법무부, 국방부
4-3. 수용성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②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문체부
③ 미디어 모니터링단 운영 및 개선 사례 발굴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④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다각화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문체부
4-4.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① 지역사회 다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② 다문화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간대 형성 프로그램 발굴, 운영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체부, 농진청
③ 문화시설 내 다문화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표 2-9〉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 중 지자체별 사회통합관련 내용 분석

(단위 : %, 백만원)

구분	1. 장기정착	2. 사회참여확대	4. 다문화수용성 제고				전체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강화	결혼이민자 사회참여확대	사회환경 조성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미디어 환경 조성	지역환경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총예산	과제수
서울	1,725(37%)	94(27%)	20(17%)	146(27%)	-	429(97%)	2,414	17
부산	714.6(37%)	- (37%)	-	191.67(47%)	5(27%)	209.5(77%)	1,120.77	19
대구	434(17%)	89(64%)	-	298(47%)	18(27%)	417.5(107%)	1,256.5	26
인천	49(17%)	65(47%)	비예산(17%)	290.68(87%)	32(37%)	296.5(97%)	733.18	26
광주	64(27%)	131(47%)	100(17%)	90(67%)	52(17%)	241(67%)	678	20
대전	67.8(17%)	3(37%)	-	4.7(37%)	81(17%)	203.2(117%)	359.7	19
울산	47(17%)	69(37%)	-	37(57%)	-	338(107%)	491	19
세종	-	12.8(27%)	-	3(17%)	-	15(17%)	30.8	4
경기	74(17%)	165(57%)	-	767(57%)	-	1,329(127%)	2,335	23
강원	24(17%)	53(-)	99(67%)	13(27%)	-	292(187%)	481	27
충북	47(27%)	5.3(37%)	-	비예산(17%)	-	301.7(277%)	354	33
충남	41(27%)	37.46(77%)	-	90(57%)	20(17%)	151.9(77%)	340.36	22
전북	-	23(37%)	-	22(27%)	78(17%)	538(57%)	661	11
전남	144(17%)	비예산(17%)	2(27%)	131(27%)	-	397(117%)	674	17
경북	195(27%)	167(27%)	-	166(17%)	-	130(37%)	658	8
경남	49(27%)	303(67%)	-	209(37%)	2(27%)	639(107%)	1,202	23
제주	210(47%)	14(47%)	-	22(37%)	20(17%)	47(27%)	313	14

- 17개 시·도별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이 2,41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2,335백만원), 대구(1,256.5백만원), 경남(1,202백만원), 부산(1,120.77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의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 예산규모는 661백만원으로 예산규모의 순위가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정책의 사회통합 관련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환경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관련 사업의 평균 과제수가 9.3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문화이해교육활성화 사업의 평균 과제수가 3.5개, 결혼이민자사회참여 확대 사업의 평균과제수가 3.4개로 많았음

마. 중앙행정기관 실시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정책의 한계점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사업현황과 내용을 보면, 정책대상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족 그 중 여성결혼이민자 중점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 법무부 사회통합 이수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한국 사회이해 프로그램 등 대부분이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추진사업인 반면, 여성결혼이민자를 제외한 배우자, 시부모, 남성결혼이민자, 지역주민 대상 사회통합 사업은 여전히 미흡하였고, 교육 및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유도하게끔 하기에 한계점이 많았음
- 무엇보다 사회통합 사업들은 시혜적 지원 사업으로 장기인 통합정책의 내용과 지향점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였고, 대부분이 유치원·초·중·고를 비롯한 교육부 소관의 학교 중심의 다문화이해교육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다문화이해교육의 주요 대상이 학생인 반면, 지역주민인 일반성인과 어르신,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은 현저히 부족함을 보여줬음
- 또한, 다문화이해교육 강의 내용 및 교수법의 한계로 각 국적의 문화(음식, 언어, 종교, 의상 등)에 대한 소개와 체험(음식) 위주의 교육이 중심이었음. 이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다문화교육 강사 양성과 강사인력 풀 구축 및 대상별 다채로운 교육 내용과 교수법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함
- 다문화이해교육 이외의 사회통합 사업은 일회성 행사로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상호교류 및 참여활동 확대와 기존사업에 대한 홍보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내 한 구성원으로 유대감과 소속감 등을 지닐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에서의 의견제시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즉 시민권 구현을 위한 정치,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의견제시와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도 있음

제 3 절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 본 절에서는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전북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전북지역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가. 법적 근거

- 여성가족부의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과 2012년, 2015년의 일부 개정 사항들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도 및 시·군·구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담당 전문기관과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2016년 8월에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2018년 6월에 일부 내용을 개정함
- 전북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전북도청, 전주시, 김제시, 부안군이었고 그 이외 지역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외국인주민(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별개로 제정되어 있음

〈표 2-10〉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16.8.12제정... '18.6.29 일부개정)	
목적	(제1조)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으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상	(제2조) - 외국인주민이란 전북도 관내 90일 초과 거주,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한국국적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지원내용	(제7조) ① 외국인주민 지원범위 -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위한 교육·홍보 ②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홍보, 문화·예술·체육행사,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적응교육,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 사업, 가정 폭력 예방 및 피해 결혼이민자 보호·지원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다문화 자녀의 보육·교육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 통·번역 서비스 제공, 사회경쟁력 제고 위한 학비 지원 등 학력 증진 지원 -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나.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정책 및 예산 현황

-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 의하면,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의 전체 총 예산은 6,432.4백만원이며, 이 예산으로 총 50개의 사업을 수행함
 - 전북의 다문화가족정책 예산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2,096백만원), 경남(850백만원), 대구(734백만원) 다음으로 많음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총 예산 규모를 5가지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사업' 예산 규모가 1,708.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2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사업이 1,578백만원으로 24.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사업 1,432백만원으로 22.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 1,076백만원으로 16.7%를 차지하였고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

고' 사업은 63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단 9.9%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예산의 43.4%가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체계 내실화를 위해 소요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자립 역량 강화(19.1%), 다문화가족자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19.1%)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다문화수용성 제고' 사업 예산비율은 17개 지방자치단체 전체 평균 비율인 11.3%보다 1.4%p가 낮은 상황임

〈표 2-11〉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중 전북 다문화정책 현황 및 예산

세부과제 내용		소요예산 (백만원)	과제수 (개)	예산 비율(%)
합 계		6,432.4	50개	100.0
1.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1,708.4	10	26.5
1-1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	-	-
1-2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130	2	2.0
1-3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1,380.4	6	21.5
1-4	서비스 연계활성화	198	2	3.1
2.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1,578	13	24.5
2-1	자립역량강화	1,226	7	19.1
2-2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329	3	5.1
2-3	사회참여 확대	23	3	0.3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1,076	14	16.7
3-1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	588	6	9.1
3-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488	7	7.6
3-3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100	1	1.5
4. 상호존중에 기반 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638	8	9.9
4-1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	-	-
4-2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22	2	0.3
4-3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78	1	1.2
4-4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538	5	8.4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1,432	5	22.3
5-1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24	2	0.4
5-2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1,408	3	21.9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중 사회통합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총 50개 사업 중 단 2개 사업만 수행되고 있고, 예산비율은 전체 중 단 0.3%(22백만원)만이 투입되고 있었음.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조성 사업은 78백만원(전체 예산 중 1.2%), 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은 538백만원(전체 예산 중 8.4%)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강화 사업비는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사업비는 23백만원(전체 예산 중 0.3%)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다. 2019년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현황

- 국비, 도비, 시군비 예산을 모두 포괄한 2019년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총 9,943백만원의 예산 규모로 크게 3개 영역 ‘결혼이민자 자립역량강화 및 안정적 가족생활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 수용성 증대 및 네트워크 강화’, 23개의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전체 예산 규모 중 55.3% 정도가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및 안정적 가족생활 지원’ 영역의 사업비로 소요되고 있었고, 26.6%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사업비로, 나머지 18.1%(1,800백만원)만이 ‘다문화수용성 증대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에 소요되고 있었음
- 23개의 세부사업 중 중앙의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총 12개, 예산규모는 3,551백만원 정도 나타남. 순수 지방비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 중 사회통합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약 5개 정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순수 지방비 총 예산의 약 3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2〉 국비, 도비, 시·군비 예산 모두를 포괄한 전북 다문화가족정책 사업안내(2019)
(단위:백만원)

사 업 내 용	2019년 예산액				비고
	계	가금	도비	시군비	
총 계	9,943	3,969	2,146	3,828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및 안정적 가족생활 지원	5,500	1,530	1,411	2,559	
다 문 화 가 족 지 원 센 터 운 영	518	259	78	181	국50/도15/시군3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1,821	911	273	637	국50/도15/시군35
전 라 북 도 거 점 센 터 운 영	66	19	47		국50/도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739	0	262	477	인건비(도40/시군60) 수당(도30/시군70)
결 혼 이 민 자 학 력 지 원	201	0	80	121	도40/시군60
결 혼 이 민 자 직 업 훈 련	160	0	64	96	도40/시군60
한 국 어 교 육 운 영	310	217	31	62	국70/도10/시군20
글 로 벌 마 을 학 당 운 영	1,507	0	558	949	도33/시군67
다 문 화 사 례 관 리 지 원	178	124	18	36	국70/도10/시군20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2,643	1,780	294	569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1,543	1,080	154	309	국70/도10/시군20
다 문 화 가 족 자 녀 언 어 발 달 지 도	705	493	71	141	국70/도10/시군20
이 중 언 어 가 족 환 경 조 성	295	207	29		국70/도10/시군20
다 문 화 청 소 년 진 로 지 원	100	0	40	60	도40/시군60
다문화 수용성 증대 및 네트워크 강화	1,800	659	441	700	
다 문 화 주 간 어 올 림 축 제	73	0	73	0	도100
다 문 화 가 족 소 식 지 제 작	78	0	78	0	도100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운영 등	16	0	16	0	도100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8	0	8	0	도100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615	431	61	123	국70/도10/시군20
이 주 여 성 보 호 시 설 운 영 지 원	331	221	36	74	국70/도10/시군20
다 문 화 가 족 고 향 나 들 이 사 업	500	0	100	400	도20/시군80
다 문 화 이 주 민 플 러 스 센 터 운 영	144	0	43	101	도30/시군70
다 누 리 클 센 터 운 영 지 원	25	0	25	0	도비100
이 주 여 성 보 호 시 설 기 능 보 강	10	7	1	2	국70/도10/시군20

자료 : 전북도청 내부자료.

〈표 2-13〉 전북 도비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 중 사회통합 관련 사업 내용(2019)

구분		대상	사업내용
글로벌 마을 학당	마을학당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주민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및 다문화이해교육 (선택사업) 나눔봉사, 자조모임 등
	행복플러스사업	기본: 다문화가족 선택: 다문화가족, 외국인, 도민	부부교육, 찾아가는 가족교육, 학부모교육 등 (선택사업) 나눔봉사, 자조모임, 가족캠프 등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 (378백만원)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도민 등	(필수)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지원 (선택) 문화재능 봉사단 운영
다문화주간 어울림축제 (73백만원)		다문화가족	축제 개최로 도민 소통의 장 마련, 정보공유, 상호교류
다문화가족 소식지 제작 (78백만원)		다문화가족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소식지 제작 및 발행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144백만원)		전주, 익산	체류관리, 고용상담, 통역, 상담, 한국어교육 등 원스톱 통역서비스

라. 전라북도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의 제한점

- 2019년 기준 전라북도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시행계획 자료와 전라북도의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그 현황과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나타남
- 먼저,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자료를 보면, 5개 다문화가족정책 영역 중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 영역의 예산비율이 전라북도는 9.9%로 17개 지방자치단체 전체 평균 예산비율인 11.3%보다 1.4%p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 영역의 예산 규모 확대와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시행계획의 17개 세부과제 중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내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세부과제들(〈표 4-10〉 참고)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유학생을 위한 인권보호 관련 사업은 부재하였고,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확대관련 사업은 예산 23백만원에 3개의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음. 또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22백만원 예산규모로 단 2개의 사업만이 추진되고 있어 보다 많은 예산투여와 신규사업 발굴 등이 요구됨. 무엇보다 공무원과 일반 도민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군 공무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의 경우 작년 한해 112명만이 「다문화사회의 이해」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에는 도·시·군 공무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총 3회기 120명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의 횟수와 그 대상이 전체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미진함을 보여줌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의 경우도 2018년에는 김제, 군산, 익산, 고창군 지역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약 8,022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에도 김제, 군산, 익산, 고창군 지역 8,120여명을 목표 사업량으로 계획하고 있음
- 일반도민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강사양성과 강사 인력 풀 구축, 대상별 강의안 개발 및 다문화이해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규범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측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전북도에서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어울림 축제», 「다문화소식지 '사람들' 연 4회 발간»,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 「자조모임과 나눔봉사」 등을 시행하고 있음. 사업의 많은 부분이 축제 혹은 일회성 행사이거나 다문화가족 중심의 시혜적인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과 지역민간의 접촉 기회 마련, 상호 교류하고 서로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함. 즉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추진과제 발굴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의 소규모 지역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자원봉사, 체육대회, 지역 동호회, 음식공존 대회 등)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제 4 절 타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사례 분석

- 본 절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즉,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규모와 지원예산 및 지원과제 수가 상대적으로 큰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고, 이러한 지원정책들이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봄

가. 서울지역 정책사례*

1) 글로벌센터

① 서울 글로벌센터

- (목적)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종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빠른 정착지원
- (시설현황) 2008년 개관하였으며, 2013년 확대 이전. 상담실, 커뮤니티, 교육장,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0명의 직원이 근무
- (지원사업) 크게 비즈니스와 생활 등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구분	비즈니스 지원사업	생활지원사업
운영목적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에 대한 비즈니스 종합지원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 편의 지원
운영방법	창업지원, 국제통상 등에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생활 및 다국어 상담으로 특화되어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세부사업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외국인 창업지원 및 보육,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비즈니스 정보제공, 중소기업 우수외국인력 채용 및 외투기업 취업박람회	생활상담 및 정보제공 활성화, 생활 간행물 제작, 다문화 학당 운영, 한국어교실(주말) 운영, 글로벌콘서트 개최, 돌봄터(이주민공동체 활동 공간) 운영, 글로벌센터 통번역 지원서비스

*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특광역시)」 자료를 정리하였음

- (추진체계) 추진주체: 서울특별시 / 추진절차: (재)서울산업진흥원, (사)복밀알복지재단 / 소관부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기대효과) 일반 시민의 글로벌 문화 향유를 통한 다문화 인식 제고와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 이미지 제고
- (추진실적 및 계획)

'18년도 추진실적	'19년도 추진계획
외국인 생활상담 및 비즈니스 상담 : 34,349건 한국어 교실 운영 : 1,153명 서울생활오리엔테이션 : 36회(4,253명) 외국인주민 서울통신원(11명)운영, 커뮤니티 및 SNS 정보제공(1,279건) 글로벌센터 자원봉사단 : 147회(612명) 외국인 창업대학 : 343명 외국인 무역아카데미 : 593명 비즈니스 네트워킹 : 19회	외국인을 위한 One-stop 상담서비스 외국인 생활지원 및 의견수렴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 및 생활교류 추진

- (소요예산) 지방비(광역시·도비) : '18(2,912백만원), '19(2,986백만원)
 - 비즈니스지원(1,379백만원), 생활지원(1,589백만원)
- (홈페이지 운영) http://global.seoul.go.kr/index.do?site_code=0101

The screenshot shows the Seoul Global Center websit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Seoul Global Center' logo and links like 'About Us', 'Living', 'Business & Jobs', 'Education & Culture', 'Community project', 'Family Site', 'Global Center', 'Village', and 'Business'. Below this, there's a 'Notice of Schedule Change for Driver's License Service' section with details on operating hours and service contents. To the right, there's a 'Center Schedule' section listing various programs like '4th Business Start-Up School' and 'Korean Class'. At the bottom, there's a 'Center News' section with recent news items and a 'Newsletter' sign-up box.

② 서남권글로벌센터

- (목적) 서울시 서남권 지역 내 재한외국인 및 중국동포에게 지역사회 생활안정과 정착을 돕기 위한 상담, 교육, 의료지원 등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 (시설현황) 2014년 개관하였으며, 종합상담실, 강의실, 커뮤니티, 북카페, 의료시설 등으로 구성됨
- (지원사업) 크게 노무/법률 상담과 의료지원, 문화지원사업 제공

상담사업	교육사업	문화프로그램	성공귀환프로그램	의료지원
노무, 법률, 생활 관련 상담	한국어, 컴퓨터 교실 등	문화동아리, 외국인주민 영 화제작교실	요리교실 등	한방, 치과, 가정의학과 등

- (추진체계) 추진주체: 서울특별시 / 추진절차: 교육지원팀(자치구청), 생활지원팀(민간위탁) / 소관부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기대효과) 외국인주민의 서울생활정착과 내·외국인 교류증진을 위한 서남권지역 거점센터 역할 수행
- (추진실적 및 계획)

'18년도 추진실적	'19년도 추진계획
총 27,231명 -생활 및 진문상담 : 6,590명 -한국어강좌 : 1,240명 -의료지원 : 5,547명 -문화체험 : 779명 -기타 : 13,075명	외국인을 위한 One-stop 상담서비스 외국인 생활지원 및 의견수렴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 및 생활교류 추진

- (소요예산) 지방비(광역시·도비) : '18(789백만원), '19(795백만원)
- (홈페이지 운영) <http://www.swsgc.co.kr/>



③ 동대문글로벌센터

- (목적) 서울시 동대문구 광희동 일대는 몽골 및 중앙아시아인 밀집지역으로 이곳에 글로벌센터를 설치하여 이들에게 전문적인 무역·비즈니스 지원서비스를 제공
- (시설현황) 2015년 개관하였으며, 다목적실, 공동업무 공간,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됨
- (지원사업) 창업, 비즈니스 상담, 한국어강좌, 무역아카데미 등
- (추진체계) 추진주체: 서울특별시 / 추진절차: (재)서울산업진흥원(민간 위탁) / 소관부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기대효과) 외국인주민의 서울생활정착과 역량강화
- (추진실적 및 계획)

'18년도 추진실적	'19년도 추진계획
창업 : 32건 비즈니스 상담 : 1,221건 비즈니스 한국어 강좌 : 125명 비즈니스 세미나 : 8회(216명) 무역아카데미 : 133명 커뮤니티 공간 이용 : 몽골 5개 단체	비즈니스 종합상담 : (예비)창업자 상담, 교육 및 세미나 기업교류 지원 : 수출상담회, 네트워킹데이 등 외국인주민 역량강화 : 외국인주민 무역아카데미 센터 홍보 및 사업활성화

- (소요예산) 지방비(광역시·도비) : '18(427백만원), '19(416백만원)
- (홈페이지 운영) http://global.seoul.go.kr/index.do?site_code=0302

2) 서울 관악구 '굿모닝 세상의 아줌마들' 라디오 방송 제작*

- 서울 관악구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인 '(사)관악공동체라디오'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로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고 모국어 노래를 틀어주는 형식으로 <굿모닝! 세상의 아줌마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굿모닝 세상의 아줌마들'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악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악무지개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기획하게 되었음.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였음
- 방송의 주요 구성은 이주민 공동체 내 소식, 이주민을 위한 취업소식, 육아·교육방법 소개, 미담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주여성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방송까지 진행함
 - 방송은 월요일~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송출되며(홈페이지 접속하여 다시듣기 가능), 월요일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 방송, 화요일에는 필리핀, 수요일은 중국, 목요일은 러시아 등의 순서로 진행됨
- 방송은 조금씩 청취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최종목표는 '이주여성 공동체'를 향하고 있음. 방송 청취를 통해 이주여성들은 자택에서 모국어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국사회와 생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모국의 음원을 들을 수 있는 정서적 위로를 받을 수 있음



* 본 내용은 (사)관악공동체라디오(관악FM) 홈페이지(<https://www.radiogfm.net/>)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3) 서울 '생각나무 BB센터' : 다문화가족의 한국 알리기*

- 생각나무 BB센터는 다문화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생각이 나무처럼 푸르러지고 무성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2009년 설립되어 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 즉 다문화가정의 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BB의 의미는 '이중언어'라는 의미가 담긴 Bilingual와 Bicultural의 뜻이 담김
- 센터는 이주여성을 위한 언어교재 및 교구를 개발하고, 선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문화체험, 문화공연을 진행하고 있음
- 센터의 공간은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대표가 설립초기 한 대학의 공간을 대여하여 시작하였으며, 현재의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음. 열악한 공간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모 기업의 복지재단 공간문화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지금의 쾌적한 환경이 마련됨
- 센터는 이중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고 있음. 이주여성들이 직접 투자하고, 이중언어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여성에게는 자랑스러운 엄마와 아내라는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한국사회 적응에 가장 필수적인 한국어 교육을 통해 언어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취·창업 지원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 본 내용은 '전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 방안 전문가 토론회(전북연구원)'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나. 경기지역(부천시) 사례*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경기도 부천시에 자리한 ‘아시아인권문화연대’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선주민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아시아인권문화연대’라는 지금의 명칭으로 2004년 설립되었음(2000년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로 발족). 2006년에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활동은 크게 상호문화교육활동, 인권문화활동, 지역공동체 활동, 네팔인을 위한 활동, 미얀마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였음. 특히, 지역시장과 함께 개최하는 시장축제, 지역상인 중심의 축제를 함께 계획, 주도하면서 인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행사로 변화하면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활동	세부활동
상호문화교육활동	다문화인권교육
인권문화활동	시민 인권감수성 향상 활동, 청소년 인권동아리 활동, 인종차별에 맞서는 시민행동 조직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동	주민공동체 활동, 강남시장마을축제
네팔사티(네팔인 대상)	장학사업(죽거나 다친 노동자의 자녀 장학금), 서로서터학교(학교설립사업)
미얀마 쏘지회 활동	쏘지 학교 운영 지원

- 또한, 다문화교육사업을 통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유치원과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 활동을 통해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본 내용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홈페이지(<https://asiansori.org/>)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다. 충남지역 정책 사례* : '충남다문화인권위원회'

-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인권감수성 향상, 다문화 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충청남도다문화인권위원단을 출범·운영하고 있음
- 충청남도다문화인권위원단은 다문화업무 종사자 및 다문화가족 32명이 참여하여 지역의 다문화가족이 겪는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인권감수성 향상지원을 위해 다문화 업무 종사자, 결혼이주여성, 결혼중개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운영함
- 또한, 도내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은 다문화가족이 실제 겪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며, 15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인 캠페인으로 개최하고 있음

* 2017년~2018년 “우리는 이웃, 친구, 가족, 다문화여성을 부를 땐 OO씨, OO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다문화여성 호칭개선 캠페인)

* 2019년 “차별없이 바라봐주세요”



* 본 내용은 '전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 방안 전문가 토론회(전북연구원)'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라. 시사점

- 타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 및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함. 우선 서울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예산 및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국비 지원 없이 광역시·도비 100%로 글로벌센터를 운영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었음. 지원예산과 외국인 비율을 떠나서 원스톱으로 한 공간에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전북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자 비율이 적기 때문에 비즈니스 지원사업 정도는 아니더라도, 결혼이주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즉 교육부터 취·창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또한, 원스톱센터의 홈페이지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주민에게 정책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에 전북도가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서남권글로벌센터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과/외과/치과/가정의학과 등을 두어 의료지원을 진행하며, 의료통역 전문상담사 양성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 몸이 아플 때, 한국어가 서툴러 병원 진료과목을 이해하지 못해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나타난 바,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권 확립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두 번째로 서울시 관악구의 지역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지역 내 다문화인식개선,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미디어를 통한 접근은 효과적이라 사료됨. 이는 이주민이야말로 이주민의 관심과 관점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임. 지상파방송에만 의존하던 과거와는 달리 누구나 직접 방송을 만들고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

음. 물론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지역방송사에서 ‘다정다감’이라는 TV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마을방송이나 1인 미디어 등 주류 미디어가 아닌 다양한 방식의 미디어를 활용하여 이주민 방송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중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은 전국 80.2%, 전북 93.3%로 전국평균 보다 13.1%p 높아 전국에서 2번째로 높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발굴되어질 당위성이 충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세 번째로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인권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서울의 ‘생각나무 BB센터’, 부천시에 위치한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충청남도 ‘다문화인권위원단’ 사례를 보듯 이주민에 대한 인권옹호와 권리의식 개선은 반드시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전라북도의 결혼이주민의 성별은 대다수는 여성이며, 출신국적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으로 자존감이 결여된 경우가 많음. 이에 결혼이주여성이 “자랑스러운 나, 당당한 나”로 인식하고,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감과 소속감을 갖고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이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장

전북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현황

Jeonbuk Institute

제1절 전북 다문화가족 현황

제2절 전북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현황

제3절 소결

제 3 장 전북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현황

제 1 절 전북 다문화가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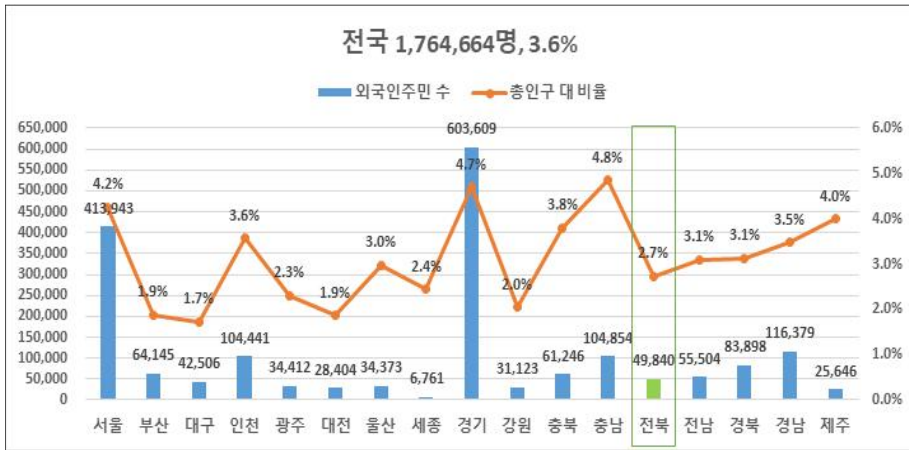
가. 외국인주민 현황

- 2017년 기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민·유학생·외국국적동포·귀화자·외국인 주민자녀는 49,840명으로 전체인구(1,826,174명) 대비 2.7%임. 이는 전국평균 외국인주민 비율(3.6%)보다 0.9%p 낮음
- 2017년 기준 전북의 외국인주민 규모는 17개 시·도 중 10번째임

〈표 3-1〉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17)

구분	총인구 (A)	비율 (B/A)	합계(B)		
			계	남	여
전국	51,422,507	3.6%	1,861,084(100.0)	989,286	871,798
서울	9,741,871	4.2%	413,943(22.2)	192,250	221,693
부산	3,416,918	1.9%	64,145(3.4)	33,841	30,304
대구	2,453,041	1.7%	42,506(2.3)	22,137	20,369
인천	2,925,967	3.6%	104,441(5.6)	55,363	49,078
광주	1,496,172	2.3%	34,412(1.8)	17,661	16,751
대전	1,525,849	1.9%	28,404(1.5)	12,647	15,757
울산	1,157,077	3.0%	34,373(1.8)	19,260	15,113
세종	276,589	2.4%	6,761(0.4)	3,683	3,078
경기	12,851,601	4.7%	603,609(32.4)	336,239	267,370
강원	1,521,386	2.0%	31,123(1.7)	15,007	16,116
충북	1,611,009	3.8%	61,246(3.3)	34,907	26,339
충남	2,162,426	4.8%	104,854 (5.6)	59,560	45,294
전북	1,826,174	2.7%	49,840(2.7)	24,301	25,539
전남	1,792,319	3.1%	55,504(3.0)	29,444	26,060
경북	2,677,058	3.1%	83,898(4.5)	47,540	36,358
경남	3,345,293	3.5%	116,379(6.2)	71,644	44,735
제주	641,757	4.0%	25,646(1.4)	13,802	11,84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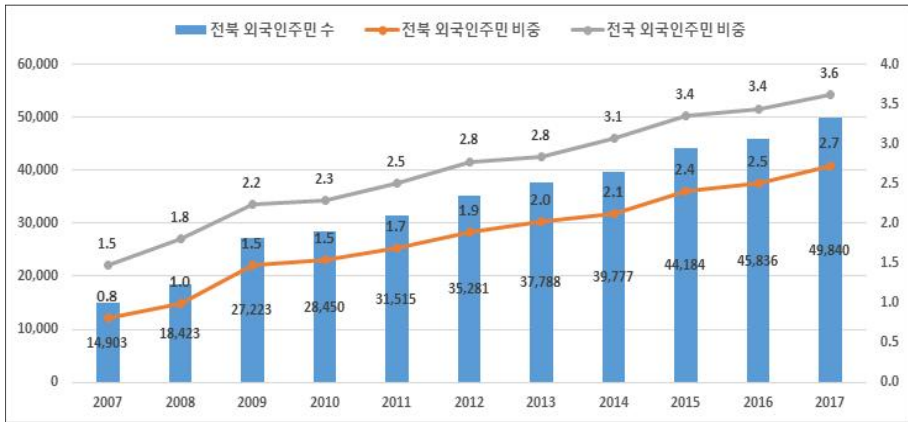
〈그림 3-1〉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17)

- 지난 10년간 전북지역의 외국인주민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14,903명에서 2017년 49,840명으로 약 3.3배 증가함
- 전북 전체 인구 중 외국인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한편, 증감률을 보면, 2008~2009년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2012년(11.9%)과 2015년(11.1%)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017년 기준 외국인주민의 비중은 2.7%이며, 전년대비 증감률은 8.7%로 나타남

〈표 3-2〉 지난 10년간 전북 외국인주민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외국인 주민	722,686	891,341	1,106,884	1,139,283	1,265,006	1,409,577	1,445,631	1,569,470	1,711,013	1,764,664
	비중	1.5	1.8	2.2	2.3	2.5	2.8	2.8	3.1	3.4	3.6
	증감률	-	23.3	24.2	2.9	11.0	11.4	2.6	8.6	9.0	3.1
전북	외국인 주민	14,903	18,423	27,223	28,450	31,515	35,281	37,788	39,777	44,184	49,840
	비중	0.8	1.0	1.5	1.5	1.7	1.9	2.0	2.1	2.4	2.7
	증감률	-	23.6	47.8	4.5	10.8	11.9	7.1	5.3	11.1	8.7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07~2017)」.



〈그림 3-2〉 지난 10년간 전북 외국인주민 추이

- 전북의 외국인주민 유형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자녀가 2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결혼이주민(21.9%), 외국인근로자(20.9%), 기타외국인(20.7%), 유학생(10.2%) 외국국적동포(4.3%) 순으로 나타남

〈표 3-3〉 전북 외국인주민 유형별*성별 현황(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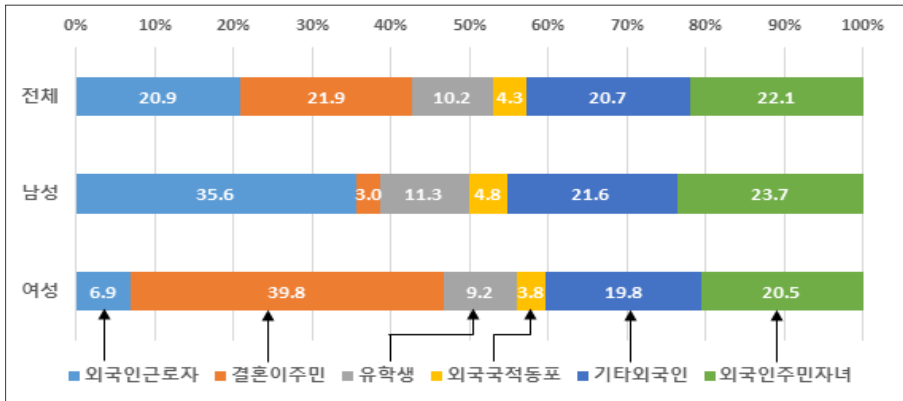
구분		전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외국인주민자녀
전국	전체	1,861,084	495,792	330,188	117,127	276,750	428,925	212,302
	비율	100.0	26.6	17.7	6.3	14.9	23.0	11.4
전북	전체	49,840	10,419	10,900	5,095	2,135	10,298	10,993
	비율	100.0	20.9	21.9	10.2	4.3	20.7	22.1
	남성	24,301	8,650	735	2,745	1,165	5,253	5,753
	비율	100.0	35.6	3.0	11.3	4.8	21.6	23.7
	여성	25,539	1,769	10,165	2,350	970	5,045	5,240
	비율	100.0	6.9	39.8	9.2	3.8	19.8	20.5

주 : '결혼이주민'은 국적을 미취득한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치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7)」.

- 전국과 전북의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을 비교해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5.7%p 낮은 반면, 결혼이주민의 비중은 4.2%p 높은 차이가 나타남. 성별로 보면, 남성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35.6%)이 가장 높고, 여성은 결혼이주민 비율(39.8%)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로 유형화



〈그림 3-3〉 전북 외국인주민 유형별*성별 현황(2017)

- 연령별 외국인주민 현황을 전국과 전북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국평균보다 전북지역 19세 이하 비중은 9.8%p, 20대 비중은 4.3%p 높게 나타남
- 전북지역 외국인주민의 연령별 분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가 2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9세 이하 26.0%, 30대 21.9%, 40대 11.9%, 50대 8.5%, 60대 3.4%, 70세 이상 0.9%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이하 젊은 외국인주민(53.3%)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 외국인주민의 연령별 분포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보면, 20대 이하 그룹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30대 이상 그룹에서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임

〈표 3-4〉 전북 외국인주민 연령별*성별 현황(2017)

구분	전체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국	1,861,084	302,203	428,044	451,449	290,987	240,266	121,452	26,683
	100.0	16.2	23.0	24.3	15.6	12.9	6.5	1.4
전체	49,840	12,962	13,627	10,939	5,939	4,236	1,694	443
	100.0	26.0	27.3	21.9	11.9	8.5	3.4	0.9
전북	24,301	6,736	7,003	5,264	2,567	1,750	788	193
	100.0	27.7	28.8	21.7	10.6	7.2	3.2	0.8
남성	25,539	6,226	6,624	5,675	3,372	2,486	906	250
	100.0	24.4	25.9	22.2	13.2	9.7	3.5	1.0

주 : '외국국적 자녀 및 귀화'는 포함되지 아니한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7)」.

- 2017년 전북의 체류기간별 외국인주민 현황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체류기간별 비율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1년 미만의 비중이 전국보다 3.4%p 높았음
- 전북지역 체류기간별 외국인주민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1년 미만이 24.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2년 미만 18.1%, 5~10년 미만 16.2%, 2~3년 미만 12.9%, 3~4년 미만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를 다시 성별로 비교해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3~4년 미만의 비중이 다소 낮고, 반면에 5~10년 미만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3-5〉 전북 외국인주민 체류기간별*성별 현황(2017)

구분		전체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4년미만	4~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미상
전국	전체	1,479,247	304,904	255,650	202,010	174,458	132,919	293,854	114,235	1,217
		100.0	20.6	17.3	13.7	11.8	9.0	19.9	7.7	0.1
전북	전체	33,764	8,109	6,118	4,372	4,107	3,006	5,464	2,553	35
		100.0	24.0	18.1	12.9	12.2	8.9	16.2	7.6	0.1
	남성	18,246	4,404	3,457	2,606	2,493	1,764	2,466	1,035	21
		100.0	24.1	18.9	14.3	13.7	9.7	13.5	5.7	0.1
	여성	15,518	3,705	2,661	1,766	1,614	1,242	2,998	1,518	14
		100.0	23.9	17.1	11.4	10.4	8.0	19.3	9.8	0.1

주 : 국적취득자와 외국인주민자녀 수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7)」.

나. 다문화가족 현황

1) 다문화가족 규모

- 2017년 기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는 10,900명임. 이 중 여성은 10,165명, 남성 735명으로 나타남. 여성이 남성보다 약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중 결혼이주 여성의 비율은 80.2%였으며, 전북은 13.1%p 높은 93.3%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표 3-6〉 전국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2017)

구분	계 (A+B)				결혼이민자 (A)			국적 취득자 (B)		
	계	남	여	F(%)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330,188	65,507	264,681	80.2	160,653	30,745	129,908	169,535	34,762	134,773
서울	73,753	22,490	51,263	69.5	32,061	9,768	22,293	41,692	12,722	28,970
부산	12,337	1,753	10,584	85.8	6,841	1,096	5,745	5,496	657	4,839
대구	8,815	1,178	7,637	86.6	4,943	759	4,184	3,872	419	3,453
인천	22,626	5,306	17,320	76.5	10,143	2,268	7,875	12,483	3,038	9,445
광주	6,284	655	5,629	89.6	3,372	416	2,956	2,912	239	2,673
대전	6,106	805	5,301	86.8	3,346	465	2,881	2,760	340	2,420
울산	6,296	901	5,395	85.7	3,346	480	2,866	2,950	421	2,529
세종	1,225	191	1,034	84.4	691	122	569	534	69	465
경기	100,529	23,366	77,163	76.8	47,161	10,416	36,745	53,368	12,950	40,418
강원	6,989	565	6,424	91.9	3,538	301	3,237	3,451	264	3,187
충북	9,882	1,203	8,679	87.8	5,005	615	4,390	4,877	588	4,289
충남	15,636	1,919	13,717	87.7	8,162	916	7,246	7,474	1,003	6,471
전북	10,900	735	10,165	93.3	5,817	433	5,384	5,083	302	4,781
전남	11,906	577	11,329	95.2	6,514	304	6,210	5,392	273	5,119
경북	13,990	1,217	12,773	91.3	7,507	746	6,761	6,483	471	6,012
경남	18,725	1,985	16,740	89.4	9,738	1,288	8,450	8,987	697	8,290
제주	4,189	661	3,528	84.2	2,468	352	2,116	1,721	309	1,412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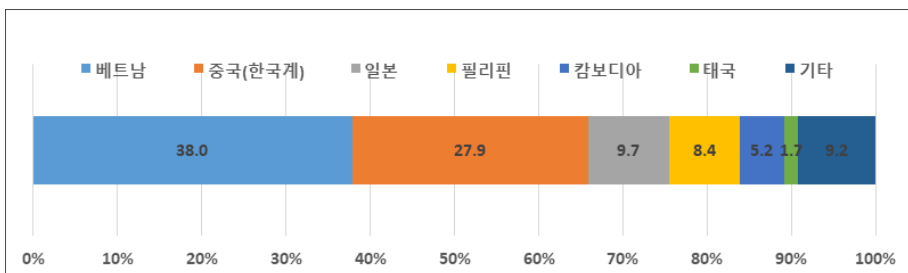
-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4,479명이었던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수가 2017년 10,900명으로 41.1%p 이상이나 증가함. 이는 2007년 142,015명에서 2017년 330,188명으로 증가한 전국 평균 비율인 43.0%보다 1.9%p 낮은 수준임

〈표 3-7〉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 추이 변화(2007~2017)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142,015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294,663	318,948	330,188
전북	4,479	5,042	6,940	7,197	8,523	9,068	9,626	9,951	10,237	10,568	10,9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07~2017)」.

- **(다문화가구)** 2017년 다문화가구는 318,917가구로 전체 20,167,922가구 중 1.6%를 차지함. 전북의 다문화가구는 11,492가구로 전체 738,801가구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구원)** 전국 다문화가구원은 963,801명으로 전국 총 인구(51,422,507명)의 1.9%를 차지함.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320,645명, 자녀 220,950명, 한국인 배우자 301,354명, 기타 동거인 120,852명으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다문화가구원은 39,804명으로 도내 총인구(1,826,174명)의 2.2%를 차지함.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10,661명, 자녀 11,184명, 기타 동거인 4,038명, 한국인 배우자 13,901명으로 나타남
- 전북 14개 시·군 중 다문화가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시(7,923명)이며 전북 전체 다문화가구원의 19.9%를 차지함. 다음으로 익산시(6,389명), 군산시(7,923명), 정읍(3,166명), 완주(2,816명) 등에 거주함. 한편, 시·군별 총 인구 대비 다문화가구원 비율을 보면, 진안 5.0%, 장수 4.8%, 순창 4.6%, 임실 4.4%, 무주 3.9%, 고창 3.6%, 부안 3.2% 순으로 높게 나타남(전국평균 1.9%, 전북평균 2.2%)
-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37.9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 27.86%, 일본 9.67%, 필리핀 8.38%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 전북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2017)

〈표 3-8〉 시·군별 다문화가구원 현황(2017)

구분	총 인구	다문화 가구원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 동거인		
				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소계	귀화/ 외국 국적 자녀	국내 출생	계	내국인	외국인
전국	51,422,507	963,801	301,354	320,645	159,958	160,687	220,950	8,804	212,146	120,852	75,468	45,384
전북	1,826,174	39,804	13,901	10,681	5,805	4,876	11,184	201	10,983	4,038	3,066	972
전주	656,956	7,923	2,660	2,292	1,275	1,017	2,153	33	2,120	818	659	159
군산	273,649	5,416	1,854	1,634	950	684	1,398	27	1,371	530	365	165
익산	298,928	6,389	2,160	1,795	960	835	1,717	42	1,675	717	520	197
정읍	109,263	3,166	1,071	846	452	394	923	20	903	326	243	83
남원	79,282	2,432	870	600	344	256	724	6	718	238	194	44
김제	82,358	2,546	908	636	338	298	738	10	728	264	200	64
완주	98,528	2,816	996	723	368	355	835	13	822	262	177	85
진안	22,998	1,152	415	267	133	134	353	11	342	117	89	28
무주	23,195	909	344	204	108	96	270	*	269	91	68	23
장수	21,395	1,027	353	242	112	130	322	5	317	110	93	17
임실	26,409	1,166	422	274	122	152	385	*	385	85	66	19
순창	27,017	1,246	447	289	149	140	365	*	362	145	114	31
고창	54,947	1,998	788	467	273	194	564	12	552	179	155	24
부안	51,249	1,618	613	412	221	191	437	18	419	156	123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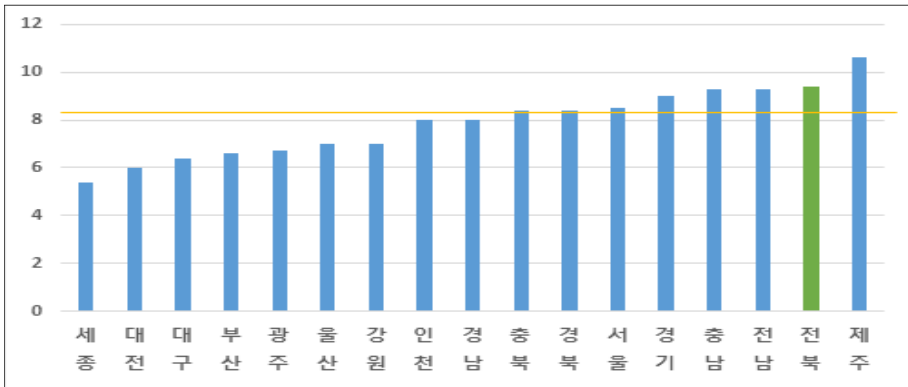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7.11)」.

2) 다문화가족 형성

① 다문화 혼인 현황

- 국제결혼에 의해 다문화가족이 형성됨. 국제결혼은 2000년 이후 확대되어 2005년에 최고 수준에 달함. 국제결혼이 2005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전북 지역사회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음. 전국의 경우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인 반면, 전북은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과 혼인 추이(2011~2017)를 보면, 전국의 경우 2011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이나, 2017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전북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2017년 전북의 외국인과의 혼인 유형을 살펴보면, 총 717건 중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은 604건(84.2%)이었으며,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혼인은 113건(15.8%)이었음
- 한편,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 비중은 2011년 89.9%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혼인 비중은 2011년 10.1%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자료: 통계청,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그림 3-5〉 시도별 다문화 혼인 비중(2017)

〈표 3-9〉 전라북도 연도별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2011~2017)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 국	총 혼인건수	329,087	327,073	322,807	305,507	302,828	281,635	264,455
	외국인과의 혼인	29,762	28,326	25,963	23,316	21,274	20,591	20,835
	총 혼인 중 비중	9.0	8.7	8.0	7.6	7.0	7.3	7.9
	한국남성+외국여성	22,265	20,638	18,307	16,152	14,677	14,822	14,869
	한국여성+외국남성	7,497	7,688	7,656	7,164	6,597	5,769	5,966
전 북	총 혼인건수	10,353	10,022	9,823	9,211	9,060	8,216	7,817
	외국인과의 혼인	1,111	1,074	934	772	742	699	717
	총 혼인 중 비중	10.7	10.7	9.5	8.4	8.2	8.5	9.2
	한국남성+외국여성	999	972	818	668	634	599	604
	한국여성+외국남성	112	102	116	104	108	100	11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07~2017)」.

- 전라북도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2011~2017)을 살펴보면, 성별로 차이가 나타남.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45.5%), 중국(26.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중국(24.6%), 미국(18.0%)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0〉 전라북도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2011~2017)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명	구성비
외 국 인 아 내	계	999	972	818	668	634	599	604	5,294	100.0
	필리핀	89	100	86	52	32	39	38	436	8.2
	베트남	403	433	356	293	299	296	330	2,410	45.5
	캄보디아	66	24	52	34	49	19	32	276	5.2
	태국(타이)	11	10	10	13	19	20	35	118	2.2
	몽골	10	10	5	2	5	10	5	47	0.9
	중국	331	295	233	197	142	142	81	1,421	26.8
	일본	25	27	23	19	22	14	17	147	2.8
	우즈베키스탄	13	16	9	9	15	8	8	78	1.5
	미국	8	10	8	7	11	7	10	61	1.2
기 타	43	47	36	42	40	44	48	300	5.7	
외 국 인 남 편	계	112	102	116	104	108	100	113	755	100.0
	대만	2	5	6	2	4	2	1	22	2.9
	베트남	0	3	7	7	17	23	20	77	10.2
	파키스탄	2	3	3	3	2	4	3	20	2.6
	스리랑카	3	3	3	3	1	1	3	17	2.3
	중국	28	32	27	24	25	22	28	186	24.6
	일본	19	9	13	10	10	6	4	71	9.4
	캐나다	9	5	4	5	5	4	4	36	4.8
	미국	26	21	25	19	19	14	12	136	18.0
	오스트레일리아	3	6	7	7	4	2	4	33	4.4
기 타	20	15	21	24	21	22	34	157	20.8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07~2017)」.

② 다문화 이혼 현황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2011~2017)를 보면, 전국의 경우 2011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며, 전북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임.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북이 2011~2016년까지는 전국보다 소폭 높았으나, 2017년은 전국보다 낮게(0.2%p) 나타남
- 2017년 전북의 외국인과의 이혼 유형을 살펴보면, 총 240건 중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의 이혼은 204건(85.0%)이었으며,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이혼은 36건(15.0%)이었음. 한편,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이혼 비중은 2011년 90.8%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혼인 비중은 2011년 9.2%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3-11〉 전라북도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2011~2017)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 국	총 이혼건수	114,284	114,316	115,292	115,510	109,153	107,328	106,032
	외국인과의 이혼	11,495	10,887	10,480	9,754	8,237	7,665	7,130
	총 이혼 중 비중	10.1	9.5	9.1	8.4	7.5	7.1	6.7
	한국남성+외국여성	8,349	7,878	7,588	6,998	5,743	5,610	5,206
	한국여성+외국남성	3,146	3,009	2,892	2,756	2,494	2,055	1,924
전 북	총 이혼건수	4,176	3,856	4,144	4,091	3,755	3,979	3,698
	외국인과의 이혼	437	386	406	377	294	295	240
	총 이혼 중 비중	10.5	10.0	9.8	9.2	7.8	7.4	6.5
	한국남성+외국여성	397	341	368	344	259	270	204
	한국여성+외국남성	40	45	38	33	35	25	3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07~2017)」.

- 전라북도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 현황(2011~2017)을 살펴보면, 성별로 차이가 나타남. 한국인 남성과 이혼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50.5%), 베트남(30.7%)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인 여성과 이혼한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중국(40.5%), 일본(27.4%)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전라북도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 현황(2011~2017)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명	구성비
외 국 인 아 내	계	397	341	368	344	259	270	204	2,183	100.0
	필리핀	21	19	24	25	13	16	12	130	6.0
	베트남	95	83	113	126	83	97	74	671	30.7
	캄보디아	15	9	7	10	12	18	7	78	3.6
	태국	3	4	4	6	3	1	2	23	1.1
	몽골	11	6	3	5	1	2	3	31	1.4
	중국	231	191	193	143	135	118	91	1,102	50.5
	일본	5	9	5	6	5	2	3	35	1.6
	우즈베키스탄	6	6	7	11	2	7	3	42	1.9
	미국	3	1	1	3	0	1	4	13	0.6
외 국 인 남 편	기 타	7	13	11	9	5	8	5	58	2.7
	계	40	45	38	33	35	25	36	252	100.0
	대만	2	0	1	1	0	1	0	5	2.0
	베트남	1	0	1	0	3	1	1	7	2.8
	파키스탄	2	2	4	1	1	0	0	10	4.0
	방글라데시	0	0	0	1	0	0	0	1	0.4
	중국	15	19	13	11	17	13	14	102	40.5
	일본	13	15	10	12	5	6	8	69	27.4
	캐나다	1	1	1	1	0	0	2	6	2.4
	미국	5	6	5	3	5	3	5	32	12.7
기 타	기타	1	2	3	3	4	1	6	20	7.9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07~2017)」.

3) 다문화가족 자녀의 규모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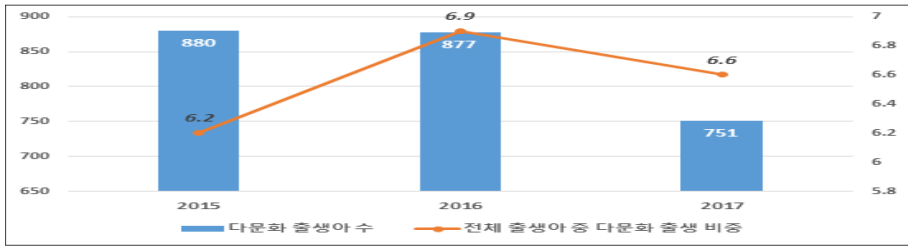
① 다문화 자녀의 규모

- 2017년 전북의 다문화 출생아 수는 751명으로 전년 대비 -14.4% 감소하였고,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9%에서 6.6%로 0.3%p 감소함. 전국 시도별 다문화 출생 비중은 전남(7.5%)에 이어 전북이 두 번째로 그 비율이 높으며, 전국 평균(5.2%)에 비해 1.4%p 더 높았음

〈표 3-13〉 전국 시·도별 출생아 수 및 다문화 출생 비중(2015~2017)

	전체(A)			다문화 출생(B)							다문화 비중(B/A)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전년대비				2015	2016	2017
							증감	증감률					
전국	438,420	406,243	357,771	19,729	19,431	18,440	100.0	-991	-5.1		4.5	4.8	5.2
서울	83,005	75,536	65,389	3,745	3,633	3,288	17.8	-345	-9.5		4.5	4.8	5.0
부산	26,645	24,906	21,480	1,020	1,031	937	5.1	-94	-9.1		3.8	4.1	4.4
대구	19,438	18,298	15,946	645	677	695	3.8	18	2.7		3.3	3.7	4.4
인천	25,491	23,609	20,445	1,080	1,120	1,046	5.7	-74	-6.6		4.2	4.7	5.1
광주	12,441	11,580	10,120	447	433	451	2.4	18	4.2		3.6	3.7	4.5
대전	13,774	12,436	10,851	482	497	452	2.4	-45	-9.1		3.5	4.0	4.2
울산	11,732	10,910	9,381	406	400	419	2.3	19	4.8		3.5	3.7	4.5
세종	2,708	3,297	3,504	62	98	81	0.4	-17	-17.3		2.3	3.0	2.3
경기	113,495	105,643	94,088	5,022	4,998	4,834	26.2	-164	-3.3		4.4	4.7	5.1
강원	10,929	10,058	8,958	525	473	431	2.3	-42	-8.9		4.8	4.7	4.8
충북	13,563	12,742	11,394	658	669	624	3.4	-45	-6.7		4.9	5.3	5.5
충남	18,604	17,302	15,670	976	940	931	5.0	-9	-1.0		5.2	5.4	5.9
전북	14,087	12,698	11,348	880	877	751	4.1	-126	-14.4		6.2	6.9	6.6
전남	15,061	13,980	12,354	1,001	903	921	5.0	18	2.0		6.6	6.5	7.5
경북	22,310	20,616	17,957	1,070	1,059	1,016	5.5	-43	-4.1		4.8	5.1	5.7
경남	29,537	27,138	23,849	1,357	1,291	1,243	6.7	-48	-3.7		4.6	4.8	5.2
제주	5,600	5,494	5,037	353	332	320	1.7	-12	-3.6		6.3	6.0	6.4

자료: 통계청,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그림 3-6〉 전북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출생비중(2015~2017)

-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자녀(0~18세)의 수를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11,25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7년을 기준으로 특·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 경남(16,720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13,721명), 전남(13,167명), 충남(13,021명), 전북(11,256명), 충북(8,381명), 강원(6,824명)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2007년 3,275명 이었던 외국인주민 자녀가 10년 사이에 29%(7,981명)가 증가한 11,256명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 10년간 증가율(44,258명 → 222,455명)인 19.9% 보다 9.1%p가 높았음

〈표 3-14〉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07~2017)

시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197,550	201,333	222,455
서울	5,305	7,500	16,772	19,014	24,084	26,008	29,285	30,226	30,447	30,761	31,052
부산	2,269	3,057	5,091	5,698	6,837	7,375	8,311	9,022	9,157	8,852	10,181
대구	2,019	2,254	3,656	3,904	4,475	5,125	5,829	6,305	6,423	6,388	7,501
인천	2,313	3,054	6,662	7,805	8,868	9,552	11,082	11,964	11,845	12,440	13,609
광주	1,231	1,608	2,420	2,752	3,403	3,926	4,519	4,997	5,090	4,881	5,597
대전	824	985	2,441	2,881	3,439	3,847	4,365	4,666	4,561	4,594	5,255
울산	884	1,068	2,489	2,798	3,233	3,582	4,092	4,437	4,376	4,400	4,962
세종	-	-	-	-	-	-	563	660	729	829	973
경기	6,617	11,131	25,648	29,953	37,519	42,365	48,138	51,960	50,313	52,446	56,584
강원	2,366	2,590	4,017	3,900	5,161	5,780	6,498	6,917	6,042	6,046	6,824
충북	2,288	2,584	3,748	4,710	5,675	6,445	7,272	7,718	7,089	7,424	8,381
충남	3,432	3,421	6,399	6,953	9,119	10,023	11,010	11,863	10,908	11,574	13,021
전북	3,275	4,283	5,474	5,849	7,755	8,766	9,989	10,316	9,744	9,751	11,256
전남	4,153	4,902	7,279	7,453	9,764	10,763	12,149	12,832	11,524	11,590	13,167
경북	3,289	4,235	6,353	7,715	9,246	10,251	11,574	12,578	11,775	11,755	13,721
경남	3,599	4,601	8,060	9,260	10,996	12,762	14,294	15,143	14,476	14,388	16,720
제주	394	734	1,180	1,290	1,580	2,013	2,358	2,600	3,051	3,214	3,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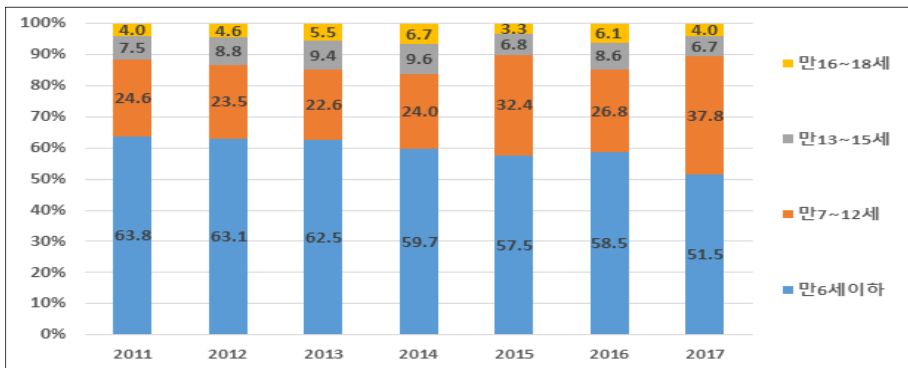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7. 11)」.

-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7,755명에서 2017년 11,256명으로 3,501명(약 4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 6세 이하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만 7~12세 아동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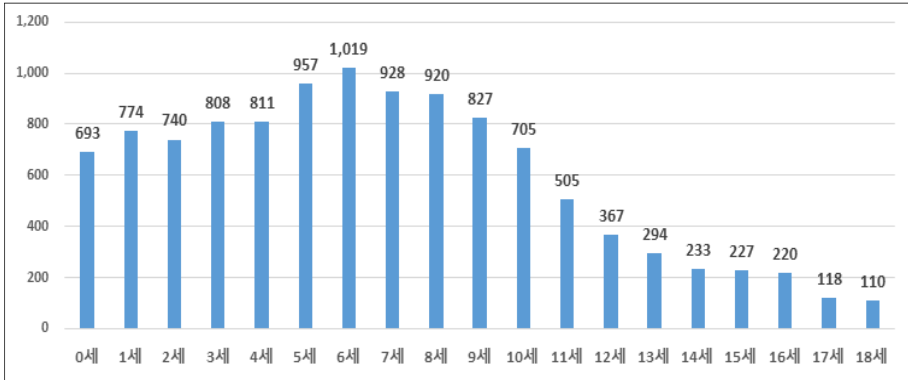
〈표 3-15〉 연도별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별 현황(2011~2017)

연도	연령별 현황					증가수(증가율)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계	
2011	4,948	1,911	583	313	7,755	-
2012	5,533	2,064	768	401	8,766	1,011(13.0%)
2013	6,244	2,255	941	549	9,989	1,223(14.0%)
2014	6,163	2,473	986	694	10,316	327(3.3%)
2015	5,606	3,155	662	321	9,744	-572(-5.5%)
2016	5,706	2,609	838	598	9,751	7(0.1%)
2017	5,802	4,252	754	448	11,256	1,505(15.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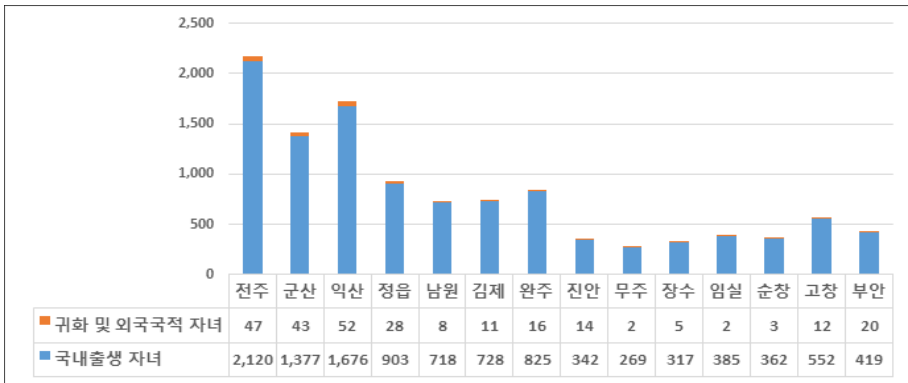


〈그림 3-7〉 전북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분포(2017)



〈그림 3-8〉 전북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현황(2017)

- 2017년 11월 기준 전북의 외국인주민 자녀 11,256명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2,167명), 익산(1,728명), 군산(1,420명), 정읍(931명), 완주(841명), 김제(739명) 등의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익산(52명), 전주(47명), 군산(43명) 등에 많이 거주하였고, 국내출생 자녀수는 전주(2,120명), 익산(1,676명), 군산(1,377명), 정읍(903명) 등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7. 11)」.

〈그림 3-9〉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7)

② 다문화학생 현황

- 다문화학생이란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자녀(국내출생),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의 3가지범주로 구분될 수 있음

구분		내용
국제 결혼 가정 자녀	국내 출생 자녀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국적법 제2조 제1항 국내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31조에 의한 교육권 보장) ⇒ 대부분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 없고 한국인 정체성도 강하나, 일부는 학습에 필요한 문장·어휘·개념 이해 등에 어려움을 겪음
	중도 입국 자녀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후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등 • 국내 입국 시 외국국적이나 특별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으로 전환 가능 •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10대 중·후반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음 ⇒ 새로운 가족과 한국 문화에 적응, 정체성 혼란, 무기력 등 심리적 문제, 한국어 역량 부족으로 공교육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외국인 가정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헌법 제6조 제2항/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91, 비준)에 따라 한국아동과 동일한 교육권 가짐 •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초·중학교 입학 가능 ⇒ 중국 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등 재외동포를 포함, 최근에는 시리아 난민 등이 유입, 일부는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움

- 전국 시도별 다문화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 > 중등 > 고등」 순으로 해당 학령기에서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초·중고 전체 학생 210,819명 중 다문화학생은 6,718명으로 3.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전남(4.29%) 충남(3.32%)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율이었음
 - 전체 초등학생 97,606명 중 다문화학생은 4,975명으로 5.10%였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전남(6.47%) 충남(5.14%)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율이었음.
 - 중학생의 경우 1.96%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전남(2.91%)과 충남(2.19%)에 이어 3번째로 높았음
 - 고등학생의 경우 1.20%로 전남(1.89%)과 강원(1.24%)에 이어 3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 3-16〉 시·도별 다문화학생 현황(2018)

	전체 학생수				다문화 학생수				다문화 학생 비중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서울	424,800	216,330	259,554	900,684	11,940	2,701	1,382	16,023	2.81	1.25	0.53	1.78
부산	152,775	77,021	90,667	320,463	4,097	685	370	5,152	2.68	0.89	0.41	1.61
대구	125,160	66,165	78,245	269,570	3,136	478	276	3,890	2.51	0.72	0.35	1.44
인천	158,871	76,565	84,916	320,352	5,158	1,204	542	6,904	3.25	1.57	0.64	2.16
광주	88,622	45,437	53,891	187,950	2,322	454	262	3,038	2.62	1.00	0.49	1.62
대전	83,453	42,675	49,332	175,460	2,059	335	170	2,564	2.47	0.79	0.34	1.46
울산	67,290	31,906	37,687	136,883	2,236	369	187	2,792	3.32	1.16	0.50	2.04
세종	24,865	10,070	8,574	43,509	470	73	40	583	1.89	0.72	0.47	1.34
경기	752,499	358,438	393,008	1,503,945	22,183	4,395	2,483	29,061	2.95	1.23	0.63	1.93
강원	75,412	39,391	46,727	161,530	2,794	732	578	4,104	3.70	1.86	1.24	2.54
충북	85,344	41,869	48,369	175,582	3,727	719	473	4,919	4.37	1.72	0.98	2.80
충남	120,152	56,595	65,509	242,256	6,172	1,240	642	8,054	5.14	2.19	0.98	3.32
전북	97,606	50,859	62,354	210,819	4,975	996	747	6,718	5.10	1.96	1.20	3.19
전남	94,134	47,270	58,249	199,653	6,095	1,377	1,099	8,571	6.47	2.91	1.89	4.29
경북	129,290	63,540	77,945	270,775	6,467	1,055	669	8,191	5.00	1.66	0.86	3.03
경남	191,016	90,851	102,461	384,328	7,741	1,061	657	9,459	4.05	1.17	0.64	2.46
제주	40,096	19,306	21,088	80,490	1,455	194	111	1,760	3.63	1.00	0.53	2.19



〈그림 3-10〉 시·도별 다문화학생 현황(2018)

- 저출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학령기 인구가 연 평균 약 18만 명이 감소하였고, 그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추정. 반면, 최근 5년간 다문화학생은 해마다 1만 명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2018년에는 약 12만 명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남(전체 학생 대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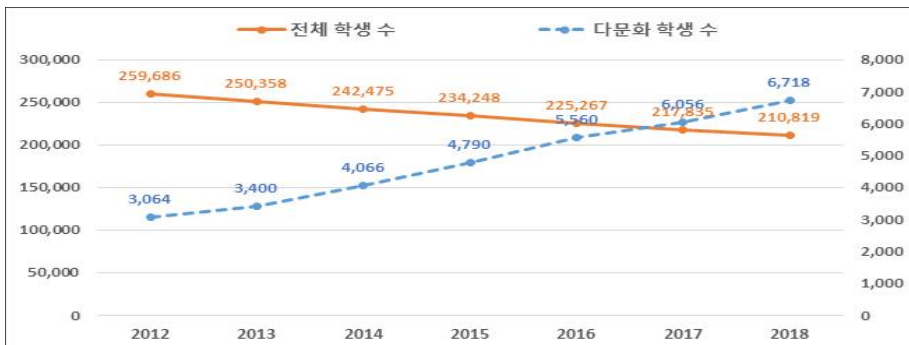
- 전라북도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064명에서 지속 증가하여 2018년 6,718명으로 나타남. 전북지역의 전체 학생(210,819명)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로 전국의 다문화학생 평균비율(2.17%)보다 1.0%p 높게 나타남. 2018년 전북의 다문화학생 비율은 3.29%로 2012년(1.18%)에 비해 2.11%p 증가하였음

〈표 3-17〉 전라북도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201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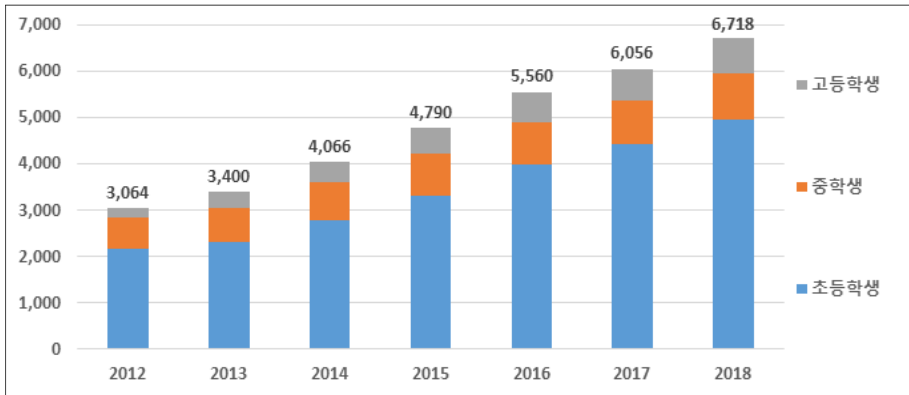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생 수								
전 국	다문화 학생 수	46,951	55,780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학교 급별	초	33,740	39,360	48,297	60,283	74,024	82,806
		중	9,627	11,280	12,525	13,865	15,105	15,983
		고	3,409	4,858	6,984	8,388	10,057	10,969
	전체 학생 수	6,721,176	6,481,492	6,333,570	6,137,374	5,931,646	5,773,998	5,633,725
전 북	다문화학생 비율	0.70	0.86	1.07	1.35	1.68	1.89	2.17%
	다문화 학생 수(A)	3,064	3,400	4,066	4,790	5,560	6,056	6,718
	전체 학생 수(B)	259,686	250,358	242,475	234,248	225,267	217,835	210,819
	다문화학생 비율	1.18	1.36	1.68	2.04	2.47	2.78	3.19%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2012~2018)」.

- 한편, 전라북도 초·중·고 학령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18년 기준 초·중·고 전체 다문화학생 수는 2017년 보다 662명(10.27%p) 증가한 6,718명인 반면, 전체 학생 수는 전년 대비 7,016명(3.22%p) 감소한 210,819명으로 나타남



〈그림 3-11〉 전북 전체 학생과 다문화학생 추이(2012~2018)



〈그림 3-12〉 전북 다문화학생 추이(2012~2018)

- 전북의 경우 2018년 기준 다문화학생은 6,718명임.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은 6,385명으로 전체 다문화학생의 95% 이상을 차지함. 중도입국자녀 170명(2.5%), 외국인자녀 163명(2.4%)으로 나타남.
-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4,975명, 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학생 996명 14.8%, 고등학생 747명 11.1%로 나타남. 다문화학생 중 국내출생학생이 95%(6,385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중도입국학생 1.5%(170명), 외국인자녀 2.4%(163명)로 나타남
- 한편, 2018년 기준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58.8%는 초등학생으로 국내출생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3-18〉 전라북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현황(2012,2015,2018)

구분	2012년				2015년				2018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일반	기타	
국내출생	2,070	645	198	2,913 (95.1)	3,155	841	513	4,509 (94.1)	4,759	924	471	231	6,385 (95.0)
중도입국	67	26	13	106 (3.4)	97	27	16	140 (2.9)	100	42	21	7	170 (2.5)
외국인자녀	38	4	3	45 (1.5)	75	24	42	141 (2.9)	116	30	13	4	163 (2.4)
계	2,175	676	214	3,064 (100.0)	3,327	892	571	4,790 (100.0)	4,975	996	747		6,718 (100.0)

주 : 기타고 :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자료: 교육청, 「교육통계연보(각 년도)」.

〈표 3-19〉 부모출신국별 다문화학생 수(2018)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중국 (한국계)	남부 아시아	태국	몽골	중앙 아시아	러시 아	미국	유럽	기타	전체
초등	2,129	712	898	260	232	187	68	76	60	32	22	16	283	4,975
중등	146	293	165	201	80	7	38	18	14	16	1	1	16	996
고등	36	225	108	252	79	3	11	9	8	1	2	1	12	747
전체	2,311	1,230	1,171	713	391	197	117	103	82	49	25	18	311	6,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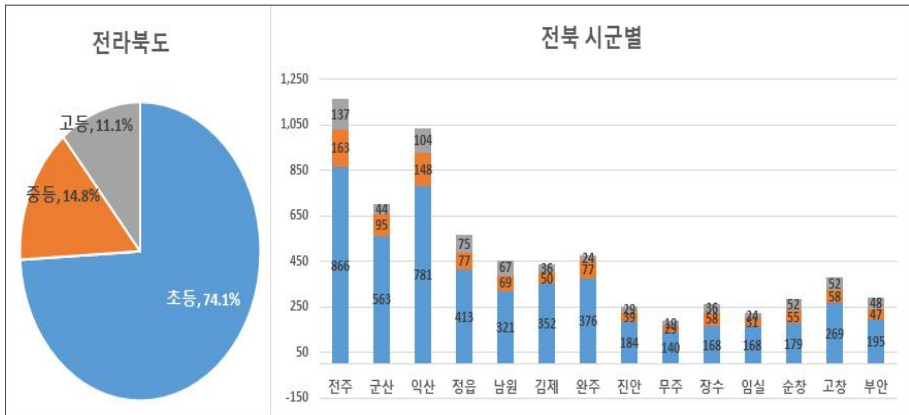
○ 전북지역 다문화 학생 6,718명의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주(1,166명), 익산(1,033명), 군산(702명), 정읍(565명), 완주(477명) 등의 순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 14개 시·군의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비율을 보면, 모든 시·군에서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학교급별 비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의 비율은 김제(80.4%) 및 군산(80.2%) 지역의 초등학생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중학생’의 비율은 장수(22.1%) 및 순창(19.2%) 지역의 중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등학생’의 비율은 순창(18.2%) 및 부안(16.6%) 지역의 고등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순창군 및 장수군의 경우 다문화 학생 수는 적은 편이나, 이 중 중·고등학생의 비율[순창(37.4%)/장수(35.9%)]이 높은 특징을 보임

〈표 3-20〉 전북 시·군별 *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수(2018)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초등	866	563	781	413	321	352	376	184	140	168	168	179	269	195
중등	163	95	148	77	69	50	77	39	29	58	31	55	58	47
고등	137	44	104	75	67	36	24	29	19	36	24	52	52	48
계	1,166	702	1,033	565	457	438	477	252	188	262	223	286	379	290

자료: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통계연보(2018)」.



〈그림 3-13〉 전북 시·군별 * 학교 급별 다문화 학생 비율(2018)

③ 다문화 학생 학업 중단율

- 전국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학생과 동일하게 연도별로 점차 감소 추세이나 전체 학생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임. 반면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 비율은 다문화 학생이 전체 학생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임. 이는 다문화 학생이 이주배경 특성상 유학 및 출국 등이 많기 때문으로 보임. 학교 급별로는 전체 학생과 다문화 학생 모두 초등학생 보다는 중학생,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도 학교 급별이 높아질수록 다소 높은 수준임
- 전북의 경우 전체 학업중단율과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 모두 증가와 반복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국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3-21〉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다문화학생 학업 중단율(2013~2017)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전체	0.93 (0.53)	0.83 (0.45)	0.77 (0.41)	0.81 (0.43)	0.87 (0.47)
	다문화	1.03 (0.38)	1.01 (0.38)	0.85 (0.29)	0.88 (0.29)	1.17 (0.32)
전북	전체	0.64	0.66	0.61	0.62	0.64
	다문화	0.21	0.54	0.27	0.41	0.36

주 : (괄호) 안 내용은 부적응과 관련된 학업중단을 나타냄 (질병, 해외출국, 유학 등은 제외).
 자료: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내부자료.

〈표 3-22〉 전국 및 전북의 학교 급별 다문화학생 학업 중단율(2017)

구분	전국		전북	
	전체학생	다문화학생	전체학생	다문화학생
전체	0.87 (0.47)	1.17 (0.32)	0.64	0.36
초등	0.61 (0.13)	0.99 (0.15)	0.3	
중등	0.66 (0.27)	1.47 (0.52)	0.5	
고등	1.47 (1.18)	2.11 (1.37)	1.3	

주 : 괄호 안은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 (질병, 유학, 해외출국 제외).

자료: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내부자료(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다. 현황분석에 따른 전북 다문화가족의 환경 변화

1)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소폭씩 지속 증가

- 2017년 기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총 49,840명, 전북 전체 인구 대비 2.7%로 전국평균 외국인주민 비율(3.6%)보다 낮음, 한편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주민 중 21.9%를 차지하였고, 이러한 비중은 전국평균(17.7%) 보다 높음
-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 증감률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증감률 평균이 약 7.8%정도로 나타남

2)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 지속증가와 정착기간 장기화

- 2017년 기준 전국평균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인 반면, 전북은 9.2%로 제주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그럼에도 전북 역시 전반적으로 국제결혼이 감소 추세임
- 2017년 기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는 10,900명으로 2007년 대비 41.1%p 증가했으며, 2016년 대비 3.0% 증가함
- 전국 다문화가족원은 전국 총인구의 1.9%를 차지한 반면, 전북지역은 2.2%로 전국 보다 0.3%p 높게 나타남. 다문화가족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완주 순이었으며, 시군별 총 인구대비 다문화가구원 비율은 진안, 장수, 순창, 임실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체류기간별 현황을 보면,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는 5~10년 미만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년 이상이 많았음. 정착기간의 장기화로 언어와 문화차이의 어려움보다 자녀양육, 취업,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한 호소가 증가하고 있음

3)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형태 다양화

- 전북지역 다문화이혼은 전북 전체 이혼 중 6.5%를 차지하며 매년 소폭씩 감소하고 있음. 2017년 기준 다문화 이혼 건수는 총 240건으로 작년보다 55건 감소하였고, 다문화이혼 중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이혼이 204건으로 다문화이혼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혼종류별로는 합의이혼이 57.3%, 재판이혼이 42.7%를 차지하고 있음
- 다문화이혼 중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50.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30.7%, 필리핀 6.0%, 캄보디아 3.6% 순으로 나타남

4) 다문화가족 자녀의 특성 변화

- 2017년 기준 전북의 다문화 출생아수는 751명, 전년 대비 -14.4% 감소함. , 전체 다문화 출생아 수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율은 6.9%에서 6.6%로 감소함. 그럼에도 전국 시도별 다문화 출생 비중은 전남에 이어 전북이 두 번째로 높으며, 전국 평균(5.26%)에 비해 1.4%p 더 높았음
-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 6세 이하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만 7~12세 아동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시군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북의 외국인 주민 자녀 11,256명 중 전주 2,167명, 익산 1,728명, 군산 1,420명, 정읍 931명, 완주 841명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출생 자녀수는 전주 2,120명, 익산 1,676명, 군산 1,377명, 정읍 903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저출산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8만명이 감소하였고 학력인구 또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5년간 다문화학생이 해마다 1만명 이상씩 증가하여 전국 전체 다문화학생은 12만명을 초과함
- 전북지역 다문화학생은 2012년 3,064명에서 지속 증가하여 2018년 6,718명으로 나타남. 전북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중은 약 3.2%로 전국 비중보다 1.0% 높음을 알 수 있음
- 2018년 기준 전북지역 다문화 학생은 총 6,718명 중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이 전체 다문화 학생의 95%이상을 차지함. 중도입국 자녀 170명(2.5%), 외국인 자녀 163명(2.4%)였음
-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이 74%(4,975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학생 14.8%(996명), 고등학생 11.1%(747명)로 나타남

제 2 절 전북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현황

- 본 절에서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현황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다문화수용성조사 자료를 토대로 살펴봄
- 단,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2018년 다문화수용성 조사의 원자료 배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10월 중순으로 잠정 예정됨)되지 않는 시점(2019. 9월 3일 기준)이었고,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원자료 배포 시 지역변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전라북도지역 자료만을 추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다문화수용성조사 자료에 기반한 사회통합 현황 분석을 통해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함. 전라북도 현황과 전국조사 결과의 차이점이 두드러진 분야와 대상 집단을 추출함으로써 전북지역 다문화가족의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 개발의 방향을 설정함

가.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른 사회통합 현황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현황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7079호)* 자료를 토대로 살펴봄. 정부차원(여성가족부)에서 전국단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2009년, 2012년, 2015년, 그리고 2018년,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함
-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조사 발표된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들 중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현황을 나타내는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봄. 즉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현황으로 가족관계, 언어·문화적 적응, 사회적 관계, 자녀양육·교육 및 서비스이용 경험과 요구도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실태조사 등)에 근거,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

- 한편, 공개된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에는 시·도별 구분 변수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전북지역 자료만을 추출하여 자료 분석할 수 없었음. 이에 전국자료를 통한 전반적인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 현황을 살펴봄

1)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 특징

- (조사개요) 조사대상은 만 18세 이상 결혼이민자·귀화자, 그 배우자와 만 9~24세 자녀이며,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1:1 대면 조사로 실시
- 조사기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문항개발 및 조사결과 분석)과 통계청(조사 실시)이며, 조사기간은 2019년 8월 9일 ~ 8월 30일까지 약 22일간 진행됨
- 조사내용은 가구 구성(가구특성, 자녀수, 가구분포, 가구구성원 등),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자녀양육, 가족관계, 사회 및 경제활동, 서비스 수혜경험 등), 한국인 배우자(자녀 돌봄·양육, 가족 내 역할 등), 만 9~24세 자녀(진로,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등)로 이루어짐

〈표 3-23〉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개요

연도	전체 표본수	조사완료					유고가구	조사 응답률
		가구수	가구 구성표	결혼이민자 ·귀화자	배우자	자녀		
2018	100.0 (25,053)	70.1 (17,550)	70.1 (17,550)	68.1 (17,073)	59.9 (15,016)	- (7,095)	29.9 (7,503)	70.1%
2015	100.0 (27,120)	65.8 (17,849)	65.8 (17,849)	63.1 (17,109)	57.3 (15,540)	- (6,079)	34.2 (9,271)	65.8%
2012	100.0 (26,098)	59.5 (15,529)	59.5 (15,529)	58.2 (15,189)	53.4 (13,935)	- (4,797)	40.5 (10,569)	59.5%

주: 2012년: 불응 2.2%(585가구), 불능(대상 외, 전출 등) 38.3%(9,984가구)

2015년: 불응 4.2%(1,127가구), 불능 30.0%(8,144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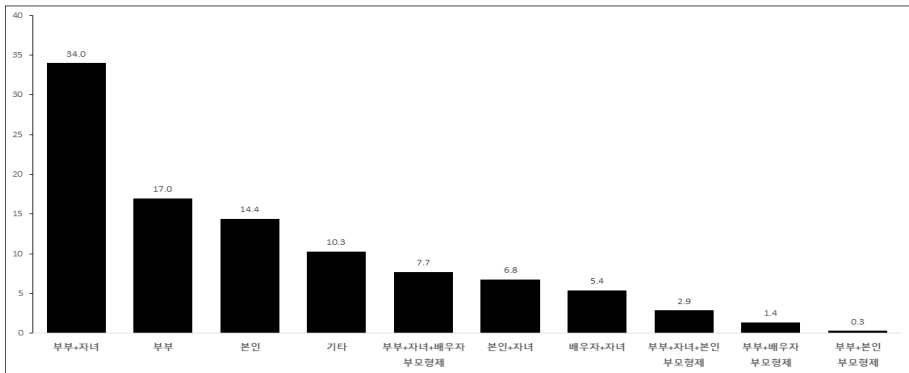
2018년: 불응 3.8%(951가구), 불능 26.2%(6,552가구)

- (조사대상자의 특성) 다문화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92명(전체 국민의 평균 가구원수 2.47명)이었고 결혼이민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02명, 기타귀화자의 경우 2.36명으로 나타남

〈표 3-24〉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참여자의 특성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합계	평균
전체		14.5 (44,551)	27.7 (84,999)	25.8 (79,284)	19.7 (60,468)	12.3 (37,693)	100.0 (306,995)	2.92
다문화 가구 유형	결혼 이민자	11.3	28.2	26.6	20.8	13.2	100.0	3.02
	기타 귀화자	33.9	24.8	21.4	13.3	6.5	100.0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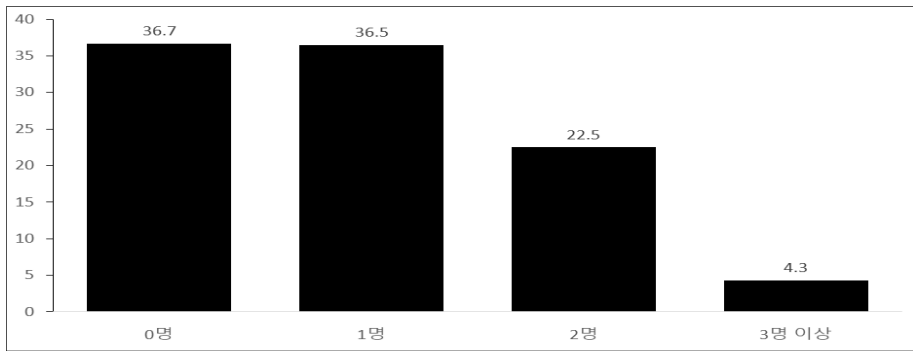
- 다문화가구의 가구구성을 보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3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구가 17.9%로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가 51.0%로 나타남. 다음으로 본인 1인 가구 14.4%, 부부와 자녀와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형제로 이루어진 확대가족은 10.6%로 나타남
- 다문화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0.95명으로 무자녀 가구가 36.7%로 가장 많았고, 1명 있는 가구 36.5%, 2명 22.5%, 3명 이상 4.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4〉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참여자의 가구구성

〈표 3-25〉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참여자의 가구구성

		본인+ 자녀	배우자+ 자녀	본인	부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부부+ 자녀+ 본인 부모 형제	부부+ 배우자 부모 형제	부부+ 본인 부모 형제	부부+ 자녀	부부	기타	합계
전체		6.8 (20,776)	5.4 (16,458)	14.4 (44,107)	7.7 (23,504)	2.9 (8,951)	1.4 (4,175)	0.3 (873)	34.0 (104,389)	17.0 (52,234)	10.3 (31,528)	100.0 (306,995)
다문화 가구 유형	결혼 이민 자	6.9	5.6	11.1	8.5	3.2	1.5	0.3	36.5	18.4	7.9	100.0
	기타 귀화 자	6.0	3.8	33.9	2.7	1.4	0.3	0.3	18.9	8.5	2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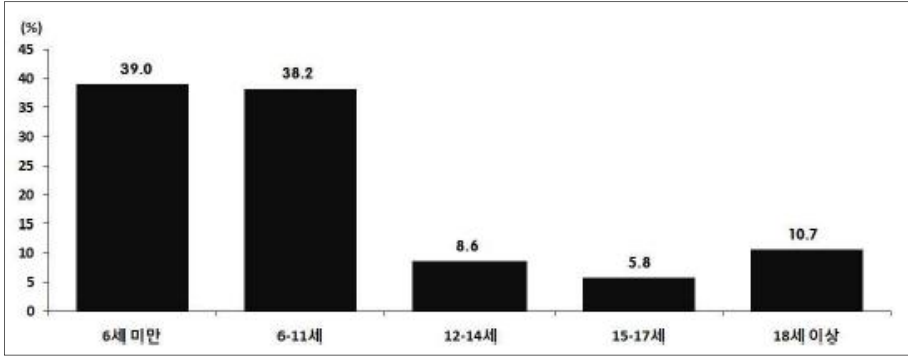


〈그림 3-15〉 다문화가구의 자녀수

〈표 3-26〉 다문화가구의 평균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합계	평균
전체		36.7 (112,791)	36.5 (111,940)	22.5 (68,945)	4.3 (13,319)	100.0 (306,995)	0.95
다문화 가구 유형	결혼 이민자	32.5	38.9	23.9	4.7	100.0	1.02
	기타 귀화자	62.2	21.9	13.9	1.9	100.0	0.56

- 다문화가구 자녀의 평균 연령은 8.32세이며, 6세 미만 자녀가 39.0%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만6-11세)자녀가 38.2%, 중학교(12-14세)가 8.6%, 고등학교(15-17세) 5.8%, 18세 이상은 8.3%로 나타남



〈그림 3-16〉 다문화가구 자녀의 연령

〈표 3-27〉 다문화가구 자녀의 평균 연령

		6세 미만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18~24세	25세이상	합계	평균
전체		39.9 (103,327)	21.9 (57,889)	16.3 (43,248)	8.6 (22,787)	5.8 (15,469)	4.9 (13,010)	3.4 (8,948)	100.0 (264,733)	8.32
다문화 가구 유형	결혼 이민자	39.6	22.3	16.7	8.6	5.3	4.2	3.2	100.0	8.13
	기타 귀화자	33.3	17.7	13.1	8.2	10.8	11.9	5.0	100.0	10.21

- 다문화가구의 평균 월 가구소득은 200-300만원 미만 26.1%로 가장 많고, 100-200만원 미만은 22.4%, 300-400만원 미만은 20.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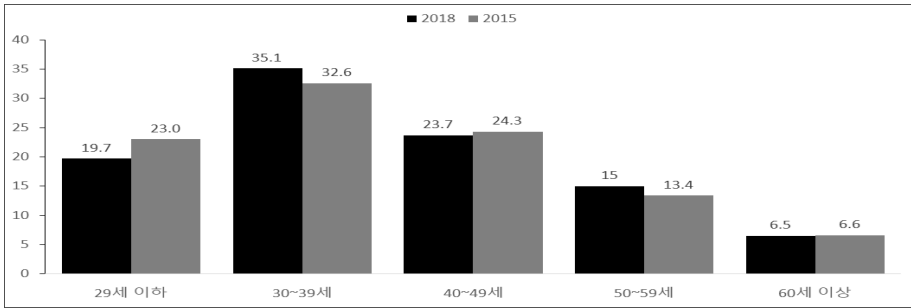
〈표 3-28〉 다문화가구의 월 평균 소득분포

100만 원 미만	100~200 만원	200~300 만원	300~400 만원	400~500 만원	500~600 만원	600만원 이상	계
9.7 (29,901)	22.4 (68,781)	26.1 (80,225)	20.1 (61,727)	11.5 (35,232)	5.1 (15,584)	5.1 (15,544)	100.0 (306,995)

2)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사회통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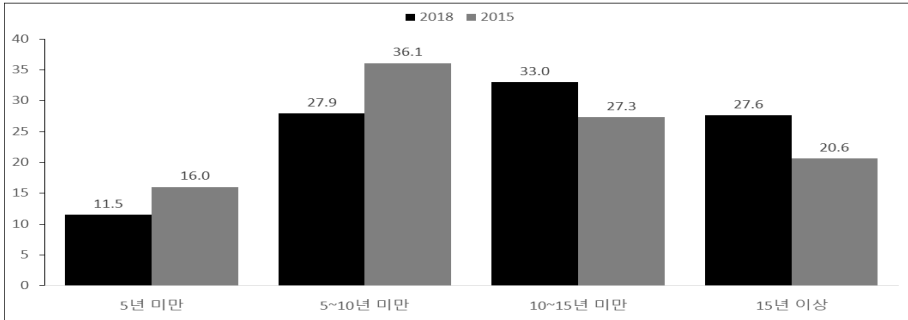
① 인구학적 특성

- (성별) 2018년 조사대상자로 참여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 17.3%, 여성 82.7%로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참여율이 2015년(81.5%)보다 1.2%p 증가함
- (연령)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30~39세가 35.1%로 가장 많았고, 40~49세 23.7%, 29세 이하 19.7% 순으로 나타남
 - 30~39세와 50~59세 연령층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 연령층은 2015년에 비해 감소함



〈그림 3-17〉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연령별 분포

- (국내 거주기간) 10-15년 미만인 33.0%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은 27.9%, 15년 이상 27.6% 순으로 나타남. 특히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중 60.6% 이상이 10년 이상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과 비교 시 10년 미만 비율은 크게 감소한 반면, 10년 이상 비율은 12.7%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화 현상이 두드러짐



〈그림 3-18〉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거주기간별 분포

○ (국적별 분포) 중국(한국계 포함)이 31.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23.4%) > 중국(19.3%) > 필리핀(6.2%) 순으로 나타남

- 2015년과 비교하여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9〉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출신국적별 비율

구분	중국 (한국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미주/ 유럽/ 대양주	일본	캄보 디아	러시아 /중앙 아시아	기타
2018	31.1	23.4	19.3	6.2	4.7	4.2	2.6	2.1	6.4
2015	30.8	20.8	22.4	6.0	4.1	4.5	-	3.6	7.8

○ (혼인상태) 유배우자 비율이 73.5%로 가장 많았고, 이혼/별거비율 16.4%, 사별 4.8%로 나타남

- 2015년과 비교하여 유배우자 비율은 감소, 이혼/별거 비율은 증가함

〈표 3-30〉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출신국적별 비율

구분	유배우자	이혼/별거	사별	미혼	전체
2018	73.5	16.4	4.8	5.2	100.0
2015	88.0	6.9	3.1	3.3	100.0

- (혼인지속기간) 2018년 혼인 지속기간은 평균 9.59년으로 나타남. 5~10년 미만이 37.0%로 가장 많고, 10~15년 미만(25.8%), 5년 미만(22.1%) 등의 순으로 많았음. 점차 혼인지속기간 비율은 우향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지속기간은 2015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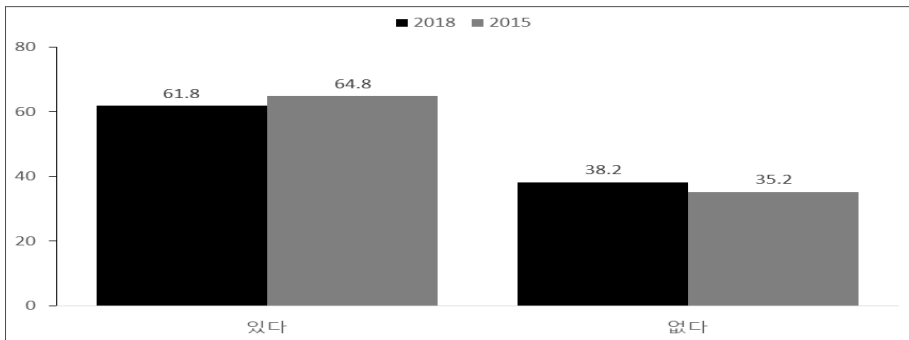
〈표 3-3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혼인지속기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년 이상	계	평균
2012년	36.7	34.9	14.5	14.0	100.0	8.50
2015년	24.9	38.5	19.1	17.6	100.0	9.77
2018년	22.1 (45,516)	37.0 (76,141)	25.8 (53,212)	15.1 (31,019)	100.0 (205,887)	9.59

② 결혼생활 및 이혼

- (부부갈등 경험) 지난 1년간 배우자와 갈등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부부갈등 경험이 있다는 61.8%, 없다는 38.2%로 나타났으며, 2015년 결과와 비교 시 부부갈등 경험 비율이 약 3.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거주기간별로는 5-10년 미만 집단이 66.4%로 부부갈등 경험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15년 미만 집단 62.3%, 5년 미만 집단 60.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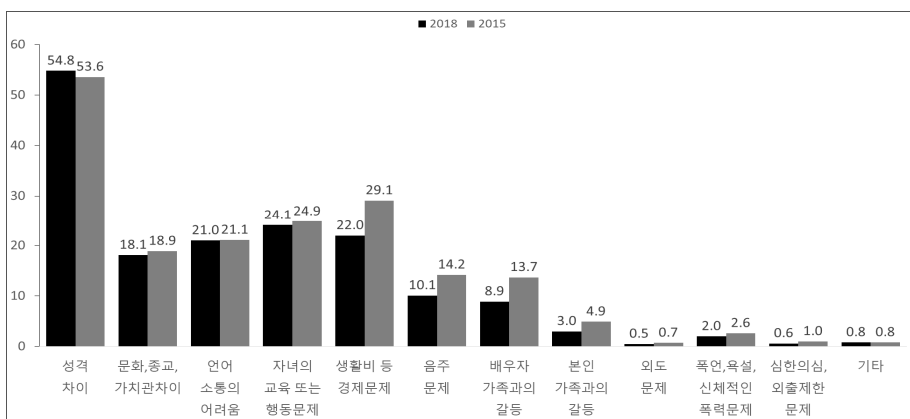
〈그림 3-19〉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2015, 2018)

〈표 3-32〉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2018)

구분		있다	없다	합계
교육수준	초졸(무학포함)	60.5	39.5	100.0
	중졸	61.7	38.3	100.0
	고졸	61.6	38.4	100.0
	대졸 이상	63.3	36.7	100.0
국내 거주기간	5년 미만	60.9	39.1	100.0
	5~10년 미만	64.4	35.6	100.0
	10~15년 미만	62.3	37.7	100.0
	15년 이상	57.9	42.1	100.0

○ (부부갈등 사유) 부부갈등의 주요 사유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성격차이’가 5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교육과 행동문제 24.1% > 경제문제 22.0% > 언어소통 어려움 2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 시 경제문제, 음주문제,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 국내 거주기간별로는 5년 미만 집단은 성격차이(49.8%), 언어소통 어려움 (36.1%)과 문화적 차이(24.8%)가 높게 나타난 반면, 5~10년 미만 집단과 10~15미만 집단은 성격차이, 자녀교육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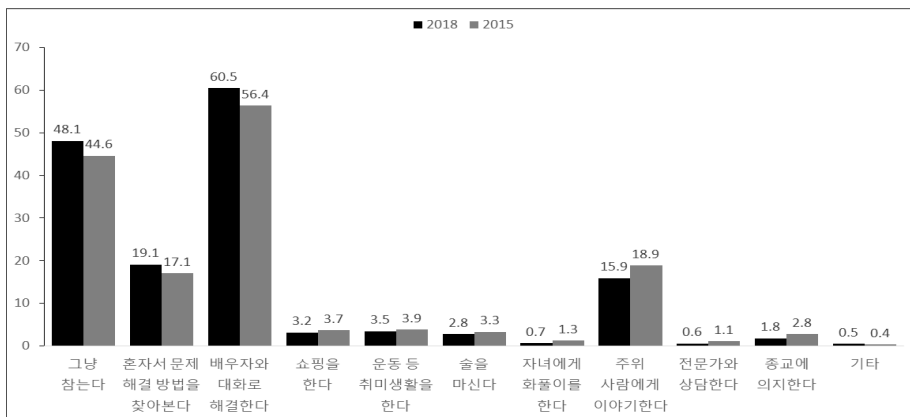


〈그림 3-20〉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와의 갈등 사유(2015, 2018)

〈표 3-33〉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와의 갈등 사유(2015,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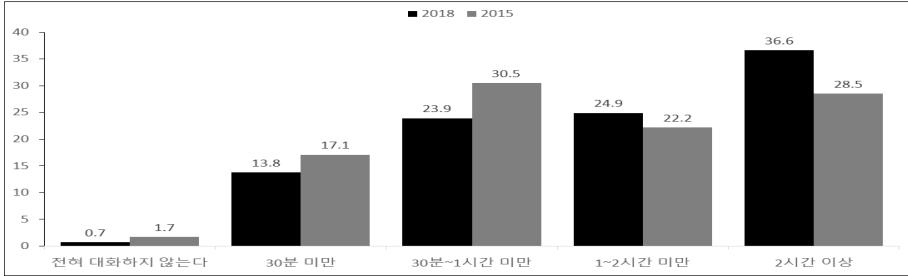
	성격 차이	문화, 종교, 가치관 차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	자녀의 교육 또는 행동 문제	생활비 등 경제 문제	음주 문제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본인 가족과의 갈등 (가족 초청, 물질적 지원등)	외도 문제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 문제	심한 의심, 외출 제한 (여권 숨김등) 문제	기타
전체(2015)	53.6	18.9	21.1	24.9	29.1	14.2	13.7	4.9	0.7	2.6	1.0	0.8
전체(2018)	54.8 (69,747)	18.1 (23,034)	21.0 (26,734)	24.1 (30,696)	22.0 (28,032)	10.1 (12,845)	8.9 (11,329)	3.0 (3,858)	0.5 (638)	2.0 (2,547)	0.6 (818)	0.8 (1,063)
5년 미만	49.8	24.8	36.1	17.1	15.6	9.0	8.8	4.3	0.3	1.2	0.4	0.6
5~10년 미만	53.2	20.7	26.2	25.3	21.0	9.4	9.2	2.7	0.4	1.6	0.8	0.6
10~15년 미만	55.4	15.7	16.1	26.9	22.7	10.4	9.3	2.4	0.7	2.5	0.5	1.2
15년 이상	60.2	12.6	9.0	23.2	27.4	11.7	7.8	3.6	0.7	2.5	0.8	0.8

- (부부갈등 대처방법) ‘대화로 해결’한다가 60.5%로 가장 많았고, ‘그냥 참음’ 48.1%, ‘혼자 문제 해결 방법 찾아봄’ 19.1%, ‘주위사람에게 이야기함’ 15.9% 순으로 나타남. 2015년 결과와 비교 시 ‘대화로 해결’과 ‘그냥 참는다’는 소폭 증가한 반면, ‘주위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감소함



〈그림 3-21〉 유배우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와의 갈등 시 대처 방법(1+2순위)(2015, 2018)

- (하루 평균 부부간 대화시간) ‘2시간 이상 대화(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포함)’가 36.6%로 가장 많았고,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는 0.7%로 나타남. 2015년과 비교 시 부부간 대화시간은 다소 증가함



〈그림 3-2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시간(2015, 2018)

〈표 3-34〉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시간(2015, 2018)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합계
전체(2015)	1.7	17.1	30.5	22.2	28.5	100.0
전체(2018)	0.7 (1,442)	13.8 (28,503)	23.9 (49,304)	24.9 (51,365)	36.6 (75,273)	100.0 (205,887)

- (부부간 문화적 차이 경험) 지난 1년간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느꼈는지에 대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1%가 문화적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한 반면 55.9%는 문화적 차이의 정도차이는 있지만 문화적 차이를 느꼈다고 응답함. 특히,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부부간 연령차이가 클수록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

〈표 3-35〉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부부간 문화적 차이 경험 여부(2018)

		전혀 느낀 적 없다	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합계	평균(점)
전체		44.1 (90,721)	44.5 (91,566)	9.1 (18,667)	2.4 (4,932)	100.0 (205,887)	1.70
혼인 기간	5년 미만	34.8	49.9	12.2	3.0	100.0	1.83
	5~10년 미만	39.7	48.2	9.9	2.3	100.0	1.75
	10~15년 미만	45.9	44.0	7.7	2.5	100.0	1.67
	15년 이상	65.4	28.1	4.9	1.7	100.0	1.43
부부간 연령 차이	5년 미만	59.5	33.3	5.7	1.5	100.0	1.49
	5~10년 미만	47.2	42.1	8.1	2.6	100.0	1.66
	10~15년 미만	39.5	47.9	9.6	3.0	100.0	1.76
	15년 이상	28.1	56.0	13.0	2.8	100.0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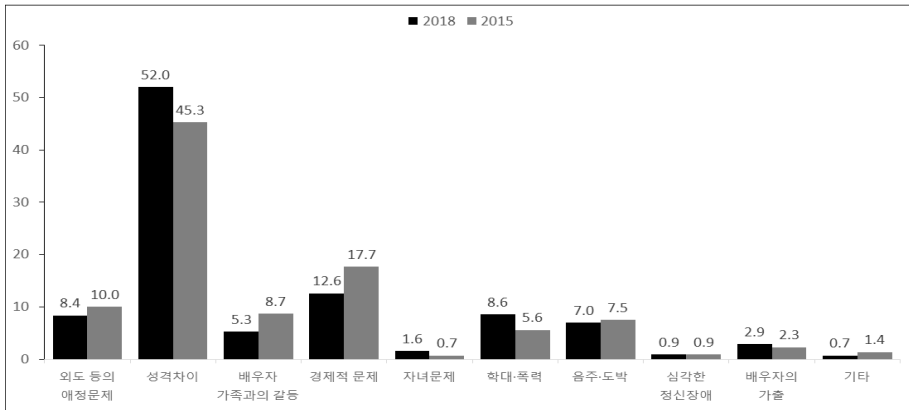
- (문화적 차이 요인) 복수응답결과 50.7%가 식습관에서 문화적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의사소통 방식 39.6%, 자녀양육 방식 28.2%, 가족행사 등 가족의례 28.0%, 경제생활차이 20.4% 순으로 나타남

〈표 3-36〉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문화적 차이 유형(복수응답)(2018)

구분		식습관	옷 입는 습관	자녀 양육 방식	가사 분담 방식	부모 부양 방식	가족의례	종교적 차이	경제 생활 차이	의사 소통 방식
전체		50.7 (58,334)	7.8 (8,964)	28.2 (32,456)	13.6 (15,680)	10.2 (11,735)	28.0 (32,197)	6.7 (7,720)	20.4 (23,515)	39.6 (45,556)
연령	29세이하	56.3	9.1	29.1	11.9	9.6	25.8	5.5	20.6	40.5
	30~39세	49.1	7.4	32.6	14.9	12.6	28.6	6.6	19.3	38.7
	40~49세	47.0	6.3	26.1	14.1	8.9	31.7	7.8	20.8	38.4
	50~59세	49.6	8.2	11.6	12.9	4.0	22.0	8.3	22.8	43.6
	60세이상	46.5	15.5	3.0	6.8	4.3	25.3	6.7	29.3	42.7

- (이혼별거 사유) ‘성격차이’가 5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 12.6%, ‘학대·폭력’ 8.6%, 외도 등의 ‘애정문제’ 8.4% 순으로 나타남

- 2015년에 비해 2018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요인은 성격차이(6.7%p 증가), 학대·폭력(3%p 증가), 자녀문제(0.9%p 증가)로 나타남
- 무엇보다 학대·폭력은 연령별로 29세 이하 집단에서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내 거주기간은 5~10년 미만인 응답자들에게 높게 나타남



〈그림 3-23〉 이혼별거 사유(2015, 2018)

〈표 3-37〉 이혼별거 사유(2012, 2015, 2018)

구분		애정 문제	성격 차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학대·폭력	음주·도박	정신 장애	배우자 의가솔	기타	합계
전체 (2012)		5.1	48.1	7.0	20.7	-	4.9	5.9	0.8	3.1	4.3	100.0
전체 (2015)		10.0	45.3	8.7	17.7	0.7	5.6	7.5	0.9	2.3	1.4	100.0
전체 (2018)		8.4	52.0	5.3	12.6	1.6	8.6	7.0	0.9	2.9	0.7	100.0
연령	29세이하	11.7	39.6	9.4	7.4	3.7	24.8	1.4	0.0	0.0	2.0	100.0
	30~29세	9.4	43.3	9.2	11.2	1.8	11.0	9.8	1.2	2.8	0.3	100.0
	40~49세	8.3	56.5	6.1	11.2	1.6	6.8	5.1	1.0	2.2	1.3	100.0
	50~59세	6.6	58.9	1.4	16.2	0.7	3.8	9.2	0.7	2.3	0.3	100.0
	60세이상	8.7	50.3	2.4	13.7	1.9	9.5	3.6	1.2	7.9	0.7	100.0
국내 거주 기간	5년미만	8.8	37.6	24.7	3.2	11.9	8.2	0.0	0.0	0.7	4.9	100.0
	5~10년미만	13.1	37.4	11.9	11.6	2.2	14.9	4.8	0.7	1.4	1.9	100.0
	10~15년미만	8.7	47.7	4.9	14.8	1.6	9.1	9.0	0.9	2.8	0.5	100.0
	15년이상	6.6	60.8	3.1	11.2	1.1	6.2	6.1	1.0	3.4	0.5	100.0

- 이혼/별거 이후 자녀양육자는 본인(결혼이민자·귀화자)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94.9%로 나타났고,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를 받고 있는 비율은 23.5%로 나타남

〈표 3-38〉 이혼/별거 이후 자녀양육 책임자

	본인	배우자	기타	합계
2012년	75.6	18.8	5.6	100.0
2015년	65.3	29.8	4.9	100.0
2018년	94.9	4.5	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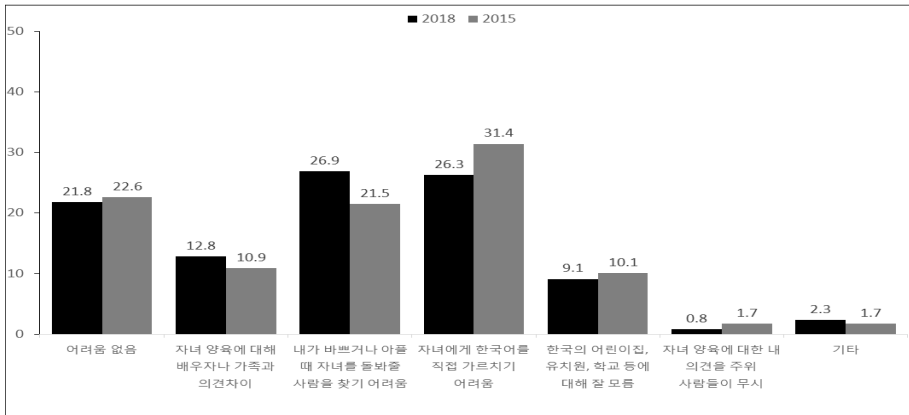
- 자녀양육비 수령은 2012년 9.5%, 2015년 18.6%, 2018년 23.5%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나 여전히 76.5%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표 3-39〉 이혼/별거 이후 자녀양육비 수령 여부

	받고 있음	받고 있지 않음	합계
2012년	9.5	90.5	100.0
2015년	18.6	81.4	100.0
2018년	23.5	76.5	100.0

③ 자녀양육·교육

- (만 5세 이하 자녀양육의 어려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 찾기 어려움’이 2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에게 한국어 직접 가르키는 것’의 어려움 26.3%, ‘양육관에 대한 배우자와 다른 가족과의 의견차이’ 12.8%, ‘어린이집/학교에 대해 잘 몰라서’ 9.1% 등으로 순으로 나타남. 반면, ‘어려움 없다’ 비율도 21.8% 나타남. 국내거주기간별로는 5년 미만 집단은 ‘자녀에게 한국어 직접 가르치기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고, 5-10년 미만 집단은 ‘자녀에게 한국어 직접 가르치기’와 ‘바쁠 때 자녀 돌봐줄 사람 찾기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10-15년 미만 집단과 15년 이상 집단은 ‘바쁠 때 자녀 돌봐줄 사람 찾기 어려움’이 가장 높았음
- 2015년 결과와 비교 시 ‘자녀 한국어 가르치기의 어려움’은 소폭 감소한 반면, ‘급할 때 자녀 돌봐줄 사람 찾기의 어려움’과 ‘양육관에 대한 의견차이’는 소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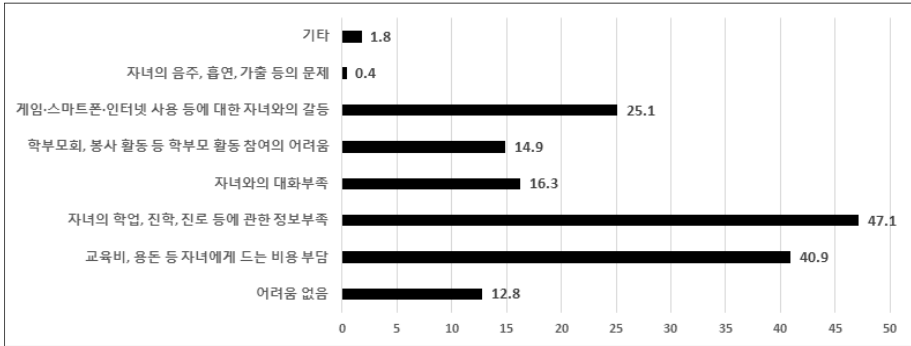


〈그림 3-24〉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만 5세이하 자녀의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점(2015, 2018)

〈표 3-40〉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만 5세이하 자녀 양육의 어려움(2015, 2018)

구분		어려움 없음	자녀 양육에 대해 가족과의견차이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움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움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해 잘 모름	자녀 양육에 대한 내 의견을 주위 사람들이 무시	기타	합계
전체 (2015)		22.6	10.9	21.5	31.4	10.1	1.7	1.7	100.0
전체 (2018)		21.8	12.8	26.9	26.3	9.1	0.8	2.3	100.0
거주 기간	5년 미만	20.3	13.3	19.0	35.1	9.3	0.7	2.3	100.0
	5~10년미만	18.9	12.8	26.3	30.3	9.2	0.7	1.9	100.0
	10~15년미만	25.1	11.1	33.7	17.4	9.0	1.2	2.5	100.0
	15년이상	32.8	16.0	33.5	4.8	7.7	0.9	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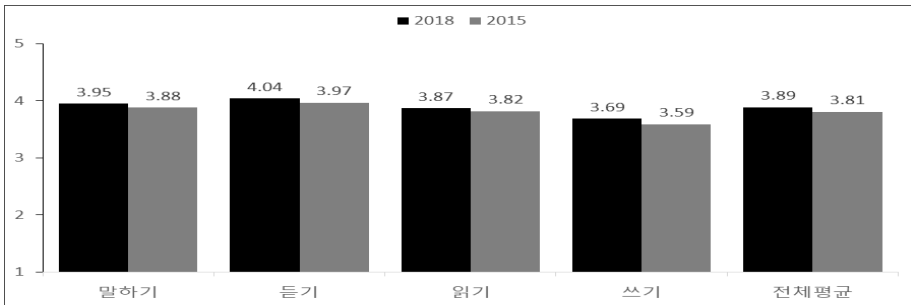
○ (만 6-24세 자녀 양육의 어려움)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학업/진학/진로에 관한 정보 부족이 47.1%로 가장 많았고, 교육비/용돈 등 비용 부담 40.9%, 게임/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 25.1%, 자녀와의 대화 부족 16.3%, 학부모 활동참여의 어려움 14.9% 순으로 나타남. 반면 어려움 없음은 12.8%로 만 5세 이하 자녀의 부모로서의 어려움 없음(21.8%) 비율보다 낮게 나타남



〈그림 3-25〉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만 6~245세 자녀 양육의 어려움(1+2순위, 2018)

④ 한국어 능력 및 사회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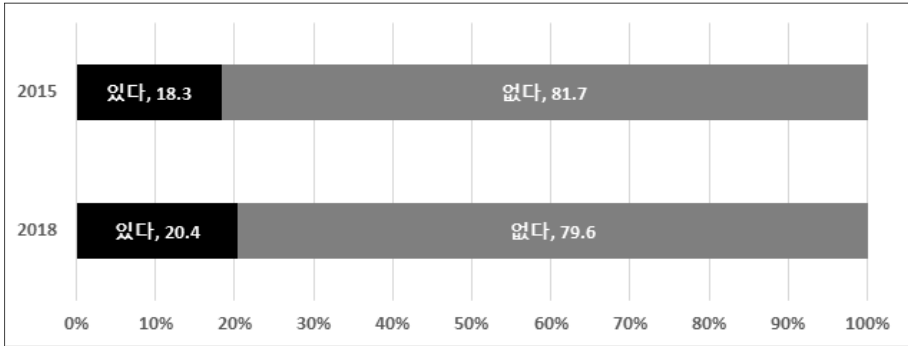
- (한국어 능력) 한국어 ‘약간 잘한다 + 매우 잘한다’로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말하기 65.0%, 듣기 68.9%, 읽기 62.7%인 반면 쓰기는 54.9%로 나타나 쓰기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 시 모든 영역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주 : 전혀 못한다=1점, 별로 못한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잘한다=4점 매우 잘한다=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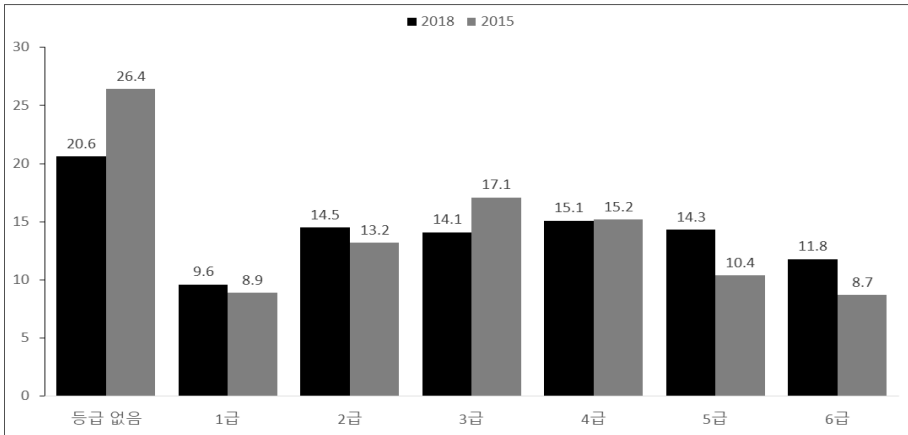
〈그림 3-26〉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어 능력(2015, 2018)

- (한어능력시험(TOPIK) 응시경험) TOPIK 응시 경험자는 20.4%, 비 응시자는 79.6%로 응시한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더 많았음. 2015년과 비교 시 응시경험 비율이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7〉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경험(2015,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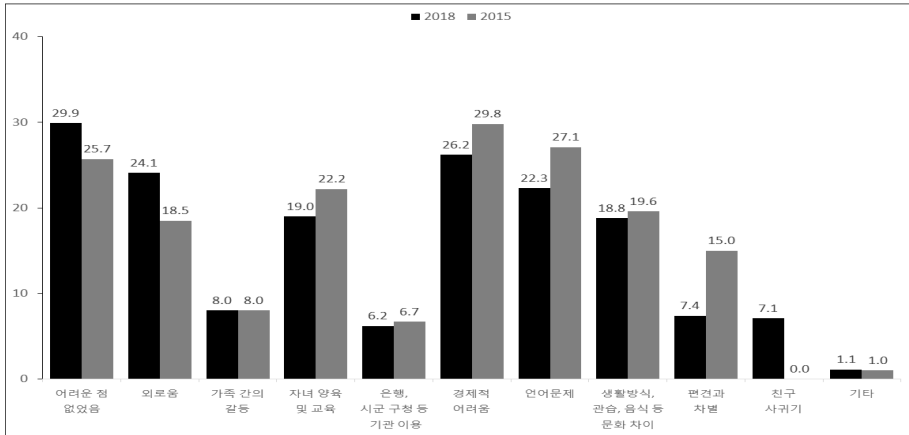
- TOPIK 응시자 중 등급별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면, 응시자 중 79.4%가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1급 9.6%, 2급 14.5%, 3급 14.1%, 4급 15.1%, 5급과 6급 합하여 26.1%로 나타남, 1급과 2급 초급은 전체 중 24.1%로 해당됨. 특히, 5급과 6급 취득비율은 2015년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28〉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2015, 2018)

- (한국생활의 어려움) 한국생활에 ‘어려움 없음’ 비율이 29.9%로 2015년(25.7%) 보다 4.2%p 증가함. 반면, 한국생활의 어려움 중 ‘외로움’ 24.1%로 2015년 보다 5.6%p 증가하였고, ‘친구사귀기 어려움’이 7.1%로 나타나 심리·정서적 문제와 사회적 관계 형성 문제에 직면한 이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거주기간별로는 5년 미만 집단은 '언어문제(48.7%)'와 '문화차이(38.0%)', '외로움(30.6%)'로 나타난 반면, '어려움 없음'은 단 13.6%로 나타남. 5-10년 미만 집단은 언어문제(31.8%), 외로움(25.5%), 문화차이(24.6%), 자녀양육과 교육(24.1%) 순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집단은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자녀양육·교육 순으로 응답함. 한편, '어려운 점이 없었음'의 비율은 국내거주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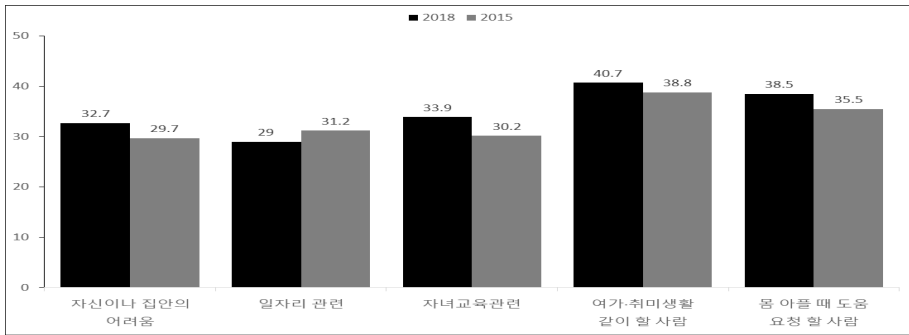
〈그림 3-29〉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난 1년간 한국생활의 어려움(복수응답)(2015, 2018)

-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어려움 의논할 사람, 여가/취미 같이 할 사람, 도움을 요청할 사람 등) 정도는 한국 사회로의 적응 수준 및 적응과정에서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음. 사회적 관계 관련 문항별로 약 30%에서 40% 가량이 가족 이외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고 응답함
 - 특히 여가/취미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 비율이 40.7%, 38.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면, 각 문항별로 모국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녀교육 관련 의논상대는 모국인 보다 한국인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어려움이 있거나 정보가 필요할 경우 가족 이외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논할 한국 인이나 모국인 상대가 없는 경우가 다소 증가해 사회적 관계의 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4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적 관계(요약)(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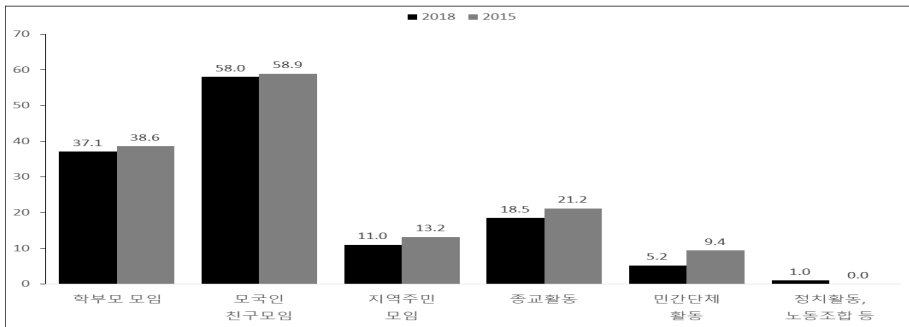
	있다				없다	합계
	한 집단만			두 집단 이상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자신이나 집안 어려움 의논하는 사람	31.7	19.6	1.4	14.6	32.7	100.0
일자리 관련 의논하는 사람	28.4	25.8	1.1	15.8	29.0	100.0
자녀교육 관련 의논하는 사람	25.0	27.1	1.2	12.8	33.9	100.0
여가 취미생활 같이할 사람	27.5	18.3	1.4	12.2	40.7	100.0
몸 아플 때 도움 요청할 사람	27.6	21.5	0.9	11.6	38.5	100.0

주: 본 조사에서 사회적 관계는 국내 거주자에 한정된 것임.



〈그림 3-30〉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적 관계 '없음' 비율(2015, 2018)

○ (모임·활동 참여경험) 지난 1년간 각종 모임·활동 참여경험은 2015년보다 감소함. 모국인 친구모임(58.0%), 학부모 모임(37.1%), 종교활동(18.5%), 지역주민 모임(11.0%), 민간단체 활동(5.2%), 정치활동/노동조합(1.0%) 순으로 나타남. 지역주민 모임, 민간단체활동, 정치활동 등의 참여경험은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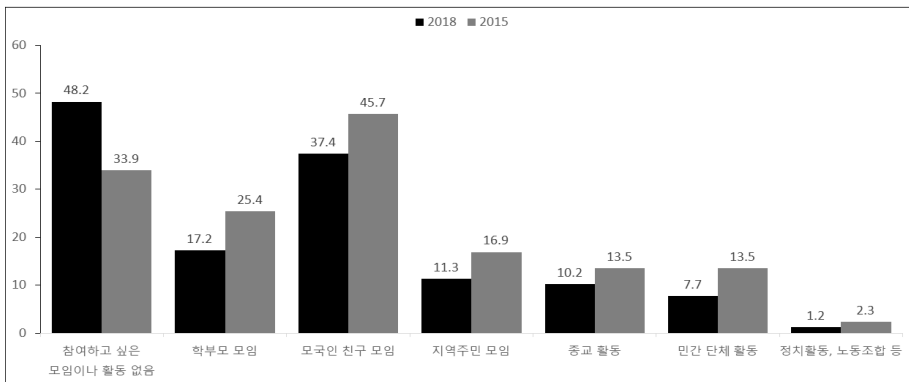
〈그림 3-3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난 1년간 모임·활동별 참여 경험(2015, 2018)

○ 향후 참여하고 싶은 모임·활동이 없다(48.5%)는 비율은 2015년 조사 결과에 비해 14.6%p 증가한 반면, 향후 각종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비율은 2015년도 비해 다소 감소함

- 국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모국인 친구모임은 향후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고,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나 활동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음

〈표 3-4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임활동 참여 의향(2015, 2018)

		없음	학부모 모임	모국인 친구 모임	지역주민 모임	종교 활동	민간단체 활동	정치, 노동조합 등
전체 (2015)		33.9	25.4	45.7	16.9	13.5	13.5	2.3
전체 (2018)		48.2	17.2	37.4	11.3	10.2	7.7	1.2
거주 기간	5년 미만	35.6	20.0	52.2	12.5	9.7	9.2	1.1
	5~10년미만	40.6	24.4	44.5	12.6	9.6	8.5	1.6
	10~15년미만	52.1	17.2	34.0	10.5	9.3	6.9	1.0
	15년이상	57.6	8.8	28.2	10.5	12.0	7.3	1.1



〈그림 3-3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임활동 참여 의향(2015, 2018)

○ (모임과 활동 참여 시 어려움) 응답자의 61.4%가 모임/활동 참여 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고(2015년에 비해 7.1%p 감소),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모임/활동 참여 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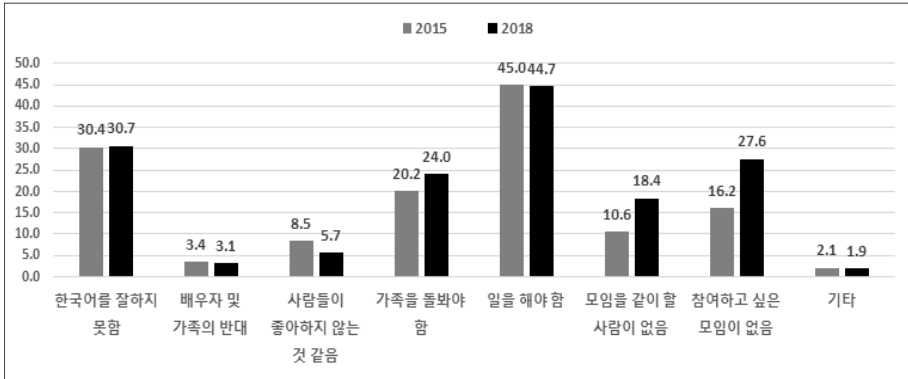
〈표 3-43〉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임활동 참여 시 어려움(2015, 2018)

구분		어려움 있음	어려움 없음	합계
전체 (2015)		68.5	31.5	100.0
전체 (2018)		61.4	38.6	100.0
국내 거주 기간	5년 미만	72.6	27.4	100.0
	5~10년 미만	68.5	31.5	100.0
	10~15년 미만	61.1	38.9	100.0
	15년 이상	50.0	50.0	100.0

- (모임과 활동 참여가 어려운 주요 이유) 응답자의 44.7%가 ‘일을 해야 해서’ 모임/활동 참여가 어렵다고 했고, 다음으로 ‘한국어를 잘 못 해서’ 30.7%, ‘참여하고 싶지만 모임이 없어서’ 27.6%, ‘가족을 돌봐야 해서’ 24.0%, ‘모임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18.4%로 나타남
- 2015년 결과 대비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 없어서’, ‘가족을 돌봐야 해서’, ‘모임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를 모임/활동 참여의 어려움으로 나타낸 비율이 다소 높아짐
 - 국내 거주기간별로 5년 미만 집단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모임/활동 참여가 어렵다고 했고, 5년 이상 집단은 일을 해야 해서 모임/활동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함

〈표 3-44〉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임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2015, 2018)

구분		한국어를 잘하지 못함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음	가족을 돌봐야 함	일을 해야 함	모임을 같이 할 사람이 없음	참여하 고 싶은 모임이 없음	기타
전체 (2015)		30.4	3.4	8.5	20.2	45.0	10.6	16.2	2.1
전체 (2018)		30.7	3.1	5.7	24.0	44.7	18.4	27.6	1.9
국내 거주 기간	5년 미만	61.8	3.9	3.8	26.3	20.1	22.7	22.7	0.5
	5~10년 미만	39.6	3.5	5.4	30.9	40.9	19.1	23.1	1.5
	10~15년 미만	22.5	2.8	6.4	22.4	52.3	17.3	28.3	1.9
	15년 이상	11.7	2.5	6.3	15.4	53.5	16.4	35.8	3.2



〈그림 3-33〉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임활동 참여시 어려운 점(복수응답)(2015, 2018)

⑤ 사회적 차별 경험 및 대처방법

- (차별 경험) 한국생활을 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은 30.9%로 2015년에 비해 2.4%p 감소함. 국내 거주기간별로 5년 미만 집단의 차별 경험이 35.9%로 가장 높았고,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차별경험 비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5〉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2015, 2018)

	있다	없다	합계
전체 (2015)	33.3	66.7	100.0
전체 (2018)	30.9	6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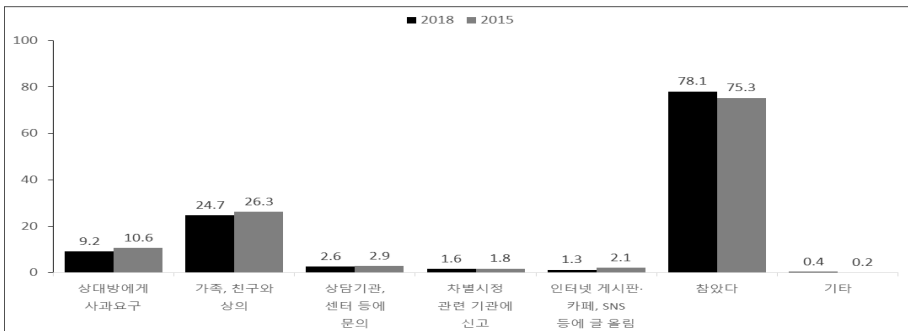
- (사회적 공간별 차별경험) 직장/일터에서의 차별 경험(가끔, 자주, 매우 자주)이 66.9%로 가장 높았고,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각 10.9%, 4.8%로 상대적으로 그 빈도도 높게 나타남. 반면 집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차별 경험은 각각 19.1%, 21.4%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3-46〉 사회적 공간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요약)(2018)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가끔 차별을 받았다	자주 차별을 받았다	매우 자주 차별을 받았다	합계	평균
거리나 동네	56.7	37.7	4.2	1.3	100.0	1.50
상점, 음식점, 은행 등	55.6	38.0	4.7	1.7	100.0	1.53
공공기관	78.6	17.5	2.3	1.5	100.0	1.27
직장·일터	33.1	51.3	10.9	4.8	100.0	1.87
재녀의 학교나 보육시설	69.7	25.6	3.5	1.2	100.0	1.36
집(가족관계, 친척 등)	80.9	15.5	2.1	1.5	100.0	1.24

주: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1점) ~ 매우 자주 차별 받았다(4점)

-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 차별 경험 시 ‘참았다’ 비율이 78.1%로 가장 많았고, 2015년 대비 2.8%p 증가함. 그 다음으로 가족/친구와 상의 24.7%, 상대방에게 사과 요구 9.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4〉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차별 대처 방법(복수응답)(2015, 2018)

⑤ 이용 서비스 현황

- (이용서비스)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자가 60.9%로 2015년에 비해 6.0%p 증가함. 한국어교육 및 한국사회교육 이용 경험자는 5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신/출산 지원 45.5%, 가정 방문을 통한 각종교육 44.0%, 일자리 교육·소개가 32.9%로 나타남

- 국내 거주기간별로 5년 미만 집단과 5-10년 미만 집단은 한국어 교육, 임신·출산지원,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0년 이상 집단은 일자리 교육 및 소개, 각종상담, 자녀학습지원에 대한 이용이 높았음

〈표 3-47〉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원서비스별 이용 경험(복수응답)(2015, 2018)

구분		가정 방문 통한 교육	한국어, 사회 적응 교육	통번역 서비스 지원	임신·출산 지원	부모 교육	자녀 이중 언어 교육	자녀 생활 학습 지원	사회 활동 지원 (자조 모임)	각종 상담	일자리 교육 소개	아이 돌보미 지원
2015		40.7	51.2	5.5	22.7		9.7	20.7	5.0	10.4	23.1	9.2
2018		44.0	51.8	15.5	45.5	21.2	15.1	23.3	13.0	27.5	32.9	17.4
국내 거주 기간	5년미만	51.0	67.8	20.9	53.4	20.4	11.1	11.6	12.0	22.7	16.5	15.0
	5~10년미만	53.1	62.6	20.3	54.9	25.4	17.9	23.1	12.8	25.5	28.9	19.5
	10~15년미만	41.9	46.6	12.8	43.9	21.3	16.3	28.6	14.0	28.7	37.8	18.5
	15년이상	26.0	29.8	7.7	25.7	14.4	11.3	23.7	12.4	32.8	43.9	13.3

- (필요 지원서비스 요구) 일자리 교육/소개에 대한 요구가 3.51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3.22점),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교육(3.17점), 각종 상담(3.14점) 순으로 나타남
 - 2015년 결과와 비교 시 자녀언어발달지원, 자녀 학습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을 제외한 지원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소폭씩 상승함
 - 국내 거주기간별로 5년 미만 집단은 한국어교육/한국사회적응 교육, 가정방문 교육, 임신/출산지원, 부모교육 지원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했고, 5-10년 미만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교육 지원, 자녀학습지원, 그리고 일자리교육과 일자리 소개 지원서비스 욕구가 높았음

〈표 3-48〉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5점기준)(2015, 2018)

구분		가정 방문 통한 교육	한국어, 사회 적응 교육	통번역 서비스 지원	임신·출산 지원	부모 교육	자녀 이중 언어 교육	자녀 생활 학습 지원	사회 활동 지원 (자조 모임)	각종 상담	일자리 교육 소개	아이 돌보미 지원
2015		3.11	2.97	2.44	2.47		2.72	3.13	2.70	2.89	3.30	2.78
2018		3.17	3.22	2.79	2.98	2.94	2.68	2.87	2.87	3.14	3.51	2.71
국내 거주 기간	5년미만	3.86	4.05	3.39	3.67	3.50	3.09	3.11	3.27	3.53	3.67	3.08
	5~10년미만	3.61	3.67	3.16	3.38	3.31	3.13	3.32	3.14	3.42	3.71	3.20
	10~15년미만	3.09	3.12	2.67	2.84	2.89	2.65	2.89	2.82	3.09	3.55	2.67
	15년이상	2.53	2.56	2.30	2.34	2.39	2.08	2.28	2.47	2.75	3.18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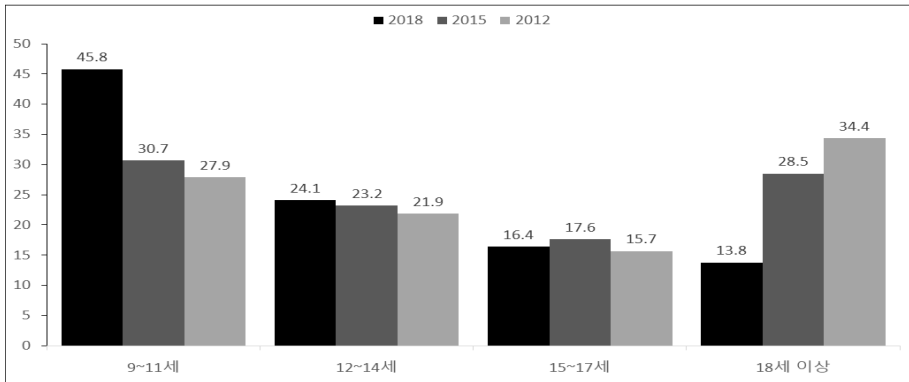
3) 만 9~24세 다문화자녀의 사회통합 현황

① 인구학적 특성

- (성별) 여성 49.3%, 남성 50.7%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다소 많았음
- (연령) 연령별로는 9~11세가 45.8%로 가장 많았고, 12~14세 (24.1%), 15~17세(16.4%), 18세이상(13.8%) 등의 순이었음

〈표 3-49〉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별연령별 분포(2018)

구분		국내에서만 성장		외국 거주 및 성장		
				외국 거주경험	외국에서 주로 성장	전체
계		100.0 (79,141)	100.0 (15,383)	100.0 (8,905)	100.0 (6,478)	100.0 (94,524)
성별	여성	49.9	46.3	46.8	45.7	49.3
	남성	50.1	53.7	53.2	54.3	50.7
연령	9~11세	49.2	28.3	32.8	22.0	45.8
	12~14세	24.3	23.0	27.9	16.3	24.1
	15~17세	16.2	17.3	16.2	18.8	16.4
	18세 이상	1.3	31.4	23.1	42.9	13.8



〈그림 3-35〉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도별연령별 분포(2012, 2015,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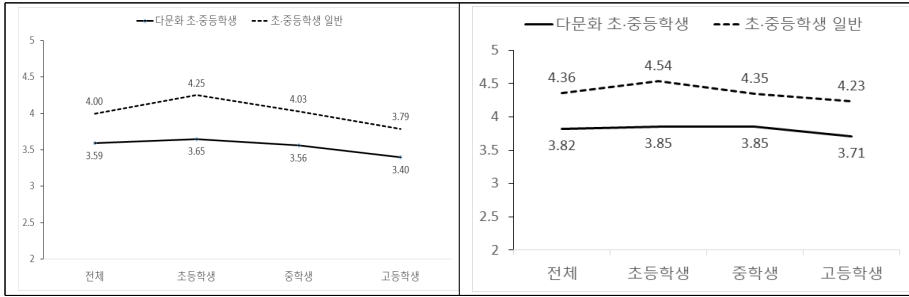
② 가정생활

- (부모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다문화가족 자녀가 아버지와 평균 대화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30분 미만 33.4%로 가장 많고, 30분~1시간 미만이 25.9%로, 청소년기 자녀의 59.3%는 하루 평균 1시간 미만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어머니와 대화시간을 살펴보면, 30분~1시간 미만이 24.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시간 이상(22.1%), 30분 미만(21.7%) 등의 순이었음. 비교해보면 주로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0〉 다문화가족 자녀의 부모님과 하루 평균 대화시간(2018)

	전혀 하지 않음	30분미만	30분~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합계
아버지와 대화	8.6	33.4	25.9	18.4	13.7	100.0
어머니와 대화	10.5	21.7	24.2	21.5	22.1	100.0

- (부와 모와의 관계 만족도) 초·중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을 비교해보면, 다문화학생의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가 3.59점으로 비다문화학생(4.00점)에 비해 낮았음. 한편,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양상은 다문화학생 및 비다문화학생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나, 전 학교급에 걸쳐 다문화학생의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서 재인용

〈그림 3-1〉 초·중등 다문화 학생 및 비다문화 학생의 아버지/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2017)

③ 다문화 정체성

-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주위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2018년 평균 점수 3.48점으로 2015년에 비해 0.1점 상승함. 여학생은 3.51점, 남학생은 3.45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음. 연령별로는 9~11세 집단 청소년이 3.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51〉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2015,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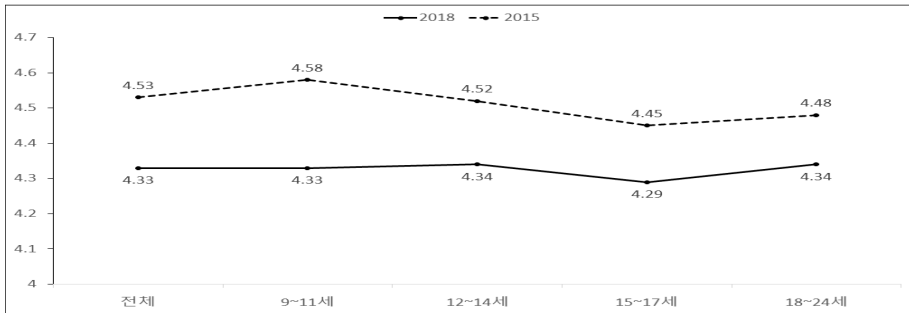
		매우싫다	싫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좋다	합계	평균
전체 (2015)		2.4	7.9	53.0	22.1	14.5	100.0	3.38
전체 (2018)		1.8	7.5	47.5	27.6	15.6	100.0	3.48
성별	여성	2.3	8.5	43.3	28.0	17.9	100.0	3.51
	남성	1.2	6.5	51.5	27.2	13.5	100.0	3.45
연령	9~11세	1.3	7.1	45.4	30.0	16.3	100.0	3.53
	12~14세	2.4	9.8	44.4	25.4	18.1	100.0	3.47
	15~17세	1.8	7.8	52.1	25.1	13.2	100.0	3.40
	18~24세	2.0	4.4	54.5	26.9	12.1	100.0	3.43

④ 학교생활

- (학교생활 적응)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도는 5점 만점 척도 중 평균 4.33점으로 재학 자녀의 약 86.6%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약 2.5% 정도가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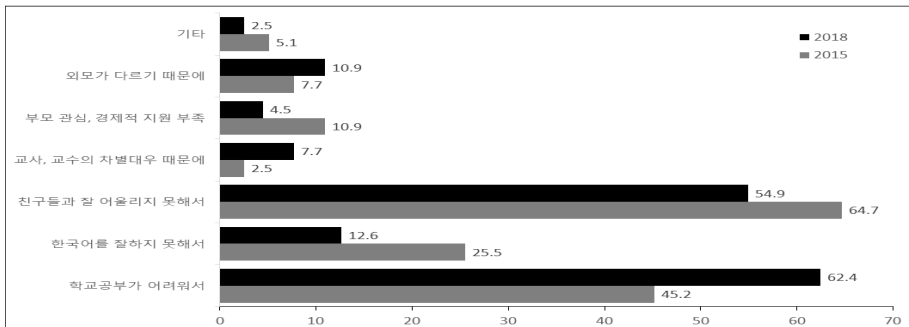
〈표 3-52〉 초·중등 및 대학 재학 자녀의 학교 적응도(2018)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 적응하는 편이다	매우 잘 적응한다	합계	평균
전체	0.2 (170)	2.3 (2,020)	10.9 (9,572)	37.8 (33,296)	48.8 (42,918)	100.0 (87,976)	4.33



〈그림 3-36〉 다문화가족 초·중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도(2015,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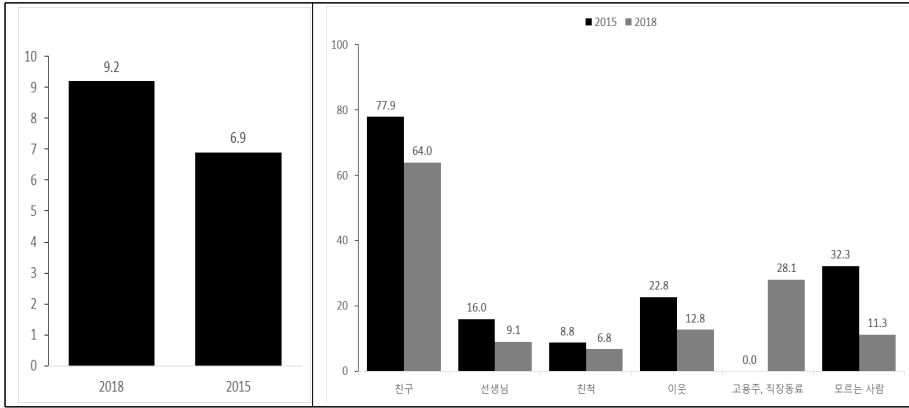
- (학교 부적응의 이유) 학교적응이 힘든 이유는 공부가 어려워서 63.6%,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53.5%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7〉 다문화가족 초·중등학생의 학교 부적응 이유(복수응답)(2015, 2018)

⑤ 사회적 차별 경험 및 지원서비스

- (차별경험)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 자녀는 9.2%로 2015년 조사 6.9%에 비해 2.3%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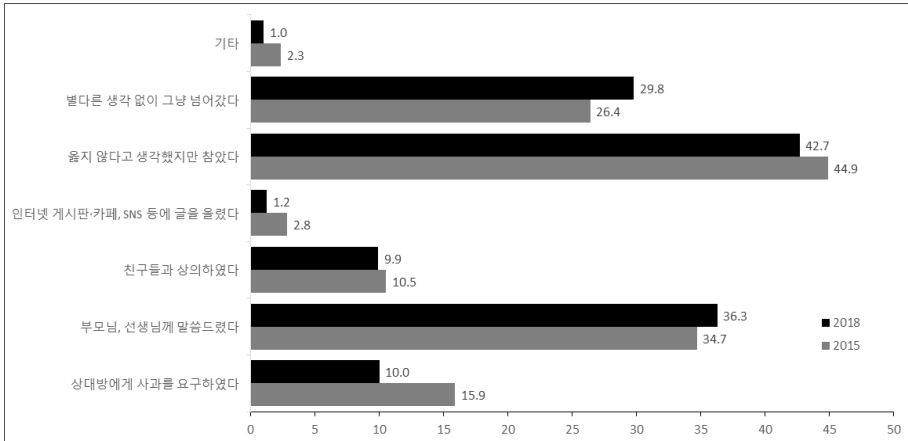
〈그림 3-38〉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및 차별한 사람(2015, 2018)

- (차별한 대상) 누구로부터 차별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친구가 6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터의 고용주/직장동료 28.1%, 이웃 12.8%, 모르는 사람 11.3% 순으로 나타남. 2015년 결과와 비교하면 2018년 신규 조사항목인 일터의 고용주/직장동료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로부터의 차별 비율이 감소하였고 특히 모르는 사람과 친구로부터의 차별 경험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친구로부터의 차별 경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어지나, 선생님을 비롯해 모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별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3〉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의 차별 정도(4점기준)(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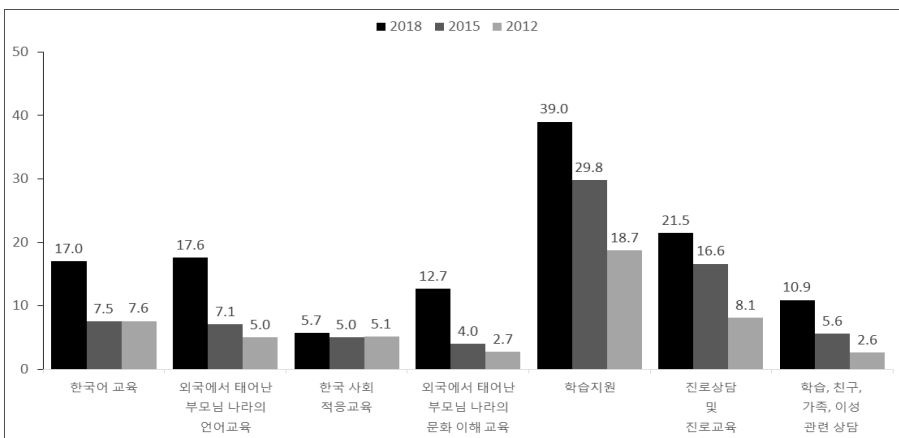
구분		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고용주, 직장동료	모르는 사람
전체		2.51	1.40	1.34	1.54	1.79	1.41
성별	여성	2.50	1.44	1.34	1.63	1.79	1.41
	남성	2.52	1.37	1.35	1.46	1.79	1.40
연령	9~11세	2.66	1.35	1.28	1.43	-	1.27
	12~14세	2.50	1.31	1.29	1.73	-	1.40
	15~17세	2.41	1.47	1.49	1.49	1.11	1.56
	18~24세	2.02	1.70	1.50	1.67	2.06	1.69

- (차별 경험 시 대응법) 차별당할 당시 '참았다'는 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님/선생님께 말했다 36.3%,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 29.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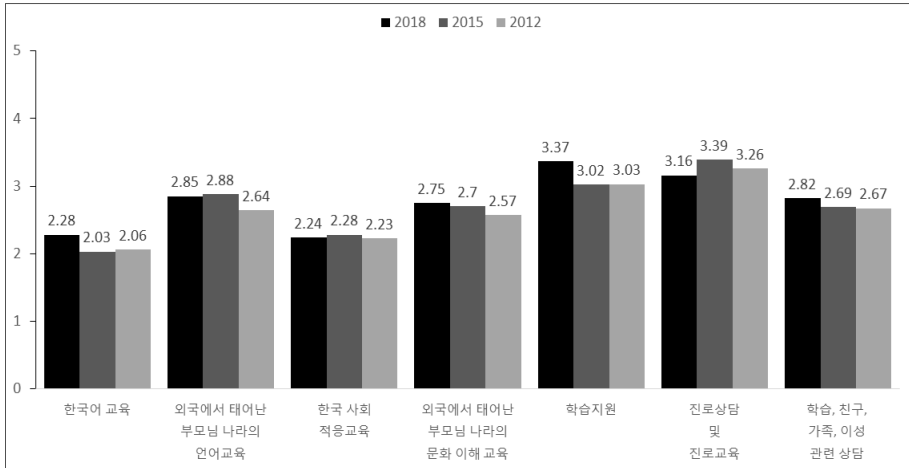
〈그림 3-39〉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별받았을 때 대응 방법(복수응답)(2015, 2018)

- (서비스 이용경험) 학습지원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39.0%로 가장 높았고, 진로상담 및 교육 21.5%, 부모님나라 언어교육 17.6%, 한국어교육 17.0% 등으로 순으로 나타남. 모든 서비스 이용률은 조사 때마다 매번 증가함



〈그림 3-40〉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서비스 수혜율(2012, 2015, 2018)

- (지원서비스의 필요성) 학습지원과 진로상담 및 교육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다음으로 외국 부모님나라의 언어교육, 각종 상담 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1〉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서비스 필요성(5점기준)(2012, 2015, 2018)

나. '2018년 전국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현황

1) 조사개요

-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민 대상 다문화수용성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함. 전국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154019호)로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급격한 이행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일반국민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및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다민족적·다문화적 배경의 구성원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보다 발전적인 사회통합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국민(일반국민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통합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지원과 관심을 받아 개발되었으며, 2018년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2012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었음

-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대상은 일반국민과 청소년으로, 일반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수준 조사는 만 19세 ~ 74세 연령의 전국 성인남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틀을 바탕으로 지역,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 다단계층화표본 추출로 4,000명을 선정하여 가구별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함
- 조사내용은 다문화수용성 이외 다문화지향성, 단일문화지향성, 다문화교육 및 활동 경험,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인·이주민 접촉경험, 외국인·이주민 접촉 및 관계 경험, 다문화교육 및 활동의 필요성 인식, 이주민·다문화사회 관련 각종 태도 및 일반적 특성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청소년 대상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전국 160개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2017년 교육통계 표본틀을 바탕으로 권역, 지역규모, 학년, 학교개별별 인구비례 다단계층화표본 추출로 총 4,225명을 선정하여 학교 방문 집합조사로 실시함
- 조사내용은 다문화수용성 이외 다문화교육 경험, 다문화교육 및 활동의 효과 인식,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인·이주민 접촉경험, 다문화활동참여 경험, 향후 다문화활동 참여 의향, 국민정체성,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자녀 접촉·관계 경험, 세계시민의식, 한국인 자긍심, 단일문화지향성, 다문화지향성, 주변 사람들의 이주민·다문화가족 증가에 대한 태도, 이주민·다문화사회 관련 각종 태도, 일반적 특성 사항 등이 있음

다 문 화 수 용 성	차원	하위 요소	내용
	다양성	① 문화개방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유입 및 정주에 대한 인정
		② 국민정체성	국민됨의 자격기준에 대해 경계성 정도
		③ 고정관념 및 차별	외국 이주민에 대한 선입관이나 부정적 지식
	관계성	④ 일방적 동화 기대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 및 순응을 기대
		⑤ 거부·회피 정서	이주민 접촉상황에서 비합리적인 부정적 정서
		⑥ 상호교류 행동의지	이주민과의 친교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
	보편성	⑦ 이중적 평가	경제개발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등급을 둠
		⑧ 세계시민 행동 의지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 추구 및 실천 의지

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 4. 18) 참고

2) 전북지역 원자료 분석 개요

-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전국 다문화수용성조사'의 원자료 중 전북지역 자료만을 추출하여 재분석함. 이를 통해 전북도민의 다문화가족과의 사회통합 정도, 다문화수용성 정도의 변화 추이 및 전북도민의 다문화사회로의 사회통합 진전 정도와 취약요인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 해소와 사회적 인식개선 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018년 전국 다문화수용성 조사대상자 중 전국 일반국민 4,000명 중 전북지역은 210명(전체의 5.3% 차지), 전국 청소년 4,225명 중 전북지역은 259명(전체의 6.1%)으로 나타났고, 이 자료(총 469사례)를 주 분석 자료로 사용함. 시간 흐름에 따른 추이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5년 다문화수용성 조사자료 중 전북지역 자료는 도민 210명(전체 4,000명 중 5.3%), 청소년 55명(전체 3,640명 중 1.5%)도 함께 비교 분석하여 살펴봄
- 2018년과 2015년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모두 전국지역의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본 표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북지역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음. 정확하게 전북지역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의 대략적인 다문화수용성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원자료 중 전북지역만 추출하여 재분석함
-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전체 설문내용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내용은 다문화수용성(3가지 차원, 8가지 구성요소), 이주민과 다문화사회 태도(단일민족지향성, 다문화지향성), 이주민과의 관계 경험, 다문화교육 및 활동경험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파악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등의 자료도 살펴봄

3) 전북 도민(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수준 분석

- '2018년 다문화수용성조사'에 참여한 전북 도민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210명 중 여성 105명(50%), 남성 105명(50%)으로 동일한 비율로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 22.9%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46세로 나타남. 학력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43.8%로 가장 많았고, 대졸(2년제 포함)이 36.7%로 높았음
- 응답자의 지역규모 분포는 중·소도시 81.0%, 읍/면부 19.0%였으며, 월 가구 총소득은 300~399만원(28.1%), 200~299만원(25.2%), 400~499만원(23.8%) 순이었음
-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 있는 경우가 74.8%로 가장 많았고, 미혼 응답자는 21.9%로 나타남

〈표 3-54〉 전북지역 내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05	50.0	지역	중소도시	170	81.0
	여성	105	50.0	규모	읍/면부	40	19.0
연령	20대	38	18.1	월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	1.4
	30대	37	17.6		100~199	27	12.9
	40대	48	22.9		200~299	53	25.2
	50대	48	22.9		300~399	59	28.1
	60대이상	39	18.6		400~499	50	23.8
	평균	46세			500만원 이상	18	8.6
학력	중졸이하	41	19.5	혼인 상태	미혼	46	21.9
	고졸	92	43.8		배우자有	157	74.8
	대졸(2/4년제)	77	36.7		기타	7	3.3

① 다문화수용성의 현황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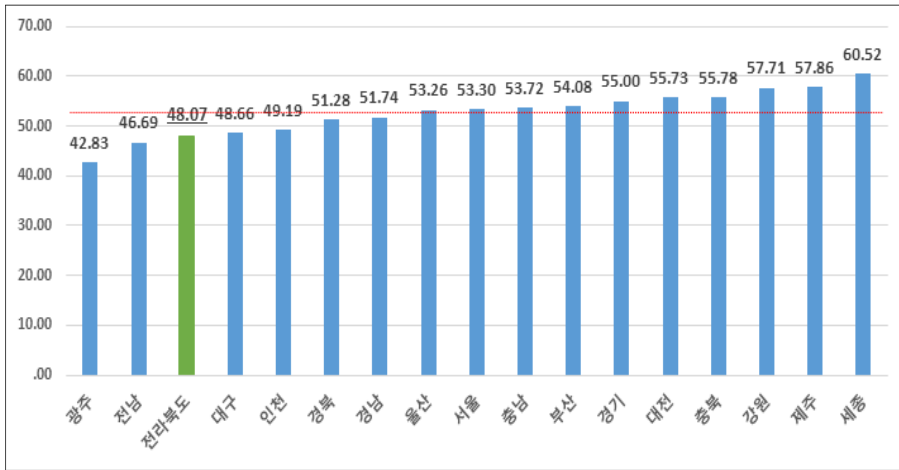
- 2018년 전국 시도별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을 살펴보면, 세종 60.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주(57.86점), 강원(57.71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광주, 전남, 전북, 대구, 인천, 경북, 경남 지역은 전국평균(52.81점) 보다 낮게 나타남

- 전북 도민의 다문화수용성은 48.07점으로 전국평균보다 4.74점 낮았으며, 17개 시도 중 하위 3번째로 낮게 나타남
- 한편, 전국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3가지 차원별(다양성/관계성/보편성)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양성(53.90점), 보편성(52.98점), 관계성(51.5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시도별*차원별로 살펴보면, 다양성 차원은 세종시가 60.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시가 42.50점으로 가장 낮았음. 관계성은 세종시(63.83점)가 가장 높고, 광주시(41.58점)가 가장 낮았음. 보편성은 강원도(59.91점)가 가장 높고, 광주시(45.44점)가 가장 낮았음
- 전북은 다양성 차원의 경우 49.78점으로 17개 시도 중 하위 4번째, 관계성은 45.03점으로 하위 3번째, 보편성은 50.20점으로 하위 5번째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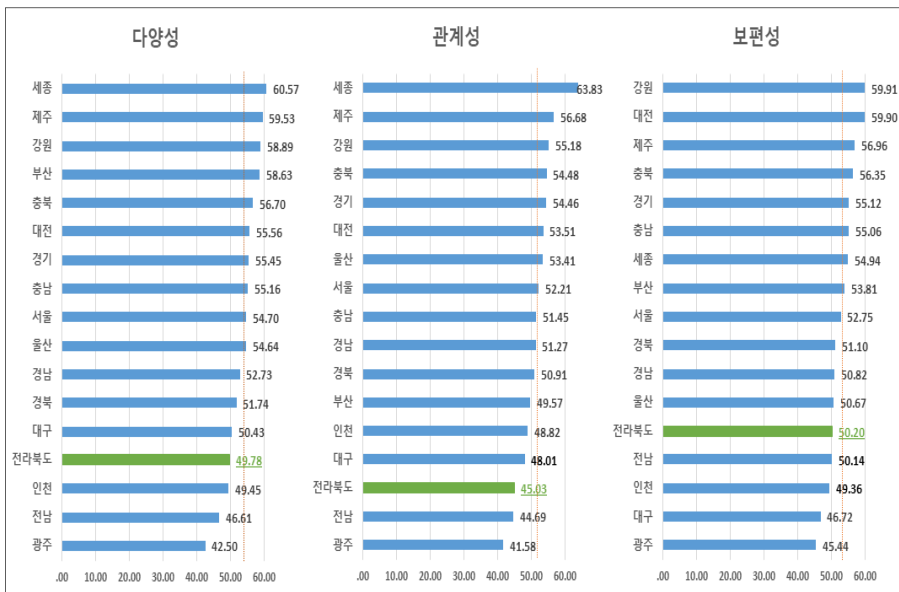
〈표 3-55〉 전국 17개 시·도의 다문화수용성 현황(2018)

(단위: 점)

구분	다문화수용성	3가지 차원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전국	52.81	53.90	51.59	52.98
서울	53.30	54.70	52.21	52.75
부산	54.08	58.63	49.57	53.81
대구	48.66	50.43	48.01	46.72
인천	49.19	49.45	48.82	49.36
광주	42.83	42.50	41.58	45.44
대전	55.73	55.56	53.51	59.90
울산	53.26	54.64	53.41	50.67
세종	60.52	60.57	63.83	54.94
경기	55.00	55.45	54.46	55.12
강원	57.71	58.89	55.18	59.91
충북	55.78	56.70	54.48	56.35
충남	53.72	55.16	51.45	55.06
전북	48.07	49.78	45.03	50.20
전남	46.69	46.61	44.69	50.14
경북	51.28	51.74	50.91	51.10
경남	51.74	52.73	51.27	50.82
제주	57.86	59.53	56.68	5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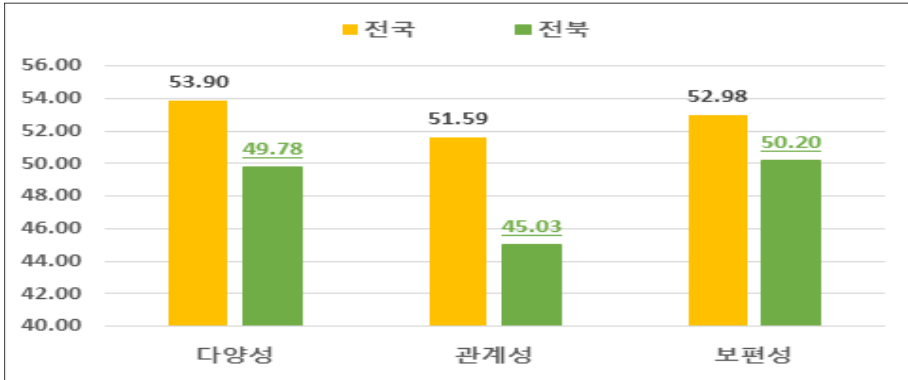


〈그림 3-42〉 전국 17개 시도별 다문화수용성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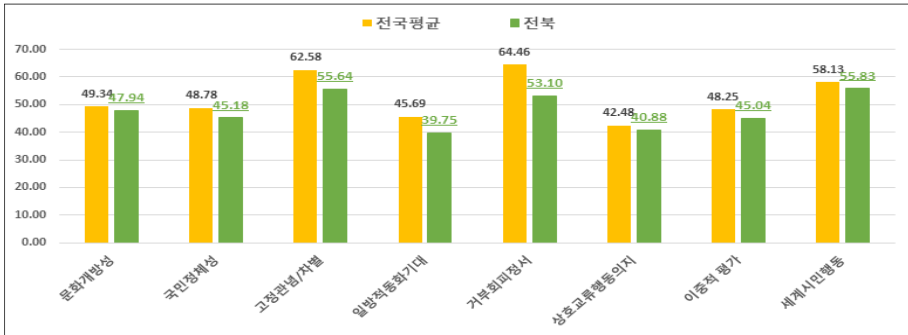
〈그림 3-43〉 전국 시도별 다문화수용성의 차원별 비교(2018)

- 전북 다문화수용성의 3가지 차원을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다양성/관계성/보편성 모든 차원에서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특히, 관계성 차원의 경우 전국평균 보다 -6.56점 낮아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다양성 -4.12점, 보편성 -2.78점의 편차를 보임



〈그림 3-44〉 전국 및 전북 다문화수용성의 차원별 비교(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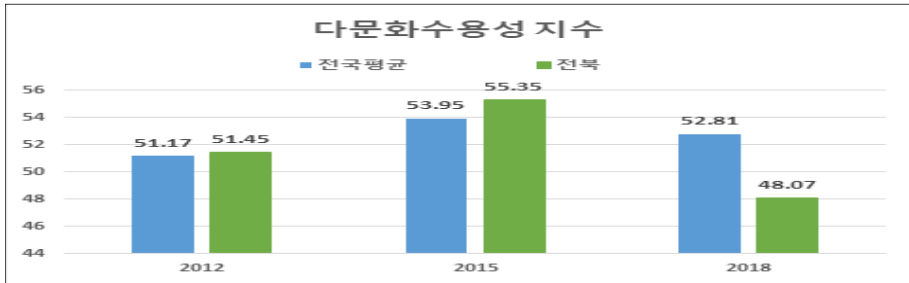
- 전북 다문화수용성의 8가지 하위요소별로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모든 부분에서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거부·회피정서’의 경우 전국 평균 보다 유난히 낮아 -11.36점의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다음으로 ‘고정관념/차별’ 지수가 -6.94점 낮고, ‘일방적 동화기대’ 지수가 -5.94점 낮게 나타나는 등 전국평균과 큰 편차를 보임



〈그림 3-45〉 전국 및 전북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소별 비교(2018)

- 연도별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전국평균의 경우 2012년 51.17점에서 2015년 53.95점으로 2.78점 상승하였다가 2018년 52.81점으로 2015년보다 -1.14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2012년 51.45점에서 2015년 3.90점 상승하였다가, 2018년 48.07점으로 2015년보다 -7.28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북의 다문화수용성은 2012년과 2015년에는 전국평균 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전국평균점에 미치지 못하였음



〈그림 3-46〉 전국 및 전북 다문화수용성의 연도별 비교(2012, 2015, 2018)

② 전북 도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 2018년 전북 도민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 여성’, ‘연령별’로는 ‘30대 > 20대 > 50대 > 40대 > 60대’, ‘학력별’로는 ‘대졸 > 고졸 > 중졸’, ‘소득별(만원)’로는 ‘300~399 > 500이상 > 400~499 > 200~299 > 100~199’,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 읍/면부’ 등으로 나타남
- 한편,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격차를 보인 변수는 ‘소득수준’으로 300~399만원 집단(高)과 100~199만원 집단(低)으로 -4.70점 차이가 나타남
- 3가지 차원별로 살펴보면 모두 ‘소득’ 변수에서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냄
 - 다양성 : 300~399만원 vs 500만원이상 집단 간 격차가 -5.28점
 - 관계성 : 500만원이상 vs 100~199만원 집단 간 격차가 -5.61점
 - 보편성 : 500만원이상 vs 100~199만원 집단 간 격차가 -6.70점

- 8가지 하위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일방적 동화기대, 교류행동의지, 세계시민행동의지 등 5개 하위요소의 경우 ‘소득수준’ 변수에서, 그리고 고정관념·차별, 거부·회피정서, 이중적 평가 등 3개 하위요소의 경우 ‘연령’ 변수에서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남
 - 문화개방성 : 500만원이상 vs 100~199만원 집단 간 격차가 -9.93점
 - 국민정체성 : 300~399만원 vs 500만원이상 집단 간 격차가 -18.63점
 - 고정관념·차별 : 50대 vs 20대 집단 간 격차가 -6.05점
 - 일방적 동화기대 : 300~399만원 vs 400~499만원 집단 간 격차가 -8.20점
 - 거부·회피정서 : 50대 vs 40대 집단 간 격차가 -5.08점
 - 교류행동의지 : 500만원이상 vs 100~199만원 집단 간 격차가 -20.22점
 - 이중적 평가 : 60대 vs 40대 집단간 격차가 -9.49점
 - 세계시민행동의지 : 500만원이상 vs 200~299만원 집단 간 격차가 -15.8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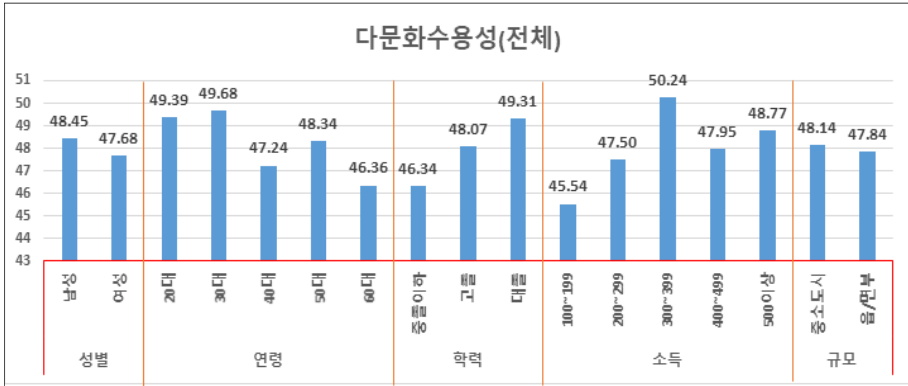
〈표 3-56〉 전북 도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대화수용성 수준(2018)

구분		다문화 수용성	차원		하위요소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차별	일방적 대화/대 응	거부·회피 정서	교류행동 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성별	남성	48.45	50.25	46.11	49.25	48.57	46.01	55.63	38.30	55.36	43.11	42.44	56.68		
	여성	47.68	49.29	43.89	51.20	47.28	44.29	55.65	41.28	50.72	38.52	47.77	54.94		
	20대	49.39	50.86	47.01	50.81	53.10	46.62	52.88	40.95	54.74	44.05	44.10	58.14		
	30대	49.68	50.65	47.05	52.37	46.21	48.51	56.43	43.05	53.78	43.20	47.26	57.93		
	40대	47.24	49.92	43.59	48.74	48.23	45.18	55.76	38.20	49.96	41.57	42.55	55.49		
	50대	48.34	49.59	45.60	50.74	48.33	42.46	57.29	37.97	54.92	42.35	46.51	55.36		
연령	60대	46.36	48.35	42.73	48.99	44.25	44.27	55.65	39.61	52.41	34.56	45.11	53.22		
	학력	중졸이하	49.13	42.49	47.99	43.67	47.26	55.55	40.13	54.02	31.39	44.95	51.30		
		고졸	48.07	49.81	45.52	49.34	46.45	45.07	57.09	39.98	51.27	44.35	45.08	53.99	
대졸		49.31	50.22	46.20	52.90	52.94	43.82	53.82	39.18	54.83	43.15	45.05	61.47		
소득	100~199	45.54	48.28	41.58	47.43	43.56	45.13	55.26	39.94	51.56	31.59	45.11	49.96		
	200~299	47.50	50.24	44.26	48.18	44.63	50.41	54.91	41.48	53.35	36.45	47.20	49.25		
	300~399	50.24	52.42	47.11	51.70	49.78	51.04	55.97	42.95	54.15	43.07	46.10	57.80		
	400~499	47.95	48.08	45.46	51.82	51.57	35.71	56.59	34.75	52.83	47.57	41.19	63.41		
	500이상	48.77	47.14	47.19	54.14	53.49	32.40	55.38	35.98	52.84	51.81	44.08	65.12		
지역 규모	중소도시	48.14	49.56	44.93	51.06	49.53	42.78	55.89	38.49	51.98	43.13	44.20	58.53		
	읍/면부	47.84	50.46	45.34	47.54	43.01	52.60	54.87	43.65	56.57	33.92	47.61	4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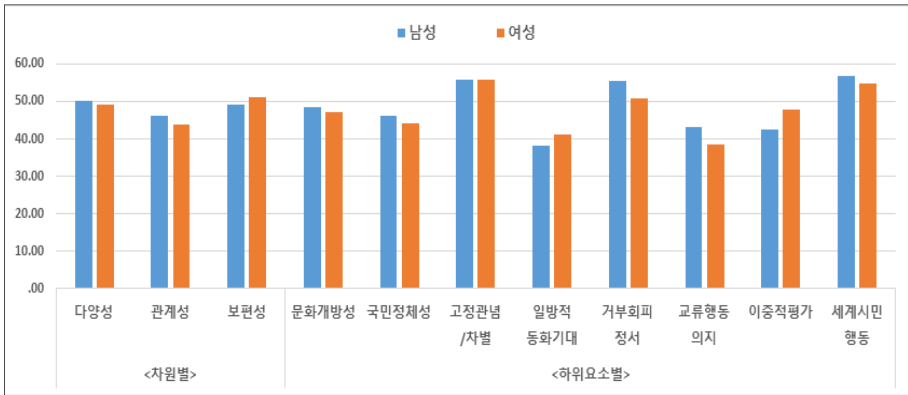
〈표 3-57〉 전북도민 다문화수용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격차(2018)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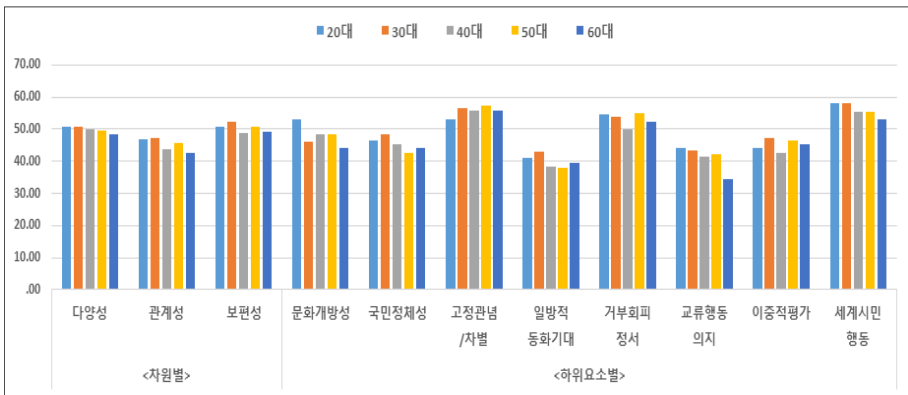
구분	다문화 수용성	차원			하위요소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차별	일반적 동화기대	가부·회피 정서	교류행동 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성별	남성	남성	남성	여성	남성	남성	여성	여성	남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여성	여성	남성	여성	여성	남성	남성	여성	여성	남성	여성
	격차	0.96	2.22	1.95	1.29	1.72	0.03	2.97	4.64	4.59	5.33	1.74
연령	High	20대	30대	30대	20대	30대	50대	30대	50대	20대	30대	20대
	Low	60대	60대	40대	60대	50대	20대	50대	40대	60대	40대	60대
	격차	3.32	2.51	4.32	3.63	8.85	6.05	4.41	5.08	4.97	9.49	4.71
학력	High	대졸	대졸	대졸	대졸	중졸	고졸	중졸	대졸	고졸	고졸	대졸
	Low	중졸	중졸	중졸	중졸	대졸	대졸	대졸	고졸	중졸	중졸	중졸
	격차	1.09	3.71	4.92	9.27	3.43	3.28	.95	3.55	12.96	.13	10.17
소득 (만원)	High	300~399	500이상	500이상	500이상	300~399	400~499	300~399	300~399	500이상	200~299	500이상
	Low	500이상	100~199	100~199	100~199	500이상	200~299	400~499	100~199	100~199	400~499	200~299
	격차	5.28	5.61	6.70	9.93	18.63	1.68	8.20	2.59	20.22	6.01	15.87
지역 규모	High	읍/면부	읍/면부	중소도시	중소도시	읍/면부	중소도시	읍/면부	읍/면부	중소도시	읍/면부	중소도시
	Low	중소도시	중소도시	읍/면부	읍/면부	중소도시	읍/면부	중소도시	중소도시	읍/면부	중소도시	읍/면부
	격차	0.90	0.41	3.52	6.52	9.82	1.02	5.15	4.59	9.21	3.41	1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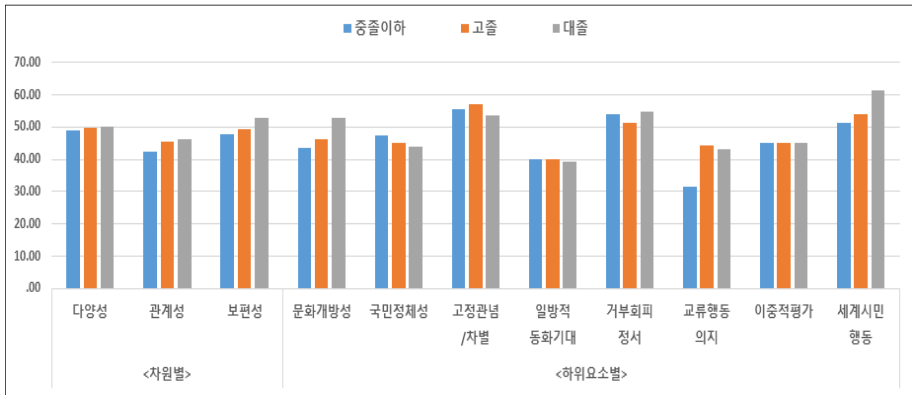
〈그림 3-47〉 전북 도민의 사회인학적 특성별 다문화수용성 수준(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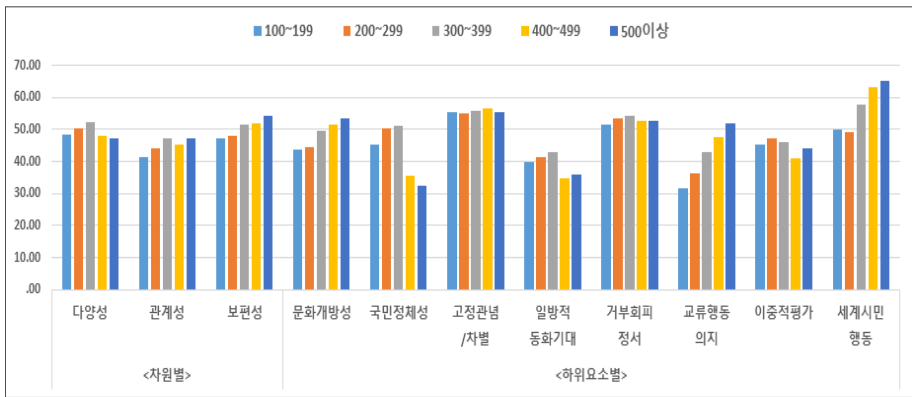
〈그림 3-48〉 전북 도민의 성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수준(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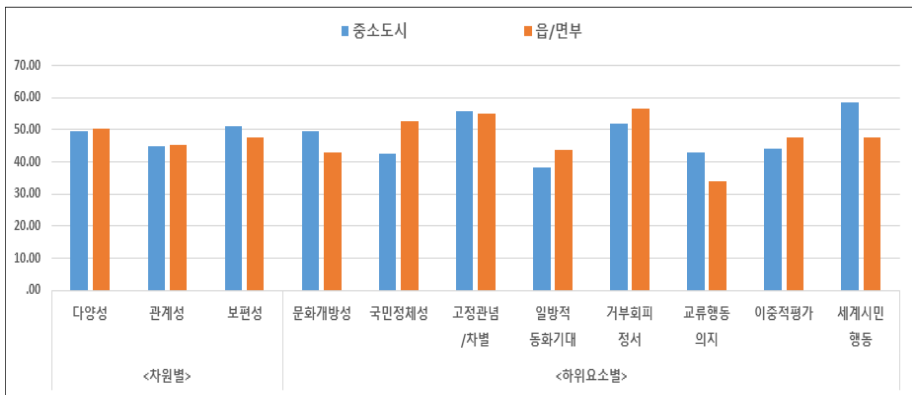
〈그림 3-49〉 전북 도민의 연령대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수준(2018)



〈그림 3-50〉 전북 도민의 학력정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수준(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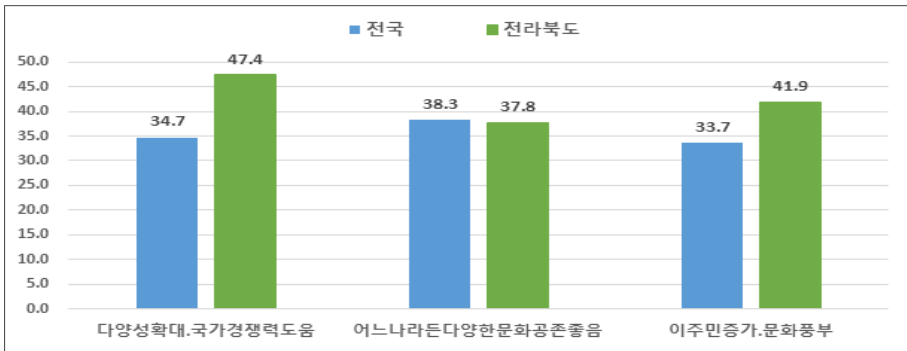
〈그림 3-51〉 전북 도민의 소득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수준(2018)



〈그림 3-52〉 전북 지역규모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수준(2018)

③ 다문화사회에 관한 태도

- ‘(1) 인종·종교·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 된다’, ‘(2)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3) 이주민들이 늘어나면 우리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의 응답을 통해 ‘다문화지향성 수준’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의 경우 각 문항에 ‘매우 그렇다’ 혹은 ‘대체로 그렇다’에 대한 응답률은 30%대 정도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각 문항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응답이 40%대 정도로 나타났으며, 한 문항을 제외하고, 전국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3-53〉 전국 및 전북의 다문화지향성(2018)

- 전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지향성 수준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다문화지향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북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전국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전북남성(50.0%)의 전국남성(34.3%) 보다 긍정적 동의가 15.7%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의 동의하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반면, 40-50대의 동의하는 응답은 낮은 경향을 보임. 연령별로 전국의 응답율과 비교해보면, 첫 번째 문항에 대해서 전북의 60대이상의 긍정적 동의는 전국의 60대이상 응답보다 29.4%p 높게 나타남. 반대로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전북의 20-30대의 긍정적 동의수준은 전국의 20-30대 응답보다 10%p 낮게 나타남

〈표 3-58〉 전국 및 전북의 사회인구학적특성별 다문화지향성(2018)

구분		다양성 확대, 국가경쟁력 도움됨(%)		어느 나라든 다양한 문화공존은 좋음(%)		이주민 증가, 문화풍부(%)	
		전국	전라북도	전국	전라북도	전국	전라북도
전체		34.7	47.4	38.3	37.8	33.7	41.9
성별	남성	34.3	50.0	39.3	39.1	33.8	44.9
	여성	35.2	44.8	37.3	37.9	33.6	38.8
연령	20대	39.2	57.7	46.9	36.0	41.8	48.0
	30대	41.8	40.9	41.9	31.8	38.1	45.5
	40대	32.0	44.8	36.6	42.9	34.5	35.7
	50대	35.5	36.7	38.8	43.3	32.7	37.9
	60대이상	25.4	54.8	27.8	35.5	21.5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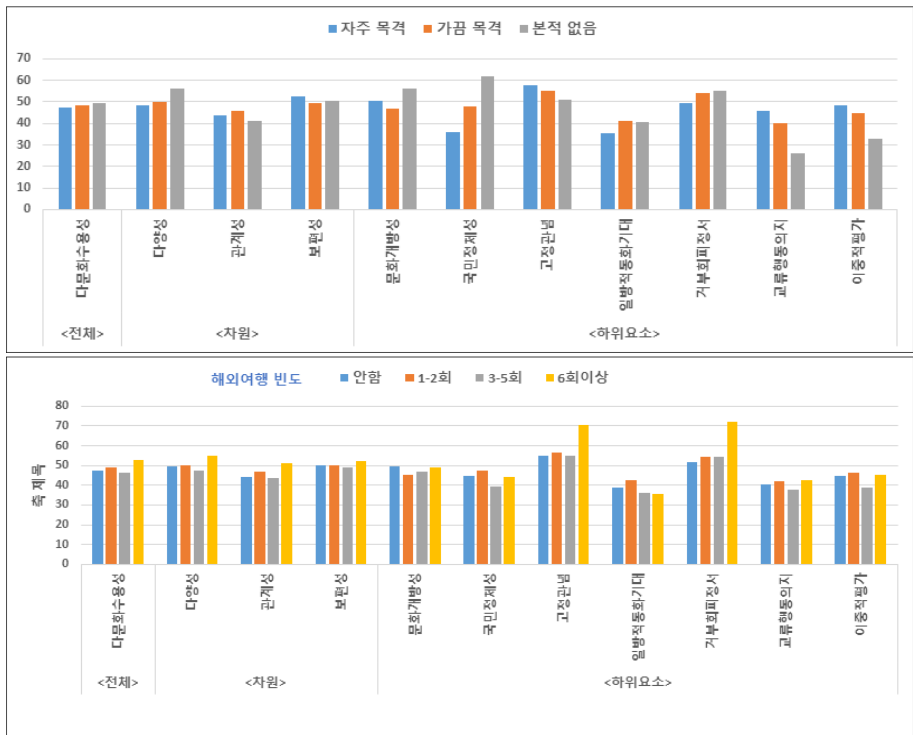
주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④ 다문화 관련 변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 단순목적 빈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민 혹은 외국인을 자주 목격하면 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3가지 차원별로 살펴보면, 다양성은 이주민을 자주 목격할수록 낮게 나타난 반면, 관계성과 보편성은 이주민을 자주 목격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위요소별로 보면, 문화개방성/국민 정체성/일방적동화기대/거부·회피정서 등은 자주 목격할수록 낮게 나타났고, 고정관념/교류행동의지/이중적평가 등은 자주 목격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여행 빈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살펴보면, 해외여행 횟수가 가장 많은 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3가지 차원별로 살펴보면, 모든 차원에서 해외여행 빈도가 가장 많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남. 하위요소별로는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1-5회 해외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낮게 나타나는 특이한 양상을 보였음

〈표 3-59〉 전북도민의 다문화 관련 변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2018)

		목적빈도			해외여행 빈도			
		자주	가끔	없음	안함	1-2회	3-5회	6회이상
다문화 수용성		47.54	48.20	49.23	47.66	48.81	46.33	52.99
차원	다양성	48.26	50.00	56.13	49.75	49.94	47.37	55.09
	관계성	43.88	45.65	41.30	43.97	46.79	43.60	51.16
	보편성	52.35	49.38	50.63	50.21	50.23	49.07	52.44
하위 요소	문화개방성	50.23	46.64	56.26	49.59	45.09	47.05	48.96
	국민정체성	36.01	47.65	61.79	44.47	47.45	39.38	44.07
	고정관념/차별	57.96	55.05	50.77	54.79	56.41	55.08	70.58
	일방적동화기대	35.39	41.31	40.67	38.64	42.51	36.34	35.75
	거부회피정서	49.64	54.27	55.03	51.60	54.48	54.63	71.87
	교류행동의지	45.64	39.93	25.93	40.41	42.10	38.00	42.42
	이중적평가	48.27	44.51	32.78	44.95	46.18	38.90	45.20



〈그림 3-54〉 전북도민의 다문화 관련 변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2018)

⑤ 이주민과의 관계 경험

- 전국 국민의 1.7%는 가족(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등) 중에 이주민이 있으며, 다문화 이웃이 있는 경우는 18.8%, 친구/동료(학교, 직장 등)가 있는 경우는 각각 5.3%, 4.8%임. 반면에 67.6%는 주변에 이주민이 전혀 없었던 경우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이웃’으로 이주민과의 관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3%로 가장 높았고, 친척(9.1%), 동료(6.6%) 등의 순으로 높았음. 반면에 주변에 이주민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8.7%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주민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전국과 비교해 보면, ‘친척’ 관계 경험은 전국보다 5.0%p, ‘동료’ 관계 경험은 1.8%p, ‘이웃’ 관계 경험은 15.5%p 높게 나타남. 주변에서 이주민이 없다는 비율은 전국평균 보다 -18.9%p 낮게 나타남. 그리고 이주민과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비율은 0.7%에 그쳤으며, 이는 전국평균 보다 -4.6%p 낮았음

〈표 3-60〉 이주민과의 관계 경험 비율(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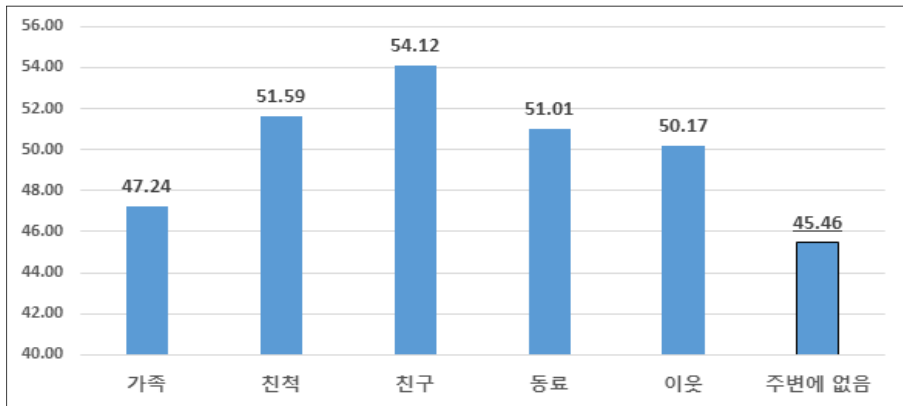
구분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기타	주변에 없음
전국(A)	1.7	4.1	5.3	4.8	18.8	0.4	67.6
전북(B)	0.7	9.1	0.7	6.6	34.3	0.0	48.7
B-A	-1.0	5.0	-4.6	1.8	15.5	-0.4	-18.9

- 한편, ‘주변에 이주민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응답자 특성별(성별/연령/교육수준/소득수준)로 구분해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은 20대,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소득별로는 100~199만원 등의 그룹에서 많은 편임
- 주변에 이주민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집단은 20대 응답층으로 57.7%가 이주민과의 관계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주변 ‘이웃’으로 이주민과의 관계가 있다는 응답은 40대 응답층에서 44.8%로 가장 많았음

〈표 3-61〉 전북도민의 성별, 연령별, 교육과 소득수준에 따른 이주민과의 관계 경험

구분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주변에 없음
성별	남	0.0	7.1	1.4	10.0	37.1	44.3
	여	1.5	10.6	0.0	3.0	31.8	53.0
연령	20대	0.0	11.5	0.0	11.5	19.2	57.7
	30대	0.0	9.5	0.0	4.8	38.1	47.6
	40대	0.0	6.9	3.4	3.4	44.8	41.4
	50대	0.0	10.0	0.0	13.3	33.3	43.3
	60대이상	3.2	9.7	0.0	0.0	35.5	51.6
교육 수준	중졸	3.1	12.5	0.0	0.0	31.3	53.1
	고졸	0.0	13.6	0.0	6.8	40.7	39.0
	대졸	0.0	2.2	2.2	11.1	26.7	57.8
소득 수준 (만원)	100~199	4.3	13.0	0.0	0.0	30.4	52.2
	200~299	0.0	16.2	0.0	2.7	40.5	40.5
	300~399	0.0	2.9	2.9	8.6	34.3	51.4
	400~499	0.0	3.6	0.0	7.1	39.3	50.0
	500이상	0.0	0.0	0.0	30.0	20.0	50.0

- 이주민과의 관계 경험에 따라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살펴보면, ‘주변에 이주민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이 45.4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이에 반해 ‘친구/친척/동료’ 중에 이주민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은 각각 54.12점, 51.59점, 51.01점으로 높은 편이었음. 이는 이주민과의 관계경험 여부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점은 유의할만 함



〈그림 3-55〉 전북도민의 이주민과의 관계여부별 다문화수용성(2018)

〈표 3-62〉 전북도민의 이주민과의 관계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2018)

구분	차원			하위요소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 관념 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교류 행동 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 시민 행동
가족	53.21	36.67	54.61	70.00	55.00	37.14	25.00	26.67	60.00	35.00	76.00
친척	52.28	51.25	50.99	41.14	54.63	59.66	50.45	62.60	38.81	59.00	42.25
친구	59.37	48.78	54.02	41.96	66.08	68.07	29.12	70.72	42.84	58.25	49.40
동료	50.07	49.44	55.19	52.07	35.22	62.14	36.99	59.30	50.40	50.84	59.92
이웃	53.30	48.15	48.19	42.06	52.67	63.52	45.57	55.73	41.90	51.77	44.29
주변 없음	46.62	41.13	50.67	52.56	39.06	48.54	34.40	48.75	38.95	36.85	65.73

- 전국 국민의 외국인 및 이주민과의 상호교류를 측정하기 위해 ‘친구 혹은 친척의 수’를 조사한 결과 전국 국민 중 94.8%가 외국인 및 이주민 친구나 친척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2-3명인 경우 3.2%, 1명인 경우 1.3%, 4명 이상인 경우 0.7%의 순으로 나타남. 전북 도민의 경우 응답자의 99.3%가 없다고 응답함

〈표 3-63〉 전국과 전북의 외국인 및 이주민 친구·친척의 수(2018)

구분	없음	1명	2-3명	4명 이상
전국	94.8	1.3	3.2	0.7
전북	99.3	0.0	0.7	0.0

- 전국 국민의 외국인 및 이주민과 대화나 만남을 위한 접촉 빈도는 응답자의 94.8%가 별도의 관계적 접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5.2% 만이 외국인 및 이주민과 대화나 만남을 위해 거의 매일 0.5%, 주 1회 이상 0.6%, 2주 1회 미만 4.2%로 나타남. 전북 도민의 경우 99.3%가 별도의 관계접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4〉 전국과 전북의 외국인 및 이주민 친구·친척과의 만남(대화) 빈도(2015, 2018)

구분	없음	거의 매일	주 1회 이상	2주에 1회 미만
전국	94.8	0.5	0.6	4.2
전북	99.3	0.0	0.0	0.7

⑥ 다문화교육 및 활동 경험

- (다문화교육 경험) 2018년 기준 전국 국민 중 대부분인 95.4%는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단 4.6%인 아주 소수만이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전국 국민 중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은 단 4.6%로 이는 2015년 참여비율인 5.5%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8.8%로 매우 높게 나타남. 더욱이 이는 2015년보다 더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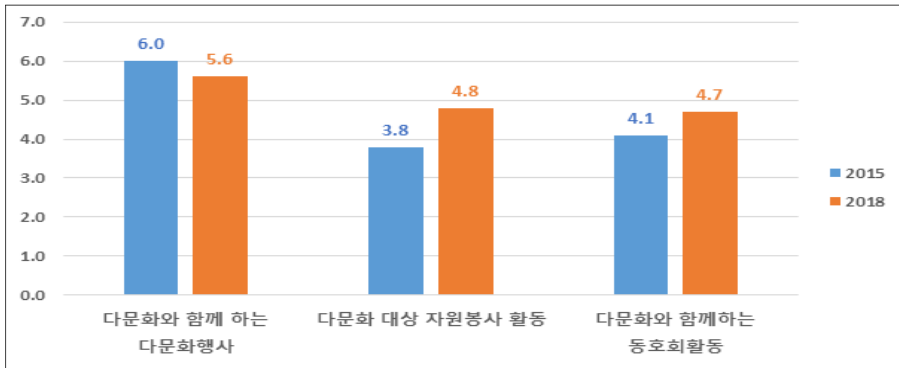
〈표 3-65〉 전국과 전북의 다문화교육 참여 여부(2015, 2018)

구분		참여경험 없음	참여경험 있음
전국	2018	95.4	4.6
	2015	94.5	5.5
전북	2018	98.8	1.2
	2015	94.8	5.2

- (다문화활동 경험) 다문화 행사, 자원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경험 등을 살펴보면, 관련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전국평균과 비교해 보면, 전북의 ‘다문화 행사’ 참여율은 5.6%, ‘봉사활동’ 참여율은 4.8%로 전국평균 보다 낮았으며, ‘동호회’ 참여율은 4.7%로 전국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 2015년에 비해 ‘다문화 행사’ 참여율은 낮았고, ‘봉사활동/동호회’ 참여율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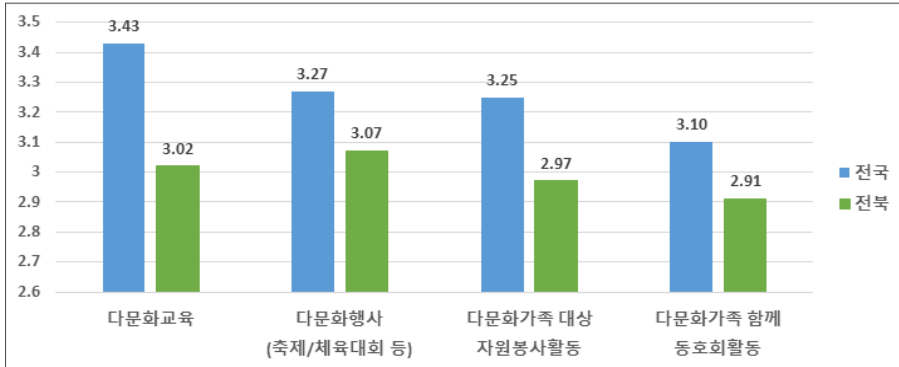
〈표 3-66〉 전국과 전북의 다문화활동 참여 비율(2018)

구분	전국		전북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외국인 및 이주민이 함께하는 축제, 체육대회 등의 다문화 행사	6.4	93.6	5.6	94.4
■ 외국인 및 이주민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활동	4.9	95.1	4.8	95.2
■ 외국인 및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스포츠 등의 동호회 활동	2.5	97.5	4.7	95.3



〈그림 3-56〉 전북의 다문화활동 참여 비율(2015, 2018)

- (다문화교육 및 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 2018년 기준 전북 도민의 다문화교육 및 활동의 필요성은 ‘다문화행사(3.07점)’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교육, 이주민 대상 자원봉사활동, 이주민과 함께 하는 동호회 활동의 순이었음. 한편, 필요성 수준은 모두 전국평균보다 낮았음



〈그림 3-57〉 전국과 전북의 다문화교육 및 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2018)

4) 전북지역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① 전북지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참여한 전북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259명 중 남학생은 34.7%, 여학생이 65.3%로 여학생 비중이 더 높았음. 학교급은 중학생이 50.6%, 고등학생이 49.4%로 고등학생 비중이 더 높았으며, 고등학생 중에서는 일반고가 81.3%, 특성화고가 18.8%로 일반고 비율 보다 높았음. 지역규모는 중소도시 51.4%, 읍·면부 48.6%이며, 참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경제적 수준은 중·상 21.8%, 중간 63.0%, 중·하 15.2%로 조사되었음

〈표 3-67〉 전북 청소년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259)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90	34.7	지역 규모	중소도시	133	51.4
	여성	169	65.3		읍/면부	126	48.6
학교 급별	중등	131	50.6	주관 적 경제 수준	중·상	56	21.8
	전체	128	49.4		중	162	63.0
	고등 일반고	(104)	(81.3)		중·하	39	15.2
	특성화고	(24)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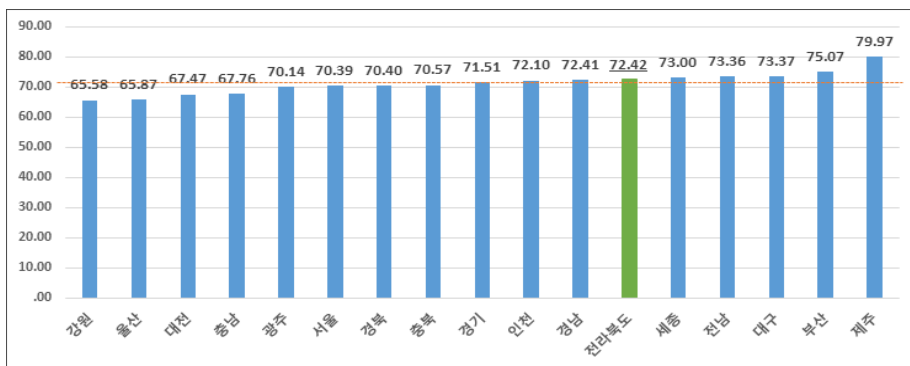
② 전북지역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현황과 추이

- 2018년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전국평균 71.22점으로 성인에 비해 높게 나타남. 시도별로 보면, 제주 79.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산(75.07점), 대구(73.37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충북, 경북, 서울, 광주, 충남, 대전, 울산, 강원 지역은 전국평균 보다 낮게 나타남
-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72.42점으로 전국평균보다 +1.20점 높았으며, 17개 시도 중 상위 6번째로 높게 나타남.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비하면 +24.35점 높았음

- 한편, 전국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3가지 차원별(다양성/관계성/보편성)로 구분해 살펴보면, 보편성(73.72점), 다양성(71.10점), 관계성(66.8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이를 전국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차원 지수와 비교해보면, 청소년이 성인보다 다양성은 +17.20점, 관계성 +22.13점, 보편성 +13.85점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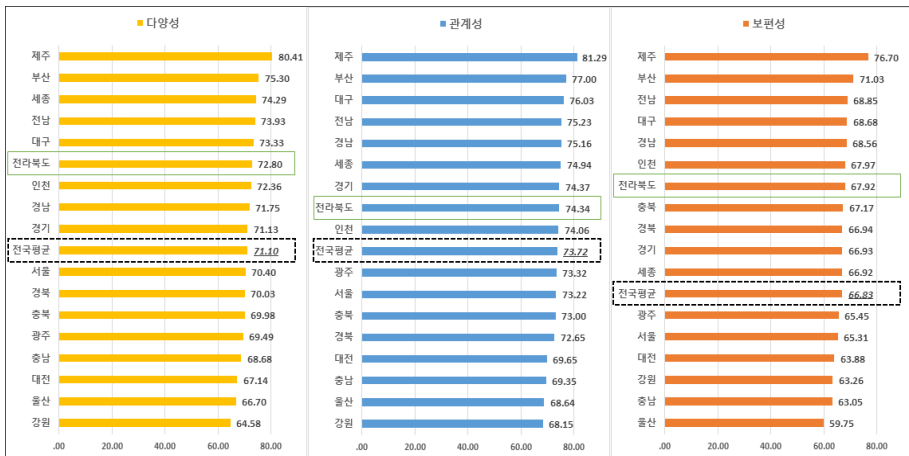
〈표 3-68〉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현황(2018)

구분	다문화수용성	37지 차원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전국평균	71.22	71.10	73.72	66.83
서울	70.39	70.40	73.22	65.31
부산	75.07	75.30	77.00	71.03
대구	73.37	73.33	76.03	68.68
인천	72.10	72.36	74.06	67.97
광주	70.14	69.49	73.32	65.45
대전	67.47	67.14	69.65	63.88
울산	65.87	66.70	68.64	59.75
세종	73.00	74.29	74.94	66.92
경기	71.51	71.13	74.37	66.93
강원	65.58	64.58	68.15	63.26
충북	70.57	69.98	73.00	67.17
충남	67.76	68.68	69.35	63.05
전북	72.42	72.80	74.34	67.92
전남	73.36	73.93	75.23	68.85
경북	70.40	70.03	72.65	66.94
경남	72.41	71.75	75.16	68.56
제주	79.97	80.41	81.29	7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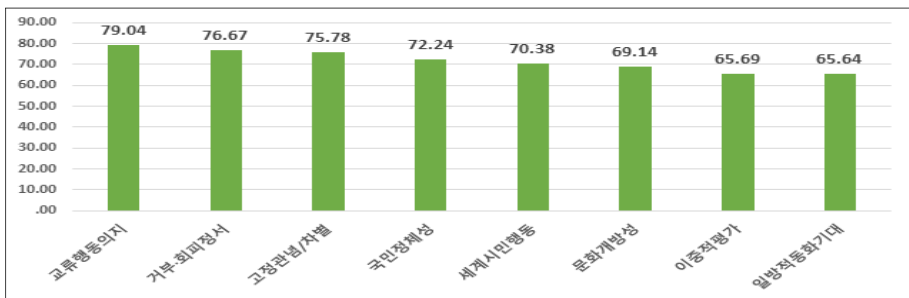
〈그림 3-58〉 전국 시도별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2018)

-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시·도별*차원별로 살펴보면, ‘다양성’ 차원은 제주도(80.41점)가 가장 높았고, 강원도(64.58점)가 가장 낮았음. ‘관계성’은 제주도(81.29점)가 가장 높고, 강원도(68.15점)가 가장 낮았음. ‘보편성’은 제주도(76.70점)가 가장 높고, 울산(59.75점)가 가장 낮았음
- 전북 청소년의 경우 3가지 차원 모두 전국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 ‘다양성’ 차원은 72.80점으로 17개 시·도 중 상위 6번째, ‘관계성’은 74.34점으로 상위 8번째, ‘보편성’은 67.92점으로 상위 7번째로 높게 나타남



〈그림 3-59〉 전국 시·도별 청소년 다문화수용성의 차원별 지수(2018)

-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하위요소별 점수를 살펴보면, 교류행동의지 (79.04점), 거부·회피정서(76.67점), 고정관념·차별(75.78점) 등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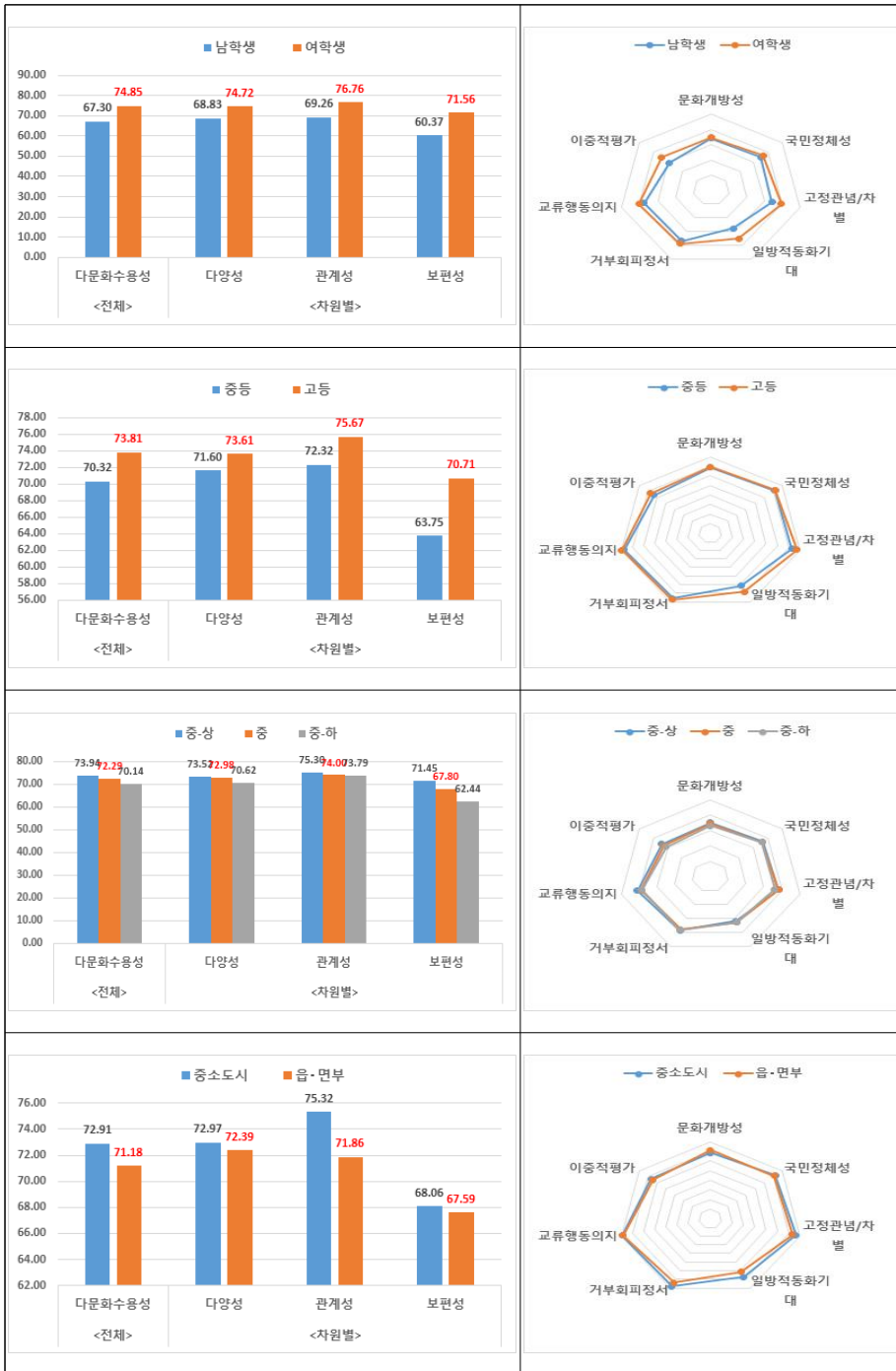


〈그림 3-60〉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하위요소별 지수(2018)

-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전체)을 사회인구학적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학생 > 남학생’, ‘학교급별’로는 ‘고등 > 중등’, ‘경제수준별’로는 ‘중-상 > 중 > 중-하’,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 읍/면부’ 등으로 나타남
- 전북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가장 큰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격차를 보인 변수는 ‘성별’로 8가지 하위요소 중 ‘일방적 동화기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4.41점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모든 요소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음
 - 학교급별로는 모든 요소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보편성 차원에서 6.96점 더 높고, 세계시민행동의지 요소에서 10.63점 더 높게 나타남
 - 체감하는 경제수준별로는 전반적으로 중-상 그룹에서 높게, 중-하 그룹에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보편성 차원에서 9.01점 더 높고, 세계시민행동의지 요소에서 12.08점 더 높게 나타남
 - 지역규모별로는 전반적으로 중소도시가 읍·면부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일방적동화기대 요소에서 5.58점 더 높았음

〈표 3-69〉 전북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특성별 다문화수용성 수준(2018)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			지역규모	
		남학생	여학생	중등	고등	중-상	중	중-하	중소도시	읍면부
다문화 수용성		67.30	74.85	70.32	73.81	73.94	72.29	70.14	72.91	71.18
차원	다양성	68.83	74.72	71.60	73.61	73.52	72.98	70.62	72.97	72.39
	관계성	69.26	76.76	72.32	75.67	75.30	74.00	73.79	75.32	71.86
	보편성	60.37	71.56	63.75	70.71	71.45	67.80	62.44	68.06	67.59
하위 요소	문화개방성	67.99	69.69	69.04	69.20	70.35	69.26	66.26	68.19	71.54
	국민정체성	70.01	73.32	71.95	72.44	72.72	71.96	72.11	72.65	71.23
	고정관념/차별	68.44	79.32	73.07	77.59	76.34	76.37	72.41	76.52	73.92
	일방적동화기대	55.88	70.29	61.35	68.48	64.09	66.17	66.13	67.23	61.65
	거부회피정서	73.99	77.96	75.72	77.31	77.46	76.20	76.74	77.90	73.55
	교류행동의지	75.31	80.84	77.80	79.87	82.38	78.09	76.86	79.24	78.55
	이중적평가	57.94	69.42	63.51	67.14	68.58	65.32	62.36	66.25	64.28
	세계시민행동	63.04	73.91	64.00	74.64	74.61	70.52	62.53	70.05	71.22



〈그림 3-61〉 전북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특성별 다문화수용성 점수(2018)

〈표 3-70〉 전북 도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대문화수용성 수준(2018)

구분	대문화 수용성	차원			하위요소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문화 개방성	국민 장체성	고정관념 차별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교류 행동·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성별	남학생 ^a	68.83	69.26	60.37	67.99	70.01	68.44	55.88	73.99	75.31	57.94	63.04
	여학생 ^b	74.72	76.76	71.56	69.69	73.32	79.32	70.29	77.96	80.84	69.42	73.91
	격차 ^(b-a)	7.55	7.50	11.19	1.70	3.31	10.88	14.41	3.97	5.53	11.49	10.87
학교급	중등 ^a	71.60	72.32	63.75	69.04	71.95	73.07	61.35	75.72	77.80	63.51	64.00
	고등 ^b	73.61	75.67	70.71	69.20	72.44	77.59	68.48	77.31	79.87	67.14	74.64
	격차 ^(b-a)	3.49	3.35	6.96	.16	.49	4.52	7.12	1.59	2.07	3.63	10.63
소득	중·상	73.52	75.30	71.45	70.35	72.72	76.34	64.09	77.46	82.38	68.58	74.61
	중	72.98	74.00	67.80	69.26	71.96	76.37	66.17	76.20	78.09	65.32	70.52
	중·하	70.62	73.79	62.44	66.26	72.11	72.41	66.13	76.74	76.86	62.36	62.53
	격차	2.90	1.51	9.01	4.09	0.76	3.96	2.08	1.26	5.52	6.22	12.08
지역 규모	중소도시 ^a	72.97	75.32	68.06	68.19	72.65	76.52	67.23	77.90	79.24	66.25	70.05
	읍/면 ^b	72.39	71.86	67.59	71.54	71.23	73.92	61.65	73.55	78.55	64.28	71.22
	격차 ^(b-a)	-1.73	-3.46	-4.7	3.35	-1.42	-2.60	-5.58	-4.35	-6.9	-1.96	1.18

② 외국인·이주민과의 관계 경험

- (해외여행·거주 경험 및 대중매체를 통한 경험) 대중교통이나 쇼핑센터, 길거리 등에서 외국이주민을 얼마나 자주 보았는지 '단순목적빈도'를 살펴보면, '가끔 보았다'가 50.3%로 가장 많았고, '자주(41.5%)' 보았다는 응답도 높았음. '해외여행 및 거주경험'이 있는 전북 청소년은 43.5%로 무경험(56.5%) 보다 낮게 나타남. '해외여행 빈도'에 대해서는 1~2회가 23.6%로 가장 많았음. 지난 1개월을 기준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인의 이미지(다중응답)'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외국인' 이미지가 76.8%로 매우 높았고, 다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미지가 52.9%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반면에 '봉사활동하는 외국인' 이미지는 15.1%에 그쳤음

〈표 3-71〉 전북 청소년의 외국이주민 단순목적빈도, 이미지, 해외여행·거주경험(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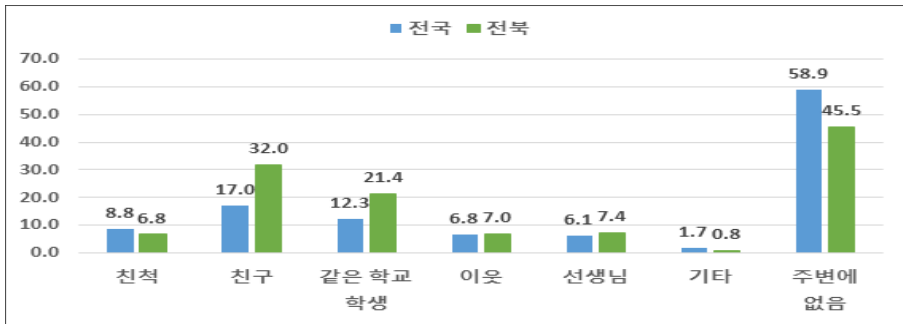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단순 목적	자주	77	41.5	대중 매체 통해 접한 이주민 이미지	봉사활동하는 외국인	29	15.1
	가끔	94	50.3		부당대우 받는 외국인근로자	99	52.9
					외국인범죄자	53	28.4
					TV프로그램 출연 외국인	143	76.8
해외 여행 빈도	여행인함	105	56.5	해외 여행/거주 경험	귀화 국가대표 운동선수	65	34.9
	1~2회	44	23.6		공익광고/홍보영상	74	39.5
	3~5회	26	13.9		경험없음	105	56.5
	6회 이상	11	5.9		경험있음	81	43.5

주 : '대중매체를 통한 이주민 이미지'는 5점척도 중 '자주 있다(4점)'와 '매우 자주 있다(5점)'의 합한 수치임

- (외국인·이주민과의 관계 유형)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45.5%는 주변에 외국인·이주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친척인 경우 6.8%, 친구인 경우 32.0%,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 21.4%, 이웃인 경우 7.0%, 선생님인 경우 7.4%로 나타남
- 이를 전국과 비교 시 '주변에 없다'는 응답은 전국 보다 낮은 반면, '친구' 또는 '같은 학교 학생'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국보다 약 1.5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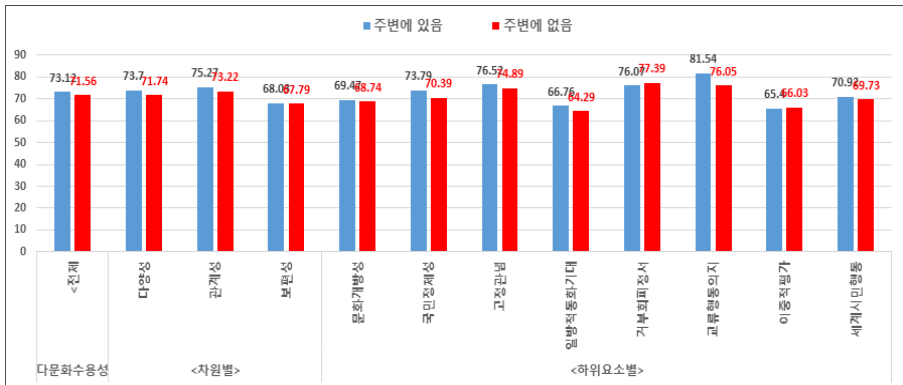
〈표 3-72〉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외국인·이주민과의 관계 유형(다중응답)(2018)

구분	친척	친구	같은 학교 학생	이웃	선생님	기타	주변에 없음
전국	8.8	17.0	12.3	6.8	6.1	1.7	58.9
전북	6.8	32.0	21.4	7.0	7.4	0.8	45.5



〈그림 3-62〉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외국인·이주민과의 관계 유형(다중응답)(2018)

- 전북 청소년의 외국인·이주민과의 관계 경험 여부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을 살펴보면, ‘주변에 이주민이 전혀 없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71.56점으로 ‘주변에 이주민 있는 청소년(73.12점)’ 보다 -1.56점 낮게 나타남



〈그림 3-63〉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외국인·이주민과의 관계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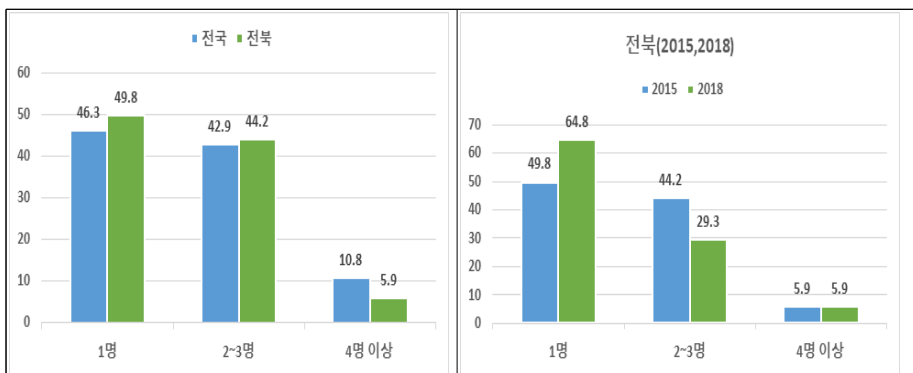
〈표 3-73〉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외국인·이주민과의 관계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2018)

구분	다문화 수용성	차원			하위요소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 관념 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 회피 정서	교류 행동 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 시민 행동
있음	73.12	73.70	75.27	68.03	69.47	73.79	76.52	66.76	76.07	81.54	65.40	70.92
없음	71.56	71.74	73.22	67.79	68.74	70.39	74.89	64.29	77.39	76.05	66.03	69.73

- (외국인·이주민 친구의 수) 주변에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친구’로 두고 있다고 응답한 전북 청소년(60명)에게 몇 명의 외국인 (다문화가정 포함) 친구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1명 있다는 응답이 49.8%, 2~3명(44.2%), 4명이상(5.9%) 등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전국과 비교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북 청소년의 응답을 2015년과 비교해 보면, 2015년에 비해 1명 있다는 응답은 줄었고, 2~3명 있다는 응답은 증가하여, 3년 전에 비해 다문화가정 친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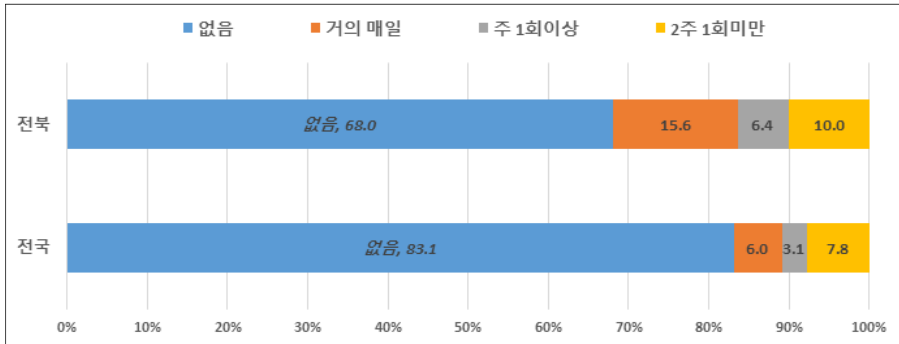
〈표 3-74〉 전북지역 청소년의 외국인·다문화가정 자녀의 친구 수(2015, 2018)

구분		1명	2~3명	4명 이상
전국		46.3	42.9	10.8
전북	2018	49.8	44.2	5.9
	2015	64.8	29.3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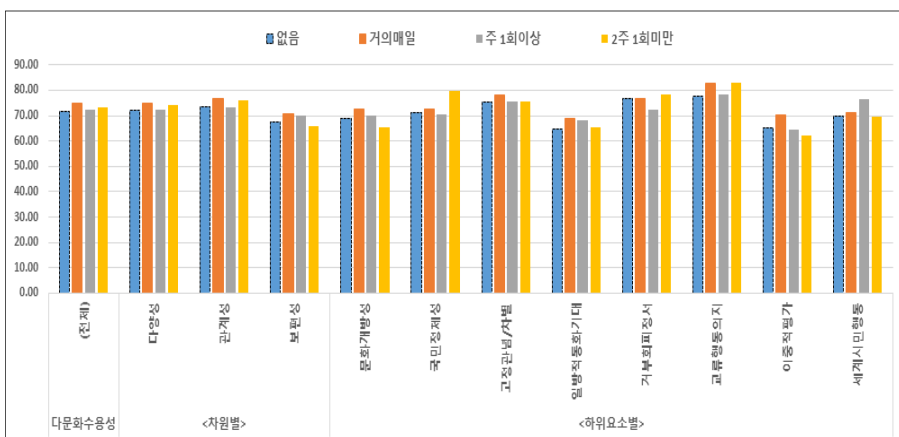
〈그림 3-64〉 전북지역 청소년의 외국인·다문화가정 자녀의 친구 수(2015, 2018)

- 전북 청소년의 외국인/다문화가정 친구와 접촉 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이 15.6%, 2주 1회 미만이 10.0%, 주 1회 이상 6.4% 순임. 전국과 비교해서는 다문화가정 친구와의 접촉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그림 3-65〉 전북지역 청소년의 외국인·다문화가정 친구와의 접촉(만남/대화) 빈도(2018)

- 외국인/다문화가정 친구와의 접촉빈도에 따른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살펴보면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거의매일’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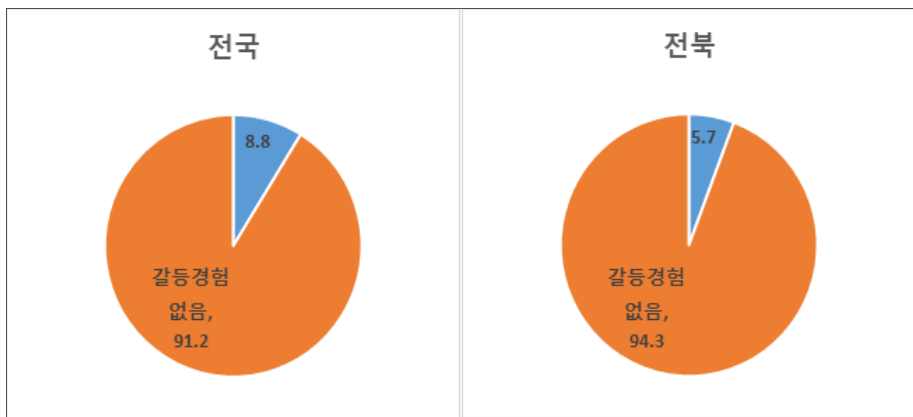


〈그림 3-66〉 전북지역 청소년의 외국인·다문화가정자녀 친구와의 접촉빈도별 다문화수용성(2018)

〈표 3-75〉 전북지역 청소년의 외국인·다문화가정자녀 친구와의 접촉빈도별 다문화수용성(2018)

		친구와의 접촉빈도			
		없음	거의매일	주 1회이상	2주 1회미만
다문화 수용성		71.81	74.67	72.21	73.16
차원	다양성	72.17	74.86	72.49	74.11
	관계성	73.68	76.58	73.03	76.14
	보편성	67.38	70.75	70.14	65.80
하위 요소	문화개방성	68.76	72.62	70.16	65.61
	국민정체성	71.19	72.78	70.61	79.60
	고정관념/차별	75.31	78.09	75.61	75.48
	일방적동화기대	64.72	68.90	68.07	65.23
	거부회피정서	76.82	76.88	72.11	78.21
	교류행동의지	77.69	82.73	78.31	82.98
	이중적평가	65.23	70.31	64.53	62.33
	세계시민행동의지	69.74	71.24	76.32	69.62

- (이주민 친구와의 갈등경험) 이주민과의 관계 경험이 ‘같은 학교 학생’ 또는 ‘이웃’이라고 응답한 전북 청소년에(51명)게 다투거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5.7%가 ‘갈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국과 비교하면 좀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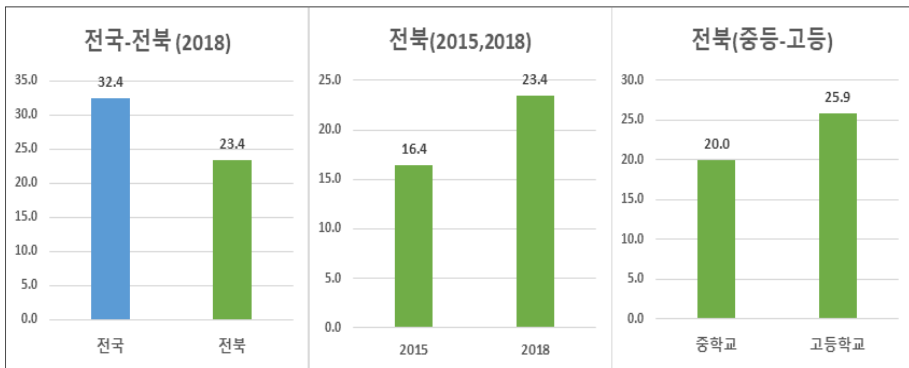
〈그림 3-67〉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 학생·이주민 이웃과의 갈등경험 여부(2018)

④ 다문화교육 및 활동 경험

-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 지난 1년간 다문화교육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참여경험이 있는 전북 청소년은 2018년 23.4%로 나타나 2015년(16.4%)에 비해 증가하긴 하였지만, 전국평균(32.4%)과 비교해 보면 -9.0%p 낮았음.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의 다문화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76〉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참여 여부(2015, 2018)

구분			다문화교육 참여	다문화교육 미참여
전국			32.4	67.6
전북	연도	2018	23.4	76.6
		2015	16.4	83.6
	학교 급별	중학교	20.0	80.0
		고등학교	25.9	76.5



〈그림 3-68〉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참여 여부(2015, 2018)

-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진 장소로는 전국과 전북 지역 모두 ‘학교의 정규 교과 시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시민단체 등’, ‘종교기관’ 등의 순으로 많았음. 한편, 응답비율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지만, 전북의 경우 ‘학교의 체험활동 시간’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한 다문화교육 참여율이 전국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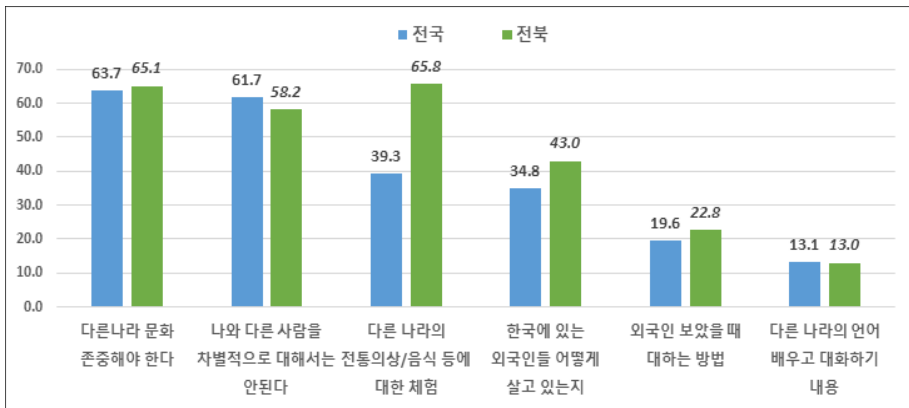
〈표 3-77〉 전북지역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장소(복수응답)(2018)

구분	학교 정규교과 시간	학교 체험활동 시간	시민단체, 봉사활동 기관	종교기관	청소년수련관	기타
전국	66.8	42.0	7.5	3.1	2.9	3.1
전북	67.3	50.4	16.1	7.2	1.4	0.0

- 지난 1년간 받았던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한다’가 63.7%로 가장 많았던 반면, 전북은 ‘다른 나라의 전통의상/음식 등 문화체험’이 65.8%로 가장 많았음. 전북의 경우 체험식의 교육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표 3-78〉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내용(복수응답)(2018)

구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해서는 안된다	다른 나라의 전통의상/ 노래/음식 등에 대한 체험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외국인 보았을 때 대하는 방법	다른 나라의 언어 배우고 대화하기 내용	기타
전국	63.7	61.7	39.3	34.8	19.6	13.1	0.9
전북	65.1	58.2	65.8	43.0	22.8	13.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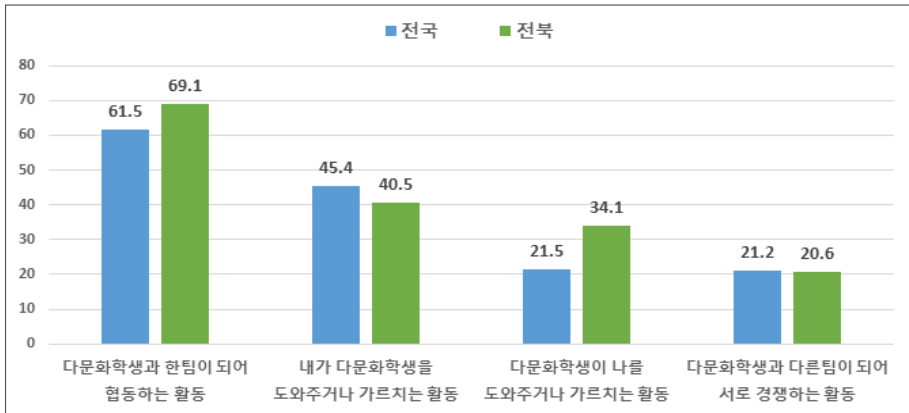
〈그림 3-69〉 전국 및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내용(복수응답)(2018)

- (다문화학생과의 함께하는 활동 경험) 지난 1년간 함께했던 다문화활동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참여경험이 있는 전북 청소년의 비율은 8.4%였으며, 2015년 참여율(3.3%)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6.8%) 보다 높았음

〈표 3-79〉 전북지역 청소년의 다문화학생과의 공동 활동 경험 여부(2015, 2018)

구분		참여경험 있음	참여경험 없음
전국		6.8	93.2
전북	2018	8.4	91.6
	2015	3.3	96.7

- 다문화학생과 함께 했던 활동 내용으로는 전국과 전북 청소년 모두 ‘다문화학생과 한 팀이 되어 협동하는 활동’이 가장 많았고, 다문화학생을 돕거나 가르치는 활동, 다문화학생으로부터 도움이나 가르침을 받는 활동, 다문화학생과 경쟁하는 활동 순으로 많았음. 한편, 전북의 경우 ‘다문화학생과 한 팀이 되어 협동하는 활동’과 ‘다문화학생이 나를 도와주거나 가르치는 활동’이 전국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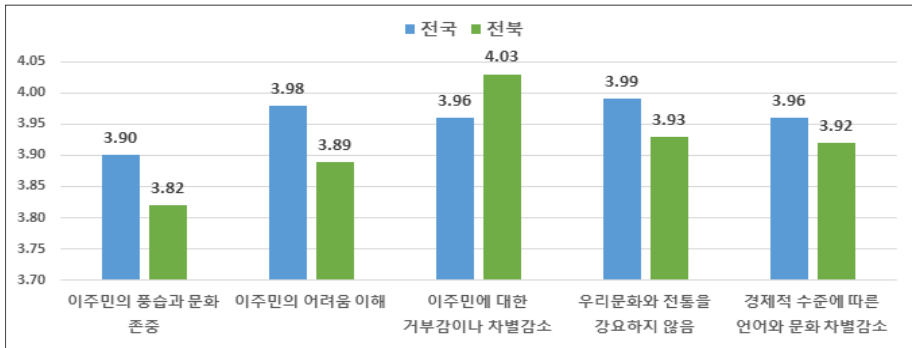
〈그림 3-70〉 전북지역 청소년의 다문화학생과의 활동 참여 내용(복수응답)(2018)

- (다문화교육·활동 경험여부별 다문화수용성) 전북지역 청소년의 다문화 교육 및 공동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살펴보면, 먼저 다문화교육 참여의 경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가지 차원별 역시 교육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다문화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보면, 활동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소폭 높았음. 3가지 차원별로는 다양성 차원에서만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80〉 전북지역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및 공동활동 참여 경험여부별 다문화수용성(2018)

구분		다문화교육 참여경험		다문화활동 참여경험	
		有	無	有	無
다문화 수용성		75.10	71.59	71.86	72.47
차원	다양성	75.01	72.13	73.95	72.70
	관계성	77.01	73.52	72.62	74.50
	보편성	71.74	66.75	66.45	68.06
하위요 소	문화개방성	69.42	69.05	71.10	68.96
	국민정체성	75.27	71.32	74.13	72.07
	고정관념/차별	78.64	74.90	75.77	75.78
	일방적동화기대	67.27	65.14	59.25	66.23
	거부회피정서	80.23	75.58	74.04	76.91
	교류행동의지	81.53	78.28	82.28	78.75
	이중적평가	71.37	63.95	64.74	65.78
	세계시민행동의지	72.16	69.83	68.33	70.57

- (다문화교육·활동 후 인식변화) 다문화교육 및 활동 참여 후 전북 청소년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이나 차별감소(4.03점)’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우리문화와 전통을 강요하지 않게 됨(3.93점), 경제적 수준에 따른 언어와 문화차별이 감소(3.92점) 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이주민의 풍습과 문화 존중’ 인식변화에 대해서는 3.82점으로 가장 낮았음



〈그림 3-71〉 전북지역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및 활동 후 인식변화(5점만점)(2018)

- (향후 다문화학생과의 공동활동 참여 의향) 향후 다문화교육 및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전북 청소년은 참여할 의향이 72.8%로 전국보다 4.2%p 더 높게 나타남

〈표 3-81〉 전북지역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및 활동 참여 의향(복수응답)(2018)

구분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음	참여하고 싶지 않음	참여하고 싶음	매우 참여하고 싶음	참여하고 싶지 않음 ①+②	참여하고 싶음 ③+④
전국	4.7	26.7	57.4	11.2	31.4	68.6
전북	4.3	22.9	62.4	10.4	27.2	72.8

- (향후 참여하고 싶은 활동 프로그램) 전북 청소년의 28.5%는 스포츠(게임)활동을 가장 많이 희망했고, 다음으로 요리활동(27.0%)을 희망하였음

〈표 3-82〉 전북지역 청소년의 향후 참여하고 싶은 다문화학생과의 활동 내용(1순위)(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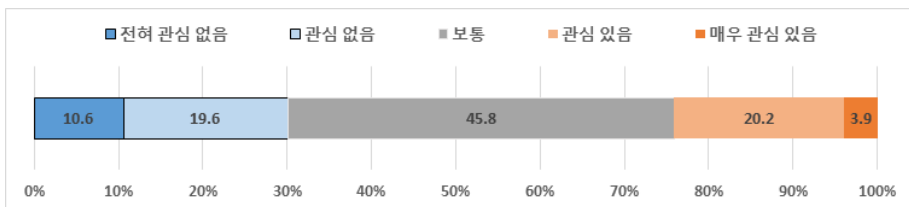
구분	스포츠/게임 활동	다른 나라 음식 요리활동	고민/관심사에 관해 이야기 하는 활동	여행/캠프 활동	음악/문화 활동	서로의 언어교육 활동	다문화행사 도와주는 봉사활동
전체	28.5	27.0	9.8	12.1	9.2	11.7	1.6
성별	남	64.5	9.7	3.2	6.5	3.2	9.7
	여	18.1	32.4	11.4	13.3	11.4	12.4
학교급	중	32.6	30.2	11.6	14.0	4.7	7.0
	고	27.2	25.0	8.7	12.0	10.9	14.1

다. '2018년 전라북도 사회조사'에 따른 사회통합 현황

- 전라북도는 2007년부터 전북 도민 대상 삶의 질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회조사를 구성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있음
- 2018년 전라북도 사회조사의 조사지역은 도내 14개 시·군이며, 조사표본은 901개 조사구 13,515가구, 조사대상은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중 23,136명(남 10,618명, 여 12,518명)이었음. 조사는 2018. 8. 20 ~ 9.4까지 약 12일 동안 실시함
- 2018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인구,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특성항목(저출산, 복지, 여가·문화, 경제·발전, 지방자치)의 총 7개 분야, 3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가구/가족 분야 중 다문화 가구 인식부분(3문항)만을 추출하여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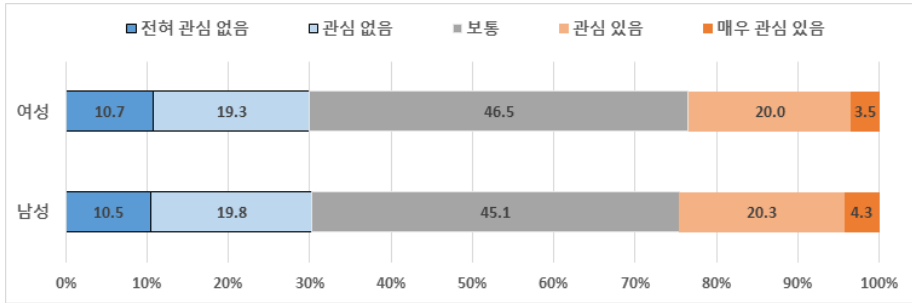
① 전북 도민의 다문화가구 관심도

- 전북 도민의 다문화 가구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보통(45.8%) 수준을 제외하고, '관심이 없다'는 응답(30.2%)이 '관심이 있다'는 응답(24.1%) 보다 6.1%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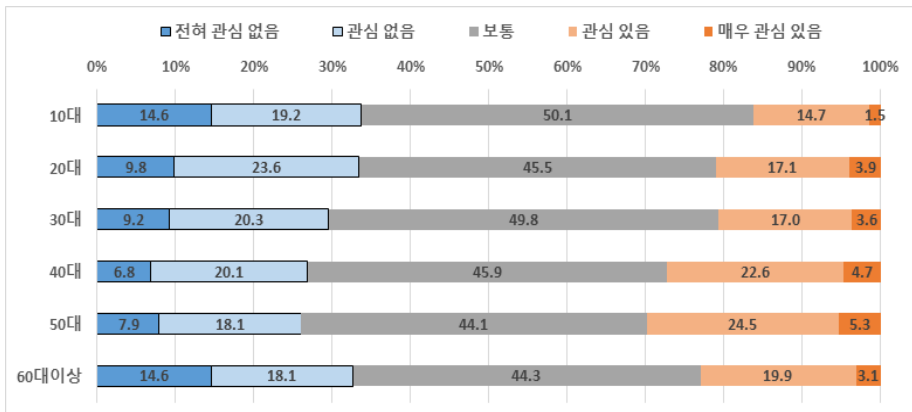
〈그림 3-72〉 전북 도민의 다문화가구 관심도(2018)

- 성별에 따른 다문화가구 관심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다문화가구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분포를 보였음. 대체적으로 유사한 응답 분포를 보였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관심 있다’는 응답이 조금 높은 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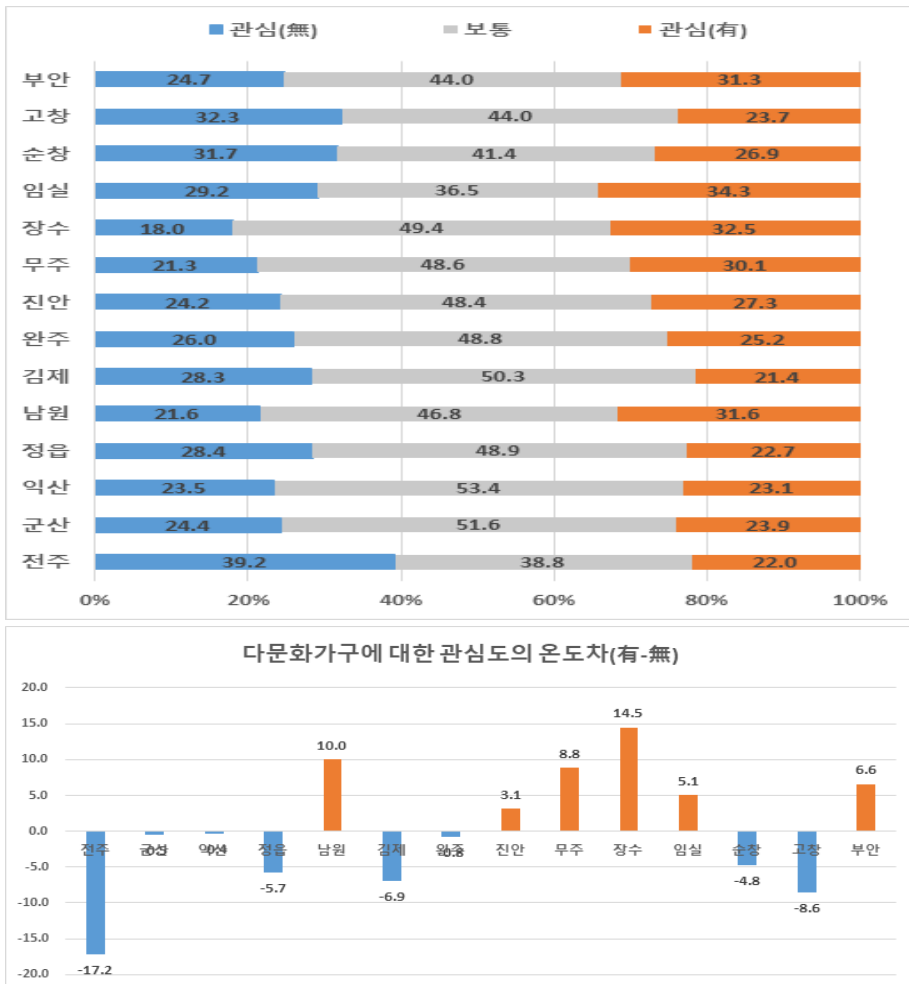
〈그림 3-73〉 전북 도민의 다문화가구 관심도에 대한 성별 비교(2018)

- 연령별에 따른 다문화가구 관심도를 살펴보면, 60대이상을 제외하고 연령이 어릴수록 다문화가구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10대가 33.8%로 다문화가구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33.4%), 60대이상(32.7%) 등의 순이었음. 반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50대와 40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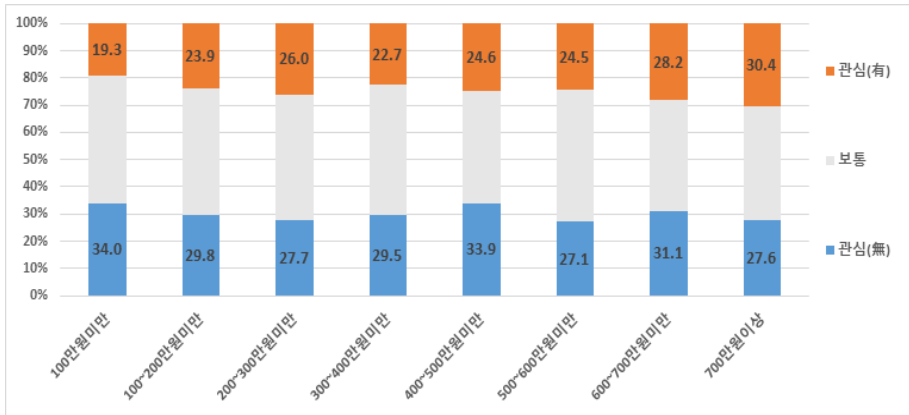
〈그림 3-74〉 전북 도민의 다문화가구 관심도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2018)

- 시군별에 따른 다문화가구 관심도를 살펴보면, 전주시가 다문화가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39.2%로 가장 높았던 반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임실군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다문화가구에 대해 관심이 ‘있다 vs 없다’는 응답의 비율 차이를 보면, 장수군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 14.5%p 높게 나타나 가장 큰 비율 차이를 보였고, 반면에 전주시는 관심이 ‘없다’는 비율이 17.2%p 더 높게 나타나 응답에 대한 온도차이를 보였음



〈그림 3-75〉 전북 도민의 다문화가구 관심도에 대한 시군별 비교(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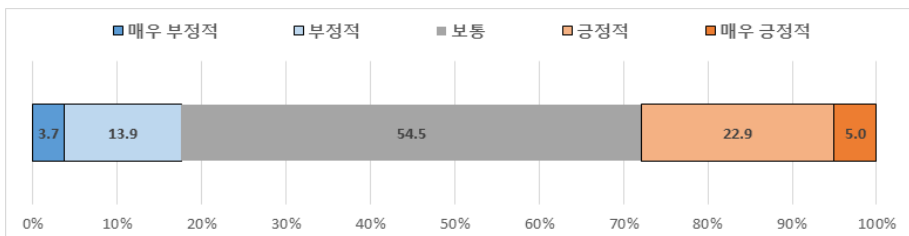
- 소득수준에 따른 다문화 관심도를 살펴보면, 다문화가구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소득구간 700만원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한편, 모든 소득구간에서 다문화가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관심이 '있다'는 응답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일하게 700만원 이상 그룹에서만 관심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 3-76〉 전북 도민의 다문화가구 관심도에 대한 소득수준별 비교(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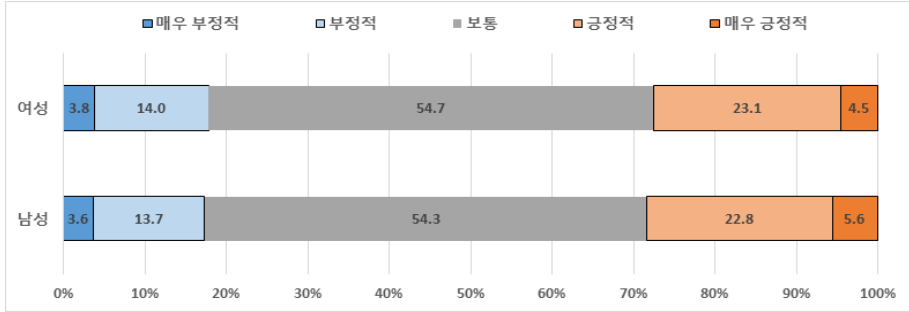
②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한 전북도민의 견해

-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한 전북도민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문화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27.9%)이 '부정적'이라는 응답(17.6%) 보다 10.3%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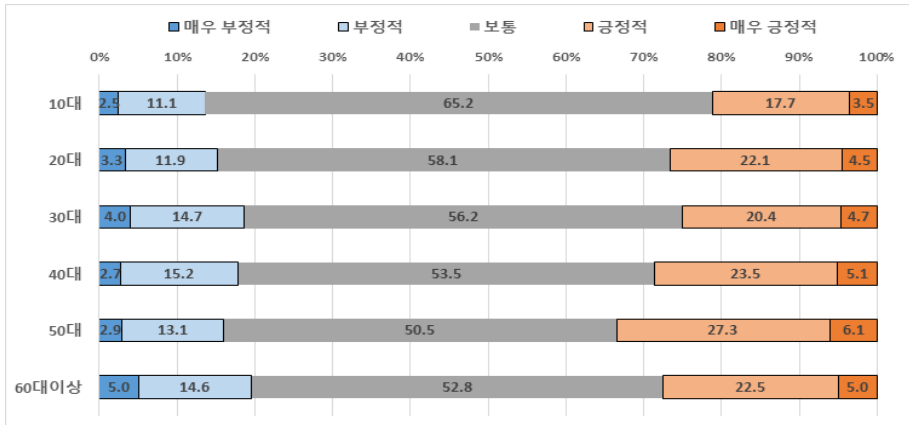
〈그림 3-77〉 전북 도민의 다문화가구 증가 현상에 대한 견해(2018)

- 성별에 따른 다문화가구 증가 현상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다문화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분포를 보였음. 대체적으로 유사한 응답 분포를 보였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조금 높은 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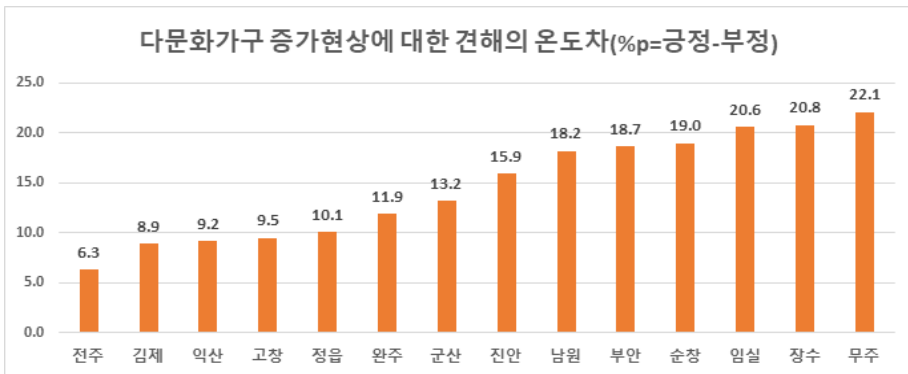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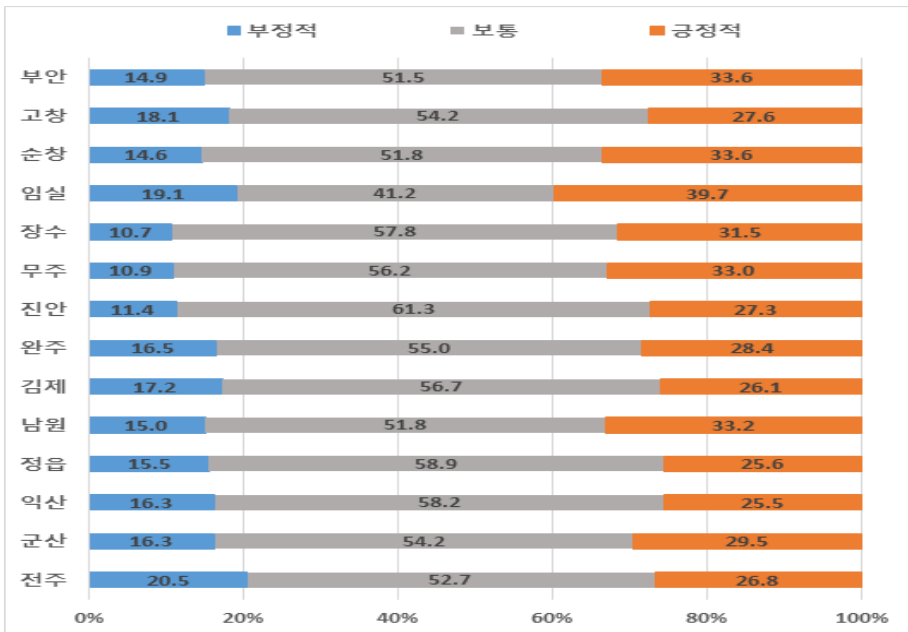
〈그림 3-78〉 다문화가구 증가 현상에 대한 견해의 성별 비교(2018)

- 연령별에 따른 다문화가구 증가 현상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그룹에서 다문화가구 증가 현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19.6%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13.6%로 가장 낮았음. 반면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0대 그룹이 33.4%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21.2%로 가장 낮게 나타남(보통 응답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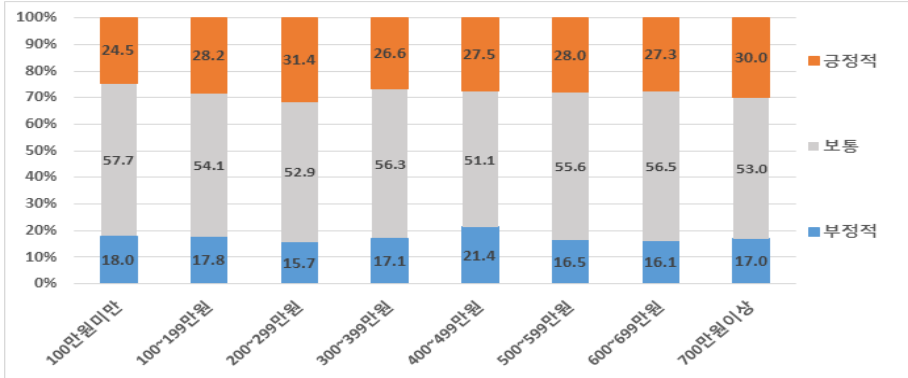
〈그림 3-79〉 다문화가구 증가 현상에 대한 견해의 연령별 비교(2018)

- 시·군·별에 따른 다문화가구 증가현상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전주시가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0.5%로 가장 높았던 반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임실군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다문화가구 증가 현상에 대해 ‘긍정 vs 부정’ 응답의 비율 차이를 보면, 무주군이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22.1%p 높게 나타나 적극적인 긍정적 의사를 표현하였고, 반면에 전주시는 ‘긍정적’ 비율이 6.3%p 더 높은데 그쳐 지역별 응답에 대한 온도차이를 보였음



〈그림 3-80〉 다문화가구 증가 현상에 대한 견해의 시·군·별 비교(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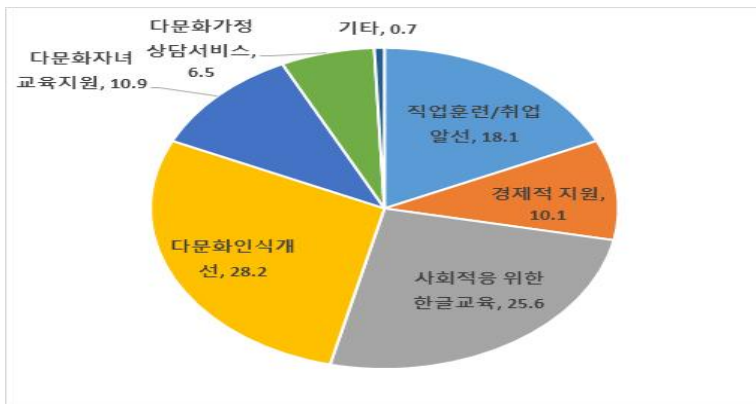
- 소득수준에 따른 다문화가구 증가 현상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200~299만원 그룹에서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해 긍정적(31.4%) 견해가 가장 높았고, 부정적(15.7%) 견해는 가장 낮게 나타나, 다문화가구 증가 현상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81〉 다문화가구 증가 현상에 대한 견해의 소득수준별 비교(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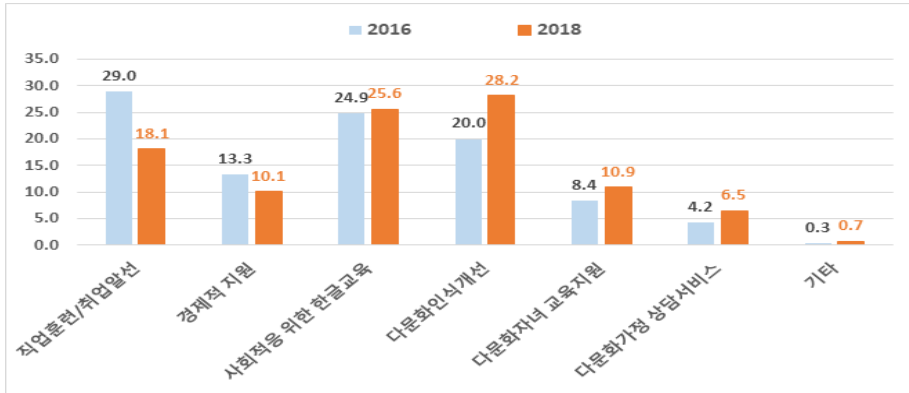
③ 다문화가구원을 위한 지원 항목에 대한 견해

- 다문화가구원을 위해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28.2%)’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 교육(25.6%)’, ‘직업훈련/취업알선(18.1%)’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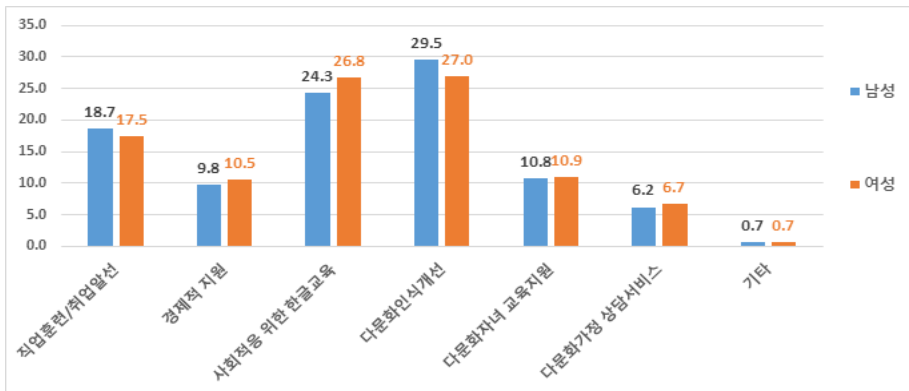
〈그림 3-82〉 다문화가구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한 견해(2018)

- 2016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0%(‘16) → 28.2%(‘18)로 8.2%p 증가한 반면, ‘직업훈련/취업알선’은 29.0%(‘16) → 18.1%(‘18)로 10.9%p 감소하였음



〈그림 3-83〉 다문화가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한 견해(2016vs2018)

- 성별에 따른 다문화가구 지원항목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다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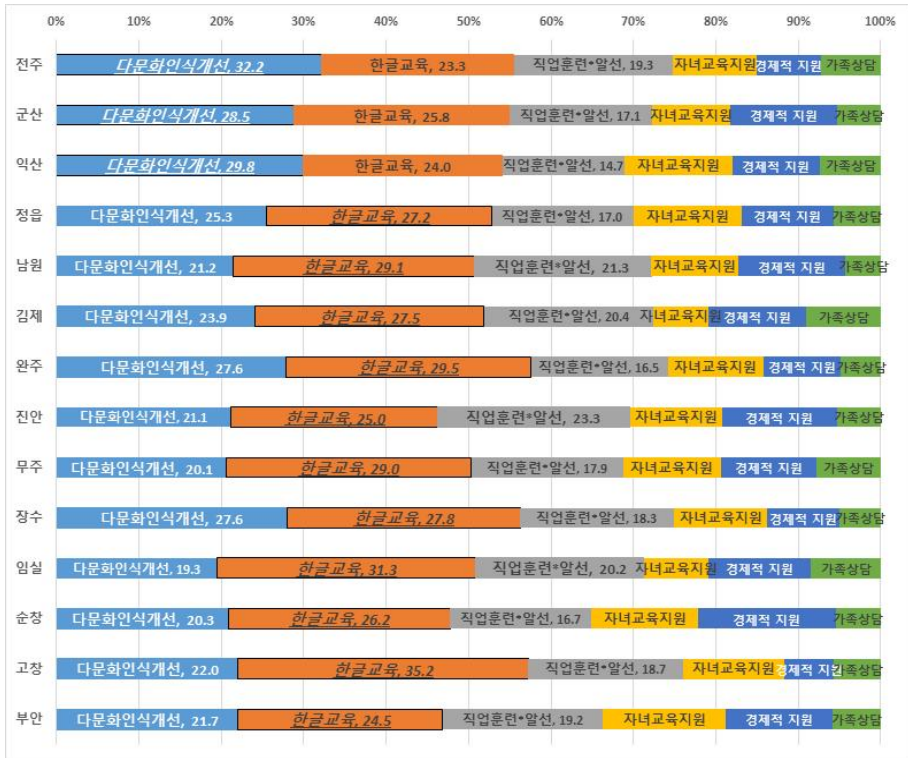
〈그림 3-84〉 다문화가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한 성별 견해(2018)

- 연령별에 따른 다문화가구 지원항목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6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 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한편, 60대 연령층에서는 ‘한글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순으로 높았음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10대	다문화인식개선 26.7	한글교육 22.4	자녀교육지원 16.7	직업훈련*알선 16.6	경제지원 11.0	가족상담 5.8
20대	다문화인식개선 31.9	한글교육 23.6	직업훈련*알선 18.3	자녀교육지원 10.4	경제지원 9.7	가족상담 5.8
30대	다문화인식개선 32.8	한글교육 25.7	직업훈련*알선 16.9	자녀교육지원 10.2	경제지원 7.2	가족상담 6.6
40대	다문화인식개선 29.9	한글교육 24.6	직업훈련*알선 18.0	자녀교육지원 11.4	경제지원 8.9	가족상담 6.6
50대	다문화인식개선 29.3	한글교육 25.0	직업훈련*알선 18.2	자녀교육지원 10.7	경제지원 9.0	가족상담 7.1
60대 이상	한글교육 28.0	다문화인식개선 23.3	직업훈련*알선 18.8	경제지원 12.8	자녀교육지원 9.8	가족상담 6.5

〈그림 3-85〉 다문화가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한 연령별 견해(2018)

- 지역별에 따른 다문화가구 지원항목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군 단위 지역은 모두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 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주/군산/익산 등의 시 지역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소득수준에 따른 다문화가구 지원항목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소득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는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 교육’의 필요성이 1위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200만원 이상의 그룹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 1위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 교육’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86〉 다문화가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한 시군별 견해(2018)



〈그림 3-87〉 다문화가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한 소득수준별 견해(2018)

제 3 절 소결

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 (일반적 특성)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한국 거주기간(혼인 지속기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변화에 따른 지원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또한, 유배우자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이혼/별거 비율은 증가하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함. 예를 들어, 가족해체를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과 다문화자녀에 대한 지원과 다문화부모에 대한 지원 등 정책대상별에 따른 개별화된 접근이 요청됨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성비는 여성 82.7%, 남성 17.3%를 차지함.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19.6%, 30대는 35.1%, 40대는 23.7%, 50대는 15.0%, 60세 이상은 6.5%로 나타나, 2015년 대비 29세 이하 연령대는 감소하고 30대 연령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거주기간 분포를 살펴보면, 10~15년 미만은 33.0%, 15년 이상은 27.6%로 나타나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운데 60% 가량이 약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국내체류 장기화 현상이 두드러짐
 - 혼인상태는 2015년과 비교하여 유배우자 비율은 감소하고 이혼/별거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2018년 기준 혼인지속기간은 평균 9.59년으로 나타남. 점차 혼인지속기간 비율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생활 및 이혼) 혼인지속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갈등의 원인이 변화되고 있음. 특히, 자녀연령이 학령기에 진입함에 따라 부부간 갈등에서 자녀와 관련된 갈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속적으로 부모(역할)교육, 부모-자녀관계증진 교육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 때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갈등해결 방안으로 소극적인 대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누적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함. 이를 위해 부부상담 프로그램 및 주기적인 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요청됨.

- 다음으로 이혼 후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매우 높아졌으나, 양육비를 배우자로부터 받는 비율은 매우 저조함.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계와 홍보 강화가 필요함
 - 국내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부부갈등 경험이 증가. 갈등사유로는 ‘성격차이’가 5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교육과 행동문제 24.1%, 경제문제 22.0%, 언어소통 어려움 2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갈등해결 방안으로는 ‘대화로 해결’한다가 60.5%로 가장 많았고, ‘그냥 참음’ 48.1%, ‘혼자 문제 해결 방법 찾아봄’ 19.1%, ‘주위사람에게 이야기함’ 15.9% 순임
 -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부부간 연령차이가 클수록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이혼/별거 이후 자녀양육자는 본인(결혼이민자·귀화자)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94.9%로 나타났고,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 비율은 23.5%로 나타남
- (자녀양육·교육) 기본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언어적 제한이 크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의사결정 시 상당한 한계점을 지니게 됨. 또한, 경제활동참여로 자녀양육과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기본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실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확대로 접근성을 높여 양육과 돌봄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또한, 자녀가 중·고등학령기에 진입할 경우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부모가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개별 모국어로 변환하여 정보접근성을 높여줄 필요도 있음
 - (만 5세 이하) 자녀 돌봄 및 양육 시 나타나는 힘들고 어려운 점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 찾기는 것의 어려움’이 2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에게 한국어 직접 가르치는 것’의 어려움 26.3% 등이 높게 나타남
 - (학령기)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학업/진학에 관한 정보부족이 47.1%로 가장 많았고, 교육비/용돈 등 경제적 비용부담 40.9% 등이 높게 나타남

- (사회적 관계)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었음. 특별히 가족 이외에는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안이 전무한 상태였음. 더욱이 모임 참여 의향은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욕구가 감소함. 이에 결혼이주민의 사회활동(자조모임 등) 참여를 지원하여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주민들의 공통된 관심 영역 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취업으로 인해 주말이나 평일 야간 시간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한국생활의 어려움 중 '외로움'이 24.1%로 2015년 보다 5.6%p 증가하였고, '친구 사귀기 어려움'이 7.1%로 나타나 심리·정서적 문제와 사회적 관계 참여 및 형성 문제에 직면한 이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약 30%에서 40% 가량이 가족 이외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고 응답함
 -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활동과 모임에 참여 했던 경험은 2015년보다 감소함.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모국인 친구모임은 향후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고,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나 활동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음. 모임과 활동 참여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경제활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차별경험 및 대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은 2015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차별경험도 감소함. 이는 이주 초기에 차별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한편, 직장 내에서 차별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노무·인권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자녀의 사회통합) 다문화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증진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자녀의 학교적응 어려움은 비다문화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업과 관련된 이유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비다문화학생에 비해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있음. 다음으로 차별경험의 주요 대상은 친구로 나타났으며, 2015년 대비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실정임.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하여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및 강화될 필요 있음. 더해서 취약한 다문화자녀 대상 지속적인 전문가 상담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아버지 보다 어머니와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반면 아버지와 관계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임
- 학교적응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학업 관련 어려움으로 나타남
- 차별한 사람이 친구라는 응답이 2015년에 비해 감소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차별 당하고 있는 당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참는다'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 전북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48.07점이며, 차원중에서는 특히, 관계성 차원이 가장 낮게 나타나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실제 접촉 자체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나타냄
 - 전북 도민의 다문화수용성은 48.07점. 전국평균보다 4.74점이나 낮았으며, 17개 시도 중 하위에서 3번째로 낮게 나타남
 - 다문화수용성의 3가지 차원을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다양성/관계성/보편성 모든 차원에서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특히, 관계성 차원의 경우 전국평균 보다 -6.56점 낮아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다양성 -4.12점, 보편성 -2.78점의 편차를 보임. 특히, 관계성 차원의 요인 일방적동화기대 지수가 39.7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상호교류행동의지가 40.88점으로 나타남
 - 8가지 하위요소별로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거부·회피정서'요소가 전국평균 보다 유난히 낮아 -11.36점의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다음으로 '고정관념/차별' 지수가 -6.94점 낮았고, '일방적 동화기대' 지수가 -5.94점 낮게 나타나는 등 전국평균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이에 전북지역의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상호 교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됨(성별 및 연령별 변수 적극 활용). 선주민은 이주민과의 관계경험 여부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지원 노력이 필요함

- 한편, 전북도민은 이주민과의 접촉경험이 전국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수용성은 낮게 나타났다는 점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 있음. 이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막연한 접촉의 기회는 빈번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공간에서 상호교류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위협감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됨. 이에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막연한 접촉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이주민과 함께 겪고 느낄 수 있는 활동경험을 마련하여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추가 한 이주민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
- 다문화수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다문화이해교육 또는 다문화인식개선 관련 활동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 있음. 다문화이해교육이나 다문화인식 관련 활동참여 경험 정도에 의해 다문화수용성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이에 다문화이해교육이나 활동에 대한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안 마련이 필요함. 한편, 다문화이해교육을 시·군 단위에서 실시하고는 있으나 실제 일반도민의 교육경험은 없는 경우가 9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이에 도민의 다문화이해교육 경험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교육콘텐츠로서는 문화개방성이나 일방적 동화기대를 완화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방향과 이에 초점을 둔 콘텐츠개발이나 매뉴얼 개발 및 커리큘럼이 구성되어야 할 것임
-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72.42점으로 전국평균보다 +1.20점 높았으며, 17개 시·도 중 상위 6번째로 높게 나타남.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비하면 +24.35점 높았음
- 전북 청소년 역시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성별’로는 ‘여학생 > 남학생’, ‘학교급별’로는 ‘고등 > 중등’, ‘경제수준별’로는 ‘중-상 > 중 > 중-하’,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 읍/면부’ 등으로 나타남

- 전북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모두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요구됨
- 향후 다문화이해교육 및 활동에 참여할 의향은 전국평균 보다 높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스포츠(게임)활동과 요리활동으로 나타남

다. 전북 사회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 전북도민의 다문화가구에 대한 관심도는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 앞서 살펴본 다문화수용성 정도와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을 것임. 이에 60대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이 재차 강조되고 있음
- 또한, 시·군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로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군 단위 지역에서는 관심도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전주시를 비롯한 다수의 시 지역에서는 관심도가 낮게 나타남. 이를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군별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의 증가 현상에 대해서는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시·군별로는 시 단위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이는 곧 다문화수용성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과 다문화이해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요청됨. 한편, 다문화가족을 위한 필요 지원정책으로 전북도민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 사업 추진 시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4

장

전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경험 및 정책적 욕구

-
- 제1절 다문화가족 세부 집단별 심층면접 분석결과
 - 제2절 지역사회 선주민 면접조사 분석결과
 - 제3절 현장전문가 FGI 및 개별면접조사 분석결과
 - 제4절 소결

제4장 전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경험 및 정책적 욕구

본 장에서는 전북지역의 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 유학생 포함)과 선주민 대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경험 실태 및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고자 함. 이를 위해 첫째, 다문화가족을 세부 집단별로 구분하여 대상별 구체적인 경험 실태와 상이한 어려움 및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고자 개별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둘째, 지역사회의 선주민을 세부 집단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입장과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경험 실태와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 욕구를 파악하고자 면접조사를 실시함. 마지막으로 전북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현장종사자(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 이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와 개별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사회통합사업 운영실태, 실천 현장에서 경험하는 주요 현안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여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음

제 1절 다문화가족 세부 집단별 심층면접 분석결과

가. 조사개요

(1) 참여대상자 및 조사방법

- 전북지역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경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면접조사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역(시·군)과 국적별(베트남, 필리핀, 중국, 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및 대상별(여성·남성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그 외 가족) 등으로 세분화하여 선정함. 최종 면접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은 총 18명임
- 세부집단별 다문화가족 참여대상자는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에서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협조 공문으로 섭외 요청을

부탁드렸고, 각 지역의 센터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에 대한 안내를 다문화가족들에게 공지한 뒤 인터뷰 조사에 동의한 참여대상자를 소개해 주셔서 이 분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면접조사를 실시함

- 면접조사는 주로 각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실과 참여대상자의 자택에서 1:1 심층면접으로 실시됨. 인터뷰 시작 전에 본 조사의 목적과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및 참여대상자의 익명성 보장을 언급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함. 평균 면접시간은 최소 50분에서 최장 2시간 이상이 소요됨
-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됨

(2) 주요 면접내용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다문화수용성 제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대상 사회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실태, 지역사회 적응 시 어려운 점, 기존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진단 및 개선(안),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요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반구조화 질문형식으로 구성함
- 면접내용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짐. 첫째, 세부 집단별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국적, 거주기간, 배우자와의 연령차, 혼인형태, 동거가족원, 월평균 소득수준, 취업상황 등을 살펴봄
- 둘째, 사회통합 관련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회통합 경험 실태, 지역사회 내에서의 차별 혹은 갈등 경험, 지역사회 적응 시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함. 마지막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 중 사회통합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및 개선사항, 그리고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요구 등을 파악함

(3) 분석방법

- 개별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녹음된 인터뷰 내용들은 반복 기입하면서 전사하고 전사된 녹취록과 면접조사 실시 할 당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필사한 연구노트 자료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주요내용을 범주화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함

나. 면접조사 분석결과

(1)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은 총 14명²⁾임. 세부 집단별로 여성결혼이민자 7명, 남성결혼이민자 3명, 결혼이민자의 배우자(한국인 남편 2명, 부인 1명) 3명과 기타 가족원(시부모) 1명임
- 10명의 결혼이민자의 입국시점은 국제결혼이 급증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입국자는 4명,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입국자는 5명, 나머지 한 명은 외국에서 결혼 생활하다가 2018년 12월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생활은 평균 10.3년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가량 한국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는 적게는 13개월, 많게는 18세였으며 대부분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였음
-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연령대는 30대 5명, 40대 4명, 50대 2명, 60대 3명으로 30~40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10명의 결혼이민자 중 여성결혼이민자(7명)는 한국인 남편과 초혼이었으며, 남성결혼이민자(3명)는 한국인 부인과 재혼인 경우가 2명, 초혼인 경우가 1명으로 나타남. 결혼이민자(10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2명은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었음

2) 다문화가족 세부 집단별 개별 심층면접조사 대상자는 총 18명이었음. 이 중 유학생 2명, 외국인노동자 2명은 다문화가족 범주에 넣기가 애매모호하여 최종연구심의회 시 심사위원위 의견을 반영하여 제외시킴

-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를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는 평균 10.2세로 적게는 1살 많게는 21살 차이가 났고, 남성결혼이민자도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가 적게는 7살 많게는 14살 차이를 보였음
- 여성결혼이민자 7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활동 중이었으며, 센터에서의 통·번역사, 마을학당교사, 파트타임 영어교사, 베트남 작물 농사와 함께 온라인 판매업까지 하는 등 다양했음. 한편, 현재 무직인 여성결혼이민자도 빠른 시일 내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음
- 결혼이민자 10명 중 여성결혼이민자 5명만이 국적을 취득하였고 남성결혼이민자는 영주권취득에 머물러 있었으며, 여성결혼이민자 일부도 영주권 취득만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었음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시부모를 제외한 14명의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노동자 대상 한국어 실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생활이 2년이 채 안 된 남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실력이 여성결혼이민자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여성결혼이민자는 대부분이 한국어 토픽 3급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교육 관련 이용 서비스가 가장 많았고, 입국 초기에는 방문서비스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부부교육과 부모역할 교육 및 가족과 함께 여행가는 프로그램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도 있었음
-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이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기존 한국어교육 방법에 대한 개선(1:1 멘토서비스, 소규모별·수준별 고려 한국어 교육, 주말반·야간반 한국어교육 확대, 일상생활에 대한 한국어대화 1:1 프로그램 등)을 가장 필요로 했으며, 그 외 자격증 취득과 함께 실질적인 일자리연계 서비스, 부모 우선적 다문화인식개선과 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함

〈표 4-1〉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세부 집단별 일반적 특성

지 역	세부 집단 유형	연령	출신국	거주기간	국적 취득 유무	배우자의 연령차 (배우자연령)	혼인 형태	동거가족원	취업상황	한국어 실력	센터 이용 서비스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전주 (5)	여성결혼 이민자	34세	캄보디아	12년차 (2008년 입국/결혼)	유	1살 차 (35세)	초혼	남편(2교대 근무 직장), 딸(11세), 딸(21개월)	통 번역(1년차) 2010년부터 시작	3급	한국어방문 교육서비스 등	초기입국자는 방문서비스 필요, 정치참여 기회 마련
전주 (6)	여성결혼 이민자	36세	중국	12년차 2008년 대학교 유학 2016년 결혼(4년차)	무	2살차 (38세)	초혼	남편(자영업) 아들(13개월)	통 번역(4년차) 2016년부터 시작	6급	자격증 취득	국가자격증 취득프로그램 실질적 일자리와 연계 필요
전주 (7)	남성결혼 이민자	62세	미국	10개월 (‘18. 12 한국 음) 결혼 15년차	무	7살 차 (55세)	초혼 (이내 재혼)	-	은퇴함	1급	한국어교육	가족단위 정보제공 필요 부모의 디문화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 수준별 소규모 한국어교육
순창 (8)	여성결혼 이민자	39세	우즈베키스탄	15년차 (2004년 결혼)	유	15살차 (55세)	초혼	남편, 딸(15세), 딸(10세)	미용학당교사 (3년차)	5급	한국어교육 자격증반 등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교양(에티켓) 교육 필요
순창 (9)	여성결혼 이민자	48세	몽골	19년차 (2000년 결혼)	유	17년차 (65세)	초혼	남편, 아들(18세)	통 번역 (3년차) 공장, 식당서빙 등	4급	한국어교육 여러 프로그램 참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적별 1:1 멘토서비스 필요 - 초기입국자 중심
군산 (10)	여성결혼 이민자	30세	캄보디아	11년 2009년 결혼하고 음	유	21살차 (51세)	초혼	시모, 남편, 딸(9세), 아들(7세), 아들(5세)	무직 (취업하고 싶어함)	4급	한국어교육 여러 프로그램	지자체관계프로그램 필요 토포반 운영, 집단상담 자격증취득, 일자리 연계
군산 (11)	여성결혼 이민자	42세	필리핀	12년 2008년 결혼하고 음	유	6살차 (48세)	초혼	남편, 딸(9세), 아들(6세)	파트타임 영어교사 (10년차)	2급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방문서비스	1:1만남의 한국어교육, 일상생활에 대한 한국어 대화 프로그램 필요

(표 계속)

지 역	세부 집단 유형	연령	출신국	거주기간	국적 취득 유무	배우자의 연령차 (배우자연령)	혼인 형태	동거가족원	취업상황	한국어 실력	센터 이용 서비스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군산 (12)	남편	48세	한국	12년	-	6살차 (42세)	초혼	아내., 딸(9세), 아들(6세)	운송업	-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부부간 심리 역할극 필요
진안 (13)	남성결혼 이민자	50세	일본	14년차 2004년 입국 (결혼은 20년차)	무	3살차 (47세)	초혼	아내, 딸(13세), 딸(10세)	통번역, 집수리	4급	부부교육 부모교육	이중언어 지원
정읍 (14)	여성결혼 이민자	31세	베트남	10년 2010년 결혼	유	10살차 (41세)	초혼	사부모, 남편, 딸(10세), 딸(8세)	농사	4급	방문서비스 한국어교육 부부/부모교육	학교 교사 다문화 이해교육 필요
정읍 (15)	남편	41세	한국	41년 2010년 결혼	-	10살차 (31세)	초혼	부모님, 아내 딸(10세), 딸(8세)	농사 과수원	-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정읍 (16)	시모	65세	한국	60년 이상	-	-	초혼	남편, 며느리., 아들 손녀(10세), 손녀(8세)	농사 과수원	-	시아머니와 며느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안 (17)	남성결혼 이민자	66세	스코틀랜드	16년 중공업 근무 때문에 결혼은 12년차	무	14살차 (52세)	재혼	아내, 아내의 아들과 손자 (스코틀랜드에 자녀 2명)	선박 중공업	전혀 못함	한국어 교육	수준별 한국어교육 필요 교류와 만남의 기회 확대 영어 의사소통 필요
부안 (18)	부인	52세	한국	결혼 12년차	-	14살차 (66세)	재혼	남편, 아들, 손자	무직	-	본인과 손자랑 함께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이중여성 중심에서 탈피 필요 언어치료서비스 확대 필요

※ 다문화가족 새무집단별 개별심층면접조사 대상은 총 18명이었으나, 최종연구심의회 논의 결과, 다문화가족정책 대상으로는 적정하지 않아 유학생 2명과 외국인노동자 2명은 면접조사 결과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2) 주요 분석결과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전반에 대한 경험 실태와 사회통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기존 사회통합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욕구 등을 분석하여 결과를 정리함

〈표 4-2〉 다문화가족 대상 면접조사에 따른 주요 분석결과

구 분	주요 내용
다문화가족이 느끼는 사회통합 인식 수준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사회통합은 장기적 과정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
	국적과 피부색 등에 따라 공포, 동정, 차별, 무시 등 사회통합 인식 수준 다양화
	다문화가족 내에서의 한국문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는 강요·억압과 무시 및 차별
	노동시장 및 근무지 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당한 차별·처우 심각
다문화 사회통합 저해 및 증진 요인	한국인은 영어 의사소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교육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집중되어 있음
	한국어 실력에 따른 사회통합 수준과 자신감의 차이
	한국인 배우자(특히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배려가 사회통합 증진에 큰 도움
	지속적인 한국어교육 참여의 어려움
	취업활동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및 확대 어려움
다문화가족 관점에서의 다문화 사회통합 증진 방안	다문화가족 고용 사업주·관리자 대상 다문화인식개선 및 이해교육 이수 방안
	한국어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방안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과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 방안
	다문화가족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 인권과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방안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자아존중감 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

① 다문화가족이 느끼는 사회통합 인식 수준

□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사회통합은 장기적 과정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

-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을 언급함. 미국이란 나라도 100년 이상이라는 장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도 다국적 사람들간의 통합을 꾀하려 하고 있지만 지역별·사회적 영역별·문화적 차원별로 여전히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
- 이제 막 다문화 사회로의 전이를 꾀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상호교류, 인식 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등 자연스런 시간 흐름과 동시에 지역민과 이주민간의 공동체적 관계 맺음과 서로 공존의 삶이 생성될 수 있음을 지적함

미국은 지금까지 오기까지 100년 이상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제 시작이에요. 많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통합해 나가도록 해야 해요. 이제 시작이니깐.. 가족단위로 사회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보도 가족단위로 홍보해야 하고 자녀보다도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달하기 때문에 부모부터 개선시키고 교육해야 해요. 시간이 흐르면 유치원에 학교에 서로다른 인종들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사회통합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앞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업을 해야 되요.. (사례 7)

□ 국적과 피부색 등에 따라 공포, 동정, 차별, 무시 등 사회통합 인식 수준 다양화

- 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 유학생 포함)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국적별, 피부색 및 체류유형별 등에 따라 지역민의 반응과 태도는 상이하게 나타남
- 서구 유럽 및 미국계 남성·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지역민보다 경제적 차원에서 보다 우월하고, 전문직종의 직업을 갖고 있으며 학력

수준도 높을 것이라는 등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며 긍정적이면서도 막연한 두려움과 불편함 및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냈음. 서구 유럽계 남성결혼이민자는 읍 단위의 지역민들이 본인을 공포스럽게까지 느끼는 것 같아 다가가기 힘들다고 나타냄. 더불어 남성결혼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여성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거나 혹은 특별한 사연과 이슈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과 선입견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동남 아시아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돈 받고 결혼했다, 돈 주고 사왔다, 돈 벌러 왔다 등의 이미지가 강했고 연민과 동정의 감정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 거주하다보니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과 현장에 대한 경험담 및 이야기들(온지 얼마 안돼서 도망갔다, 센터 보냈더니 문제가 더 생겼다, 부부갈등이 심하다, 고부갈등이 심하다, 순종적이지 않는다, 자기 멋대로 하고 산다 등)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이에 본인 주위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더 단속하고 가족 이외의 누군가와 접촉하지 못하게 제한시키는 모습들도 나타남
- 무엇보다 읍 단위 지역의 지역민들은 동남아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 불쌍하다는 시선과 함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한다거나 동일한 상황에서도 한국인과 차별을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한국사람들은 이주여성들이 많아서 그런데 서양 남자들은 거부감 느끼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울산 그런데는 외국남자가 한국여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라북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시골분들은 아.. 미국사람.. 외국 서양 남자들을 보면 그냥 다 미국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시장 다니며 느끼는 것이 미국사람들은 개념이 돈이 많다는 생각이 있나봐요.. 서쪽으로 미군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경찰제가 아닌데 가면 가격을 더 많이 불러요.. 오히려 할머니는 돈을 주고 그런 것은 있는데.. 미국사람들이 이런 것도 필요하냐..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집 지을 때도 엉뚱한 돈이 많이 들었고.. 서로 대화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소통자체가 안되죠.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인사하면 같이 인사하고 대화도 하면 좋겠는데.. 부끄러워서 돌아가기도 하지만 서로 이러한 교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소통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례 18)

동남아 여자들은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결혼했기에 돈 때문에 결혼한 것으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구요. 이주여성들보고 돈 벌려고 돈 때문에 한국에 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말도 함부로 해요.. (사례 10)

언어도 그렇고.. 한국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고.. 인간관계가 힘들었어요.. 한국인과의 좀 차이가 있어요.. 생각하는 차이, 물론 문화차이도 있고, 차별도 좀 있었고.. 말 하기 싫어요.. 차별은 같은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고, 공공기관의 사람들이 차별도 하고 무시도 해요.. 그 때 어린이집 원장님이.. 어린이집 교사가 큰 아이 때.. 아이에게 그 때 아이가 놀다가 얼굴 한쪽을 다쳤는데... 화상당한 것처럼.. 그런데도 말없이 집에 보내와가지고 제가 화가 좀 났어요.. 말도 잘 못하고... 결국은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때는 생각 차이를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이 정보들이 문제들이 왜 전달이 안되는가.. 그 때 또 어린이집에서 한달에 15만원씩 보냈는데.. 그 정도의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데.. 다친 것 에 대해 아이 피부색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그런 것 도 많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사례 5)

□ 다문화가족 내에서의 한국문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는 강요·억압과 무시 및 차별

-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 없이 한국인과의 결혼과 동시에 한국생활이 시작되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족 내 가족원들은 한국말만 쓰도록 강요받고, 입덧 중에도 한국음식 위주로 먹어야 함을 요구받으며 같은 출신국 사람이나 센터 사람과의 교류를 막고 가족 안에서만 조용히 외롭게 생활하기를 강요하고 억압하고 있음을 나타냄. 여성결혼이민자의 나라는 무조건적으로 무시하는 시어머니. 여기로 시집왔으니 모든 것에 있어서 한국 문화와 우리가족에 따르라는 압력을 당해 옴
- 또한, 한국생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응과 한국어의 구사 능력 및 한국사회 문화에도 일정 정도 동화되었고 국적까지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구성원들은 너희나라 우리나라 따지고, 무조건적으로 한국 사회로의 적응만을 강요함에 대해 힘듦을 나타냄

남보다는 가족에게 그런 시선과 차별을 받아요.. 형님이.. 뭔가 그런게 있어요.. 니네 나라 내 나라 그 단어를 빼지 않아요. 형님네 나라 내 나라가 꼭 나오니까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형님이 많이 그런 말을 해요. 무시 받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 사람 된지.. 국적 따지 6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인으로 취급을 안 해줘요.. (사례 10)

한국말만 하기를 원해요.. 베트남어 하면 한국어로 하라고 뭐라 그래요.. 음식도 한국음식만 먹으라 하고.. 그래서 입덧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거의 많이 굶었어요.. 신 과일 몇 개씩 먹고 그랬어요.. 센터에도 못나가게 하고 도망 갈까봐서 집에만 있게해요.. 가족만 만나게 하거나 한국인만 만나게 해요.. 베트남 사람이 나 센터 못 나가게 해서 외로웠어요.. (사례 14)

□ 노동시장 및 근무지 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당한 차별 · 처우 심각

- 지역사회 내 노동시장에서 단순일자리 이외 한국인들이 많이 진출한 직종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채용을 꺼리거나 외모와 한국어수준 및 그 외 다양한 측면들을 한국인들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등 채용 이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기준을 강화시키는 사례가 있었음
-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은 공장이라는 근무지에서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 임금책정 등의 차원에서 차별적 경험과 인권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빈번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공장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한국어 수준의 향상으로 공장 경영 및 노동권에 대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귀찮아하거나 문제시 될까봐 염려해 하고 있었음. 이러한 문제들이 초래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습득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의도적이면서 강압적으로 저지하는 모습들도 보여줌

특별히 노동 권리나 법 쪽으로 많이 해주면.. 인제 외국인근로자 퇴출 같은 것을 많이 당하고 하니까....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어 배우려 하는데 공장에서 한국어 배우지 못하게 해요.. 한국어 배우면 안 된대요.. 너무 많이 알면 누가 책임지냐고.. 한국어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00에 있는 00공장이 되게 심해요.. 되게 심해요.. 00공장 이야기 하면 문제가 너무 많아 2시간도 모자라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해요.. 주말에 외국인들 기숙사도 아니고 컨테이너 안에서 생활하는 데 주말시간에도 씻고 편하게 쉬도록 해줘야 하는데 물을 잠가 놓고 가버려요 못쓰게.. 그러면 씻지도 못하고 식사도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엄청 열악해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너무 심해요.. 심각해요.. 좁은 방에서 5명 정도가 바닥에 누워서 공부해요.. 2-3시간 가르쳐 줘요.. 이렇게 누워서 글씨를 싸요..(사례 8)

저도 2년 동안 일했는데.. 차별이 너무 심해요.. 공장장이란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진짜.. 힘들어서 나왔지만 그 대신 외국인이 누군가가 들어 그 일을 해요.. 한국인들도 당하고.. 공장장이 최고로 문제고.. 그거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사장이 문제고.. 그래서 변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픈 문제라고.. (사례 9)

②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저해 및 증진 요인

□ 한국인은 영어 의사소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

- 외국인과의 교류와 만남 및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언어적 소통에 대한 제한점이 없어야 함을 나타냄.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과 영어로든 잘 안 되는 한국어로든 의사소통을 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이 영어 때문에 저희가 다가갈까 봐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회피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나타냄
- 한국인이 영어로 설명해주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외국인으로써 한국어를 필히 배워야 하는 입장이기에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선호하며 이에 대해 더 의욕을 가지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크나 한국인들의 반응이 꺼리는 것 같아서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냄

한국사람들이 영어 잘못하면 외국사람들에게 이야기 안해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때문에 외국인과의 교류가 잘 안돼요. 그리고 영어로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한국말 잘 안해요. 학교에서 영어를 다 배우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센터 선생님들 중 영어 할 줄 몰라요. 한국어교사도 영어를 잘 몰라요.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하면 외국인들과 보다 더 친밀해지고 교류도 많아질 것 같아요. 세계 공통언어이니.. 영어를 외국인과 한국인이 잘 하면 사회통합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국사람 영어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예요 (사례 1)

먼저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이 꺼리고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 이유가 아마도 영어로 이야기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한국인들은 자꾸 영어로 하려고 하고, 영어가 힘든 사람은 아예 도망가거나 다가가면 피해요. 저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니 많은 한국 친구들 만들고 싶어요. (사례 2)

□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교육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집중되어 있음

- 다문화가족센터 내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교육의 주요 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에 집중되어 있고 외부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서비스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 그리고 현재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서비스와 교육 내용 또한 대부분이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음
- 한편, 다문화가족에는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 및 자녀 이외 남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여성, 그 외 외국인근로자와 혹은 외국인근로자로 이루어진 가족, 유학생 등 다양함. 향후에는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명 선정과 교육내용 등을 주의깊게 고려해야 함. 여성결혼이민자만이 참여 대상임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명 보다는 선주민과 이주민 그리고 여성과 남성,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들을 모두 고려한 프로그램명과 교육내용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남성결혼이민자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남성,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 생계형 일을 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등을 고려하여 이들이 구조적으로 참석 가능한 평일 야간과 주말 시간대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시해야 할 것임

제가 요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 보면, 그 여기 지역특성 상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진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그 리고 사실 뭐 많지는 않지만 저희 신랑처럼 한국여자와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꼭 프로그램 명칭이.. ‘엄마도 배워요’라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에 사실 남자분이 한 분이 오 셧었어요.. 전부 다 잘 아시더라구요.. 한국인 아빠인데.. ‘엄마도 배워요’ 프로그램인데.. 내가 와서 배워도 되는 건지.. 다문화들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는 했지만.. 이왕이 면 ‘우리도 배워요’라든가 ‘부모와 배워요’라는 다른 명칭도 있는데.. 선 듯내키지가 않더 라구요,, 내가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했어요.. 난 이주여성도 아니지만 우리 신랑이 외국인인데.. 물어봐서 그 프로그램에 간 거예요.. (사례 18)

□ 한국어 실력에 따른 사회통합 수준과 자신감의 차이

- 외국인에게 있어서 한국어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한국인과 의사 소통하고 교류하며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며, 낮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리고 지역민과 어울려 공존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것으로 여김
- 그래서 초기 입국 다문화가족은 한국사회로의 빠른 적응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 하고 출산과 동시에 아이의 엄마로서 자녀가 어린이집과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한국어가 필수적임을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실감함
- 또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및 유학생의 한국어 실력은 곧 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키고 지역민과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주며 지역민과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키워줌. 이로 인해 증가하는 한국어 실력만큼 한국사회로의 지역사회로의 사회통합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됨
- 한편, 한국어 실력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한국어 습득을 위한 가족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고 센터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다채로운 시간과 방법들을 요구하며 한국어 교육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제대로 배우기 위한 개인적 노력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어 실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거주지역이나 일터 등 생활영역이 더욱 넓어지면서 지역민과의 접촉기회가 늘어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와 더불어 지역민과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과 경험 등이 증가되고 있음을 나타냄

좋아요.. 그냥 우리 동네나 우리 면에 있는 한국 여자분들 저는 어찌피 다문화잖아요 한 국사람과 같이 쉽게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잘 안돼니까.. 하다보니까.. 그나마 이렇게라도 나오면 아.. 이런 사람도 우리 면에 살고 있었구나 알게되고 그냥 조금 그래서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서 어디 에서 만약에 딱 만났을 때 그냥 인사라도 하잖아요.. 아는 사이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 것이 만약에 한명 두명 세명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을 알고 인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가끔씩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저도 이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모임에 참석할 수 있구나..

옛날에는 대개 무서웠어요. 말도 못하고, 앉으면 무슨 얘기를 할까.. 한국말을 때문에 문 화 때문에 대개 무섭긴 했어요.. 지금은 자연스러워요.. 어느 모임에 가든 그냥 똑같이 얘기도 하고 똑같이 밥도 먹고 똑같이 의견까지 말할 수 있으니까 대개 자신감이 높아 져요.. 어쨌든 좋아요. (사례 8)

한국말을 못하고 못알아드니까.. 챔피언해서 모임에 나가기 싫어요. 집에만 있어요., 학교 학부모상담 한 번도 안해봤어요.. 한국말을 잘하면 갈 것 같은데.. 지금은 못하니까 한국 인 친구도 없어요.. (사례 11)

저도 18년을 한국에서 살았지만.. 아직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특히 우리 아들(18세)이 랑 말할 때가 힘들어요.. 대학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저는 몰라요.. 일상생 활에 지장이 없는 대화는 가능하나 전문적, 대학입시, 무슨일 생기고 법적인 것 생기고 그러면 전 몰라요 이 정도는 한국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들이랑 대화하 기 어려워요.. 저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아직 멀었어요.. 대학 이야기 하다가도 막 혀요.. 한국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내 지식이나 갖고 있는 것은 모두 몽골어라서 한국어로 터뜨려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한국어 게 속 배웠으면 좋겠어요 ... (사례 9)

□ 한국인 배우자(특히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배려가 사회통합 증진에 큰 도움

- 이주 초기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습득과 문화 및 음식 적응은 물론 결 혼생활 적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한국인 배우자 특히 남편을 곁 고 있음. 결혼과 동시에 낯선 한국 생활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

에 있어 한국인 배우자가 유일한 길잡이고 한국어교사이자 통역사이며, 낮은 한국사회와 문화 및 음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핵심적인 인물임을 지적함.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한국어 습득 뿐 아니라 향후 한국생활에서 필요하고 결혼이민자의 진로에도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가져다주고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가 보다 넓은 한국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줌

- 무엇보다 낮은 환경에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한국인 배우자로 인해 외로움과 우울 및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고 한국생활을 지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음을 지적함
- 한편, 한국인 배우자가 낮은 한국생활과 초기 결혼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주는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을 나타냄. 많은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배우자로 인해 한국생활과 결혼생활 적응을 힘들어 하고 다양한 갈등 상황에 간헐 심리적·정신적으로 어려워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다문화자녀에게까지도 미쳐 자녀에게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냄

남편만 좋으면 한국생활 적응하는 것은 그래도 훨씬 수월해요. 저도 농사일 바쁜데도 남편이 저 하고 싶은대로 하고 싶은 만큼 다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요. 본인이 정작 힘들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 아이들 데리고 도시락 싸들고 센터에 나와 한국어 계속 배우고 좋은 프로그램 듣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요. 제가 지금까지 잘 적응 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의 도움이 커요. 한국생활 적응 잘 못하는 친구들 보면 남편이 센터 못나가게 하고 시어머니가 집안에만 가두려고 하고 자기들 것만 따라하라고 하고. 정작 본인들은 우리말 하나도 모르면서.. 아이들과 우리 모국어 못 쓰게 하고 우리 나라 음식도 못 먹게 하고.. 그럼 힘들어요 (사례 14)

제가 여기에 오랫동안 보면, 저희 같은 친구들은 남편 잘 만나면 그것으로 다 적응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그런 것 같아요..센터에 안 나오는 아니 못나오는 친구들은 남편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센터 나와 교육 받는 남편들도 더 받으려고 하고 더 받아야 해요.. 그런데 센터도 안나오는 친구들이나 그 남편들은 어찌겠어요.. 한국생활 적응에 가장 큰 도움은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저도 남편이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저 하고 싶은대로 많이 도와줘요.. 공부도 하라고 하고 애들도 봐주고.. (사례 6)

□ 지속적인 한국어교육 참여의 어려움

-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등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어 습득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간절해 짐. 그러나 오랜 시간을 두고 집중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한국어를 습득하기에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여 한국어 습득에 대한 기회를 잃게 됨
-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초기 한국사회 및 결혼생활 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육을 시작하나 곧 바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어린 자녀의 양육으로 불가피하게 한국어 습득을 위한 교육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 악화로 생계형 취업활동을 해야 해서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는데 그 기회를 잃게 됨. 이로 인해 자녀의 언어지도와 취학자녀의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일터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한 사회활동과 사회관계망 형성에 제약을 받음
- 임신과 출산 및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과 생계형 취업활동으로 구조화된 일상생활 상황에서 한국어 습득에 대한 필요성은 더 간절해지나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기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려우며 한국어교육에 참여하더라도 한국어 공부에 집중과 몰입 및 노력을 쏟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한국생활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부족한 한국어수준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자녀 학교에서 지역민과의 의사소통과 교류에 자신감 없고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 네트워크 역시 기대만큼 확장시키질 못하며 성장하고 있는 자녀와의 갈등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함

솔직히 시간이 없어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도.. 일 때문에 그리고 집에 가면 애들 봐줘야 해서 한국어를 더 배워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애들 학교 들어가면 이것 저것도 알아야 하고 그런데.. 잘 몰라요.. 걱정되요.. (사례 5)

애기 낳기 전에는 한국어 토픽이 5급인데.. 지금은 아마도 4급도 안나올 것 같아요.. 애기 키운다고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말할 사람도 없고.. 또 아기 낳고 명칭해준 것 같기도 하구요 한국어 계속 배워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배우려고는 하는데 잘 안되요.. 더 많이 배워야 하는데... (사례 6)

저도 여기 온지 19년 짜인데도 아들이랑 이야기 하려면 잘 모르겠어요. 입시같은 이야기를 이해도 잘 못하겠고. 이해도 잘 안되고. 저도 어느 정도 한국생활 해서 웬만한 이야기는 된다고 생각되는데.. 법률적인 것 나오고 입학 정시 이런 이야기 나오면 머릿속으로는 돌아가는데 입으로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계속 한국어 교육은 해야 한다고 봐요.... (사례 9)

□ 취업활동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및 확대 어려움

-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과 함께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취업하는 경우가 많음. 전반적으로 한국에 온지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같은 국적출신 이민자들의 소개로 한국어를 많이 쓰지 않아도 종사할 수 있는 식당 서빙, 공장 단순 업무 등을 시작함
- 단순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를 어린이 집이나 친정부모에게 맡기고 혹은 아이를 방치하면서 취업활동에 전념하다보니 시간 부족으로 한국어교육과 센터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기회 상실, 이웃 주민과 학부모, 같은 국적출신자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이 어려워짐. 게다가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일치하는 시간대 찾기도 어려워 서로가 만나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거의 부재한 환경에 처해 있음
- 능숙한 한국어 실력 획득과 준비된 직장으로의 취업이 아닌 그저 돈을 벌고자 하는 취업은 본인의 한국생활과 결혼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자녀양육과 교육에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며, 공장의 단순노동직, 식당서빙 등 노동부담은 크고 근로여건은 열악하며 최저임금수준에 머물러 있는 시간제 일자리만을 전전하게 함

다문화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 있다고 나오라고는 하는데 일 때문에 시간 없어요. 주말에는 피곤해서 못 나가요.. 평일에는 저녁시간만 있는데 그것도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요..한국어도 더 배워야 하는데 시간 없어서 못 배워요 (사례 5)

시간이 없어서 저랑 같이 온 결혼이민자 친구도 만나기 어려워요.. 서로 일하기 바쁘고 생활하기 바빠서 못 만나요.. 센터도 못 나가요.. 저는 저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그냥 바빠 살아요..돈 벌어야 해요.. 다들 그래요.. 친구사귀기도 시간 없어서 못해요.. 알던 친구들도 다들 바빠서 못 만나요.. 센터에도 시간 없어서 못 나가요.. 일 때문에.... (사례 11)

생각하면 그냥 머리 아프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는 거.. 날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인 친구도 없고.. 직장에서 만나는 한국인 말고는 없어요.. 만날시간이 없으니까.. 만나고 싶어도 멀리 사는 친구도 있고.. 시간이 진짜.. 없어요.. 주말에는 아이들 돌보고.. 한국친구 만나고는 싶은데.. 맞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내 성격이 이상한지.. 아무튼 주변에 사람 없어요.. 귀찮아요.. (사례 5)

③ 다문화가족 관점에서의 다문화 사회통합 증진 방안

□ 다문화가족 고용 사업주·관리자 대상 다문화인식개선 및 이해교육 이수 방안

-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의 취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문제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 고용 사업주와 관리자 대상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이해교육,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및 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 포함)의 인권교육 등을 이수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다문화인식개선과 다문화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상의 교육들이 활성화 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법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고 고용 사업주와 관리자의 다문화 인권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함을 나타냄.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을 고용한 고용주는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소규모의 교육장 마련과 한국어 교육 이외 노동자로서 습득해야할 다양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함. 더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 근로차원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을 민감하게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또한 필요함을 지적함

권익이나 외국인노동자 근로권에 대해서 처리기관이 필요해요.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노동권 노무권리. 관리해주는 기관..요. 다문화센터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한국어 밖에 없어요.. 노동권이나 노무, 월급계산하는 법 등을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인권침해나 차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사례 9)

저는 요. 공장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아무 법도 모르고 아무 권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못하면서 눈치도 되게 많이 보면서 아침부터 퇴근까지 무서워해요.. 저는 요.. 끝가지 (한국어)봉사를 하고 싶은데.. 한국어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저랑 같이 다니지 말라고 하고.. 모든 공장 내에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느정도.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만약에 그런 법이 나온다면.. 공장마다 학습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의무적으로 꼭 법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사례 8)

□ 한국어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방안

- 결혼이민자는 물론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 모두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한국어 습득이 중요하며 꼭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에 한국어 습득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음
- 한편, 결혼이민자는 입국 초기 적응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나 임신과 출산 및 자녀양육 등으로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많은 사람이 가정의 경제적 상황 악화로 취업활동에 내몰려 있어 한국어 습득을 위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수업은 주로 평일 오전 혹은 오후 시간에 진행되는 반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근무가 끝나는 주말이나 평일 저녁시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어 습득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적임
-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들도 주중에는 근로활동과 학교 수업 및 아르바이트로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기에는 제한적임
- 이에 한국어 교육 시간과 장소를 지금보다 폭 넓혀 진행해 주기를 기대함. 특히 주말시간의 한국어교육은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 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집체교육을 받고 있어서 그 효율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함. 즉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현 집

체 형식의 주말에 있는 2-3회의 한국어 교육을 15명씩 한국어 레벨을 고려하여 레벨에 맞춰 여러 분반으로 꾸려져 진행되기를 바랐으며, 한국어 토픽반 여러 타임 운영, 소규모 한국어 교육, 그리고 한국어 교육 2단계와 3단계 간의 수준 격차가 상대적으로 커서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 3단계로 못 넘어가고 2단계에 머물러 있으니 2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인을 대상 한국인 자원봉사자를 선출해 이들과 함께하는 1:1 개별 한국어 멘토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함

-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 초기 입국자 대상(입국한지 6개월에서 1년 사이) 모국어 출신 선배와 1:1 매칭을 통해 집단교육에서 배운 한국어 교육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한국어교육과 지역사회 내 적응 함양을 위해 모국어 출신 선배의 경험과 자원을 함께 공유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빠른 한국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기회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한국어 습득은 한국거주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여성결혼이민자는 엄마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한국어 능력 향상에 대해 더 실감하기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중심의 한국인과의 1:1멘토 서비스로 자녀교육과 학습에 대한 정보공유, 지역사회 내의 필요한 정보공유와 교류를 필요로 함

주말에 받는 한국어수업 인원이 너무 많아요.. 칠판보고 노트보고 이러다 수업 끝나고 나와요.. 대화 하려면 순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요.. 사람을 조금씩 나누어서 반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어 수준도 너무 각각이고 달라요.. 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면 좋겠어요.. (사례 4)

주말 한국어 수업을 보면 한국어 2단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힘들어요.. 한국어 교육 레벨의 차이가 다른 단계보다 커서 많은 사람들이 3단계로 못올라가고 2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인들이 1:1로 멘토 서비스 해주고 한국어 가르쳐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3단계로 올라가는 사람 생길 것 같아요. (사례 7)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인 교사가 한국어 가르쳐줘요. 무슨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반복해서 들어요. 한테.. 같은 국적 출신의 선배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조금씩 1:1로 가르쳐 주면 같은 나라말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도 더 잘되고 무슨말인지 알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정보 얻을 수 있어요.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입국자 입국한지 6개월이나 1년된 결혼이민자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많은 정보도 함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국어도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거예요 ... (사례 9)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과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많은 수가 연령대별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늦고 심하게는 지적인 장애까지를 의심받기도 함. 이미 한국어 말하기를 떼고 글을 읽어야 할 학령기 아동임에도 한국어 발음도 어눌하고 교우관계에서 친구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또래보다 한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다문화가족자녀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의 저조, 발음의 어눌함, 취업으로 인해 자녀에게 관심 갖고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등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여짐
- 이에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또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말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인 언어치료와 함께 집중적인 한국어 발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보다 확대·강화되기를 희망함.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언어발달과 한국어수준 향상은 취학 이후 학교 적응과 학습 진도에 맞춰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토대가 되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됨. 이에 취학 전에 언어발달 및 한국어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냄
-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참여를 하고 부지런하며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수혜를 받으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많은 다문화가족은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 어디로든 찾아가서 실시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손주가 좀 아픈아이(장애인)여서 여기저기를 다녀보니까.. 00군에 보면 특히 언어장애. 지적 장애. 아이들의 부모가 이주여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부모가 될 때 장애가 될 때도 있지만 이주여성들의 자녀들도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는 엄마들은요. 지금 아이가 4-5살 되는 아이의 엄마들은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가지고 와야 되네요. 그래서 한국말을 할 줄 알지만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한국말 못해도 왔잖아요. 일단 결혼만 하면 왔잖아요...그래서 애를 낳고 살다보니까.. 자기네들도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말을 못하는 엄마 밑에서 애들이 크고 한국말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엄마 말이 어눌하잖아요.. 한국에 와서 이주여성들도 한국말 못하고. 한국말 못하는 엄마 밑에서 애들이 크고 그 엄마 밑에서 한국말을 배우니까.. 아이들 말이 어눌해요.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애들에게 언어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문화센터에 다니는 엄마들은 그래도 깨어있는 엄마들이고, 부지런해서 센터 다니면서 도움 청하고 하는 엄마들이지 사실 다문화센터에 안 오는 이주여성들이 더 많아요. 여기 이주여성들이 다문화센터에 100% 다 참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처음에 일단 왔다가 안 나오는 엄마들도 일단 파악을 하고 사실 그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아이들이니까..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커질거라구요..엄마가 제대로 안되면 이렇게 뭐 어떤 사회적인 이런 곳에서라도 저희가 도와줘야 하는데.. 이 다문화센터에 다니는 엄마들은 엄마가 데리고 다니니까.. 보편적이고 언어적인 문제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안다니는 엄마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아이가 제대로 어릴 때 제대로 컸으면.. 언어장애가 없을 꺼고 지적 장애가 없을 건데.. 후천적으로 생기는 언어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센터 안다니는 엄마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언어치료사 서비스도.. 다가센터에서 다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도, 면사무소, 마을이장들한테 이장은 자기들 마을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을에 이주여성이 있고, 가정이 있고, 다문화자녀가 있고, 다문화자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장이 대충 파악하고 있을 꺼라구요.

그러면 이주여성이 다가센터를 안가도 이장이 이주여성에게 야 다가센터에 니 애에게 말 가르켜 준단다라고 자꾸 쑈시면 보낼 것 아니예요. 엄마가.. 그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연계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구요. 아이들 위해 다가센터에 언어치료사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 너 가보라.. 이런 연계체계가 있어야 하고 알려주고 다닐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이잖아요 . (사례 18)

저희 아이가 9세인데..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가 잘 안 통한다고 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잘 이해도 못하고 한국말 발음도 어눌하니까 친구들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언어발달 관련 서비스를 조금 더 해주면 좋겠어요.. 우선은 엄마가 한국말이 잘 안되니까.. 책임어주는 것도.. 안되고.. 저도 일한다고 바쁘고.. 한데.. 지금부터 아이를 잘 잡아주지 못하면 안될 것 같아요. 가장 큰애도 이러니까 둘째, 셋째도 걱정되요.. (사례 12)

□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 방안

-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오는 주된 목적을 살펴보면, 한국어 습득을 위해 한국어교육 참여와 지금 보다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자격증 취득과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계되어 취업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센터에 나오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미취학 자녀양육을 겸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시간제 단순일자리 이외 보다 전문적이면서 근로 여건과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과정이나 프로그램을 필요로 했음
- 결혼이민자들의 일반적인 취업경로는 같은 국가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나 이웃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알선되어지고 있었고, 일자리 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취업하여 근로 및 고용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각 지역 센터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 대상 자격증 취득반 및 취·창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힘들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자격증을 취득해도 결국에는 자격증 취득으로만 끝나고 취득한 자격증으로 실질적인 일자리까지 연계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냄

다문화센터에 가장 필요로 한 프로그램은 자격증 취득반과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아이들 교육비, 학원비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할텐데 이때를 위해 내년부터라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보다 전문적인 일자리를 잡기 위해 먼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 10)

저는 다문화센터에 나온 이유가 국가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나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석하려고 나왔어요.. 아마도 이주여성들 대부분이 취업을 원해요.. 일을 해야만 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 잡는데 도움이 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좋겠어요..

한데.. 힘들게 특히 실시시험은 그나마 괜찮은데 필기시험을 보려면 한국어도 더 잘해야 하고 읽고 이해도 해야하고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자격증을 따도 일자리 잡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일자리 잡는데 필요한 자격증 반을 만들고 자격증을 따면 면접조고 바로 나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언제까지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일해야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돈은 많지도 않아요... (사례 6)

□ 다문화가족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 수 있는 방안

- 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 포함)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지역사회에서 추진하기 전에 다문화가족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 및 정책, 서비스 개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함
- 다문화가족이 수혜 받아야 하는 사업과 정책임에도 한국인들이 결정하고 진행시킨다는 점은 실질적인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과 정책 발굴에 있어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다문화가족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직접 내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나 사업을 만들 때 다문화가족이 함께 들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인데 한국인들의 생각만으로만 만들어 진다는 것은 이상해요. 센터 프로그램이나 도나 군의 사업을 만들 때 저희들의 의견을 물어봐주면 돈 낭비도 없을 꺼라고 생각해요 (사례 5)

□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 인권과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방안

- 우선 아이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다문화이해교육을 받아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부모가 다문화가족에 대해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 및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이 더 시급하고 중요함을 나타냄
- 연세가 많은 노인들의 사고 변화는 쉽지 않으므로 노년층 대상보다는 중장년층부터 교육의 대상으로 하여 인권 및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이해교육 및 인권교육은 일회성으로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끝내기 보다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나타냄

다문화이해교육은 가족을 중심으로 부모의 관점부터 개선해나가기야 해요. 부모가 다문화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자녀교육에 녹아나고 자녀의 인식에 전달되어 이러한 인식이 삶에 녹아져 표출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다문화이해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이 더 중요해요. (사례 7)

저는 다른 것보다 어찌피 나이 먹은 사람들의 생각이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못 바꾸는데.. 그래도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신랑 미국사람 아니예요. 그러다고 바뀔거예요. 아니예요. 또 지나가면 또 미국 사람 왔네. 그래요 어찌피 그런 사람들은 못 바꾸는데 중년층부터는 조금씩 생각도 바뀌어 나가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같이 이런 다문화라는 아예 그런 단어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례 18)

□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자아존중감 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

-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지역사회와 지역민으로부터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무시와 차별을 받고 있음에 대해 그리고 돈 벌려고 돈 때문에 한국에 왔다는 편견에 대해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고 위축되어 있었음
- 전통시장 내에서도 상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거나 한국여성들과 동일한 행동을 했을 때는 핀잔을 듣기도 하고 차별을 받는 등 지역민에 의한 무시와 차별 및 함부로 대함에 있어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고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해결을 위한 고민조차 못하고 있음
- 이에 지역민들로부터 무시와 차별 및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위축하지 말고 당당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 초기 입국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자신감을 키워주는 당당함을 키워주는 자아존중감 증진 방안 및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이 제기됨. 지역민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 시 위축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강의와 심리적 어려움을 달래주는 집단상담의 병행도 필요하다고 제시함

엄마들이 하는 말이 저같이 한국말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말하는 것이 발음이나 듣는 생김새 등에서 표가 나니까.. 동남아 여자들은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결혼했기에 돈 때문에 결혼한 것으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구요.. 이주여성들 보고 돈 벌려고 돈 때문에 한국에 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말도 함부로 해요. 그래도 요새는 예전에 비해 약간 바뀌긴 했지만.. 몇 년을 애 넣고 살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눅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주눅들지 말라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라.. 나도 아이 학부형이라고 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해라.. 알게 모르게 그러한 상황들이 많다고 해요..시장에 가면 한국인이 만질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주여성들이 만지면 막 뭐라 그러고.. 당당하게 이야기 해라...왜 그런 이야기를 못하느냐.. 서양 여인들에게는 그렇게 안하는데 동남아 여성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고 해요 (사례 18)

제 2절 지역사회 선주민 면접조사 분석결과

가.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 유학생 포함)과 사회통합 관련 사업·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선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자주 만나고 접하고 있는 선주민(초등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 실태와 향후 다문화가족과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욕구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면접 조사를 실시함
- 지역사회 내 선주민(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활동 참여 경험자, 다문화가족을 자주 만나고 접하는 선주민)을 면접 대상자로 선택한 이유는 다문화가족과의 상호교류에 대한 일련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대안 제시가 용이할 것이라 판단함

(2) 면접 대상자와 조사방법

- 면접대상자 섭외를 위해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내용을 공지한 후 섭외 요청을 부탁했고 이를 동의한 선주민을 중심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그 외 본 연구자가 직접 다문화가족과 사회통합 관련 사업·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자, 다문화가족을 자주 접하고 있는 자를 섭외하여 총 6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함
- 면접조사 시작 전에 참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결과의 활용도, 면접 내용에 대한 녹음 및 익명성 보장과 녹음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설명함

(3) 면접조사 내용

-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반구조화된 설문내용을 구성함. 주요내용으로 첫째, 연령, 성별,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활동내용 등 일반적 특성을 살펴봄
- 둘째, 다문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사업·활동 참여 이유와 전반적인 경험,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선주민으로써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기존 지원 사업과 활동에 대한 한계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욕구 등을 파악함

나. 면접조사 분석 결과

(1)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참여대상자는 총 6명으로 다문화가족과 사회통합 관련 사업·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선주민 2명, 다문화 자녀를 자주 접하고 있는 어린이 집 원장, 교사 및 초등학교 교사 등 3명, 이외 다문화가족과 이웃관계에 있는 선주민 1명이 면접조사에 참여함

〈표 4-3〉 면접조사에 참여한 지역사회 내 선주민의 일반적 특성

사례	세부 집단유형	성별	연령	근무현황	다문화 사회통합 활동	다문화가족 접촉·교류 기간
1	어린이집원장	여	55세	26년 경력	다문화자녀 돌봄과 보육	10년
2	선주민	여	44세	옷가게 운영	센터 다문화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있음 외국인 친구 있음	6년
3	선주민	여	52세	초등 공부방 운영	센터 다문화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있음	1년
4	초등학교사	여	40세	20년 경력	다문화자녀 교육	7년
5	면단위 지역주민	여	68세	농사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웃사촌	10년 이상
6	어린이집교사	여	43세	12년 경력	다문화자녀 돌봄과 보육	10년 이상

(2) 주요 분석결과

- 지역사회 선주민 대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 실태, 사회통합 현황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기존 사회통합 관련 사업과 활동에 대한 경험담과 한계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욕구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리함
- 면접조사를 통해 선주민들이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경험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선주민 입장에서 다문화가족과의 사회통합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주민 당사자들의 시도와 노력 했던 경험들 그리고 남아있는 문제와 주요 이슈들을 살펴봄

〈표 4-4〉 지역사회 내 선주민 대상 면접조사의 주요 분석결과

구분	주요 내용
선주민이 느끼는 다문화 사회통합 인식 수준	다문화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공존
	이주민과의 접점이 없는 선주민은 다문화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조차 저조함
다문화 사회통합 저해 및 증진 요인	미디어 매체를 통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 형성
	결혼이민자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
	생계형 취업활동으로 자녀의 언어 및 학습 발달 문제 야기
	이주민과의 사소한 행동 교류로부터 사회적 인식개선 효과
다문화 사회통합 증진 방안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지원서비스 : 언어발달치료와 한국어교육, 아이상태 알림 카드
	다문화가족 한국인 배우자와 시부모 대상 상호문화이해교육 확대·강화 필요
	다문화가족 어울림축제, 보여주기식에서 많은 선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전환

① 선주민이 느끼는 다문화 사회통합 인식수준

□ 다문화 사회통합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인식 공존

- 전북지역의 선주민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의 주요 대상으로 동남아시아 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를 꼽았고,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3D 직종의 힘든 일을 한국인 대신 해주고 그 자리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고마운 존재로 인식함

- 한편, 한국은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무료로 많은 지원을 해주는 나라로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반대로 한국 여성들이 결혼이나 일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그 나라는 한국과 같이 한국여성들에게 무료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대접 해주지 않음에 대해 한편으로는 매우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냄. 오히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도 하고 있었음

우리나라는 다문화 여성들에게 한국어 무료로 수업해 주는데. 그러면 반대로 한국여성이 외국에 가면 우리 한국여성들은 그 나라에서는 다문화인데 그러한 혜택이 있어요? 전혀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다문화여성들한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차라리 사각지대에 있는 그 여성들에게 더 잘해주면 되지 않을까? 구멍 난 독에 물 붓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 전혀 우리 여성들은 받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는 옛날에 정말 어렵게 우리나라가 살 때 독일과 같은 나라에 돈 벌러 갔을 때 우리여성들은 이런 혜택을 받았나요? (사례 3)

다문화사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측면에서 함께 지내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노동자들은 힘들고 기피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한국여자들은 힘들어서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는데 외국인 여성들은 농촌사람들과 결혼해서 출산도 해서 저출산도 방지하고... 고맙기도 하고 후진국 출신국 여성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잘 살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구요... 그 가족들이 더 잘 대해주었으면 좋겠다란 생각도 크구요 (사례 2)

대화할 때 엄청 시끄러워요... 그들은 에티켓이 거의 없어요.. 대개 없어가지고 목소리들이 떠따따 엄청 크게 들리는데.. 우리사람들은 교육수준들이 높아져서 버스 안이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 크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너무 크고 떠따따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좀 그래요... 그런거 (사례 3)

□ 이주민과의 접점이 없는 선주민은 다문화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조차 저조함

-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민과 별다른 접촉 경험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선주민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대한 어떠한 주관적 인식이나 생각, 관

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근로자의 범죄나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도 나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본인의 삶에 충실할 뿐 다문화가족이 나의 일상 생활권에 있지 않기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대한 부정도, 긍정도, 주관적 생각도 깊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나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심리적 거리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유 없는 무시와 반감을 표출하기도 했고, 이주민의 출신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차이가 상반되게 나타남.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민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시, 반감, 무서움,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반면, 유럽계 및 서구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솔직히 주위에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이 거의 없어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뉴스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범죄, 가정폭력 등을 접해 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과 생활권 내에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이 거의 없어서 그냥 같이 잘 살아야겠죠 (사례 5)

왠지 모르게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무시가 되고 몰려다니면 무섭기도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범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기도 하고 반감도 생기고 그러는데 미국이나 유럽계 외국인이나 일본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부럽고 원가를 많이 가진 것 같고 돈도 많을 것 같고 뭐 그러죠... 한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좀 망설여져요. 그들이 다가오는 것도 그냥 좋지않은 앎구... 다문화가족이 점점 증가하고는 있는데 사회통합이 필요하긴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례 1)

② 다문화 사회통합 저해 및 증진 요인

□ 미디어 매체를 통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 형성

- 지역사회 선주민으로서 생활권 주위에 이주민이 없는 경우 많은 선주민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보여주는 다문화가족의 이미지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큼. 모 방송국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경제적으로 못사는 동남아시아권 출신의 이주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다양한 모습들 중 시부모와 갈등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 외롭고 우울해하는 모습 등 다문화가족의 문제점 중심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켜 나타내고 있고 이를 선주민들이 무조건적으로 흡수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만들고 있음을 지적함

- 이에 선주민이 다문화 관련 인식과 태도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 다문화 사회통합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문화 관련 미디어 매체의 내용과 방향 및 관점 등을 검토하고 평가·분석하여 개선해야 함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을 알게되거든요. 아마도 약 80% 이상 그대로 방송 내용을 믿고 또 다문화가족이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한 데. 내 주위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보면 tv에서 나오는 것과 또 달라요..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인종은점 문제점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야 사회통합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의 좋은면도 자주 보여주도록 하면 좋겠어요 (사례 3)

저는 다문화가족이 나오는 방송 고부열전인가를 보면 시어머니와 갈등하고 싸우고 외로워하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다문화가족들은 그런가 보다 하죠.. 아무래도 방송이니 보여주지 꾸며지는 것도 일을 건데.. 하지만 좋은면도 자주 보여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 사랑해서 연애한 뒤 결혼한 다문화가족들도 많거든요 (사례 4)

□ 결혼이민자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

- 다문화가족, 즉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실력이 저조하여 선주민과의 의사소통 어려움과 사회참여 활동에 힘들어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같은 반 학부모들과의 온라인(카톡) 모임에서도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주고 받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공지사항에 대한 댓글도 달지 못하며,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해서도 선주민 학부모와 소통 부재와 어려움으로 잘 섞이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결국에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의 모든 모임에서 언어적 문제로 선주민과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모임에서 소외되어 가는 상황 등이 발생함

초등학교 엄마들이 문제가 이제 뭐냐면.. 초등학교에 가면 엄마들끼리 공유하는.. 카톡 단체 특에 들어갔다 나왔 대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언어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뗏구를 못하고 그 모임에 안가고 이런데요.. 카톡에서도 대답을 못하겠고, 또 학부모 모임에 가서도 무슨말 하고 모두 까르르 웃고 그러는데.. 자기는 못 알아듣고 너무 빨리 하니까 그런 언어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언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어느 수준 정도의 언어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사례 3)

□ 이주민의 생계형 취업활동으로 자녀의 언어 및 학습 발달 문제 야기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또래연령대에 비해 언어발달이 늦는 경우가 있음. 특히 여성결혼이민자가 생계형 취업활동을 할 경우 부부 모두가 생계에 몰입되어 있어 어린이집 학부모 상담이나 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못하고 자녀 돌봄이나 양육과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쏟지 못하여 자녀의 언어발달, 식생활 습관과 영양관리, 일상생활 관리, 연령대별 습득해야 할 학습정도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음

형제가 우리 어린이집에 왔는데 5살 인데도 귀저기를 차고 있고 먹는 습관이라든가 언어수준이라든가 한국어 수준도 5세 또래를 쫓아가지 못해요. 학부모 상담이나 행사가 있어도 부모가 돈 벌기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참석도 전혀 안하고 아이들의 언어치료 등도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런 채로 초등학교 가봐요.. 더 문제가 되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치료를 해주고 한국어 교육을 해준다고 하니.. 그것도 어린이집까지 찾아와서요.. 얼마나 고마운지.. 확실히 전문가라서 그렇지 한 6개월만에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사례 1)

다문화자녀의 엄마와 통화가 안되요.. 언어가 안되서요.. 그렇다고 아빠에게 전화하면 근무시간 때문에 통화가 어렵구요.. 어린이집 행사 등에 적극적인 반응도 없구요.. (사례 6)

□ 이주민과의 사소한 행동 교류로 사회적 인식개선 효과

- 다문화가족과의 만남과 교류가 전혀 없었던 선주민이 이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처음에는 다가가기가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결혼이주민이 먼저 웃어주고 서로 물도 나누어 마시며 음악도 함께 선정하는 과정에서 친근함이 향상되었고 이주민에게 갖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이 깨졌다고 나타냄

- 이처럼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직접인 접촉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하고, 이러한 접촉과 만남들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갈 기회도 됨을 알 수 있음. 즉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몸으로 체험하는 직접적인 만남이 필요하고 지역민과 다문화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

센터 아는 분을 통해 멋도 모르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거기에는 다문화가족이 대부분이였고 오히려 한국인이 소수였어요. 처음에는 다가가기가 어려웠는데.. 물도 나눠마시고, 춤추기 위한 음악도 함께 선정하고, 눈인사 해주고 해서 점점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전 결혼 때문에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온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주여성들도 많았구요. 아무튼 내가 알고 있던 이주여성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깨졌어요 (사례 2)

그들도 저희하고 그냥 다 똑같아요.. 저와 같이 춤추기 위해서, 춤이 좋아서, 그리고 배우고 싶어서 오는 거더라구요.. 말이 잘 안통해서 그렇지 몸으로 움직이는 것은 다 똑같구요.. 전 그냥 좋았어요.. (사례 3)

③ 다문화 사회통합 증진 방안

□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지원서비스 : 언어발달치료와 한국어교육, 아이 상태 알림 카드

- 어린이집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 첫 접점이 되는 장소로 다문화자녀의 언어발달과 한국어교육, 식생활과 식습관 관리, 일상생활 및 취학 전 습득해야 할 학습량 등을 체크하여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잘 발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향후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줘야 함을 지적함. 이에 다문화자녀의 언어발달과 한국어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관리 발달시킬 수 있는 지원서비스도 요구함
- 또한, 어린이집 특성상 돌보고 있는 아이의 상태(몸이 아프거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 등)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에 대해 부모와 매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아 통역서비스 지원이나 부모와 기본적인 대화를 위한 다양한 상황의 예시가 있는 책자(각 국가의 언어 기입) 지원 등을 요구함

다문화자녀의 엄마, 아빠는 일하느라 바쁘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아이들에게 신경도 못 쓰죠. 언어치료라도 받아야 하는데 시간도 돈도 없으니.. 어린이집에서는 한다고는 해도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서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자녀 대상 언어치료도 해주고 한국어도 같이 해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한 6개월 했나요? 아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같은 것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고쳐준다고 해도 다문화자녀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언어치료는 힘들거든요.. 이런 상태의 아이들이 다문화자녀 뿐 만 아니라 일반 가정 아이들도 있어요. 아쉬운 건 이런 아이들도 함께 전문적으로 치료해 주면 좋겠어요 (사례 1)

여기가 어린이집 이다 보니 어린이집 특성상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아이의 몸상태, 점심식사 상황 등을 엄마에게 전달해야 하거든요.. 또 집에서 있었던 아이의 몸상태 등도 저희에게 전달해 줘야 저희도 더 그부분을 신경써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우선은 다문화가족 엄마들과는 소통이 잘되는 엄마도 있지만 한국어를 잘 몰라서 잘 안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럴 땐 아이의 상태 들을 알릴 수 있는 이주엄마 모국어들이 쓰인 그림 카드 등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 6)

□ 다문화가족 한국인 배우자와 시부모 대상 상호문화이해교육 확대·강화 필요

- 다문화가족 내 한국인 배우자 특히 남편이 이주여성 국가에 대한 문화, 언어, 음식, 관습, 민족성 등에 대한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의 적응과 선주민과의 사회통합 정도가 빨라짐. 즉 이주여성 국가의 정보, 문화, 역사, 민족성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의 이해교육과 더불어 이주여성 또한 한국의 문화, 음식, 역사, 사회 관습 등을 상호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여성은 자신감과 당당함을 지니게 되고 부부간의 적응, 지역사회 내 적응, 지역주민과의 상호교류가 증가하여 사회통합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나타남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인 아빠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외국인 엄마가 잘 적응하느냐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느냐가 보이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인 남편의 역할인 것 같아요..그런 아빠들은 외국인 아내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해줘요..

한국의 문화나 음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의 문화의 언어, 음식 등에 대해서도 받아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서로 필요한 것 같아요 (사례 4)

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결혼이민자와 결혼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전교육을 좀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어요.. 한국인 남자로서 외국인 여자를 맞이함에 있어서의 자세, 외국인 여성의 나라에 대한 이해, 그 나라의 민족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이혼, 가정 폭력, 가출 등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뒤의 가족에게 미친 안좋은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결혼 전 사전교육을 시킨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언어적으로 뒤쳐질 수 있으니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교육들을 미리 미리 받는다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으로의 진행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사례 3)

□ 다문화가족 어울림축제, 보여주기식에서 많은 선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전환

- 다문화가족 사회적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해 최근까지 추진되어 온 다문화가족 어울림축제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축제행사를 진행하며 지역민들과의 만남의 장 마련으로 소통을 장려하려는 취지와는 다르게 축하공연을 준비해야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축제를 좋아하지 않고 단지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다문화가족 대상 다문화를 알려주기식, 보여주기식 위주의 축제 행사에서 지역민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진행하고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행사로의 전환을 제시함

다문화이해교육이란 것이 있다는 건 들어보지 못했구요.. 다문화가족 어울림인가는 들어봤어요.. 어울림축제는 영상으로만 봤고,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점핑댄스 하는 다문화친구들도 좋아하지 않는 축제 같아요.. 어울림 축제에 공연을 위한 점핑댄스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다문화를 알려주기식,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기 보다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지역사람들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변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다들 일 때문에 가기도 힘든 것 같구요 (사례 2)

제 3절 현장전문가 대상 FGI 및 개별면접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전북지역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와 개별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 그 이유는 첫째, 다문화가족을 직접 만나 사업을 구현하는 현장 종사자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경험 실태 및 사회통합 수준을 파악하고자 했음
- 둘째로는 기존 다문화가족 관련 다양한 사업들 중 사회통합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과 현황 파악 및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회통합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음
- 마지막으로 전북지역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사업을 실현하는 핵심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현안과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음

2) 참여대상자

- 본 연구에서 말하는 현장전문가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총괄 및 운영 팀장급의 담당자와 사회통합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마을학당사업 담당자(혹은 마을학당 선생님)를 중심으로 참여대상자들을 섭외함
- 마을학당사업 담당자 및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는 전북지역의 작은 마을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특이점과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대한 경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짐

- 참여대상자 섭외 시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 경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북지역을 시·군 지역별로 구분하여 선정하려고 노력함. 최종적으로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전문가는 총 14명이었음

3) 조사방법

- 먼저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를 1회 실시함. 전북지역 시·군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전화해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면접조사가 가능한 요일에 3지역의 현장전문가 대상 조사를 실시함
- 다음으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전문가들의 바쁜 일정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 일정 맞추기가 힘들어 현장전문가의 일정을 고려해 본 연구원이 직접 각 센터를 찾아가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함. 조정된 일정에 맞춰 면접조사 이전에 면접조사에서 나누어야 할 조사내용을 사전에 현장전문가에게 보내주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초점집단면접조사의 면접시간은 집단 당 약 2시간 이상이 소요되었고, 개별면접조사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됨. 면접장소는 각 지역의 센터 내 상담실에서 진행하였고, 초점집단면접조사는 본 연구원의 회의실에서 진행함

4) 면접에 대한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현장전문가 대상 FGI 및 개별면접조사의 내용은 먼저,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담당업무 근무경력, 담당업무, 직급 등을 살펴봄

-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사업을 현장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수준과 사회통합 관련 경험 실태 및 사회통합을 꾀할 때 애로사항과 이들이 요구하는 지원서비스 파악, 담당업무 진행 과정에서서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함.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필요 지원정책 욕구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5) 분석방법

- FGI와 개별심층면접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함. 면접조사에 대한 녹음 내용은 반복하여 들으면서 전사하였고, 전사 자료와 함께 면접조사 시 중요하다 생각된 노트필기 자료를 토대로 연구결과의 주요내용들을 도출함

나. 결과분석

1) 면접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 전북 도내 지역에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 중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면접대상자는 총 3명 이었고, 개별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면접대상자는 총 11명으로, 총 14명이 현장전문가 면접조사에 참여함.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센터 총괄 운영 및 사무국장 종사자 8명, 마을학당 사업 담당자 및 팀원 6명이 참여함
- 먼저,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은 다문화가족 사업 업무를 평균 약 6.2년 정도를 담당·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남. 즉 다문화가족사업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1년이었음

- 면접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은 46.3세로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40대 중반·50대 초반으로 나타남. 적게는 39세부터 많게는 54세로 나타남

〈표 4-5〉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의 일반적 현황

사례	시·군 센터	연령	근무경력	담당 업무	비고
1	김제	45세	1년	마을학당팀장	
2	정읍	45세	5년	가족사업팀장	
3	부안	54세	5년	마을학당팀장	
4	무주	45세	4년	총괄팀장	
5	장수	39세	10년	사무국장	
6	남원	48세	11년	마을학당팀장	
7	전주	52세	11년	운영팀장	
8	군산	40세	3년	마을학당팀원	
9	임실	40세	7년	사무국장	
10	순창	44세	5년	사무국장	
11	진안	54세	7년	마을학당팀장	
12	익산	46세	5년	마을학당팀장	
13	완주	44세	3년	운영팀장	
14	고창	52세	10년	총괄팀장	

2) 주요 분석결과

- 현장전문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총괄 및 운영 팀장, 사무국장 및 마을학대사업 담당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인식 수준 및 다양한 경험 실태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사업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 개선사항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살펴봄

- 즉 현장전문가가 사업현장에서 다문화가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사회통합 인식수준과 사회통합 저해 및 증진요인을 면접조사 내용에서 추출하여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기존 사업의 개선 방안과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정리함

〈표 4-6〉 현장전문가 대상 FGI 및 개별심층면접조사의 주요결과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통합 인식수준	가족통합부터 어려움 : 억압, 통제, 무시, 갈등, 언어적·신체적 폭력
	아동·청소년보다 일반성인의 사회통합수준 저조 : 무관심, 무시, 부정적 시선, 차별, 배척 등 심각
	사업장 고용주와 관리자의 낮은 다문화사회통합 수준
다문화 사회통합 저해 및 증진 요인	부부갈등 심화 : 낮은 한국어 실력, 부부간 심한 연령차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으로 한국어 습득 중단, 센터출입 부재, 가족문제 발생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남편)와 시부모의 센터 교육 참여 부재
	지역주민(특히 일반성인) 대상 제한적인 다문화이해 교육
	다문화가족의 형태 변화 : 한부모가족과 위기·취약가정 증가, 본국인과 재혼한 여성결혼이민자 증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센터로 전환, 이에 따른 혼란 가중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 방안	결혼이민자 고용 사업장 대상 다문화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규정 마련 필요
	결혼이민자 적응에 결정적 영향자인 배우자와 그 부모 대상 가족통합 교육 필요
	일상생활 중심의 선주민과 이주민간 상호교류 활성화 : 일상적 접촉, 서로간의 교류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일반성인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내용의 전문성 제고

(1)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통합의 인식수준

□ 가족통합의 어려움 : 억압, 통제, 무시, 갈등, 언어적·신체적 폭력

- 결혼이민자의 입국 초기에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원들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 문화와 음식에 일방적으로 무조건 적응하기를 강요하며, 한국어 습득을 빨리 하기를 기대함. 반면,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자의 나라에 대한 무이해와 결혼이민자 나라의 음식을 하나도 못 먹으면서 간단한 언어조차 배우려 하지 않았음
- 한국 문화와 음식 및 언어에 대한 일방적은 적응과 강요 이외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들은 결혼이민자의 행동과 의식을 통제하려 했고 결혼이민자 나라의 언어, 음식 및 습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농후했음. 또한, 언어소통의 문제, 각자의 의견과 생각의 차이, 그리고 갈등 발생 시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모욕, 하대 등의 인권 차별적 문제가 불거져 끝내는 자살을 선택하거나 경찰에 신고 후 피해이주여성 쉼터에 입소한 사례들이 있었음

부부간의 불화가 가장 많고..입국 5년 이내에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정정도 영향은 있는데.. 5년이 지나도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가족들은 조금 더 힘들어 하고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갈등도 더 있는 것 같아요. (현장전문가 4)

가족들이 일방적으로 한국 사회, 문화, 음식, 언어에 적응하라고 하면서 반대로 아내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요.. 아내 나라 음식은 냄새도 싫다고 막 하면서 하나도 못 먹으면서 일반적으로 한국문화에만 적응하라고 강요하고 센터에도 못 나가게 통제하고 그래요.. 베트남어 인사 한마디를 남편들이 못하는 데 남편들이 정말 애써주지 않으면 여성결혼이민자들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 폭력이 생기는 거요. 갈등이 심해서 도망가는 거구요.. (현장전문가 3)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대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내 폭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올해 초 1월까지 센터에 나왔는데.. 남편에게 폭력도 당하고..... 그러식으로 가정 내에서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인권 차별이라든지 폭력 등을 계속 당했고 이분이 센터에서 어떤 접촉점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시고 결국은 자살을 했어요. (현장전문가 2)

□ 아동·청소년보다 일반성인의 사회통합수준 저조 : 무관심, 무시, 부정적 시선, 차별, 배척 등 심각

- 아동·청소년들보다 일반성인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들은 다문화친구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함께 교우관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일반성인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 인식수준은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사회통합수준은 저조함. 다문화 사회통합 사업에 다문화가족과 참여하는 일반인들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깨어 있어서 다문화가족과 함께 어울리고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지만, 그 외의 일반 사람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역차별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 어느 선까지는 괜찮지만 그 선을 넘었을 경우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배척하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제 주변에도 보면 구지 그렇게 다문화한테 지원 많이 해줄 이유가 있어? 자국민 먼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해요.. 저도 그말에 부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하고 있는 일이 이거라서 그런지.. 그래도 잘 살게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라고 조언을 하거든요.. (현장전문가 3)

다수의 원장들이.. 원감님들이.. 그 대장들도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 왜냐면.. 너무나 많이 지원을 해준다는 거야.. 그런데.. 저는 종사자가 그런 말은 못하지만.. 저도 약간 느껴요 그렇게.. 그래도 이분들은 약자잖아.. 그러니까.. 도와줘야지..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현장전문가 2)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유치원 원장님들도 근데 말씀하실 때는 시골이라서 그런지 10명 중 9명이 다문화자녀예요.. 1명은 들락 달락 한국 사람이고.. 원장님의 수입과 밥줄도 다문화애들이 먹여살리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자녀에 대해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다문화하면은..... (현장전문가 4)

그런데 문제는 한국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봐요..이것이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앞에서는 다문화하고 막 이렇게 했죠.. 딱 우리끼리 어느 저기가 되면.. 뒤돌아서면 아주 무서운 정도로 배척하고.. 그래요.. 나도 이런 면이 좀 강해요.. 그런데..이분들인 조금만 어떤 우리 자리를 넘보고 그러면 내가 창피하지만.. 나도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문화센터에서 일하지만 그런 면이 나도 있는데.. 아이들은 조금 다룰지 모르겠지만...우리님들도 정말 심해요.. 시댁도 그러고 친정도 그러고 좀 심해요.. 그래서 그 넘어에 있는 한국사람은 안그러겠어요? (현장전문가 5)

□ 사업장 고용주와 관리자의 낮은 다문화사회통합 수준

- 군 단위 지역 사업장 고용주와 관리자들의 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 포함) 대사회통합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에 온지 평균 3년 정도가 되면 결혼이민자 대부분은 직장을 잡고 일을 하게 됨. 일자리는 영세 사업장부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까지 규모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사업장의 고용주와 관리자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생활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음. 이에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들은 외부와 폐쇄된 채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일·가정양립 등을 어렵게 실행해 가고 있었으며 항시 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긴장하고 관리자를 두려운 대상으로 표현함
-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어 및 여타 교육 기회 등을 주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에 대해 사업장 고용주과 관리자들은 예민해 있었음. 즉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어 습득 실력이 증가할수록 기타 기관에 문의 및 신고하고, 인터넷에서의 민감한 부분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사업주와 관리자들에게 불평불만이 증가하고 요구사항이 거세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하지 못하게 저지함

올해는 저희 지역에 노동자 기관이 11개가 있어서 이 기관들을 다루고.. 작년에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 다 기관마다 전화를 했었어요..그런데 다 거절했었어요.. 뭐.. 정말.. 너무 너무 답답했어요.. 대화가 되어야 친구한테 업무 지시를 내릴 때 좋지 않겠냐.. 그건 인정을 한다. 그런데. 그건 구지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일해, 이거해,, 말 들어.. 단순 한국어만 배우면 좋겠고.. 한국어 많이 가르쳐더니.. 친구들이 신고를 하게 되고.. 페이스 북 같은 데에 우리 안좋다..어떻다.. 이런 안 좋은 점만 말을 한다는 거예요..그래서 그 쪽 기관에서는 한국어 많이 가르쳐봤자.. 아닌 말로 머리 커져서 안 된다고 해요.. 저희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기관에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전화를 끊기도 하고 다시 전화하지 말라는 기관도 있고.. (현장전문가 9)

직장에서 원하지 않아요. 저희가 만두공장이 커서 찾아가서 저희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 대상 교육을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면 다문화가족만 빼주세요. 그것도 원하지 않고. 그러면 그 친구들의 근무해야 할 시간을 제하겠다고 했어요. 점심 식사 때에도 쉬고 싶어라 하고. 본인들이 싫다고 하니까 저희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현장전문가 2)

(2) 다문화 사회통합 저해 요인

□ 부부갈등 심화 : 낮은 한국어 실력, 부부간 심한 연령차

- 다문화가족의 지역 내로의 사회통합도 중요하지만, 보다 우선시 되어져야 할 부분은 다문화 가족통합인 것으로 드러남. 가족통합을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다문화가족의 부부불화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은 결혼기간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보이나 초기 입국한지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간의 부부갈등이 보다 빈번하고 갈등의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상대방 배우자 나라의 문화, 사회, 관습 등의 이해 부족 및 부부간 연령차가 10살 이상으로 그에 따른 세대차이 등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음
- 부부갈등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다문화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한국인배우자로부터 결혼이민자는 인권적 차별, 억압과 통제, 무시,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을 받고 있고, 자녀들의 적응 뿐 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갈등도 발생하여 가족통합과 더불어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부간의 불화가 가장 많고.입국 5년 이내에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정정도 영향은 있는데.. 5년이 지나도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가족들은 조금 더 힘들어 하고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갈등도 더 있는 것 같아요. (현장전문가 5)

대부분은 대개 부부지간의 나이차이로 인한 그런 갭들 때문에 가치관이 옛날사람과 지금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차이에서 오는 부부싸움이 많은 것 같아요. 언어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언어가 어느정도 되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지만. 더 그런 면이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장전문가 4)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으로 한국어 습득 중단, 센터출입 부재, 가족문제 발생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대다수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혹은 입국하자마자 일 자리를 찾아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국의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본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의 삶을 경제적으로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등 다양했음
- 일반적으로 입국 초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만, 자녀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취업하고 취업과 동시에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해 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음
- 한국어 실력다짐이나 본인 자아강화 및 향후 미래 삶에 고민과 진로·적성에 대한 고민 없이 단지 돈만 벌기 위해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거주 기간이 상당함에도 여전히 어눌하고 저조한 한국어실력 때문에 주위 사람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감도 낮아지면서, 주위 한국 사람과의 교류에 있어서 여전히 힘들과 두려움이 남아 있는 등 한국사회로의 적응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또한, 자녀의 언어발달 문제, 학습지도의 어려움 등 자녀와 소원해 지거나 무시당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함

한국어가 일단 되면 센터 나올 이유가 없다고 봐요.. 프로그램을 받고 싶어라 하지만..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없어요.. 정말. 보통은.. 처음에는 2-3년 있다 아이 낳고 아이가 3-4살 정도만 되면 어린이집 맡겨놓고 일을 가더라구요.. 보통이 그래요.. 바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223가정 여성 중 거의 대부분이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도 일을 그만두면 센터를 나올 법도 한데 센터에 안오죠.. 직장만 잡으면 센터를 안 오네요.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는 직장까지 않은 친구 이렇게 생각하면 될꺼예요.. 일하면 안오고 (현장전문가 9)

돈 벌어서 모국에 있는 부모에게 돈을 드리고 싶어.. 그걸려면 돈을 벌어야지.. 한국어가 어느 정도 되면 다 직장을 잡아요.. 그것이 가장 안타깝거든요.. 직장 잡으면 한국어도 어중이 떠중이... 자녀 양육하는데도 그렇고 직장만 잡았어요.. 한국어도 안 되니까. 자녀의 학습지도도 해줄 수 도 없고..저희가 그래서 다른나라는 몰라도 베트남 만큼은 통번역 선생이 있으니까.. 학교 통지서가 집으로 오면.. 그러면..못알아보거나 이해가 어려우면 통번역 쌤에게 요청을 해라.. 그 한 장 해석해주고 번역해주겠다. 학교에다가도 다 공문도 보냈거든요...그런데 돌아오는 피드백은 거의 없어요..왜냐 친구들이 그닥 필요 없으니까... 자녀 양육에 그닥 신경을 안쓰니까.. 그리고 특이나 요즘이나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현장전문가 13)

한국어 교육..신경 쓰고 있음..아무리 못해도 토픽 3급은 따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용어 및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최하.. 3급.. 최소 1년 반 정도 공부는 해야 한다.. 시험만으로는 1년 만에 한국어 3급은 되나.. 책에서 배우지 못하는 생활한국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1년 반 이상은 공부를 해야함... 반반 정도만 한국어 배우려 노력한다..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면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 들어요.. 7-8개월 지나면 없어져요.. 그럼 저 공장에서 일해요.. 그래서 센터..안와요.. 단순 언어만 있으면 되니까.. 같은 언어권끼리 묶어서 공장에 일할 수 있도록.. 지시할 때 같이 알아듣고 같이 일하게 해요.. (현장전문가 12)

□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남편)와 시부모의 센터 교육 참여 부재

- 다문화가족의 가족통합과 사회통합의 어려움은 한국인 배우자와 그 부모가 결혼이민자 나라의 문화, 음식, 언어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무지함 등에서 기인하고 있음. 즉 한국 배우자와 그 부모가 결혼이민자 아내의 나라에 대해 이해(문화, 음식, 언어, 관습 등)하고자 하는 노력, 결혼으로 얻어진 주요 역할인 배우자의 역할 부모의 역할, 부부간에 지켜야 할 내용, 시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관심 등으로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로의 빠른 적응, 이웃과의 상호교류에 도움을 받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음
-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 배우자와 그 부모는 결혼이민자 나라에 대한 이해와 이해하려는 노력 및 관심이 부재했으며 결혼이민자와 소통 시 신체적·언어적 폭력 행사, 인권적 차별, 억압과 통제, 강요와 무시 등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문화·음식·언어에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을 강요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소외와 심리·정신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한국인 배우자와 그 부모가 결혼 전이나 결혼 후 결혼이민자의 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교육, 부부교육, 부모역할교육, 시부모의 역할 교육 등에 필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함

남편들하고 조금 플러스 알파해서 시부모님들 제발..하루라도 제발 나와서.. 교육 안 받으면 머느리 못 데려간다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었으며 좋겠어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 에라도.. 남편이 제일 문제야.. 남편이 딱 잘 서있으면 모든 게 다 커버가 되요.. 남편이 다가센터에 가서 가족에서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남편 몇 시간 교육을 받았는지.. 가족에 대한 남편의 역할을 배웠는가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프로그램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놔도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가정폭력 일어나는 것 확 줄어들어요... (현장전문가 3)

남편이 이수해야 할 교육들은 남편의 역할, 양육하는 부부역할교육, 부모역할교육, 아내 나라 이해교육.. 한국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사람들은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하니까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결혼이민자는 한국말을 못해.... 그런데도 남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남편들은 대책이 없다니까... (현장전문가 2)

□ 지역주민(특히 일반성인) 대상 제한적인 다문화이해교육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함. 다문화가족들은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파악하고 있고, 또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지원도 적극 받기 위해 노력함. 반면 지역주민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남
- 중앙과 지자체 사업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주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학교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교육내용은 다문화 국적별 문화 이해교육, 음식체험교육 등 국적별 문화 안내와 소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인식개선에 대한 내용으로는 깊이가 없음을 지적함
- 실질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이 필요한 초·중·고등학교 교사(교장, 교감),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교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직원, 도·시·군의 공무원과 기관장 등

일반성인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센터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한다는 공지사항을 각 기관에 전달해도 교육을 받겠다는 피드백은 거의 전무하여 지역사회 단체/기관 등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 모집도 힘든 상황

- 그리고 주민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매뉴얼이나 강의안 자체가 부재하고, 전문성을 지닌 강사 인력과 인력풀도 점검해 봐야 할 사항으로 나타남

다문화이해교육 이라고 많이 많이 플랭카드도 붙어 있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깊이 안 들어가.. 교육의 깊이가 없어요.. 우리센터는 다문화이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름은 다문화이해교육이야.. 근데..내용을 들어가 보면.. 최근에도 어제도 전화를 받더라구요.. 그쪽에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다문화이해교육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화해서 뭐뭐뭐 해주세요. 음식체험, 베트남 음식체험 나라에 대한 소개. 문화 이런 거 위주예요..그런데 그게 다문화이해교육이 아니라구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해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이 없는 거예요..교육의 매뉴얼 자체가 없어요. 문화소개 교육만.. 솔직히 다문화이해교육 전문 강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연구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저기 사람 대상에 맞게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우리센터에 있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는 결국 결혼이민자이거든요.. 결혼이민자가 그 쪽에서도 학력이 낮고.. 큰 배움이 있거나 겨우 인터넷으로 짜집기해서 만든 교육내용 인데.. 무슨 다문화이해교육 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육이 아이들..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이 다예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시민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은 거의 없어요.일반시민들에게 다문화이해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해교육의 수준이 단순히 문화 체험 소개 이것이 아니라 정말 다문화 이해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해야 하는데.. (현장전문가 3)

□ 다문화가족의 형태 변화 : 한부모가족과 위기·취약가정 증가, 본국인과 재혼한 여성결혼이민자 증가

- 다문화가족 정착이 장기화되면서 한부모가족, 위기·취약 다문화가족 증가에 대응한 건강가정 형성을 돕는 체계적인 필요 지원책 마련 필요함
- 배우자와 이혼, 사별, 가출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도맡아 키우다 보니 여러 측면에서의 자녀 돌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다음으로 한국인 배우자(남편)의 신체적 노화에 따른 취업활동 부재나 신체

적 및 정신적 장애로 결혼이주여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경제적으로 취약 한 다문화가정 증가와 여성결혼 이민자의 취업에 따른 가족과 자녀 돌봄·교육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이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재혼이 증가하고 있음. 재혼 상대배우자는 한국인이 아닌 본국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 혹은 외국인근로자 등으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 등 국적과 핏줄이 상이한 혼혈가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지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 제기됨

혼자서 돈 벌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국인 배우자나 여성결혼이민자, .. 이런 한부모가족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한부모 가족들은 혼자서 돈도 벌어야 하고 집안 살림도 해야 하고 자녀들도 돌봐주야 하고 해서 삶의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 아이들도 돌봄이 굉장히 부족해요.. 다문화 자녀들끼리 모여 밤 늦도록 저녁도 못 먹고 있는단디지.. 학교 학습은 간신히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고, 계절이 바뀌어도 여름 옷 입도 다니고..등등 돌봄에 대한 부족 현상이 상당해요.. (현장전문가 7)

남편이 장애인인데 이것을 모르고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나 남편이 너무 나이가 많아 일을 못하거나 은퇴했다거나,,하는 경우 이주여성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사회에서 일자리가 많으면 좋는데.. 저희 지역은 군단위라 일해도 별이가 없어서 엄마 혼자 수월이나 부친 같은데 가서 일해서 돈벌고..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고, 아이들이고, 집이고 거의 방치가 되는 거죠.. (현장전문가 11)

요즘 우리지역에도 3건 정도가 있는데 아마도 점점 증가할 거예요.. 남편과 사별했거나.. 혹은 국적 취득 이후에 이혼을 하고 본국에 있는 남자가 들어와 재혼하며 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외국인근로자 만나 재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원래 본국에 가정이 있었는데.. 한국인과 결혼 이주 한 뒤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본 가족을 불러 들이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런 사례들이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다문화가족 지원 기준이나 지침들이 없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현장전문가 3)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센터로 전환, 이에 따른 혼란 가중

-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지원사업의 통합서비스 수행은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을 위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이나 통합서비스로의 이행 과정 중 혼란과 예측 불가한 상황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통합센터로의 전환으로 지역민에게 통합센터가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을 지원하는 센터라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인식제고,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일반가족과 함께 해야 함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이해 제고, 일반가족과 다문화가족과의 갈등제기 문제, 사업별 예산집행 문제,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서로 수용하고 통합시키기 위한 고민 등 통합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족든 일반가족이든 통합센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받고 있는 사업이나 서비스의 혜택이 축소것이라는 우려감을 표현하고 있고,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닌 일반가족도 함께 지원해주는 통합센터라는 이미지 변화를 위한 상당한 노력과 지역도민의 통합센터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 많은 사업을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함께 함에 있어서 서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하는 등 많은 숙제가 있는 것 아요.. 어찌되었든 센터가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직측면, 예산측면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그리고 지역민들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해요 (현장전문가 12)

통합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사업을 각자하고 있어요.. 각자 하는 사업이 있고, 함께 하는 사업이 있는데.. 함께하자 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하면 벽이 허물어질 것 같아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을 함께 했더니..베이비 맛사지...아이이유식만들기 사업을 다문화엄마와 일반가정엄마와 함께 했더니 다문화엄마가 옆에 앉아 있으면 일반엄마가 살짝 옆으로 가요. 함께 안앉으려고 해요 . 한국분이 와서 보고는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문화친구들은 오히려 배척하는 것도 없는데 일반엄마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2회기 사업 중 1회기 끝나고 다음에는 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썩 이 자리가 좋지는 않았던 거지요..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계속 만나고 부딪혀야 이게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완전하는 아니여도 다문화친구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다문화센터가 생소하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아지도록 (현장전문가 9)

(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 방안

□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상 다문화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규정 마련 필요

-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사회 적응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한국어교육, 노동·산재 관련법, 의료·금융관련 교육 등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하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교육은 직장 근무로 참여하기 어렵고, 그 외 노동·산재 관련 내용, 의료·금융 등 한국생활 적응권 교육의 기회는 거의 부재한 상황

- 한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와 관리자는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들의 아주 기본적인 한국어 대화 이외 보다 깊이 있는 한국어(쓰기, 읽기 등) 습득을 지양하고 있고, 한국어 무지를 바탕으로 근로·노동·산재·처우 관련 정보 차단, 그 외 사업장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 및 인권)권리 침해와 부당한 대우 등을 피하고 있음
- 이에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 노동권,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한국어교육, 노동·산재·비자·의료·비자 관련 정보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함. 이런 기회마련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상 교육 공간 마련, 한국어교육 및 기타 중요 정보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함
-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주 및 관리자 대상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다문화이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 있음.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혹은 어느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일정시간 받도록 하는 방안이나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지원한 필요 있음

작년에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 다 기관마다 전화를 했었어요..그런데 다 거절 당했어요.. 뭘.. 정말.. 너무나무 답답했어요.. 대화가 되어야 친구한테 업무 지시를 내릴 대 좋지 않겠냐.. 그건 인정을 한다. 그런데. 그건 구지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일해, 이거해,, 맡들어.. 단순 한국어만 배우면 좋겠고.. 한국어 많이 가르쳤더니.. 친구들이 신고를 하게 되고.. 폐이복같은 데에 우리 않좋다..어떻다.. 이런 안좋은 점만 말을 한다는 거예요..그래서 그 쪽 기관에서는 한국어 많이 가르쳐봤자.. 아님말로 머리커져서 안된다고 해요.. 저희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기관에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전화를 끊기도 하고 다시 전화하지 말라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반은 포기 했는데 요.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위해 한국어교육 실시, 교육장 마련, 한국어 이외 직장과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소양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라든가 가점이라든가 혹은 반대로 패널티 같은 것을 줘서라도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되면 좋겠어요 (현장전문가 9)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어 배우는 것을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사업주들이 공장에서 한국어교육을 시켜 달라 할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다문화 여성들이 공장 내에 10명 이상이 취직해 있을 경우 그런 공장에다가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네네들이 이런 교육 이런 장소를 마련해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을 했을 경우 국가에서 얼마를 준다거나.. 도에서 얼마나 준다거나.. 하면 좋겠어요..그들의 자존감과 존재감을 내 뽐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한국어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전문가 13)

공장 들어와서 적응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노동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월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노무사..특pecially 노동 쪽으로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어를 배우려 했는데.. 한국어 못 배우게 하는 공장들도 많아요.. 한국어를 배우면 안 된대요.. 너무 많이 알면 안 된다고.. 너무 많이 알면 누가 책임지라고.. 한국어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특별히 노동쪽으로 많이 해주면 인제 퇴출 이런 것 많이 당하고.. (현장전문가 14)

□ 결혼이민자 적응에 결정적 영향자인 배우자와 그 부모대상 가족통합 교육 필요

- 지역사회통합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의 가족통합이 우선이라고 지적함. 가족통합을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그 부모가 결혼이민자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교육(언어, 문화, 음식, 민족성, 습관과 전통 등)이 필요함을 제시함
- 또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간의 부부 적응과 결혼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부부교육, 의사소통 방법, 남편역할, 부모역할교육, 시어머니의 역할 교육, 부부상담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족통합교육을 필히 이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통합과 사회통합으로 진행 될 수 있음을 지적함

남편들의 교육이 필요하요.. 제일 힘들어요.. 내 아내 베트남어 기본적인 언어만 알아도 서로 소통하기 편하거든요..국가가 좀 해주면 좋겠어요. 여성들만 오고 애들만 오고 남편들은 진짜 안와요. (현장전문가 3)

참여자들.. 어떻게 끌어낼까.. 인원 상관없이 해라.. 돈예산쓰는데 있어서도.. 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 어떻게 센터로 끌어낼 수 있을까.. 오면 차비나 상품권이라도 주고 싶어.. 그러면 안돼잖아.. 그분들이 나와야 뭐를 하지.. 찾아가서 하면.. 화관하나 얻어서 하면 그 사람들 올 것 같죠.. 자기 옆동네니까 내다보기라도 할 것 같은데 안와.. 그러면서 머느리나 교육시키라고 그래요..

한국 적응하는데 1년이나 1년 반동안 사랑으로 폭 담가놓으면 도망가라고 해도 안가.. 시어머니, 남편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한국 여성 가둬놓고 하면 한국여성들 한명도 안남고 다 도망가.. 결혼이민자 남편이나 애들 끌어내려면 교육을 시키려면 강제성 밖에 없어요.. 베트남어 인사 한마디를 남편들이 못하는 데 남편들이 정말 애써주지 않으면 여성결혼이민자들 적응하기 힘들어요..(현장전문가 2)

□ 일상생활 중심의 선주민과 이주민간 상호교류 활성화 : 일상적 접촉, 서로간의 교류 기회 확대

- 지역사회와 이주민과 선주민이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함께 하는 상호 교류 활동은 다문화인식 개선에 상당히 효과적이었음. 기존 다문화사회통합 사업은 대부분이 다문화이해교육이었으며 군민행사, 어울림축제 등 일시적이면서 대규모로 잠시 참여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에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실질적인 상호교류와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음. 생활권 내 마을단위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소소한 만남,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활동 등 일상적 만남과 교류의 기회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운영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먼저 마을단위로 쉽고 활발하게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공간이나 온라인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 돕고, 도움 받으며 정보 교환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자원봉사나 베품시장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함
- 무엇보다 이러한 만남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자연

스럽게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속에 녹여낼 수 있는 활동과 이주민과 선주민의 자발성 및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서로 인정하고 같은 지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함

서로 만나는 빈도가 높을수록 서로 좋아지는 거네요. 음식해주고. 궁금해하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네요. 인식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들어가면서 부딪혀가면서 할 수 있는 교류가 자연스럽게 자주 부딪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부딪히는 공간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장전문가 6)

저는 익산 시장의 사건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변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한테 인권교육을 지금 시킨다고 해서 그게 변할까요. 저희 종사자들도 인권교육 매년 받잖아요. 매년 받아도. 그게 쉽게 변하는게 아닌데. 그걸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좀 바뀔까 이것을 보는 것은 큰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나눔봉사단이라고 해서 다문화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그냥 봉사를 다녀요. 이 친구들한테만 무조건 자원을 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쉽게. 어르신들 하고 손 마사지 하고, 어르신들한테 배식 봉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군민의날 입장식이 있으면 다문화 옷을 입고 행진을 해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보여주고 그냥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 이사람들한테 벽이 허물어지지 않겠냐 싶어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이사람들의 인식이 변한다고 보다고 그냥 내 삶에서 그냥 스며들 수 있도록 저희는.. 친구들.. 지금 하는게 봉사단을 투입해서 다닐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하고 있구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쪽기관.. 다음번에는 저쪽 기관. 계속 저희는 넓혀 가고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삶 속에 그들과의 만남을 자주 만나게 하면.. 인식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 삶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식변화가 더뎌질 것 같아요 (현장전문가 9)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일반성인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내용의 전문성 제고

- 지금까지 다문화이해교육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되었고, 아동·청소년들은 어린이집과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문화친구들을 접촉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으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 성인보다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일반성인의 다문화 사회통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다문화이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제한적이고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도 약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이반하는 공무원, 그리고 관공서의 직원, 다문화학생과 매일같이 생활하는 교직원,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다문화 관련 종사자 등 다문화가족과 자주 접촉하고 교류하는 집단조차도 다문화이해교육을 받는 기회가 제한적임

- 이에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자주 접촉하고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정례화나 교육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시행 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 다문화이해교육을 이수한다고 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개선됨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소폭씩의 변화가 쌓일 것으로 기대함
- 한편, 다문화이해교육은 주로 결혼이민자가 본국가의 문화·음식·언어 등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강의내용 구성 또한 결혼이민자 혼자서 인터넷을 보며 기획하고 있어 결혼이민자의 능력수준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질에 차이가 나타남. 이런 방식의 다문화이해교육은 일반성인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제한적이며, 결혼이민자의 역량이 교육의 전문성까지는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따라서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표준화된 메뉴얼 제작과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교육의 내용과 질이 기획되어야 하고 다문화이해교육에서 더 나아가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 있음
- 마지막으로 일반성인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은 교육대상을 고려한 전문강사 투입과 양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 실시로 전문성 있는 강사풀 구축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담보할 필요가 있음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연구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저기 사람 대상에 맞게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우리센터에 있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는 결국 결혼이민자이거든요.. 결혼이민자가 그 쪽에서도 학력이 낮고.. 큰 배움이 있거나 겨우 인터넷으로 짜집기해서 만든 교육내용 은데.. 무슨 다문화 이해교육 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육이 아이들..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이 다 예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시민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은 거의 없어요..일반시민들에게 다문화이해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해교육의 수준이 단순히 문화 체험 소개 이것이 아니라 정말 다 문화 이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해야 하는데.. (현장전문가 1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첫 번 째로 필요해요..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다문화이해교육을 해야 해요..그리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려면 교육을 잘 해야 해요.. 인권, 차별 관련된 깊이 있는 심도있는 내용의 교육이 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진정한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인식개선 사업인 다문화이해교육의 내용이 보다 심도 있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주여성 중에 정말 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 전문가처럼.. 양성을 하거나 그런 사람만 뽑아서.. 아니면 종사자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강사와 정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양평원은 잘하는데.. 한가원은 그런 것을 진짜 못해요.. 한가원이 그런 과정을 열어주면.. 직원들이 3년, 5년 되면 다문화가족 경험도 있고 일반 가정 경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역량을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수료해서 이 사람들이 성인 대상으로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이해교육... 그럼 훨씬 효과가 좋겠조.. 그런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은 이주여성들이 가서 해도 상관없고 효과가 좋은데.. 정작 중요한 것은 성인 대상이거든요.. 그 와중에도 저는 다문화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역량강화가 저희 다문화센터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보수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제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도 그 종사를 했었는데.. 거기는 시시때때로 1년차 보수과정이 따로 있고 2년차 보수과정이 따로 있고 3년차 따로 있고.. 그 정도의 커리큘럼을 한가원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혀 실효성 없는 교육과정만 개설을 해요.. 한가원이 그렇다 치면.. 저는 도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에 있는 종사자만 해도.. 정말로 한 센터별 20명, 14개 센터면 3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남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현장전문가 8)

제4절 소결

본 절에서는 첫째, 다문화가족 세부집단별(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한국인배우자와 그 부모) 대상 사회통합 경험실태와 사회통합 수준, 한국 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 시 어려운 점, 현 지원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정책적 욕구에 대한 분석결과, 둘째, 다문화가족사회통합 사업·활동 참여자나 다문화가족을 자주 접촉하는 선주민 대상 사회통합 경험 실태와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욕구와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대상 실천 현장에서 사회통합 사업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 및 필요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들 중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함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세부집단별, 선주민, 현장종사자 대상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기존 정책사업 개선방향과 향후 필요 지원정책에 대한 쟁점들을 도출함

가. 다문화가족 세부 집단별 사회통합 실태 및 정책적 욕구 결과

- 다문화가족(남녀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한국인 배우자와 부모) 대상 선주민과의 사회통합 경험 실태 면접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이 느끼는 사회통합 수준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은 다문화사회로의 전이가 이제 시작되기에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둘째, 한국인은 다문화가족의 국적과 피부색 등에 따라 반응 수준과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공포, 동정, 차별, 무시, 하대, 위축 등 다양하게 나타남. 셋째,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문화·음식 등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고 강요·억압 및 무시와 차별을 한다고 지적함. 마지막으로 노동시장과 근무지에서 한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차별하고 다문화가족에게 부당한 대우와 한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제한시키고 있었음

- 다문화가족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사회통합을 저해 및 증진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인들은 영어로 말을 잘해야 한다는 막연함 때문에 외국인과의 만남과 교류에 대해 두려움과 어려움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센터의 프로그램과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한국어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인식 수준과 자신감·당당함·의견개진 정도에 차이를 보였음. 셋째, 한국인 배우자 특히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배려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와 결혼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결혼이민자는 생계유지 등 다양한 이유로 취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어교육 중단, 한국어 능력 향상의 어려움, 지역민과 이주민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확대의 어려움이 발생함
- 다문화가족 관점에서의 다문화사회통합 증진 방안으로 첫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다문화인식개선과 이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기를 요구했고,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으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에 근무시간을 제외한 평일 야간, 주말 등에 한국어 교육과 사회통합사업 등을 실시해 주기를 요구함. 둘째, 남편의 장애와 신체적 노화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자녀돌봄 부족, 자녀 언어발달 문제, 자녀학습지도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어서 자녀의 언어발달치료와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요구함. 셋째, 식당보조, 공장 단순직 등을 넘어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를 위한 방안을 필요로 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시 다문화가족이 정책결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했음.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학)부모와 일반인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확대하고, 선주민으로부터 무시, 차별,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경우 위축하지 말고 당당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증진과 역량강화 방안을 필요로 했음

나. 지역사회 선주민의 다문화 사회통합 실태 및 정책적 욕구 결과

- 지역사회 내 선주민이 지각한 다문화사회통합 인식수준은 첫째, 다문화사회통합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해 있었음. 즉 저출산·고령화문제, 3D 직종의 힘든 일을 다문화가족이 일정부분 해결해주고 있음에 대해 고마워하면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혜택이 많음에 대한 불만과 역차별 논의 등을 제시하기도 함. 반면, 이주민과의 접점이 전혀 없는 선주민은 다문화사회통합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고민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문화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정도도 파악하기가 어려웠음. 그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남
- 선주민 관점에서 살펴본 다문화사회통합으로의 저해와 증진요인을 보면, 첫째, 이주민과 접점이 전혀 없는 선주민은 대부분 미디어매체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고, 방송 내용은 다문화가족을 경제적으로 못 사는 동남아시아권 출신의 이주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인과 결혼한다는 이미지와 부부간 및 시부모와의 갈등이 많고, 돈주고 사왔다는 이미지, 약자라는 이미지 등을 부각시켜 선주민에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음을 지적함. 둘째, 결혼이민자의 낮은 한국어 실력은 자녀의 언어와 학습발달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선주민과의 교류와 소통에서 위축되게 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도 어려움을 나타냄. 반면 지역사회 내 이주민과의 사소한 행동 교류만으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가 높게 나타남
- 선주민 관점에서의 다문화사회통합 증진 방안을 보면, 첫째, 어린이집은 다문화자녀의 사회 첫 접점이 되는 장소로 다문화자녀의 언어발달, 한국어교육 및 식생활, 일상습관 등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곳임. 이 때 어린이집에서는 다문화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치료서비스와 한국어 교육, 그리고 돌봄이 주가 되는 어린이집 특성상 아이의 다양한 상태를 한국어가 서툰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한 보조기구로 아이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알림 그림 카드 등이 있음을 제안함. 둘째, 다문

화가족 한국인 배우자와 시부모 대상 상호문화이해교육 확대·강화와 더불어 다문화 축제와 행사가 보여주기식에서 선주민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행사로 전환되어 만남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를 요구함

다. 현장전문가의 다문화 사회통합 실태 및 정책적 욕구 결과

- 현장전문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업무 유형별 종사자들) 대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경험 실태에 대한 면접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전문가 느끼는 다문화사회통합 수준을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통합 이전에 가족통합부터 어렵고 힘겨움을 지적함.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들에 의해 억압과, 통제, 무시와 갈등, 차별, 그리고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을 당하고 있었음. 둘째, 아동청소년들보다 일반성인의 사회통합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저조했으며, 일반성인들이 인식하는 다문화사회통합 수준은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 부정적 시선, 국적과 피부색에 따른 무시와 하대, 위축 등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배척하는 사례도 많음을 지적함. 셋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과 관리자들도 또한 다문화사회통합 수준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살펴본 다문화사회통합으로의 저해와 증진요인을 보면, 첫째, 결혼이민자의 낮은 한국어실력과 부부간의 심한 연령차이로 인한 세대차이가 겹쳐져 부부갈등이 심한 가족들이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과 동시에 한국어교육 중단, 센터 출입 중단 등의 지지체계가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둘째,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부부생활 적응, 선주민과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시부모가 다양한 내용의 교육들이 당연하게 필요함에서 교육참여는 거의 없는 상황임. 셋째, 다문화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선주민의 다문화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기회 마련과 이수가 당연함에도 다문화이해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음. 넷째, 다문화가족의 정착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다문화가족 형태 중 한부모가족과 위기·취약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본국인과 재혼

한 여성결혼이민자도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마지막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센터로의 전환에 기인한 여러 혼란 등이 가중되고 있음도 다문화사회통합 증진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나타남

- 현장전문가 관점에서의 다문화사회통합 증진 방안으로 첫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상 다문화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둘째, 일상생활 중심의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상호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장소 마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요구함. 셋째, 일반성인 대상별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와 교육내용의 전문성, 전문강사 양성과 인력풀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라.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 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 유학생 포함)과 선주민 및 현장전문가가 인식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족과 선주민 모두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시각에서부터 선주민은 이주민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갖고 있었고, 이주민은 선주민에 의해 국적과 피부색 등에 따라 공포, 동정, 무시, 차별 등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었음. 현장전문가들은 전북지역의 다문화사회통합 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무시, 하대, 차별에서 더 나아가 배척까지 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이러한 분위기는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관련자들도 갖고 있음을 지적함. 이에 전북지역 차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관련자(공무원, 다가센터 종사자 등)와 다문화가족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는 종사자(교사, 관공서 직원 등)를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해 인권교육 및 다문화이해교육을 정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다문화이해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

문화이해 및 소개 수준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표준화 된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이고 단계별 교육 내용의 질이 기획되어야 하고 다문화이해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이해교육 양성과정을 마련하고, 강사 인력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지역사회 의 선주민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주민과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베틀시장 등 소규모 모임과 행사 등을 지속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전북지역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한국어교육 기회가 확대시켜 한국생활 적응, 결혼생활과 부부 적응, 자녀의 언어발달지도와 학습지도, 그리고 보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한국어교육이 취업으로 인해 중단 되지 않도록 평일 야간반, 주말반, 직장근무지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등 시간과 공간 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다차원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전북지역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가족 통합을 먼저 제고해야 함을 다문화가족, 선주민 및 현장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음.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결혼생활 적응, 자녀와의 관계 적응 등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나라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원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문화이해교육, 부부교육, 남편역할, 부모역할 및 시부모역할 등을 안내해주고 교육시켜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들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을 지적함. 한편, 센터 내에 한국인 배우자와 시부모 대상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어도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수요가 거의 없음. 이에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시부모가 의무적으로 혹은 반강제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규정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 다문화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대상 한국어교육, 노동·산재관련법, 의료·금융·비자관련 내용의 교육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과 인권에 대한 침해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일정한 제도적 차원으로 규정하여 제재조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필요로 함

〈표 4-7〉 조사결과와 주요 내용 요약·정리

구분	다문화가족	선주민	현장전문가
사회 통합 인식 수준	- 통합은 장기적 과정, 시간 필요 - 국적/피부색에 의한 사회통합 인식수준 다양화 - 한국문화 수용에 대한 강요·억압과 무시 및 차별 - 노동시장 및 근무지에서 부당한 차별·대우 심각	- 다문화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공존 - 이주민과의 접점이 없는 선주민은 다문화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조차 저조함	- 가족통합부터 어려움 - 일반성인의 사회통합 수준 저조 - 사업장 고용과 관리자의 낮은 다문화사회통합 수준
저해 및 증진 요인	- 한국인 영어 소통에 대한 막역한 두려움 큼 - 프로그램과 교육이 여성 결혼 이민자에 집중 - 한국어 실력에 따른 사회통합 수준과 자신감 차이 - 한국인 배우자의 적극적지지, 지원, 배려가 사회통합 증진에 도움 -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 참여 어려움 - 취업활동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확대 어려움	- 미디어매체를 통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 형성 - 결혼이민자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 - 생계형 취업활동으로 자녀의 언어 및 학습 발달 문제 야기 - 이주민과의 사소한 행동 교류로부터 사회적 인식개선 효과	- 부부갈등 심화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으로 한국어 습득 중단, 센터출입 부재, 가족문제 발생 - 결혼이민자 배우자와 시부모의 센터교육 참여 부재 - 지역주민 대상 제한적인 다문화이해 교육 - 다문화가족의 형태 변화 - 통합센터로 전환, 이에 따른 혼란 가중
사회 통합 증진 방안	- 다문화가족 고용주·관리자 대상 다문화인식개선 및 이해교육 이수 방안 - 한국어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방안 -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한국어교육 강화 방안 -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일자리연계 방안 - 다문화가족 정책결정과정 적극 참여 방안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 인권과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방안 -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자아존중감 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	-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지원서비스 : 언어발달치료, 한국어교육, 아이상대 알림카드 - 다문화가족 내 배우자와 시부모 대상 상호문화이해교육 확대·강화 필요 - 다문화가족 어울림 축제, 보여주기식에서 많은 선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전환	- 고용 사업장 대상 다문화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규제 마련 - 결혼이민자 적응에 결정적 영향자인 배우자와 그 부모 대상 가족통합 교육 필요 - 일상생활 중심의 선주민과 이주민 간 상호교류 활성화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일반성인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의 전문성 제고

5

장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전북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Jeonbuk Institute

제1절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전북 다문화가족정책의 한계점

제2절 전북 다문화가족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

제3절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제5장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전북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2장·3장·4장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토대로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전북 다문화가족정책의 한계점,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 도출,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 등을 제시함

제1절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전북 다문화가족정책의 한계점

가.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 영역의 정책 사업과 예산규모 저조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5개 정책영역 중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 영역의 예산 규모와 그 비율이 17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예산 규모(1,644.74백만원)와 예산 비율(11.3%)보다 저조하였음. 그리고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중에서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 영역의 사업 예산은 638백만원으로 전북 다문화가족정책 전체 예산의 9.9%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자료로 제출한 2019년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총 50개 사업 중 단 8개 사업만이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 영역의 사업이었고, 이 중 단 2개 사업만이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이었음.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은 22백만원으로 전북 다문화가족정책 전체 예산 중 0.3%만을 차지하고 있었음
-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중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 정책 영역의 예산 규모와 예산 비율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 수용성 제고 정책영역의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사업과 예산규모는 타 지자체 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나. 다문화이해교육 예산과 사업량 및 일반성인·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부족

- 2018년 다문화수용성조사 결과, 전북지역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받지 않은 도민은 98.8%로 거의 대부분의 도민이 다문화이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94.8%) 대비 ‘다문화이해교육 참여 경험 없음 비율’이 2018년에 오히려 4%p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금까지의 다문화이해교육 주요 대상은 일반 성인보다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학생 이었음. 반면, 일반성인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다문화가족과 접촉빈도가 많은 직업군의 종사자(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교사, 공공기관의 직원)와 정책 결정자이면서 이반자인 도와 시·군 공무원 및 다문화 관련 종사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사업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도·시·군 공무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은 2018년 한 해 112명만이 「다문화사회의 이해」 과정을 수료하였고, 2019년에는 도·시·군 공무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이 총 3회기 120명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전북지역 공무원 전체 규모 대비 다문화이해교육의 예산 규모와 교육 횟수 및 참여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진함을 보여줌

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이해교육 사업의 한계

-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강화와 지역주민의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에 대한 파급 효과 및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동 확대를 위해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강사 양성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신청대상자는 센터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어거주 2년 혹은 3년 이상자 이면서 한국어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임
- 다문화강사 양성교육과정은 짧게는 3일(12시간)에서 길게는 16일(48시간) 이상으로 센터마다 교육의 내용과 범위가 각기 상이했고, 전북 지역 14개 센터 중 몇 개소만이 다문화강사 대상 심화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그 외 나머지 센터는 다문화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 및 심화교육 과정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북 지역별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의 역량과 전문성이 각기 상이함을 나타내며, 동시에 이러한 전문성의 차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내용과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2019년 찾아가는 다문화강사수성교실]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다문화강사수성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강의 해 주실 선생님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19.6.26.(수) ~ 7.26.(금) 10:00~12:00 / 총 8회기 필수 참여! ◆ 장 소 :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실 ◆ 주요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회기</th> <th>일시</th> <th>내 용</th> <th>강사</th> </tr> </thead> <tbody> <tr> <td>1</td> <td>6.26.(수) 10:00~12:00</td> <td>- 교육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td> <td>담당자</td> </tr> <tr> <td>2</td> <td>6.28.(금) 10:00~12:00</td> <td>- 다문화사회로의 이해</td> <td>다다</td> </tr> <tr> <td>3</td> <td>7.3.(수) 10:00~12:00</td> <td>- 다문화인권 감수성 교육</td> <td>다다</td> </tr> <tr> <td>4</td> <td>7.5.(금) 10:00~12:00</td> <td>- 다문화인권 감수성 교육 II</td> <td>다다</td> </tr> <tr> <td>5</td> <td>7.10.(수) 10:00~12:00</td> <td>- 학습지도법, 다문화강사 준비 과정</td> <td>다다</td> </tr> <tr> <td>6</td> <td>7.12.(금) 10:00~12:00</td> <td>- 커뮤니케이션 스킬</td> <td>김희영</td> </tr> <tr> <td>7</td> <td>7.17.(수) 10:00~12:00</td> <td>- 다문화교육 시연</td> <td>담당자, 이주강사</td> </tr> <tr> <td>8</td> <td>7.19.(금) 10:00~12:00</td> <td>- 강의 시 주의사항 및 강사의 역할</td> <td>다다</td> </tr> <tr> <td>-</td> <td>7.24.(수), 26.(금)</td> <td>- 시연 및 실사 (2일 중 선택 가능)</td> <td>-</td> </tr> </tbody> </table> ※ 교육 수료 후 합격 시 다문화강사의 연계 (강의료 지급) ◆ 모집대상 : 한국 거주 5년 이상, 한국어교육 3단계 이상인 결혼이민자 15명 내외 ◆ 접수기간 : 2019. 5. 27.(월) ~ 모집마감 시 까지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E-mail : gjfc2131@naver.com)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이력서 1부 ◆ 문의 ☎ 051-513-2131 / 070-8709-1747 (김소영) ◆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기	일시	내 용	강사	1	6.26.(수) 10:00~12:00	- 교육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담당자	2	6.28.(금) 10:00~12:00	- 다문화사회로의 이해	다다	3	7.3.(수) 10:00~12:00	- 다문화인권 감수성 교육	다다	4	7.5.(금) 10:00~12:00	- 다문화인권 감수성 교육 II	다다	5	7.10.(수) 10:00~12:00	- 학습지도법, 다문화강사 준비 과정	다다	6	7.12.(금) 10:00~12:00	- 커뮤니케이션 스킬	김희영	7	7.17.(수) 10:00~12:00	- 다문화교육 시연	담당자, 이주강사	8	7.19.(금) 10:00~12:00	- 강의 시 주의사항 및 강사의 역할	다다	-	7.24.(수), 26.(금)	- 시연 및 실사 (2일 중 선택 가능)	-																																				
회기	일시	내 용	강사																																																																												
1	6.26.(수) 10:00~12:00	- 교육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담당자																																																																												
2	6.28.(금) 10:00~12:00	- 다문화사회로의 이해	다다																																																																												
3	7.3.(수) 10:00~12:00	- 다문화인권 감수성 교육	다다																																																																												
4	7.5.(금) 10:00~12:00	- 다문화인권 감수성 교육 II	다다																																																																												
5	7.10.(수) 10:00~12:00	- 학습지도법, 다문화강사 준비 과정	다다																																																																												
6	7.12.(금) 10:00~12:00	- 커뮤니케이션 스킬	김희영																																																																												
7	7.17.(수) 10:00~12:00	- 다문화교육 시연	담당자, 이주강사																																																																												
8	7.19.(금) 10:00~12:00	- 강의 시 주의사항 및 강사의 역할	다다																																																																												
-	7.24.(수), 26.(금)	- 시연 및 실사 (2일 중 선택 가능)	-																																																																												
2017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취업교육지원) 다문화강사양성과정교육 일정안내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일시</th> <th>장소</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3월 22일(수)</td> <td>10:30~12:30</td> <td>연하 다문화강사모집</td> </tr> <tr> <td>2</td> <td>3월 24일(금)</td> <td>10:30~12:30</td> <td>연하 다문화강사모집</td> </tr> <tr> <td>3</td> <td>3월 29일(수)</td> <td>14:30~16:30</td> <td>수강신청서 작성교육강사 5명</td> </tr> <tr> <td>4</td> <td>3월 31일(금)</td> <td>10:30~12:30</td> <td>연하 다문화강사모집</td> </tr> <tr> <td>5</td> <td>4월 5일(수)</td> <td>14:30~16:30</td> <td>수강신청서 작성교육강사 5명</td> </tr> <tr> <td>6</td> <td>4월 7일(금)</td> <td>10:30~12:30</td> <td>연하 다문화강사모집</td> </tr> <tr> <td>7</td> <td>4월 12일(수)</td> <td>14:30~16:30</td> <td>수강신청서 작성교육강사 5명</td> </tr> <tr> <td>8</td> <td>4월 14일(금)</td> <td>10:30~12:30</td> <td>연하 다문화강사모집</td> </tr> <tr> <td>9</td> <td>4월 19일(수)</td> <td>14:30~16:30</td> <td>수강신청서 작성교육강사 5명</td> </tr> <tr> <td>10</td> <td>4월 21일(금)</td> <td>10:30~12:30</td> <td>연하 다문화강사모집</td> </tr> <tr> <td>11</td> <td>4월 26일(수)</td> <td>10:30~12:30</td> <td>연하 다문화강사모집</td> </tr> <tr> <td>12</td> <td>4월 28일(금)</td> <td>10:30~12:30</td> <td>연하 다문화강사모집</td> </tr> <tr> <td>13</td> <td>5월 30일(수)</td> <td>10:30~12:30</td> <td>연하 다문화강사모집</td> </tr> <tr> <td>14</td> <td>5월 31일(목)</td> <td>10:30~12:30</td> <td>연하 다문화강사모집</td> </tr> <tr> <td>15</td> <td>5월 17일(수)</td> <td>10:30~12:30</td> <td>연하 다문화강사모집</td> </tr> <tr> <td>16</td> <td>5월 19일(금)</td> <td>10:30~12:30</td> <td>연하 다문화강사모집</td> </tr> <tr> <td>17</td> <td>5월 24일(수)</td> <td>10:30~12:30</td> <td>연하 다문화강사모집</td> </tr> <tr> <td>18</td> <td>5월 26일(금)</td> <td>10:30~12:30</td> <td>연하 다문화강사모집</td> </tr> </tbody> </table>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전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번	일시	장소	내용	1	3월 22일(수)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2	3월 24일(금)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3	3월 29일(수)	14:30~16:30	수강신청서 작성교육강사 5명	4	3월 31일(금)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5	4월 5일(수)	14:30~16:30	수강신청서 작성교육강사 5명	6	4월 7일(금)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7	4월 12일(수)	14:30~16:30	수강신청서 작성교육강사 5명	8	4월 14일(금)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9	4월 19일(수)	14:30~16:30	수강신청서 작성교육강사 5명	10	4월 21일(금)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11	4월 26일(수)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12	4월 28일(금)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13	5월 30일(수)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14	5월 31일(목)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15	5월 17일(수)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16	5월 19일(금)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17	5월 24일(수)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18	5월 26일(금)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연번	일시	장소	내용																																																																												
1	3월 22일(수)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2	3월 24일(금)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3	3월 29일(수)	14:30~16:30	수강신청서 작성교육강사 5명																																																																												
4	3월 31일(금)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5	4월 5일(수)	14:30~16:30	수강신청서 작성교육강사 5명																																																																												
6	4월 7일(금)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7	4월 12일(수)	14:30~16:30	수강신청서 작성교육강사 5명																																																																												
8	4월 14일(금)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9	4월 19일(수)	14:30~16:30	수강신청서 작성교육강사 5명																																																																												
10	4월 21일(금)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11	4월 26일(수)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12	4월 28일(금)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13	5월 30일(수)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14	5월 31일(목)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15	5월 17일(수)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16	5월 19일(금)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17	5월 24일(수)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18	5월 26일(금)	10:30~12:30	연하 다문화강사모집																																																																												

〈그림 5-1〉 센터별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과정

-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는 대부분이 어린이집·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본인 나라의 언어, 음식, 의상, 관습 등에 대한 문화 소개와 (음식)체험 중심의 강의를 주로 하고 있어 진정한 다문화이해 교육이

라고 명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또한 어린이집·초·중·고 학생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은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과 범위 및 깊이를 단계별(기초-보수-심화)로 구분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음

-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실력과 강의 설계 능력, 교수법 및 다문화이해 관련 전문성 약화로 고등학생, 일반성인,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힘들어하고 강의 받는 대상자도 다문화이해에 대한 교육의 아쉬움과 그 효과성이 높지 않았음

라. 이주민과 선주민간 상호교류 및 공동 활동 사업 부족

- 전북 다문화가족정책 중 ‘사회통합 및 다문화수용성 제고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다문화이해교육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나눔봉사 활동, 매년 다문화주간에 개최되는 어울림축제 행사가 일부분 추진되고 있었음.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 결혼이주여성의 나눔봉사활동, 어울림축제는 지역민과 이주민간의 접촉 기회와 만남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일회성 행사 혹은 다문화가족 중심의 시혜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이주민과 지역주민간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상호교류 경험이나 공동 활동 경험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주간 어울림 축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출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축제 행사가 기획되어지고 있어서 지역민들의 참여 확대와 지역민과 공동으로 함께 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음. 또한, 읍·면 단위 지역에서는 매년 1회 ‘읍·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행사 내용에 다국적별 음식나누기, 전통놀이와 의상체험하기 등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민과의 소통 경험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8년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북 도민은 전국평균보다 다문화 가족과 친척, 이주배경의 친구, 동료, 이웃들이 주변에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들과의 관계 경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전북지역의 다문화수용성은 전국평균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전북지역 도민들은 주변에서 다문화 가족과 친척, 친구, 동료, 이웃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반면, 그들과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화나 친밀한 만남 등을 지속 할 수 있는 상호교류 활동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무엇보다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 전북 도민은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활동(축제/체육대회, 다문화가족대상 자원봉사, 동호회 등) 경험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저조했고, 다문화교육과 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런 결과는 전북지역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사업량(예산규모)이 부족 했거나 혹은 교육 및 관련 활동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됨. 이에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마을단위 중심의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이 함께 접할 수 기회, 대화하고 만남을 갖고 직접적인 상호교류와 공동 활동 경험을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활동 사업이 필요하고 사업 활동에 대한 홍보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수용성이란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접촉 경험만으로 향상되지 않고 직접적인 교류 경험과 상호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을 때 높아짐을 알 수 있음. 즉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사회통합 제고를 위해서는 다문화 인식 개선에서 더 나아가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실제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관계 경험을 보다 확대 및 활성화해야 하고, 이러한 직접적인 상호교류 관계경험들이 쌓여 향후 이주민에 대한 인식, 지역민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이 다문화사회통합을 향상시킬 것임. 이에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간의 접촉 기회 마련에서부터 서로에 대한 대화와 만남

이 확장되어 서로 상호교류하고 함께 공동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마.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 사업 부족

-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으로의 통합 및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위해서는 인권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나타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한국어 습득,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적응 강요, 외부와의 통제, 갈등 시 언어적 및 신체적 폭력 피해 등 인권 차별적인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취업 이후에는 직장 근무지에서 동료와 상사로부터 부당한 차별과 무시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 반면,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사업 50건 중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사업은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2개소(전주, 익산) 운영 이외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권보장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은 거의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바. 결혼이주민이 지속 참여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의 다각적인 환경 조성 필요

- 결혼이민자를 지역사회로 통합시키기 위한 중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임.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 정도에 따라 부부 및 가족간 의사소통 정도, 자녀의 언어발달과 학습지원 및 건강한 관계 형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한국어 실력만큼 결혼이민자 자신의 의견과 생각 등을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져 이웃과의 네트워크 형성 시에도 자신감 있게 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함.

즉 결혼이민자는 무엇보다도 한국어 실력만큼 가족적응, 사회통합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개인적 상황과 욕구 및 수준별 맞춤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취업한 이후에도 한국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사. (면접결과)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의 저조한 다문화 사회통합 수준

-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성인대상 다문화수용성은 100점 만점 중 48.07점으로 전국평균보다(52.81점) 4.74점이 낮았으며, 17개 시·도 중 하위 3번째로 나타나 전북도민의 다문화수용성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도별 전북지역 다문화수용성을 살펴보면, 2012년 51.45점, 2015년 55.35점으로 2018년 다문화수용성이 가장 낮았고, 2012년과 2015년의 전북지역 다문화수용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2018년 전북 다문화수용성은 전국평균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남
- 성인 여성의 다문화수용성은 남성보다 낮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와 40대의 다문화수용성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소득수준별로는 100만원대와 200만원대 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남. 또한, ‘다양한 국가의 인종과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라는 다문화지향성에 대한 태도도 저조하게 나타나 전북 도민의 다문화 사회통합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면접 결과에서도 다문화가족이 느끼는 다문화 사회통합 인식은 물론 지역주민이 느끼는 다문화 사회통합 인식수준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즉 다문화가족은 국적과 피부색 등에 따라 차별과 무시를 당한 경험, 한국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억압과 강요를 받은 경험 등을 나타냈음. 지역주민은 다문화 사회통합에 대해 긍정적이면

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함께 공존했으며, 지역주민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는 논란과 다문화가족과의 접점이 전혀 없는 지역주민은 다문화 사회통합에 대한 고민이나 관심 및 어떠한 인식조차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아. (면접결과) 다문화가족 가족통합을 위한 기본교육과정 참여 독려 필요

-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적응, 가족 통합이 우선 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원의 지지, 지원 및 도움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한국에서의 가족적응에 영향을 받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원(시부모)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한국 문화와 음식에 적응하도록 억압 및 강요받고,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각각의 언어를 서로가 함께 배우며 의사소통하기 보다는 결혼이민자에게 일방적으로 한국어 습득만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시부모)이 결혼이민자 관점에서 상호 이해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언어, 문화, 가치관, 음식과 식습관 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원(시부모) 대상 결혼준비교육, 다문화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이해 교육, 부부·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기법, 부부교육, 아버지교육, 부모교육, 시부모 혹은 조부모역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원(시부모)은 항상 소수에 불과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 적응,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원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할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그 기본교육과정만이라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모색될 필요 있음

제2절 전북 다문화가족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

가. 사회통합 관련 예산·사업 확대와 다문화이해교육 양적·질적 제고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 먼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영역 중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 영역의 예산 규모 확대와 사업 발굴이 필요함
- 무엇보다 전라북도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사업’의 예산 규모 확대와 일반 성인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의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과 접촉빈도가 많은 직업군의 종사자(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교사, 공공기관의 직원)와 정책 결정자이면서 이반자인 도와 시·군 공무원, 언론사의 언론인, 다문화 관련 종사자 대상 다문화감수성 제고와 인식 개선을 위해 다문화이해교육을 정례적으로 필수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넓게는 다문화가족과 일상생활 측면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이웃 주민, 택배기사, 버스와 택시운전기사, 관리사무소 직원, 병원 관계 직원 등에게도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감소시키면서 다문화가족 인식을 개선시켜야 할 것임
- 다문화 인식개선의 파급 효과와 실효성 높은 다문화이해교육을 보다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문화강사인 결혼이주여성 대상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양성과정 마련과 양성과정 이외 정기적인 보수 및 심화교육 실시로 한국어실력부터 강의 설계 능력, 교수법과 다문화이해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둘째, 일반인, 공무원,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 직무별 직업인과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 혹은 다문화 관련 업무와 교육 경험이 있는 자를 전문 강사로 양성하여 전문 강사 풀 구축 및 대상별 강의안 개발, 단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 제작, 많은 도민들이 다문화이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범과 조례 제정, 경영평가 평가지표 개정 등 제도적 측면의 변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확대가 필요함. 지역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다문화이해교육 이외 다문화 관련 사업(통·번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 다문화어울림행사, 한국어교육 자원봉사 모집 등)에 대한 홍보, 인식개선과 관련된 사업(다문화이해교육, 다누리 배움터 등) 홍보, 캠페인, 다양한 매체(TV, 라디오, 유튜브 등)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미디어매체 제작, 토론회·간담회·자문회의 등을 확대할 필요 있음

나. 마을단위 중심의 이주민과 선주민간 상호교류의 장 마련 및 활성화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은 이주민 혹은 선주민의 일방향적인 과정이 아니라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쌍방향적인 과정이어야 함.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단순한 만남과 접촉 형성을 넘어 서로 상호교류를 하고, 교류가 활성화 될 때 비로소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갖고 지역민으로서 결속력과 연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이에 지역사회 마을단위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주민과 선주민이 소소하게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서로 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장 마련 및 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먼저 마을단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으로 누가 있는지에 대한 만남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및 서로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함께하는 체육대회’, ‘벼룩시장·아나바다 나눔터 개최’, ‘우리 동네 프리마켓’, ‘우리 동네 예술제’ 등과 같은 오프라인 공간 마련과 마을단위의 우리 동네 생활 정보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마련 등이 필요함
- 다음으로는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자원봉사, 동호회,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위해 다문화가족이 도정·시정에 이웃이자 지

역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도 필요함. 이때 일상생활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 간의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공간이 필요하겠고, 이러한 교류활동을 새롭게 만들고 지속 유지할 수 있는 행정지원 및 선주민과 이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함

-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만남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녹여낼 수 있고 이주민과 선주민의 자발성 및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같은 지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임

다. 결혼이민자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 먼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해 있는 사업장 내 고용주와 관리자의 다문화통합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 및 차별 현상 등이 두드러짐.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지 못하게 한국어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한시키고 노동·산재 관련 내용, 의료·금융 관련 교육 등에 강한 욕구들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
- 다음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 적응에 있어서 한국 문화와 음식 및 언어에 대한 일방적인 적응 강요, 외부와의 통제, 결혼이민자의 나라 무시 및 언어소통의 문제, 부부간 심한 연령차·세대차에 따른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이슈화되고 있음
- 이에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와 다양성 존중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및 한국인 남편과 그 가족(시부모) 대상 가정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인권 감수성 교육 및 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고충상담, 노동·산재 관련 교육과 노무 상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해야 함. 게다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및 결혼이주여성 주요 근무처의 사업주와 직원 대상 인권 감수성교육, 성폭력·성추행 예방교육 등이 확대될 필요 있음

라. 지역사회 주도의 제도적·규범적 강화로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

-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사업 수행 시 가장 대두된 어려움은 이주민과 선주민을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남. 거주 5년 이상 된 장기거주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은 정착을 어느 정도 한 상태로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율이 낮아진 반면, 초기 입국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은 최근으로 올수록 그 수가 지속 감소 추세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참여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최근 결혼이민자는 과거와 다르게 입국 초기부터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 출산 후 바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취업하는 비율이 높아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음. 또 취업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다문화 사회통합 사업을 발굴하고 실시하더라도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고란을 겪고 있음
- 이에 전북도 및 각 시·군 지자체 주도로 혹은 교육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유인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조례나 규정 등 제도적 마련을 통해 사회통합 증진 사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로 가족 및 사회 통합 증진 제고

- 사회통합 개념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차원과 선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적응지원 및 다문화가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차원 등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쌍방향적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봐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을 제시해야 함. 이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민의 역할과 노력도 필수적으로 강조되어야함 (설동훈, 2019). 즉 결혼이민자가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와 가족에 적응하고 통합해 나가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야함. 결혼이민자들이 사회통합 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의사소통 문제, 열악한 경제적 사정, 자녀교육과 부모역할 문제를 꼽았고 이러한 문제들 기저에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실력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한국어실력에 따라 그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차이가 나타남

- (한국어교육 개선 및 지속참여 유인책 마련) 한국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결혼이민자의 역량은 한국어 실력임. 한국어교육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역민과 사회 활동 및 참여가 확대되며, 보다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 가능하고, 자녀의 언어발달과 학습지원 등이 보다 수월해 질 수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결혼이민자는 한국어를 미처 습득하기도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취업을 하고, 취업과 동시에 한국어교육이 중단되고 있음
- 이에 한국어교육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 생활주거지 근처에서 직장 일을 하지 않는 주말과 평일 저녁에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취업 중인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각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회화반·자격증취득반 등을 개설하고, 운영 시간대별, 인원규모별 혹은 찾아가는 교육 방법 등을 고민 할 필요 있음. 또한, 초기 입국자이면서 한국어교육 1 - 2단계에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인 결혼이민자를 한국어교육 멘토로 연계한다면, 한국어교육에 대한 보조강사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그리고 현행 한국어 교육 대부분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과정을 보다 더 세분화 및 전문화할 필요성도 제기됨

-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위한 결혼이민자의 전문성 강화)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열악함. 배우자의 비정규직으로 인해 정해진 수입이 없고, 고령화로 직업을 상실했거나 남편의 정신·신체적 장애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등 가족생계부양 문제와 자녀학비·학원비 문제 등이 발생함. 이에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증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취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 그러나 결혼이민자 취업의 대부분은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으로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일의 강도가 높으며, 수입은 열악함.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유지·관리 등이 필요함. 시장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결혼이민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됨. 또한, 지역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대상 구인 및 구직 네트워크를 상시화 하여 보다 체계적인 구인 - 구직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음

제3절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가.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전북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향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을 크게 ①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② 이주민과 선주민간 상호교류 및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 ③ 다문화가족의 가족통합 제고, ④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및 사회참여활동 강화 등 4개로 구분·제안함
-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방향은 다문화이해교육 양적·질적 확대 및 내실화(다문화강사 전문성 제고, 다문화이해교육 참여 확대, 다문화강사 양성 및 풀 구축 등)와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확대(캠페인, 다문화주간 어울림축제 도민참여 확대 전환)로 구성함. 둘째, ‘상호교류 및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에 대한 정책방향은 나눔 장터 활성화, 마을단위 상호교류의 장 발굴, 정책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구성함. ‘다문화가족 가족통합 제고’ 정책방향으로는 기본교육과정 운영, 가가호호방문 및 사례관리, 폭력피해이주여성 긴급위기지원단 운영과 상담소 유치 등을 제안함. 마지막 ‘결혼이주여성 역량 및 사회참여활동 강화’는 한국어교육 다각화,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제안함

〈표 5-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 과제

정책방향	세부 추진 과제	
다문화 수용성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다문화이해교육 양적·질적 확대 및 내실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 전문성 제고
		공무원·접촉빈도 높은 직업종사자·지역주민 다문화이해교육 참여 확대
		다문화강사 양성 및 인력 풀 구축
		(공모사업) 다문화이해교육 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보급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확대	다문화 캠페인
		다문화주간 어울림 축제, 도민과 함께하는 사업
		광범위적 문화다양성 정보제공 확대(TV매체 활용)
상호교류 및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	다함께 나눔 장터 활성화	
	(공모사업) 시민단체 중심의 마을단위 다양한 상호교류의 장 발굴	
	(공모사업)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다문화가족 정책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다문화가족의 가족통합 제고	기본교육과정 운영	
	다문화가족 가가호호 방문 및 사례관리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위기지원단 운영 및 상담소 유치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및 사회참여활동 강화	자아존중감 제고 및 인권침해 대응 교육	
	한국어교육의 다각화	
	모국인 멘토 연계 사업 (한국어 교육 보충과 인적 네트워크 공유)	
	한국인 자원봉사 연계 한국어교육 보강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개최	
	모국어 전문상담원 양성	
	결혼이주여성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나. 세부 추진과제

1)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1-1

다문화이해교육 양적·질적 확대 및 내실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8년 다문화수용성조사 중 전북지역 다문화이해교육을 받지 않은 도민이 98.8%로 거의 대부분이 다문화이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이해교육의 주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학생이었음. 반면, 일반성인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다문화가족과 접촉빈도가 많은 직업군의 종사자(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교사, 공공기관의 직원)와 정책 결정자이면서 이반자인 도와 시·군의 공무원, 다문화가족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의 언론인 등 다문화관련 종사자 대상 다문화감수성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정례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일반 성인인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다문화이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성인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결혼 이민자가 자기나라 문화 소개로 다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단순 의미의 다문화이해교육도 필요하지만, 다문화 인식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높여줄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등 다문화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내용을 보다 확대·심화시켜 단계별로 실시할 필요 있음. 이러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지닌 전문 강사 인력 양성과 강사인력 구축이 필요하고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다문화이해교육 매뉴얼 제작도 필요함

□ 사업개요

①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 전문성 제고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대상 : 다문화이해교육 결혼이민자 강사
- 사업내용 :
 - (양성과정과 구별하여 심화과정 마련) 결혼이민자 신규 대상자 양성과정은 기본과정으로 하고 기존 강사 대상 보수 및 심화과정 마련하여 별도 운영
 - 컴퓨터 사용기법 훈련 후 전문가 연계로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자료 제작, 수업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훈련과 작성한 강의안대로 강의 발표(모의) 등으로 면밀히 검토·수정·지원 필요
 -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표준화된 강의내용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 내용 검토 및 확인 필요
 - 최근 정보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동향과 소재, 우수 사례 전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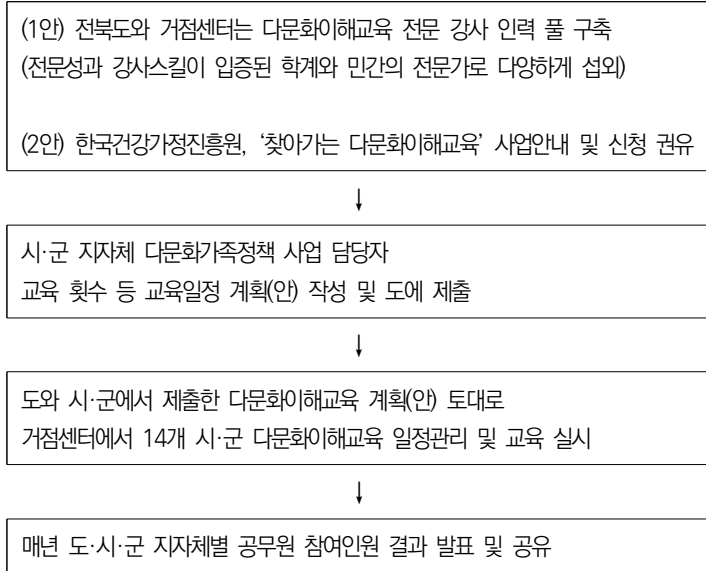
② 공무원, 접촉빈도 높은 직업종사자,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참여 확대

[2-1] 도·시·군 공무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참여 확대

- 사업목적 : 전북지역 공무원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다문화수용성 제고와 다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전북 14개 시·군 다문화가족정책사업 담당자
- 사업기간 : 1년 (1월~12월)
- 예산내용 : 전북 도비 지원(강사비 지원)
- 사업내용 : 전북 도와 6개 시는 5회 이상, 8개 군은 3회 이상 교육 실시 권장

- 도와 6개 시의 경우 1년에 약 300명 대상 교육 실시
- 8개 군의 경우 약 200명 대상 교육 실시

○ 추진방법



※ 다문화이해교육 시 참고 사항

- 공무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 있음. 공무원 전반이 숙지해야 할 내용인 기초과정, 다문화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필수과정과 심화과정을 추가적으로 단계별 전문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담당업무에 따라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 집합교육 이외 지자체 현장사례 중심 교육, 소규모 토론회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병행할 필요 있음. 교육 내용 또한 다문화이해교육에서 더 나아가 세계시민교육 등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공직자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 필요

〈표 5-2〉 전북지역의 도·시·군 공무원 현황(2019. 6. 30기준)

지자체	총원(명)	일반(명)	복지(명)
전북도	1,871	1,806	65
전주시	2,119	1,772	347
군산시	1,562	1,305	257
익산시	1,533	1,259	274
정읍시	1,130	962	168
남원시	1,072	941	131
김제시	1,022	837	185
완주군	816	696	120
진안군	587	524	63
무주군	513	457	56
장수군	516	462	54
임실군	620	557	63
순창군	603	539	64
고창군	776	693	83
부안군	748	653	95
전체 총합	15,488	13,463	2,025

[2-2] 다문화가족과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 종사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북 14개 시·군,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과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종사자 500명 이상
- 사업기간 : 1년(1월~12월)
- 예산사업 : 전북 도비 지원
- 추진방법 : 사업계획수립 → 교육홍보 및 장려/권장 → 다문화이해 교육 실시

- ① 전라북도는 다문화이해교육 사업계획 공지(공문발송) 및 교육 권장/장려
- ② 기관 및 기업체, 단체 교육 신청 접수
- ③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파견(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을 자주 접촉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기에 교육의 내용을 기초 - 보수 - 심화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보다 전문성 높은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필요

[2-3]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북 14개 시·군,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대상 : 지역주민, 성인 500명 이상
 - 전북 도내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노인대학, 평생교육대학, 기업체 및 기타 기관 등을 방문하여 다문화이해교육 제공
- 사업기간 : 1년(1월~12월)
- 예산사업 : 전북 도비 지원
- 추진방법 : 사업계획수립 → 교육홍보 및 장려/권장 → 다문화이해(체험)교육 운영
 - 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지자체 : 각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노인대학, 평생교육대학, 평생학습센터 등 기관에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사업 계획 공지 및 교육 실시 권장/장려
 - ② 기관 및 기업체 교육 신청 접수(각 지역 다가센터) → 교육 실시 → 결과보고

[3] 다문화강사 양성 및 인력 풀 구축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대상 : 센터 종사자, 지역사회 시민 등 다문화이해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
- 사업내용
 - 전북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근무경력이 7년 이상 된 종사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 등록 권장
 - 근무경력 7년 이상 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경험과 다양한 사례들을 갖고 있으며 다문화관련 업무와 사업개발 등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향후 일반성인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 강의를 위한 강사로 적합함. 한편, 센터 종사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전문 강사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양성과정 등록 권장 및 전문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또한, 다문화이해교육 및 상호문화이해교육에 관심이 많은 전북지역 도민도 함께 모집하여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 및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 마련 필요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연계하여 전북지역 센터 종사자 및 도민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양성과정 추진 실시도 타진해 볼 필요 있음
- 전북지역 다문화이해교육 전문 강사 인력 풀 구축

④ (공모사업) 다문화이해교육 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보급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
- 공모신청대상 :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강의안 및 프로그램
- 선 정 개 수 : 5개 교육 프로그램 선정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강의안 선정
- (지원내용) : 우수 프로그램 및 강의안 선정 대상자 포상금 지급
 - ※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2명) 각각 50만원씩
- (공모사업 심사위원 구성)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전문가 5-6명 구성
- 사업기간 : 1년에 1회 선정
- 예산사업 : 전북 도비 지원
 - 공모사업비, 심사수당비와 심사회의회비 등

1-2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확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북도민의 다문화수용성은 48.07점으로 하위에서 세 번째 수준이며, 점수가 가장 높은 세종시(60.52)와는 -12.45점이나 차이가 낮으며, 전국 평균 다문화수용성(52.81) 보다는 -3.75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제 전북도민 대상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확대가 필요함

- 즉, 다문화 인식개선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다문화 캠페인 활동, 함께 모여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걷기 축제 등 일회성 축제나 다문화가족 중심의 시혜적인 사업에서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 마련에서부터 함께 만나 동일한 목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의 마련까지 이어져서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접촉 기회 확대, 상호 교류하고 서로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다채로운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

① 다문화사회 캠페인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
- 사업대상 : 일반성인, 유아·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전북도민 전체
- 사업기간 : 연 중 실시
- 개최지역 : 지역 도민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 선정
- 세부 사업내용 :
 - 다문화사업 안내, 다문화가족 활동 안내
 -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활동 할 수 있는 정보 안내 및 사업 홍보
 - 각 나라별 전통의상 입고 길거리 캠페인, 관공서·시장 등에 다문화 알리는 행사
 - 함께 나누는 다문화 푸드 캠페인
 - 다문화가족 인권 침해·차별 사례 및 옹호를 위한 인권 캠페인
 - 길거리 행진, 다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스티커 붙이기) 등 실시



〈그림 5-2〉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 사례들



〈그림 5-3〉 경남 김해시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2019)

② 다문화주간 어울림축제,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

○ 사업목적 : 현재까지의 다문화주간 어울림축제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축제 행사가 준비되고 진행되어 옴. 이에 향후 다문화주간 어울림 축제는 지역주민과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공동으로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행사 기획과 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즉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어울림축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하나 되기 걷기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기획하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 접촉의 기회, 만남의 기회, 상호 교류의 기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

○ 사업대상 : 일반성인, 유아·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전북도민 전체

○ 사업내용 : 어울림 축제 이외 다양한 부대행사 마련

- 하나 되기 걷기 행사, 세계음식 무료시식, 세계놀이가족체험 등
- 프리마켓, 먹거리판매, 전통의상 및 소품 전시, 다문화 포토존, 기념물품 증정, 홍보부스 등으로 지역민 관심 유도
- 다어울림 카페운영, 다문화이해 및 인식개선관련 가족영화 상영 등



〈그림 5-4〉 시민의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사례들

③ 광범위적 문화다양성 정보제공 확대(TV 매체 활용)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방법 중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다양한 미디어 매체(TV, 라디오, 유튜브 등)를 활용하여 결혼이주민에게는 국적별 모국어를 통해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을, 지역주민에게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관련 사업이 시혜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에서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미디어 매체 활용을 통한 다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주민 및 지역민에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주문화방송 등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과 전북 도민 전체

○ 사업내용

- 매주 토요일 오전 전북지역 다문화 정보공유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필요
- 향후 전북지역 내 라디오 프로그램 및 유튜브 방송도 추가적으로 진행 필요

2) 이주민과 선주민간 상호교류 및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

2-1

다함께 나눔 장터 활성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사회와 이주민과 선주민이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함께 하는 상호 교류 활동은 다문화인식개선에 상당히 효과적이었음. 기존 다문화사회 통합 사업은 대부분이 다문화이해교육이었으며 군민행사, 어울림축제 등 일시적이면서 대규모로 잠시 참여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에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실질적인 상호교류와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음
- 생활권 내 마을단위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소한 만남, 도움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참여활동 등 일상적 만남과 교류의 기회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운영이 필요함
- 무엇보다 이러한 만남과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속에 녹여낼 수 있는 활동과 이주민과 선주민의 자발성 및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서로 인정하고 같은 지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함
- 벼룩시장이나 아나바다 나눔터를 개최함으로써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상호교류 확대, 나눔의 문화 확산, 경제적 비용 절감, 재활용 활성화, 아동·청소년 경제적 경험 확대 및 경제적 관념 생성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협력기관 : 각 지역의 시·군·구, 읍·면·동 자치단체
- 사업대상 : 각 지역 이주민과 선주민 전체

- 추진절차 :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기획 → 후원금과 후원물품 모금 → 지자체를 통한 홍보 → 벼룩시장·아나바다 나눔터 개최
- 사업내용
 - (언제) : 1년에 분기별 2회(6개월에 1번씩)
 - (지역) : 각 지역 센터 접근성 좋고 거주밀집 지역 공원, 공터 등
 - (참여 대상) : 다문화가족과 일반 개인(중학생 이상), 단체(학교, 공공기관, 종교 시설, 기업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아동
 - (내용) : 재활용품품, 전통수공예품, 장난감, 옷, 책, 가구, 생활용품 등 전시 및 판매, 세계음식판매, 플리마켓 등
- 사업기간 : 1년 단위로, 지속 연장 신청
- 예산사업 : 전복 도비 지원

2-2

(공모사업) 시민단체 중심의 마을단위 다양한 상호교류의 장 발굴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사회의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상호교류는 마을단위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이러한 상호교류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속에 녹여낼 수 있는 활동과 이주민과 선주민의 자발성 및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서로 인정하고 같은 지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함
-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사업 발굴 보다는 마을단위의 지역민과 이주민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상호교류의 장을 다양한 내용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함. 즉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각 지역단위의 시민단체 중심의 상호교류 장 마련 및 다양한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공모사업 형식의 사업 발굴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
- 공모 신청대상/수행기관 :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사업대상 : 각 지역단위 내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이 필히 함께 참여
- 사업량 : 5개 사업(향후 점진적 확대)
- 사업주제 : 마을단위로 지역민과 다문화가족(자녀 포함)이 함께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장 마련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추진, 성과평가, 사업연장 검토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진행비 등 약 천 만원 내외
 - (공모사업 심사위원 구성) 다문화관련 전문가와 실천가 중심 7-8명 내외
- 사업기간 : 1년 단위로, 지속 연장 신청
- 예산사업 : 전북 도비 지원
 - 공모사업비, 심사수당비와 심사회익비 등

〈아시아인권문화연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단위 상호교류의 장 예시〉

○ 수요일 가든파티

- 매주 수요일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지역주민 만남의 자리
- 서로 얼굴을 익히고 대화를 주고받으며 점차 이웃으로 발전해 나감
- 주로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가 참여하는데 참여자 절반 이상이 이주자이거나 그 자녀들임
- 이주민과 선주민의 관계증진과 융화 활동이라 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 교류 · 소통 공간 운영 사업

-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소통 공간 운영
- 실질적인 상호교류를 활성화 기대

2-3

(공모사업)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사회 내 선주민과 다문화가족간의 실질적인 관계 경험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수용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동일한 주거 및 생활공간 내에 있는 마을단위 이주민과 선주민이 마을의 발전과 보다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주체적으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경험 활동을 배가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와 관계 형성의 장 마련한다고 사료됨
- 무엇보다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소통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생활공간 내에 있는 마을단위 사업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며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따뜻한 관계 형성, 음식을 통한 활동 등 다양한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과 경험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됨. 이로 인해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지역사회 통합 또한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주관 : 전라북도
- 공모신청대상/수행기관 :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마을의 자생 단체
- 사업내용 : 마을단위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사업들 지원
- 사업량 : 3개 사업(향후 점진적 확대)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공고 및 홍보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추진 → 성과평가 → 사업연장 검토
 -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등 약 천만원 내외(공동체별 3,000천원 이내)
 - (공모사업 심사위원 구성) 다문화관련 전문가와 마을공동체 사업 전문가 중심 7-8명 내외
- 사업기간 : 1년 단위로, 지속 연장 신청
- 예산사업 : 전북 도비 지원(약 15,000천원)
 - 공모사업비, 심사수당비와 심사회익비 등

2-4

다문화가족 정책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활동 참여정도는 사회통합정도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척도로 알려져 있음. 이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도정 과 시정 등에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정책과정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웃이자 지역주민으로서의 위치를 다져 나갈 필요 있음

- 정책수립 과정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 및 검토 등의 논의의 시간을 통해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수요자 맞춤형 다문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 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대상 : 6개국 이상의 남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및 시부모, 자녀 등을 성별, 세대, 연령대, 지역까지 고려하여 대상 선정
- 사업내용
 - 사회통합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의견교류와 소통 창구 역할
 - 이주민 정책제안, 자문 및 모니터링 등
 - 정기회의 1년에 총 4회 정도(전체회의, 분야별/대상별 분과회의 등)
- 추진절차 : 다문화가족 정책참여회의 추진단 모집과 설명회 개최 → 정책참여회의 추진단 운영과 운영 계획(안) 발표 → 다문화가족 정책참여회의 대표자 선발 및 정책참여회의 출범

3) 다문화가족의 가족통합 제고

3-1

(초기 입국 다문화가족 중심) 기본교육과정 운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배우자와 시부모로부터 한국어·문화·음식 등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요와 억압을 받고 있고,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부부간 심한 연령차·세대차로 인권적 차별, 언어적·신체적 폭력까지 당하고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통합보다도 다문화가족의 가족통합 증진이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의 가족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과 함께 한국인 배우자와 시부모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이해교육, 결혼이민 국가의 문화, 언어, 음식, 관습, 민족성 등에 대한 이해 제고, 결혼생활 적응을 위한 부부교육, 아버지교육, 부부상담, 부모역할교육, 시부모역할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와 시부모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결혼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사회통합 수준은 높지 않았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결혼생활 적응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결혼 전이나 입국 초기 다문화가족 대상 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어교육, 한국인배우자와 시부모는 상호문화이해교육, 결혼생활 적응의 기본이 되는 부부교육, 남편/아버지역할교육, 부모역할교육 등을 기본교육과정으로 묶은 후 지역차원의 제도적·법적 차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상의 기본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함. 또한, 한국인 배우자와 시부모가 센터에 출석하여 교육받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찾아가는 교육'도 고려해봐야 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대상 : 한국인 배우자와 시부모, 그 외 동거 가족원
- 연계협력기관 : 전주지방 법무부와 출입국센터, 혼인신고 시 해당 지자체에서 독려, 전북지역 국제결혼 정보 회사 등
- 사업내용 : 한국인 배우자 및 가족원 대상 기본소양교육과정, 결혼생활적응 과정 운영

① <한국인 배우자 및 가족원 대상 기본소양교육 과정 운영>

-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원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의사소통기술, 그리고 마음가짐 등을 다지기 위해 실시하는 기본 소양 교육 과정 운영
 - (언 제) : 주말, 평일 저녁시간 이용하여 12시간 정도 교육
 - (주요교육) : 결혼이주여성 나라의 문화이해(언어, 음식, 문화, 민족성, 역사 등), 효과적인 의사소통, 남편역할과 시부모역할,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발생하는 문제들, 다문화가족의 해체사례와 그 이유 등
 -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원 대상 기본소양 교육과정 의무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연계 강화 필요 : 전라북도, 국제결혼정보업체, 각 지자체, 법무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국제결혼 희망 남성대상 국제결혼 정보업체 회사 연계 기본교육과정 의무적 실시
 - 주민자치센터에 혼인신고 시 해당 지자체에서 예비배우자 결혼준비교육과정 이수 안내 및 참여 독려, 참여 이수증 받은 후 혼인신고
 - 더 나아가 한국인 배우자 결혼준비교육 기본과정 법률이나 조례로 제도화 필요

② <다문화가족 결혼생활적응교육 과정 운영>

- 서로 다른 국적의 남녀가 만나 결혼하기에 보다 많은 문화·성격 이해와 교육 등이 필요한 상황. 결혼생활적응, 부부관계 적응과 부부관계 증진,

의사소통기술, 성격차이와 성격이해, 남편과 부인의 역할, 자녀의 부모역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결혼생활적응 교육 과정 기획 운영

- (언 제) : 주말, 평일 저녁시간 이용하여 24시간 정도 교육
- (주요교육) : 상호문화이해교육, 부부적응 교육, 남편과 부인역할, 부모역할, 아버지 교육, 의사소통기술, 성격유형검사, 예비신부나라의 문화이해(언어, 음식, 문화, 민족성, 역사 등), 효과적인 의사소통, 부부갈등해소를 위한 기법 등 초기 결혼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실시
 -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생활 적응 교육과정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조/연계 강화 : 전라북도, 각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센터 등
- 국적취득 시 필요사항으로 기재(교육과정 이수증), 혹은 국적취득 시 20% 정도의 비율로 점수화 필요
- 향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 이수를 법률이나 조례로 제도화 하여 의무화 필요

3-2

다문화가족 가가호호 방문 및 사례관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의 정착이 장기화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간의 사별·이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 한부모가족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장기 정착한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배우자의 고령화로 직업 상실 혹은 정신·신체적 장애로 경제적으로 열악하며 결혼이주여성과의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부부간 갈등, 자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과 아버지역할의 부재로 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자녀의 교육과 학습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자녀의 언어발달과 학습지원 등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위기적, 취약적인 문제점을 다문화가족이 가지고 있지만,

시간의 부족과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기·취약한 다문화가족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위기·취약한 다문화가족 조기발굴과 다문화가족 해체 최소화를 위해 다문화가족별 문제 상황에 맞춘 다양한 지원과 상담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 그리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위기·취약 다문화가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음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대상 : 군 단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전체
- 지원내용
 - 1년에 1회 이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 전체에 전화 연락 → 인구통계학적 사항, 생활실태, 생활 어려움과 가족문제, 자녀 언어 및 학습상황, 돌봄 상황, 센터에 나오지 않은 이유, 필요로 하는 긴급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 실태 및 가족 문제 맞춤 지원 → 전화 연락이 안되거나 위기·취약 가족이라 사료되는 가족은 직접 방문하여 가족 상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집중적인 사례관리 실시, 복지서비스 연계로 위기·취약 다문화가족 선제적 관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보물, 가정폭력관련 정보제공, 다문화가족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안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3-3

폭력피해이주여성 긴급위기지원단 운영 및 상담소 유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국 문화와 음식 및 언어에 대한 일방적인 적응과 강요 이외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들은 결혼이민자의 행동과 의식을 통제하려 했

고 결혼이민자 나라의 언어, 음식 및 습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농후했음. 또한, 언어소통의 문제, 각자의 의견과 생각의 차이, 그리고 갈등 발생 시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모욕, 하대 등의 인권 차별적 문제가 불거져 끝내는 자살을 선택하거나 경찰에 신고 후 피해이주여성 쉼터에 입소한 사례들이 있었음

- 이에 가정폭력·성폭력 더 나아가 성매매 등 피해상황에 대해 긴급 상담과 보호 등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특성에 맞춘 전문상담과 다양한 의료·법률 등 맞춤형서비스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한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설치 필요한 상황
 -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성폭력 발생비율은 일반가정보다 높고, 이주여성 대상 불법 성매매, 성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전북지역 내 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2개소(전주, 익산) 이외 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춘 전문상담 기관은 부재한 상황
 - 2019년 6월부터 여성가족부는 지역에 이주여성상담소 개소를 지원하고 있음
 - ※ 대구(6.19), 청부(7.16), 인천(7.19), 목포(2019년 하반기 개소 예정)
 - 2020년 여성가족부는 지역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확대(2개소 증) 설치 예정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폭력피해여성관련 민간단체
- 주요내용
 - 국가별 모국어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대상 전문적인 긴급피해상담과 구조 및 보호를 위한 긴급위기지원서비스 지원단 설치와 운영
 -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개소
 - 통·번역, 의료·법률 등 연계 서비스 신속 지원 등으로 피해이주여성 인권 보호
 - 개별상담, 치료 프로그램 등 운영
- 소요예산 : 여성가족부 국비, 전라북도 도비, 시·군비 매칭
 - 인건비, 사업비 등

4)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및 사회참여 활동 강화

4-1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 중심) 자아존중감 제고 및 인권침해 대응 교육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지역사회의 지역민으로부터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무시와 차별을 받고 있음. 돈 벌려고 돈 때문에 한국에 왔다는 편견에 대해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고 위축되어 있음
- 전통시장 내에서도 상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거나 한국여성과 동일한 행동을 했을 때는 핀잔을 듣기도 하고 무차별적인 차별을 받는 등 지역민에 의한 무시와 인권 침해적 차별 및 함부로 막대함에 있어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고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해결을 위한 고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음
- 이에 지역민들로부터 무시와 차별 및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위축하지 말고 당당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 초기 입국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자신감을 키워주는 자아존중감 증진 방안 및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지역민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 시 위축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강의와 심리적 어려움을 달래주는 집단상담의 병행도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나오는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 지원내용
 - 초기 입국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그 외 여성결혼이민자도 실시해야 함
 - 한국어교육 시간의 일부분을 할애하여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과 사례중심의 인권 침해적 부당한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처법 교육

- 1회성 교육보다는 3-5회기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 필요
- 초기입국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달래주기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병행
- 사업기간 : 1년 단위, 매년 지속 실시
- 예산사업 : 전북 도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중 행복플러스사업비 등을 융통해서 지원

4-2

한국어교육의 다각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의 한국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이 한국어 소통 문제로 나타남. 이에 한국어교육 지원하기 위해 초기입국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모국어로 한국어교육 보충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생활정보 안내와 인적네트워크 공유로 한국생활 적응도 도와줄 필요 있음
- 다음으로 외국인노동자와 유학생 대상 주말시간을 이용해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어교육 단계별 많은 인원의 집합교육 실시로 수준별 한국어교육 요구와 한국어교육 단계들 중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2단계에 정체 되어 있는 2단계 반의 외국인 규모가 많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

① 모국인 멘토 연계 사업 (한국어교육 보충과 인적 네트워크 공유)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대상 : 한국어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초기입국(입국 1년 이내) 여성결혼이민자
- 사업내용
 - 국적별 거주기간이 7~10년 이상인 여성결혼이민자 멘토 모집

- 초기 입국 여성결혼이민자의 동일 국적별 멘토 연계
- 모국어로 한국어교육 보충, 지역사회 내 다양한 생활정보안내, 인적 네트워크 공유 등
- 한 달에 최대 4번 최소 2번의 멘토 - 멘티 활동

○ 지원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멘토 봉사료 지급(2시간 2만 5천원)

② 한국인 자원봉사 연계 한국어교육 보강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대상 : 한국어교육 수강 이주민 중 한국어 2단계에 정체되어 있는 외국인 중심

○ 사업내용

- 한국어 단계별 수준 간 격차(특히 2단계와 3단계간)가 상대적으로 커서 한국어 수강 이주민 및 외국인의 상당수가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진입을 어려워하고 2단계에 정체·누적되어 있음. 이에 2단계 한국어교육 수강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한국어수준도 제각각 이어서 수준별 맞춤 교육이 필요한 상황
- 한국어 2단계에 정체·누적되어 있는 이주민 및 외국인 중심의 한국인 자원봉사 연계로 한국어교육 보강 필요
- 한국인 자원봉사자와 한국어교육 1: 1, 혹은 1: 2~3명 소규모 매칭으로 수준별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 역량 강화로 3단계 진입 필요
- (자원봉사자 모집) 전주시 도청, 시청, 대학교, 공공기관, 학교 중심의 한국어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 내용) 주말(토, 일) 외국인(1명, 2~3명)과 만나 2시간 정도의 한국어 회화, 교육 실시

○ 지원내용

- 한국인 자원봉사자 봉사료 지급, 2시간 2만 5천원(약 20명 정도)
-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전북도, 전주시, 학교, 공공기관, 대학교 등 공문협조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나오는 주된 목적은 한국어 교육과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자격증 취득 및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계되어 취업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남
-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미취학 자녀 양육을 겸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시간제일자리 이외 보다 전문적이면서 근로여건과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했음
- 반면, 결혼이민자들의 일반적인 취업경로는 같은 국가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나 이웃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알선되고 있어서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취업하며 근로 및 고용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각 지역 센터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 대상 자격증 취득반 및 취·창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힘들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자격증을 취득해도 결국에는 자격증 취득으로만 끝나고 취득한 자격증으로 실질적인 일자리까지 연계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냄. 이에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광역),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대상 : 취업을 원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 추진절차
 - ①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광역) 내에 다문화가족 취업중점 기관팀을 지정하고 운영

- ② 다문화가족 취업중점 기관팀에 구직 등록, 일자리 알선,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과 상담, 면접동행, 취업 이후 사후관리 등 지원
- ③ 1년 단위로 지역 거점별(임의; 전주, 군산, 부안, 남원, 무주 등) 순회하며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개최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개최
- (채용관) : 통·번역사, 외국어 강사, 다문화강사, 이중언어강사 등 결혼이민자 채용을 희망하는 학교, 지역 사업체가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1:1 현장면접을 진행하거나 구인정보 게시 → 결혼이민자는 구인 업체에 이력서 제출 및 면접 실시
 - 사업체 : 전북지역 내 일반기업, 협동조합, 학교, 사회적 기업, 학원, 어린이집, 요양원·요양병원 등 참여하여 구인정보 추가 제공
 - 한국어가 서툴러 면접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대상 통역사 현장 지원
- (취업지원관) : 통·번역사, 이중 언어 및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고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 선배 10여명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와 선배들의 취업 전략 및 노하우 전수
- (컨설팅관) : 노동법률 상담, 이력서 작성, 면접기법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현장면접 및 자기소개가 어려운 부분 지원, 근로기준, 계약사항,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상담 연계,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등
- (기타 부대 행사) : 결혼이민자 취업 성공 강연회와 멘토 연계, 취업을 위한 고급 한국어 교육, 협동조합 컨설팅 등 지원



〈그림 5-5〉 결혼이주여성 대상 취업 박람회 개최 사례

4-4

결혼이주여성 전문상담사 및 인권전문강사 양성과 인력 채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성 제고,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전문 인력 양성 과정 필요
- 또한,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은 무엇보다도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모국어 서비스에 대한 지원 요구가 강함. 지역사회 생활정보, 부부 및 가족관계 적응을 위한 다양한 갈등 문제 해소, 사회생활의 어려움 및 위기 상황 대응 등을 위해 모국어를 통한 즉각적인 도움과 지원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장기 거주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상담기법·인권 등과 관련된 전문 상담원 양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모국어 긴급지원서비스 제공 필요
- 즉, 결혼이주여성의 위기 및 취약 부분을 선제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인권 및 상담이론·상담실기·상담

능력 배양을 위한 양성과정 운영과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모국어 전문상담원 배치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어로 부담 없이 언제든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고, 위기 예방 및 초등 대응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 실현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 사업대상 :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약 20명 내외
- 사업예산 : 전북 도비 약 100백만원
 - 1차 년도 : 약 10백만원(양성과정 교육비 35만원, 교통비 10만원)
 - 2차 년도 : 약 90백만원(전문상담사 채용 인건비, 1인당 150만원)
- 추진절차
 - ① 각 지역 센터별 결혼이주여성 대상 전문상담사 및 인권전문강사 양성과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 ② 전주여성의전화 등 폭력피해여성 지원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전문상담사 및 인권전문강사 양성 교육 과정 운영
 - 약 1개월 이상의 매주 2일, 하루 6시간 교육
 - 한국어 실력 토픽 4급 이상, 출석률 90% 이상 시에만 수료증 발급
 - ③ 양성과정 이수 후 수료증 발급자 중심으로 각 센터별 상담원으로 일자리 연계(지속적인 보수교육 실시)

4-5

결혼이주여성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기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사업 중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관련 예산규모와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 한 후, 지역사회에 녹아들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지역민이 결혼이주여성도 지역 내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활동을 다양하게 활성화 할 필요 있음
- 결혼이주여성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밑반찬과 빵 제공, 점심과 간식 나눔, 커피 나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음식과 식사 제공 등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단순히 보호와 지원만을 받는 입장이 아닌 지역사회에 도움과 기여를 하고 지역민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확대 시켜 주는 기회가 되며 지역민과 결혼이주여성 간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고취 가능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시·군별 지자체와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대상 :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결혼이주여성
- 사업예산 : 센터별 자원봉사활동 추진비 지급(전북도비 예산, 센터별 10백만원)
- 추진절차
 - 센터별 자원봉사자 모집 및 자원봉사단 발대식 → 봉사활동 내용 협의 및 봉사내용에 관한 양성교육 실시 → 자원봉사 활동 사업추진계획 수립 →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활동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경근, 이자형, 이기혜(2015). 한국인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수준의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5(1), 1-28.
- 김명성(2009). 사회통합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제8호, 5-29.
- 김이선 외(2018).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심층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이선 외(2018).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순(2017). 국내외 정책 환경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정책 조정방안: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고와 주류화. *입법과 정책*, 9(1), 31-55.
- 김혜순, 이시철(2014). 국가별 관심 편중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측정: 대구 달서구 사례의 실증 분석. *지방행정학회*, 28(1), 89-114.
- 민지선, 김두섭(2013).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4), 71-94.
- 박대식, 안석, 김남훈, 임지은(2018).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안석, 김남훈, 임지은(2017).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배옥현(2018). 경상북도 다문화수용성 실태조사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설동훈(2014). 한국의 이민자 통합지원 정책 현황, 평가 및 개선과제. *외국인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위한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개정 공청회*. 발제 자료.
- 신지원, 허준영, 황선영(2010). 이민자 통합정책과 다층적 통합거버넌스 : 영국·독일·한국사례를 중심으로. *IOM이민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윤여상, 윤인진(2017). 국민통합을 위한 탈북민, 다문화가족, 이민자 의식 조사. *국민대통합위원회*.

- 이규용, 김혜순, 송영훈, 최서리(2018). 한국사회의 이민과 통합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근매, 조용태, 김수용(2014). 다문화가족 갈등관리의 이론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 이수경, 이영주(2017).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의 연차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4(4), 1-26.
- 이자형, 김경근(2013).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3(1), 53-77.
- 이창원, 정의철, 최서리, 최영미(2014). 이주민 미디어 활용을 통한 사회통합 제고방안 연구. IOM이민정책연구원.
- 장승진(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4(3), 97-119.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희 외(2017). 이민자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및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연구. 법무부.
- 조영희, 박민정(201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이민·다문화정책 교육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IOM이민정책연구원.
- 최영미, 이나련(2016). 경기도민의 다문화 수용성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 최정하, 김영화(2013). 초등학생의 가정요인이 외국인 혐오증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6(4), 79-105.
- Ahn, S. S., Min, M. S., Kim, E. S., Lee, M. J., & Kim, K. M.(2012).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Seoul
- Byun, J. H.(2011). A study on cultural exchange activities and the change of multicultural awarenes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6(4), 163-185
- Eyler, Janet(2002). Reflection: linking service and learning - linking students and communities. Journal of Social Issues, 58(3), 517-534.

- Jang, E. H. & Uh, J. K.(2013).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self-concept, cross-cultural experience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21(3), 289-305.
- Jun. S. K. & Kim, H. J.(2014). The effect of adolescents'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interracial friendship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1(2), 183-205.
- Lee, J. H., & Kim, K. K.(2013). Detenn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3(1), 53-77.

정책연구 2019-22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 사회통합 증진을 중심으로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19년 11월 29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73-8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